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2. 12. 24

주관연구기관	사단법인 부산교육연구소
연구책임자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공동연구자	이미식 (부산덕천중학교)
	이일권 (부산금사초등학교)
	전창완 (부산해광고등학교)
	공외정 (부산교육연구소)

사단법인 부산교육연구소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과제	3
3. 연구대상 및 방법과 그 한계	4
II. 학교공동체에서의 인권	10
1. 기본적인 인권	10
2. 교육주체들의 인권에 관한 개념적 범주	13
3.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17
III. 교사 인권의식의 실태와 그 특징	20
1.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	20
2. 교사들의 인권의식 실태	21
IV. 요약 및 제언	97
1. 조사결과의 요약	97
2. 제언 : 교사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5대 과제	102
참 고 문 헌	105
부 록	115
1. 설문지	117
2. 관찰조사지	129
3. 면접조사지	131
4. 포트폴리오	132
5. 설문 조사결과 분석표(빈도분석)	138
6. 설문 조사결과 분석표(교차분석)	162
7. 관찰조사 결과 분석표	233
8. 면접조사 자료	237
9. 포트폴리오 자료	253
10. 포커스 조사 분석 자료	261
11. 면접조사자 훈련자료	269

표 차 례

<표 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5
<표 2> 설문에 응답한 선생님들의 근무지역별 특징	6
<표 3> 설문지의 내용구성	7
<표 4> 교사로서의 권리	14
<표 5> 학생으로서의 권리	16
<표 6> 학부모로서의 권리	17
<표 7> 인권의식의 4가지 수준	18
<표 8> 교사의 인권의식 측정 기준	19
<표 9> 교사의 인권의식 측정영역	21
<표 10> 인권에 관한 지식의 정도	22
<표 11> 인권에 관한 지식의 정도(연령별)	22
<표 12> 인권에 관한 지식의 정도(중등교사의 담당 과목별)	23
<표 13>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	25
<표 14>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권의 중요도 인식(성별, 연령별)	26
<표 15>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중요도 인식(성별, 연령별)	28
<표 16>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연령간의 상관관계	29
<표 17>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의 실천 빈도	30
<표 18> 인권교육 연수 경험	30
<표 19> 인권교육의 실천과 인권교육 연수	31
<표 20> 관찰조사 : 인권교육 실천	32
<표 21> 인권교육의 실천과 인권지식의 관계	32
<표 22> 인권교육 연수 경험과 체벌 관계	33
<표 23> 기존 인권연수 실시 주체	34
<표 24> 관찰조사 :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35
<표 25> 인권교육을 연수 참여 희망도	35
<표 26> 초·중등학교의 교과서에서 인권관련 개념에 대한 내용제시	39
<표 27>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과의 인권교육 내용 비교	41
<표 28> 교사, 학부모, 학생 인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비교	43

<표 29> 교사인권의 중요성 인식도	44
<표 30> 교사로서 인권을 침해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45
<표 31> 직급, 서열,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성별 분석)	46
<표 32> 직급, 서열,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연령별 분석)	47
<표 33> 교사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방식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50
<표 34> 각종 회의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제기	51
<표 35> 각종 회의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제기(성별 분석)	51
<표 36> 학부모 인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55
<표 37> 학부모 인권에 대한 침해 여부	56
<표 38>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권에 관한 중요성 인식(연령, 지역별)	58
<표 39> 정규 교과 외 교육활동 선택권의 중요성 인식 정도	61
<표 40> 학생의 수업평가, 수업내용, 방법 등의 제안에 대한 교사의 반응	62
<표 41> 생활지도와 학급운영에 대한 학생의 의견 처리 방법	63
<표 42> 관찰조사 : 학생 의견 처리	63
<표 43> 학생의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선택권의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	64
<표 44> 학생자치활동의 중요성 인식 정도	68
<표 45> 학생자치활동의 침해 여부	68
<표 46> 관찰조사 : 학생들의 자치권 보장	69
<표 47>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 인식 정도	71
<표 48>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침해 여부	72
<표 49>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연령별)	73
<표 50> 관찰조사 :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75
<표 51> 학생의 종교 선택권의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	75
<표 52> 학생 처벌의 방법에 관한 응답	77
<표 53> 관찰조사 : 체벌 사용	78
<표 54> 학생이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에 관한 인식(연령별)	78
<표 55> 학생을 처벌하는 방법에 관한 응답(연령별 분석)	79
<표 56> 학생의 징계과정에서 타당한 규정의 적용과 자신을 변호할 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	80
<표 57> 학생의 징계과정에서 타당한 규정의 적용과 자신을 변호할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81
<표 58> 학생이 징계절차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	83
<표 59> 학생이 징계절차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83
<표 60> 교칙(학칙)제정과정의 구성원 분석	84

<표 61>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정도에 관한 인식	86
<표 62> 학생들의 의견 처리 방법	87
<표 63> 관찰조사 :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 관계	88
<표 64> 교사들의 악법에 대한 저항의식	90
<표 65> 교내·외의 사회문제에 대해 표현하거나 참여하는 것에 관한 인식	91
<표 66> 교사들이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 참여한 경험	92
<표 67> 관찰조사 : 인권단체, 시민단체 참여 여부	93
<표 68> 교사의 사회참여의식의 중요성 인식(연령, 지역별)	93
<표 69> 악법에 대한 저항의식 분석(성별)	95
<표 70> 학내문제에 대한 참여 여부(성별 분석)	95

그림 차례

<그림 1> 인권에 관한 인식 정도	22
<그림 2> 인권에 관한 지식의 정도(연령별)	23
<그림 3> 인권에 관한 지식의 정도(중등교사의 담당과목별)	24
<그림 4>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	25
<그림 5>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의 중요도 인식(성별)	27
<그림 6>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의 중요도 인식(연령별)	27
<그림 7>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중요도 인식(성별)	28
<그림 8>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중요도 인식(연령별)	28
<그림 9> 인권교육의 실천 빈도	30
<그림 10> 인권교육 연수의 경험	31
<그림 11> 인권교육의 실천과 인권교육 연수의 관계	31
<그림 12> 인권교육의 실천과 인권지식의 관계	32
<그림 13> 인권교육 연수의 경험과 체벌의 관계	33
<그림 14> 기존 인권 연수 실시 주체	34
<그림 15> 인권교육 연수의 참여 희망도	35
<그림 16> 교사인권의 중요성 인식도	44
<그림 17> 교사로서 인권을 침해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45
<그림 18> 문항(1-46)에 대한 성별 분석	47
<그림 19> 문항(1-47)에 대한 성별 분석	47
<그림 20> 직급, 서열,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연령별) ..	48
<그림 21> 교사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방식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50
<그림 22> 각종 회의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 제기	51
<그림 23> 각종 회의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 제기(성별) ..	52
<그림 24> 학부모 인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56
<그림 25> 학부모 인권에 대한 침해 여부	56
<그림 26>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에 관한 중요성 인식(연령별)	58
<그림 27>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에 관한 중요성 인식(지역별)	59
<그림 28>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선택권의 중요성 인식	61

<그림 29> 학생의 수업평가, 수업내용, 방법 등의 제안에 대한 교사의 반응	62
<그림 30> 생활지도와 학급운영에 대한 학생의 의견 처리방법	63
<그림 31> 학생의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선택권의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	65
<그림 32> 학생자치 활동의 중요성 인식 정도	68
<그림 33> 학생자치활동의 침해 여부	68
<그림 34>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 인식 정도	71
<그림 35> 학생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침해 여부	72
<그림 36> 학생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연령별, 문항1-30)	73
<그림 37>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연령별, 문항1-31)	74
<그림 38> 학생의 종교선택권의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	75
<그림 39> 학생 처벌의 방법에 대한 응답	77
<그림 40> 학생이 체벌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에 관한 인식(연령별)	78
<그림 41> 학생을 처벌하는 방법에 관한 응답(연령별)	79
<그림 42> 학생 징계에서 타당한 규정의 적용과 자신을 변호할 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81
<그림 43> 학생 징계에서 타당한 규정의 적용과 자신을 변호할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81
<그림 44> 학생이 징계과정에 참여하고 변호할 권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83
<그림 45> 학생이 징계과정에 참여하고 변호할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84
<그림 46> 교칙(학칙) 재정과정의 구성원 분석	84
<그림 47>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석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86
<그림 48> 학생 의견의 처리 방법	87
<그림 49> 악법에 대한 교사들의 저항의식	90
<그림 50> 교내·외의 사회문제에 대해 표현하고 참여하는 것에 관한 인식	91
<그림 51> 교사들이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 참여한 경험	92
<그림 52> 교사의 사회참여의 중요성 인식(연령별)	94
<그림 53> 교사의 사회참여의 중요성 인식(지역별)	94
<그림 54> 악법에 대한 교사들의 저항의식 분석(성별)	95
<그림 55> 학내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 여부(성별)	96
<그림 56> 교사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5대 과제	10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의 본질적 의미 자체를 회복한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인권에 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사회를 비판하는 것, 사회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 내지는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거나 어지럽히는 것 등의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권의 개념 자체가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편견 때문이며, 학교공동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인권의 개념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권교육이 제시하는 가치가 사회적 현실과 양립하기 힘들다거나 인권교육이 다루는 논쟁적 주제는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학교교육 내에 통합되기 어렵다는 편견 등이 유포되어 있다. 그리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권교육에서 다루는 문제가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해결불가능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부정적 이미지와 무력감을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지배적인 교육의 패러다임과 학교문화가 인권의 원칙과 거리가 멀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학교공동체에서 이러한 편견들은 사라져야 마땅하며, 교사들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사는 교육권을 갖고 교육의 주체로서 활동을 하며, 학교 밖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측면에서도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사들이 가진 인권의식에 대한 검토나 교사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우리의 문화와 학교공동체가 갖고 있는 내외적 요인 속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풍토이다. 해방이후 남북의 분단에 따른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 군부독재 시절 동안 지속된 수구·보수 이데올로기의 강화 등으로 인권은 반체제를 의미하는 대명사였다. 그로 인해 인권 혹은 인권의식에 대한 논의

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최근에 진전된 것이다.

둘째, 관료적이며 권위적인 학교사회의 문화를 지적할 수 있다. 교육관료(혹은 행정가)들은 인권이란 말의 뉘앙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¹⁾ 즉, 이들은 인권을 자신들의 권리와 대립 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권문제가 제기될 경우 자신들의 입지약화는 물론 학교공동체의 갈등과 긴장이 증폭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관료와 교사들 사이에는 상명하복의 제도적 위계질서가 있으며, 교사는 관료체제의 말단에 위치하고 있다. 교장, 교감, 부장, 그리고 평교사로 연결되는 위계의 고리 때문에 교사들은 순종과 인내가 편하게 사는 길이라는 민속적 원리를 터득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소극적이다.²⁾ 그래서 학교장의 말을 잘 듣고, 승진과 인사체제에 잘 적응하기 위해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³⁾

셋째, 학교현장에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형식과 내용면에서 비전문적이고 타율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급별, 학년 및 과목에 따라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직접 개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제약과 불이익이 가해지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교사에게 인권을 위한 사회적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

1) 인권개념에 대한 ‘오해’는 비단 교육관련자들에게서만 확인되는 문제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권’을 세계인권선언문으로 등식화하고 ‘자유와 평등’이란 어차피 현실의 것이 아니며, 인류사회의 ‘강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체념적 인식을 갖는다. 또한 사람들은 ‘자유권이 진짜 인권’이라는 관념적 틀 속에서 ‘인권’을 정의하는 편향을 보인다.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이 같은 편향을 ‘인권개념의 저차원화’로 정의하고, 이 같은 경향성은 생활세계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도 지구적 환경(정치·금융)정비를 위한 선진자본주의권의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준식(2000),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자료.

2) 한국 학교문화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숙(1996), “한국 학교문화의 특성과 잠재적 교육과정”,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서울: 소화, 1996, pp.289-340

3)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수적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교사들의 승진체제이다. 현재의 승진체제는 교사들에게 보신주의나, 점수 따기 경쟁, 줄서기 경쟁 등을 통해 교사들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망각하게 만든다. 눈치보기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인권은 사치로 여겨질 수 있다.

어 있지 않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성직자관과 노동자관이다. 이 두가지 관점의 궁극적인 차이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다. 성직자관은 의무만을, 노동자관은 정당한 권리를 토대로 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사들에게는 과도한 의무를 요구하는 반면 권리나 인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논의가 차단되어 온 상황에서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논의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교육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인권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곧 교사 자신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닌 교육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공동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교사들이 지닌 인권의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의 주체가 교사, 학생, 학부모이면서도 각 주체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마치 갈등관계인 것처럼 인식되거나 오도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의 인권의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공동체 전체의 인권을 고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에 무감각한 학교의 교육풍토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과제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은 교사들의 인권의식 수준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과 단계⁴⁾를 설정한 후, 교사, 학부모, 학생이 처한 상황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의식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

4) 인권의식 수준의 측정은 다음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한다. 1단계는 개념인식의 단계, 2단계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3단계는 사회적 차원에서 인권을 실천하는 단계이다.

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과 그 한계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 교사⁵⁾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진들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기로 하였던 연구방법의 설계에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⁶⁾ 그 결과 양적 연구의 결과를 주로 활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질적 연구의 결과를 보완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의 조사결과 모두를 부록에서 제시하였다.

1) 양적 조사

양적 조사를 위해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중 여교사는 61%, 남교사는 39% 정도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9%수준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40대, 20대, 50대, 60대의 순이다. 교육경력별로는 11년-19년이 42%수준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0년-5년, 20년-29년, 6년-10년, 30년 이상의 순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이 37% 수준

5) 교사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서 교원이 있다. 교원은 각급 학교에서 원아와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교원은 그 종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는 교원이라고 할 수 없고, 자격증을 가진 자라도 임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는 교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의 교원의 범위는 ① 초·중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② 대학·전문대학의 총장, 학장, 부총장, 부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③ 유치원의 원장, 원감, 교사 등이며 교사는 교원의 일원으로서 교원이 지니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초·중등학교의 교사로 한정하였다.

6) 두 가지 연구방법 가운데 한가지를 주로 하고 여기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한가지를 선택해야 함이 마땅하나, 3개월에 못 미치는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였던 욕심이 앞섰던 것이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연구 방법의 조사결과가 서로 중복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조사결과와 분석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진 상호간의 의견교환 및 토론의 기회를 가지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인문계고교, 실업계고교, 특수학교, 특수목적고의 순이다. 담당과목별로는 사회 및 도덕과가 20%수준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국어, 외국어, 실과 및 실업, 수학, 예체능 및 교련, 과학의 순이다.(<표 1> 참조).

<표 2>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일반적 특징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60	39.0
	여자	872	61.0
	합계	1435	100
연령	20세~29세	259	18.0
	30세~39세	561	39.0
	40세~49세	457	31.8
	50세~59세	146	10.2
	60세 이상	14	1.0
	합계	1437	100
교육 경력	00년~05년	344	24.0
	06년~10년	195	13.6
	11년~19년	607	42.3
	20년~29년	220	15.3
	30년 이상	70	4.9
	합계	1365	100
근무 학교 급별	초등학교	564	37.8
	중학교	357	23.9
	실업계 고교	173	11.6
	인문고교	329	22.0
	특수목적고	20	1.3
	특수학교	51	3.4
	합계	1494	100
담당 과목 (중등)	국어교과	142	16.2
	사회 및 도덕교과	183	20.9
	과학교과	74	8.4
	외국어 교과	124	14.2
	수학교과	109	12.4
	실과 및 실업교과	127	14.5
	예체능 및 교련교과	86	9.8
	기타	31	3.5
	합계	876	100.0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근무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중시하였다. 가령 서울과

광주는 인구규모나 지역 간 거리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대도시권의 문화적 속성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행정구역상 같은 시·도라 할지라도 대도시나 농어촌지역이나에 따라 학교공동체의 문화적 특징은 달라질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일부 설문문항의 분석결과에서도 학교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 응답자들의 근무지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회수된 설문응답자의 근무지역이 특별시·광역시인 경우는 47.4%로서 인구비중 47.5%와 거의 같다. 중소도시와 농어촌·도서지역인 경우는 인구비중과의 격차가 각각 9%와 5%정도 나타나지만, 분석결과와 해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표 2> 참조).

<표 3> 설문에 응답한 선생님들의 근무지역별 특징

지역	설문의 응답 내용		인구비중(%)
	회수된 설문지(A)	비율(%) (A÷회수된 설문지 합계)	
특별시 혹은 광역시	739	47.4	47.5
중소도시*	485	31.1	40.2
농어촌 및 도서지역*	269	17.2	12.2
무응답	67	4.5	-
합계	1560	100	100

* 중소도시는 도지역의 '시'지역인구,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군'의 인구를 합산한 것임.

** 자료 : 인구비중에 대한 자료는 2,000년 기준 행정자치부 자료를 활용하였음

설문으로 구성된 문항은 3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하였으며 이것은 「제Ⅱ장 제3절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에 근거한 것이다.(<표 3> 참조).

첫째,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인식의 수준에 관한 질문이다. 문항(1-1)은 인권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세계인권선언 혹은 국제인권협약을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문항(1-2)~문항(1-10)에서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인권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질문을 하였다. 문항(1-11)~문항(1-19)에서는 학부모인권의 중요도 인식과 교사에 의한 침해여부를 파악하는 질문을 하였다. 문항(1-20)~문항(1-38)에서는 학생인권 에 관한 중요도 인식과 교사에 의한 침해여부를 파악하는 질문을 하였다. 문항

(1-39)~문항(1-51)에서는 교사인권에 관한 중요도 인식과 침해여부를 파악하는 질문을 하였다.

둘째, 개인적 차원의 인권의식과 그 실천에 관한 질문이다. 문항(2-1)~문항(2-4)는 학생지도과정을 통해 나타난 교사의 인권의식을 알아보는 질문이다. 문항(2-5)~문항(2-6)에서는 학생의 학사행정참여에 관한 교사의 인권의식을 파악하는 질문을 하였다. 문항(2-7)~문항(2-9)에서는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교사 개인의 노력(연수나 교육 등)을 조사하는 질문을 하였다.

셋째, 사회적 차원의 인권의식과 그 실천에 관한 질문이다. 문항(3-1)~문항(3-6)에서는 교사의 사회참여에 관한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문항(3-7)~문항(3-11)에서는 교사의 사회참여와 저항의식 및 그 실천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표 4> 설문지의 내용구성

기준	질문내용	관련문항
인권의 개념인식 수준 문항(1-1)~(1-51)	기본적 인권의식의 수준	(1-1)
	인권에 관한 사회적 쟁점의 중요도 인식수준	(1-2)~(1-10)
	학부모의 인권에 관한 중요도 인식과 교사에 의한 침해여부	(1-11)~(1-19)
	학생의 인권에 관한 중요도 인식과 교사에 의한 침해여부	(1-20)~(1-38)
	교사의 인권에 관한 중요도 인식과 침해여부	(1-39)~(1-51)
개인적 차원의 인권의식과 실천 문항(2-1)~(2-9)	학생지도과정을 통해 나타난 교사의 인권의식	(2-1)~(2-4)
	학생의 학사행정에 참여에 관한 교사의 인권의식	(2-5)~(2-6)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교사 개인의 노력(연수나 교육 등)	(2-7)~(2-9)
사회적 차원의 인권의식과 실천 문항(3-1)~(3-11)	교사의 사회참여에 관한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	(3-1)~(3-6)
	교사의 사회참여와 저항의식 및 그 실천	(3-7)~(3-11)

설문분석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빈도분석과 교차표분석을 이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의 한계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교사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다만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교사 인권의식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2) 질적 조사

질적 조사는 포트폴리오조사, 포커스조사, 관찰조사, 면접조사의 4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조사의 결과는 양적조사의 결과해석을 위해 보완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연구설계상의 한계로 인해 질적 조사의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는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먼저 포트폴리오조사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인권의식이나 인권체험과 관련된 사례를 자기 고백적인 서사적 포트폴리오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포트폴리오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예문을 제시하였다.

포커스 조사에서는 초·중·고 교사 각 1인, 학부모 1인, 고교생 1인을 초청하였다. 그리고 우리 연구의 주제를 놓고 2회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자유토론의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학교공동체 속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떠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관찰조사에서는 피관찰자인 교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사들의 현실적인 삶을 파악하였다. 관찰대상자는 관찰자가 평소 인권의식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 왔던 교사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 왔던 교사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관찰대상자 1인에 대하여 2회의 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면접조사원이 교사들을 방문하여 몇 가지 구두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 대상자는 표집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 급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끝으로 이번 조사연구의 전체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2002년 12월 24일까지 85일간이며, 구체적인 진행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방향 정립 : 10월 1일 ~ 10월 5일

자료수집 및 아이디어 고안 : 9월 25일 ~ 10월 30일

검사도구 개발 : 10월 10일 ~ 11월 15일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2002년 11월 19일 ~ 12월 5일

포트폴리오 작성 및 면접조사, 관찰조사 실시 : 11월 10일 ~ 11월 30일

제1차 포커스 조사 : 2002년 11월 18일

제2차 포커스 조사 : 2002년 11월 29일

조사 결과 통계 처리 및 분석 : 12월 5일 ~ 12월 13일

대안 및 프로그램 의견 수렴 : 11월 20일 ~ 12월 20일

연구내용 완성 및 평가 : 12월 13일 ~ 12월 20일

연구내용 보완 : 12월 20일 ~ 12월 22일

최종 보고서 완성 및 보고 : 12월 22일 ~ 12월 24일

II. 학교공동체에서의 인권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과 범주는 다음 3가지로서, 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② 학교공동체의 교육주체들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③ 인권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수준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인 인권

1) 인권의 의미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개념은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인권을 대변하는 자유(liberte)라는 개념은 독일에서 인권을 지칭하는 기본권(grundrecht) 또는 기본적 인권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인권의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대체적인 의미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마땅한 권리’로 이해된다. 즉 인권의 개념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또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공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함께 뜻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인권 개념이 기본권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본권으로서 인권 개념이 정착된 것은 법적으로 성문화되면서 가능했다. 근대사회 이전 중세사회에서는 인간의 개념 보다 신의 개념이 중시되었고, 인권의 개념은 신권의 개념에 포함된 것이었다. 근대사회는 새로운 사회와 인간의 탄생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근대사회의 발달은 곧 인간의 고유한 권리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근대사회의 주체세력인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인권의 개념은 실정법으로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인권의 개념은 실정법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연적 권리 역시 포함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확보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것으로 인권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인

권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인권은 사람의 권리(right of man)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가 된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될 때 인권은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의 개념과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되거나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는 관계이다. 우리는 인권의 개념을 인간으로서 마땅히 부여된 도덕적 요구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면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인권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그 폭과 의미가 변하여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의 개념은 주로 3세대로 구분이 된다. 유네스코의 법률자문위원이었던 Karel Vasak은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인 자유평등박애를 기준으로 인권의 역사를 3세대로 구분하였다. 제1세대 인권의 개념이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제2세대 인권은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분쟁정의까지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제3세대 인권은 여성, 제3세계 등 집단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이른바 ‘連帶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을 가리킨다.

제1세대 인권의 내용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 종교의 자유, 투표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그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기본적인 내용은 1789년의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유럽 인권 규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등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제1세대 인권의 내용은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들로 인하여 사회권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필요성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1917년의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기와 1918년 「노동으로부터 착취당하는 인민의 권리선언」의 시기를 거쳐 1919년 바이마르(Weimar)헌법 등에서 사회권(Sozial rechtsgrund)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사회권을 강화하여 노동의 권리, 정당한 보수(임금)를 받을 권리, 최소한의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권리,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강화시켰다. 이것이 제2세대 인권의 내용이다.

제3세대 인권의 내용은 연대권을 포함한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한 개인

이 사회 조직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개인들간의 조직과 연대를 포함한 것이 제3세대 인권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 노약자, 아동에 대한 권리가 강화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인류 공동유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 인도적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은 거대한 사회 조직의 논리에 조직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때부터 인정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정보 통신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개념들 - 예를 들면, 개인정보의 유출, 포르노 산업의 무차별적 공략, 해커나 크래커의 불법적 행위 등이 가하는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들 - 도 등장하고 있다.⁷⁾

역사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인권 개념의 구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권과 합목적적 생명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자유권, 그리고 인간이 행위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복지권과 사회권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존엄권, 자유권, 복지권 및 사회권 그리고 연대권은 인간다운 삶의 필요 조건이 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존엄권, 자유와 평등권, 사회권 그리고 연대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선언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이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의 국제인권협약(A협약, B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존엄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살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것이 보장되지 못하면 인간다움이 상실된다. 존엄권은 인권의 사상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둘째, 자유권은 인간이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 수 있는 주체적인 의지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자유권의 내용은 자유를 보장하는 ‘--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에서 ‘--로의 자유’, 즉 적극적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출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이 있다. 그리고 자유권의 보장을 위해 참정권, 청원권, 및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으로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권교육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1997), pp.24-25.

셋째, 평등권은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한다. 근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봉건적인 불평등한 신분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처음으로 선언되었다. 그 뒤 모든 근대 입헌 국가들이 헌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지만 법률상 그 ‘권리능력’이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넷째, 사회권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경제적 권리, 직업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여자, 인종 소수민족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다섯째, 연대권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물론 침해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조직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저항의 권리이다.

2. 교육주체들의 인권에 관한 개념적 범주

교육공동체에서 교육주체들의 인권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지니고 있는 권리와 관련된다. 이들은 각각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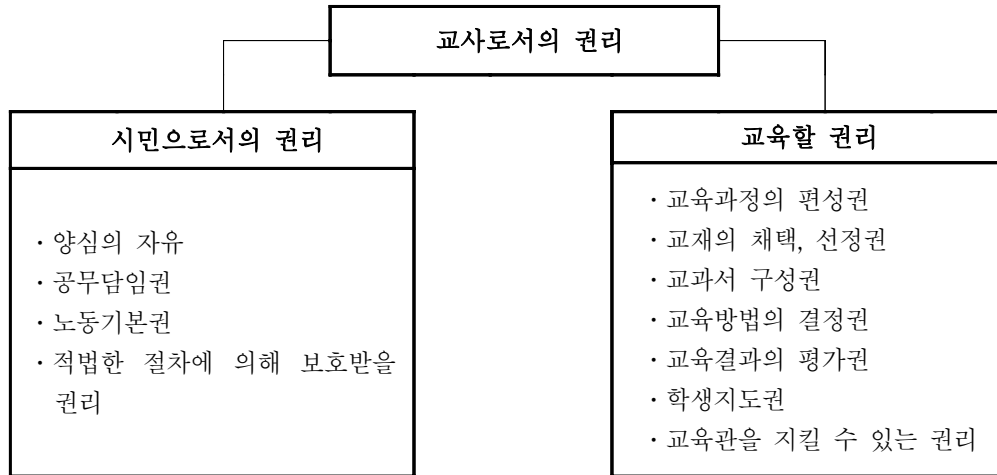
1) 교사로서의 권리

교사로서의 권리는 교사가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지위와 역할”을 말한다. 교사의 권리는 교사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지위와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교사의 권리는 자연법상으로는 부모의 신탁에 의한 것이고, 실정법 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한 것이다. 국가의 교육할 권리는 국민주권에 따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기초하므로 교사의 권리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권리는 자격증제도나 채용 등으로 인정되고 있는 교사의 법적 지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교사의 권리는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권리와 교육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표 4〉 참조).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권리는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의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의 채택·선정권, 교육방법의 결정권, 교육결과의 평가권, 학생지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또 다른 권리로서 교육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교사의 전문성 존중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 및 신분 보장을, 제2항은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3항은 학생에 대한 정치적 지도·선동 금지를, 제4항은 교사의 공직 취임권을, 제5항은 교사인사에 대한 법률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의 교육권의 법리는 그것에 관한 법 해석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학생·학부모와 학교·교사의 관계에 관한 교육관계법의 법리와 실체의 형성에 의해 구성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학부모·주민의 법의식과 법적 확신에 달려 있다.⁸⁾

<표 5> 교사로서의 권리



2) 학생으로서의 권리

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이다. 우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⁹⁾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소극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 있다.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국민들에게 교육기회의 접근으로

8) 이수광,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9) 헌법 제31조 1항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가 인간의 본래적 인권의 일부임을 표명한 것이다.

부터 방해할 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국가가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한다. 국가가 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국민 개개인이 교육받을 기회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에, 국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¹⁰⁾

국민들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법상으로 교육법제의 정비요구권, 교육비의 국가부담청구권, 교육시설의 정비요구권,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¹¹⁾ 그런데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요구 조건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다. 만약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 없는 기회제공권 및 국가에 취학조건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만 해석하게 되면, 학습자를 단순히 대상화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만든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받을 권리의 적용범위는 교수-학습의 구체적 내용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교육내용 선택·결정의 참여 권리, 교육내용의 요구 권리, 수업 과정의 참여 권리,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권리,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선택의 권리, 학습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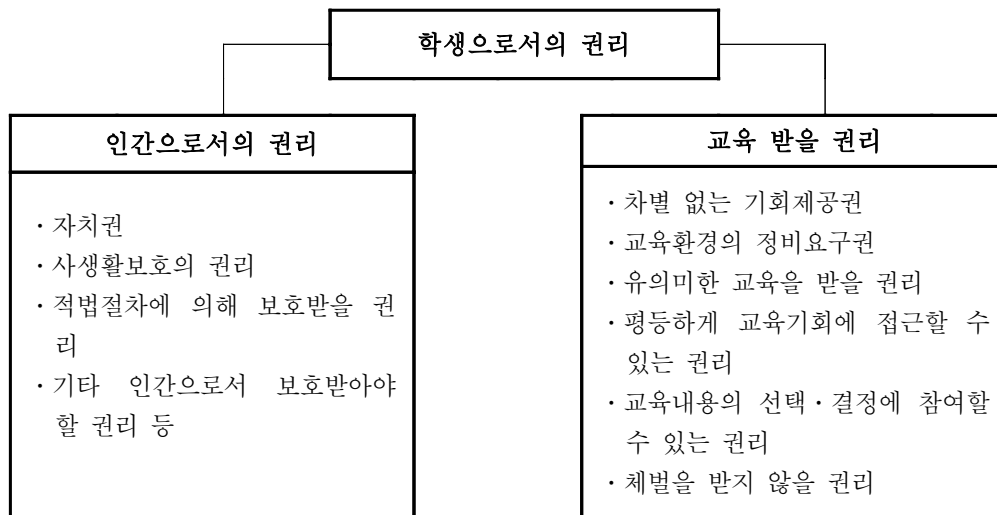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와 더불어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화받지 말아야 할 권리, 학생들의 교육적 흥미에 영향을 줄

10)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한다. 하나는 무상교육 또는 방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민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국가의 노력이 국민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담보할 만큼 완벽할 수가 없다. 또한 본래 교육받을 권리라는 것이 단순히 주어진 조건 속에서 완전하게 충족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만큼, 국가 자체의 노력만으로 모든 '권리' 내용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11) 헌법 제31조 2항의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동조 3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동조 5항)는 규정이 그것이다. 보다 직접적인 근거는 ‘교육기본법’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동법 제8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제10조 제1항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5조 2항의 ‘교육관련자의 학교경영 참여권’과 제7조의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의 조건 정비를 적극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공부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을 가질 권리, 부당하게 손해 받지 않을 권리¹²⁾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교육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권리 목록은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권리에 해당된다.¹³⁾ 학생의 권리 내용을 <표 5>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6> 학생으로서의 권리



3) 학부모로서의 권리

학교공동체에서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권한은 자녀를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학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권한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친권

12) ‘교화받지 말아야 할 권리’, ‘학생들의 교육적 흥미에 영향을 끼칠 의사결정(교육과정 편성, 규칙 제정)에 참여할 권리’, ‘공부하기 위해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 ‘부당하게 손해받지 않을 권리(차별, 성적 고통 등)’ 는 Katz가 제시한 ‘부여된’ 학생권리 목록이다 [Michael S. Katz, ‘Respect for Persons and Students : Charting Some Ethical Territory’ in Philosophy of Education 1991(Normal, II: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 1992), p.191] .

13) 이수광, pp.63-64

의 성격을 띠므로,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과 마찬가지로 후원적 권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선택권¹⁴⁾, 국가에 대해서 교육환경 정비 요구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교교육의 부적합성 및 비교육성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부양 및 취학의 의무도 동시에 갖게 된다.(〈표 6〉 참조).

<표 7> 학부모로서의 권리



한편 지금까지 제시한 교육주체들 각각의 권리는 나름대로 고유한 활동영역이 있기는하지만, 서로 상호갈등의 관계에 처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3.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인권의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각각의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위와 같이 설정했다면 교사들의 인권의식은 어떻게 측정 가능한가? 일반적인

14) 현대 사회에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한’은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학교선택권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의무교육 제도에서 부모는 국가에 의해 ‘원치 않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국가는 부모에 우선해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또한 의무교육 제도 이외에도 국가가 부모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넓다.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등학교의 추천방식에 의한 입학제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인권의식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필리핀 노말대학교 연구소에 의해 수행된 한 연구에서 제시된 네 가지 수준이다(<표 7> 참조).

<표 8> 인권의식의 4가지 수준

구분	특징	내용
수준1	복종과 자기 부정	인권침해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수준
수준2	수동성과 관심의 부족	인권을 의식하고 있지만 두려움이나 자기 자신의 위협 때문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수준
수준3	제한된 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을 중시하지만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는 수준
수준4	적극성과 자립 그리고 발의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수준

<수준 1>은 복종과 자기부정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수준은 인권침해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하는 단계로서 인권의식이 낮은 경우이다. <수준 2>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본적 자세가 수동적이고 인권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인권을 의식하고 있지만, 두려움이나 자기 자신의 위협, 다른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자기 자신과 관련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권을 주장하는 정도가 약한 단계이다. 이 수준의 다른 변형들로는 패배주의, 기회주의가 있다. 패배주의는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객관적 조건들이 불변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여 복종과 인내를 초래한다. 기회주의는 인권의 보호나 확대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현상이다. <수준 3>은 인권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한된 의미에서 이익을 제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소극적 의미의 실천단계로서 인권침해의 상황을 관계당국에 호소하거나,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에 의해 인권침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이다. <수준 4>는 인권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이며 주체적이고 자립적이다. 이 수준은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직화된 형태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 단계에서는 집단적 노력이나 각성된 개인의 필요에 의해 의식적, 조직적, 독자적으로 인권 수호에 나서게 된다.¹⁵⁾

연구자들은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위에 제시된 수준을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수준 1>과 <수준 2>를 합쳐서 1단계로 설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단계는 내용상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측정하는 척도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설정하였다.

<1단계>는 자신의 인권에 대해 사고하고 개념화하는 수준이다. <2단계>는 인권을 자각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3단계>는 인권을 자각하고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인권 침해 상황 시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집단과의 연대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단계이다.(<표 8> 참조).

<표 9> 교사의 인권의식 측정 기준

구분	특징	단계
1단계	개념인식의 단계	인권의 개념만을 이해하는 기초단계
2단계	개념인식과 더불어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하는 단계	인권의 개념과 더불어 침해사례 발생시 저항하는 수준, 그러나 대부분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단계
3단계	인권보호를 위해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하는 단계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단계

15) 이석호, “인권교육과정 구성방안에 관한 연구”-초등사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pp51-52

Ⅲ. 교사 인권의식의 실태와 그 특징

1.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

교사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 내용 가운데서 한국사회에서 인권문제로서 부각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을 중심으로 하였다. 존엄권의 영역은 ▪사형제도 폐지, ▪난민의 인권, ▪재소자의 인권, ▪공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 자유와 평등의 영역은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 ▪여성의 권리,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사회권의 영역은 ▪소수자(장애자, 아동, 노인) 권리, ▪환경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하고, 사회참여와 연대의 영역에서는 ▪사회 참여와 시민단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할 것이다.

둘째, 학교공동체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맥락에서 교사들은 인권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할 것이다. <표 9>는 이상에서 제시한 3가지 영역을 도식화한 것이다.

<표 10> 교사의 인권의식 측정영역

교사들의 인권의식 조사 영역		
기본적 인권의 인식 수준	교육주체들의 인권에 관한 인식 수준	인권보호와 확대를 위한 실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권 - 사형제도 폐지 - 난민의 인권 - 재소자의 인권 - 공권력 등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 ▪ 자유와 평등의 권리 -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 - 여성의 권리 -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 사회권 - 소수자(장애인, 아동, 노인) 권리 - 환경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권리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의사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 권리 -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 교육활동 지원 요구권 ▪ 학부모의 권리 - 교육활동 선택권 -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 ▪ 학생의 권리 - 학습권 - 자치권 - 사생활 보호 - 체벌 - 징계 - 교육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관계 기술 - 타인과 협력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해내는 능력 -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참여하는 능력 ▪ 사회참여와 연대 - 인권보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시민단체에 관련된 활동의 능력

2. 교사들의 인권의식 실태

1) 기본적 인권개념에 관한 인식 수준

(1) 인권에 대한 개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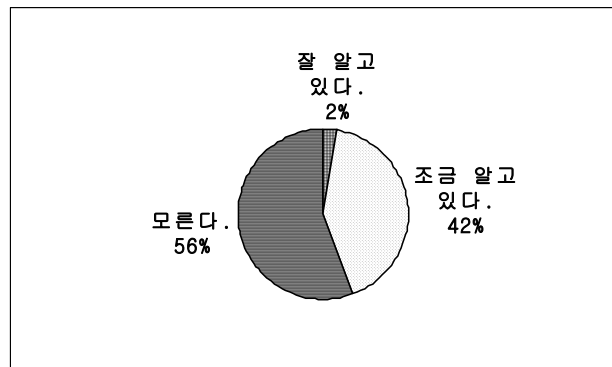
교사들이 알고 있는 인권에 대한 개념 인식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권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제시된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

였다. 문항(1-1)에서 세계인권선언(1948)이나 국제인권협약(1966)의 내용에 대해 55% 이상이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다.(<표 10> 참조). 과반수 이상의 교사들이 인권교육의 초보적인 자료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의미이다.

<표 11> 인권에 관한 지식의 정도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A협약, B협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항(1-1)			합계 (%)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모른다.	
비율	2.4	42.0	55.6	100

(사례수=1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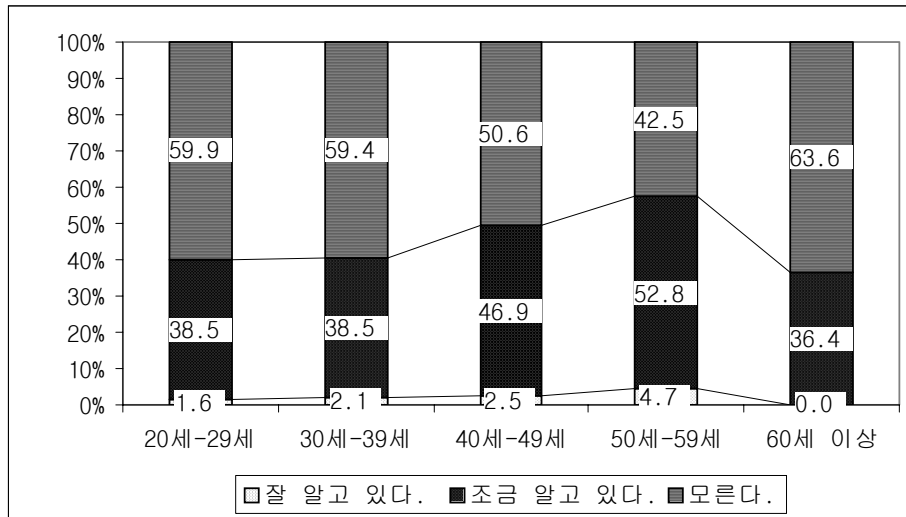
<그림 1> 인권에 관한 인식 정도

문항(1-1)을 연령별로 구분한 자료에서 20세~39세 및 60세 이상의 교사들에게서 ‘모른다’는 응답의 비율이 55% 이상으로 높으며, 40세 이상에서는 각각 50.6%, 42.5%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2> 인권에 관한 지식의 정도(연령별)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A협약, B협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항(1-1)			합계 (%)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모른다.	
20세-29세	1.6	38.5	59.9	100
30세-39세	2.1	38.5	59.4	100
40세-49세	2.5	46.9	50.6	100
50세-59세	4.7	52.8	42.5	100
60세 이상	.0	36.4	63.6	100

(사례수=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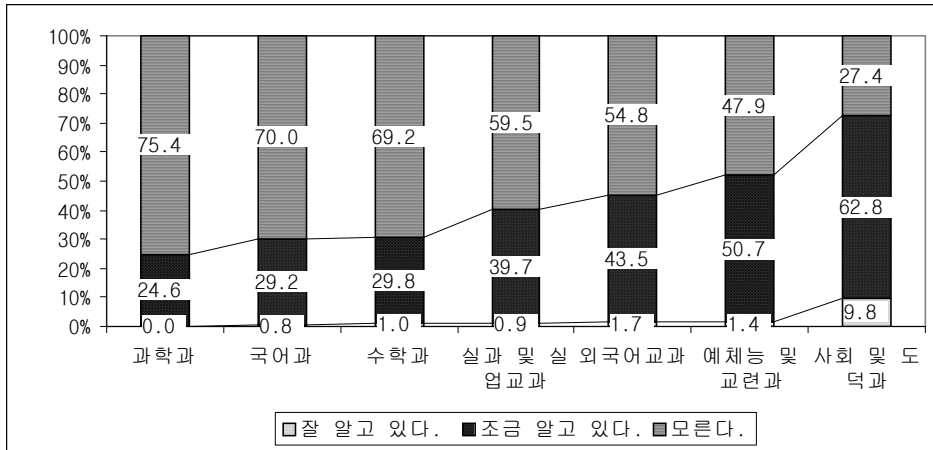
<그림 2> 인권에 관한 지식의 정도(연령별)

문항(1-1)을 중등교사의 담당과목별로 구분한 분석결과에서는 사회 및 도덕과 교사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과목에서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교육과정상에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도덕과목의 교사들 가운데도 ‘모른다’고 한 응답이 무려 27%수준에 이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표 12> 참조).

<표 13> 인권에 관한 지식의 정도(중등교사의 담당 과목별)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항(1-1)			합계 (%)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모른다.	
과학과	0.0	24.6	75.4	100
국어과	0.8	29.2	70.0	100
수학과	1.0	29.8	69.2	100
실과 및 실업교과	0.9	39.7	59.5	100
외국어교과	1.7	43.5	54.8	100
예체능 및 교련과	1.4	50.7	47.9	100
사회 및 도덕과	9.8	62.8	27.4	100

(사례수=769)



<그림 3> 인권에 관한 지식의 정도(중등교사의 담당과목별)

교사들의 인권지식이 빈약하다는 것은 질적인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교권’이라는 단어가 잠시 생각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교사의 인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관계, 또는 동료교사, 관리직과의 관계, 아니면 그 외 교육과 관계된 모든 상황에서의 단지 ‘인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40, 여, 중학교 교사)

교사로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만한 직접적인 계기가 거의 없었다. 평소 별 생각이 없었으므로 지금 생각해 보니 나의 인권의식은 낮은 수준인 것 같다. ‘교사의 인권’, 아직 잘 감이 오지 않는걸 보니, 심각한 수준이네요.(40, 남, 인문계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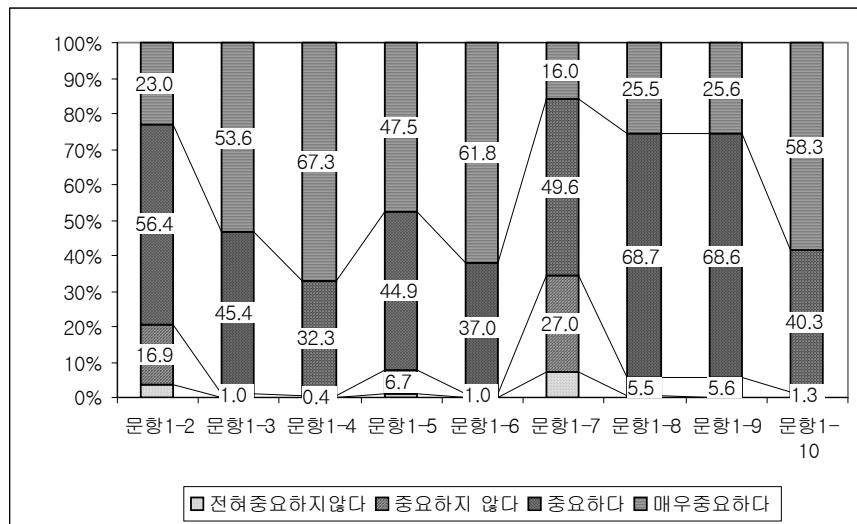
그런데 교사들은 인권 개념 인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13> 참조). 인권의 개념에 대한 질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사안별로 구분하여 그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문항에서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99%가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환경우선정책의 경우는 98% 이상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공권력으로부터 야기되는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는 94%정도가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대체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34.4%가, 사형제도 폐지는 20.5%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여타의 권리보다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

문항 번호	사회적 쟁점	내 생각에는				합계 (%)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2	사형제도 폐지	3.6	16.9	56.4	23.0	100
1-3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0.1	1.0	45.4	53.6	100
1-4	소수자(장애인, 아동, 노인 등) 권리 보호	0.0	0.4	32.3	67.3	100
1-5	여권신장운동(호주제 폐지, 모성보호 등)	1.0	6.7	44.9	47.5	100
1-6	환경우선정책(동강 살리기, 새만금갯벌 살리기 등)	0.2	1.0	37.0	61.8	100
1-7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대체 복무제 도입 등)	7.4	27.0	49.6	16.0	100
1-8	난민의 인권보호(탈북자 난민지위 인정 등)	0.4	5.5	68.7	25.5	100
1-9	채소자의 인권보호(의료권 보장 등)	0.2	5.6	68.6	25.6	100
1-10	공권력(검·경찰 등)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	0.1	1.3	40.3	58.3	100



<그림 4>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이 시작된 지는 2~3년 정도 지났으며, 최근 1~2년 사이에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외에 비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으며,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역거부’란 말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온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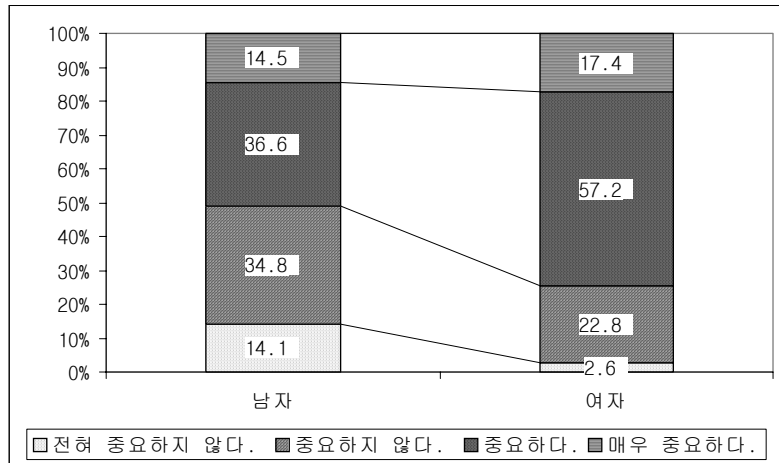
하지만 아직까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혹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여론의 일반적 흐름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어떤 이유로든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사들 역시 이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군복무의 경험이 있는 남성들과 고 연령층에서 이러한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문항1-7)을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병역거부에 대해 남자교사의 48.9%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50세 이상의 경우는 57%이상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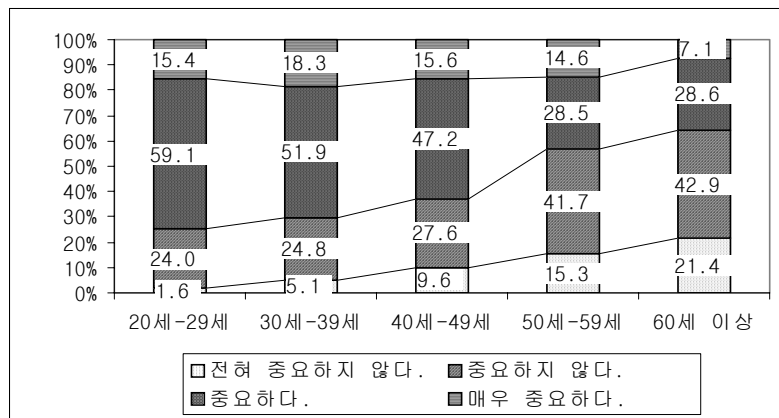
<표 15>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권의 중요도 인식(성별, 연령별)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대체복무제 도입 등) 문항(1-7)				합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남자	14.1	34.8	36.6	14.5	100
여자	2.6	22.8	57.2	17.4	100
(사례수 : 1412)					
20세-29세	1.6	24.0	59.1	15.4	100
30세-39세	5.1	24.8	51.9	18.3	100
40세-49세	9.6	27.6	47.2	15.6	100
50세-59세	15.3	41.7	28.5	14.6	100
60세 이상	21.4	42.9	28.6	7.1	100

(사례수=1414)



<그림 5>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의 중요도 인식(성별)



<그림 6>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의 중요도 인식(연령별)

사형제도 폐지의 경우는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경우보다 오래 전부터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되어 왔으며, 얼마 전에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입법청원이 이루어진 적도 있을 만큼 여론 형성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 역시 다른 인권문제에 비해 중요도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교사와 고 연령층의 교사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문항1-2)를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15> 참조). 남자교사의 26.6%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여자교사의 16.5%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교사의 34.5%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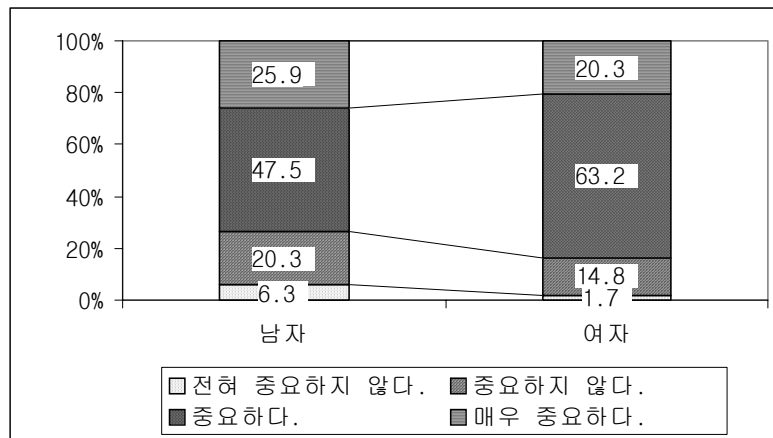
<표 16>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중요도 인식(성별, 연령별)

	사형제도 폐지 문항(1-2)				합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남자	6.3	20.3	47.5	25.9	100
여자	1.7	14.8	63.2	20.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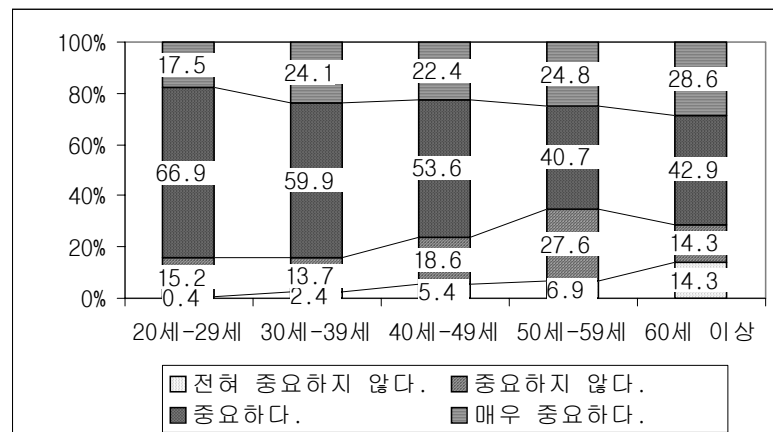
(사례수 : 1413)

20세-29세	0.4	15.2	66.9	17.5	100
30세-39세	2.4	13.7	59.9	24.1	100
40세-49세	5.4	18.6	53.6	22.4	100
50세-59세	6.9	27.6	40.7	24.8	100
60세 이상	14.3	14.3	42.9	28.6	100

(사례수=1415)



<그림 7>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중요도 인식(성별)



<그림 8>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중요도 인식(연령별)

다음은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연령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계수의 분석결과는 -0.228로서, 인권문제를 인식하는 중요성과 연령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높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젊은 층이라고 해서 개혁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표 16> 참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항(1-2) ~ 문항(1-10)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는 1점, ‘중요하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는 2점, ‘중요하다’에 응답한 경우는 3점, ‘매우 중요하다’에 응답한 경우는 4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문항(1-2 ~ 10)의 평균값과 연령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였다.

<표 17>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연령간의 상관관계

		연령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 문항(1-2) ~ 문항(1-10)의 평균	상관계수	-0.228***

***는 1% 유의수준을 의미함(사례수 = 1437)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사들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정도로 인권지식이 빈약한 상태이다. 하지만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이 지닌 인권개념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식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보면 사형제도 폐지와 양심의 의한 병역거부권의 경우는 다른 인권문제에 비해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젊은층일수록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면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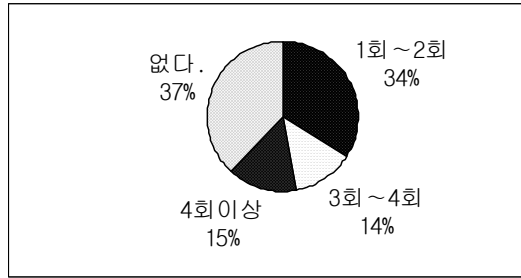
(2) 인권교육의 실천 수준

교육여건상 교사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인식이 상식적이고 모호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인권교육의 내용은 물론 그 체계성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울 수 없다. 다음은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분석결과이다.

<표 18>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의 실천 빈도

		응답비율(%)	소계(%)
최근 1년간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활동(수업, 조·종례 등)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2-1)	1회~2회	33.8	61.9
	3회~4회	13.5	
	4회이상	14.6	
	없다.	38.1	38.1
합계		100	

(사례수 = 1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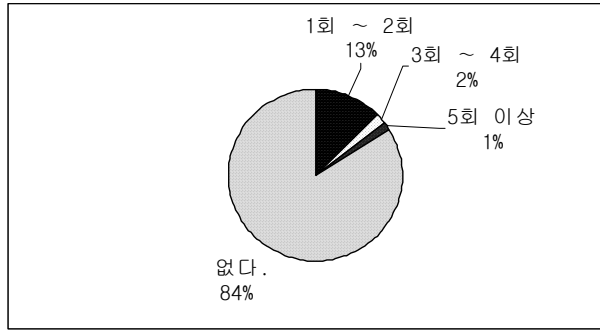
<그림 9> 인권교육의 실천 빈도

문항(2-1)에 대한 분석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다양한 형태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지식은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빈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표 17> 참조). 그 이유는 ‘교사로 발령 받은 이후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2-7)의 응답자 가운데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교사의 비율이 83.9%이며(<표 18> 참조), 인권교육을 실시한 교사라 할지라도 체계적인 연수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교사의 비율이 73%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표 19> 참조). 이처럼 교사들은 인권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빈약한 인권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 19> 인권교육 연수 경험

		응답비율(%)
교사로 발령 받은 이후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항(2-7)	1회 ~ 2회	12.5
	3회 ~ 4회	2.1
	5회 이상	1.4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	83.9
합계		100

(사례수 = 1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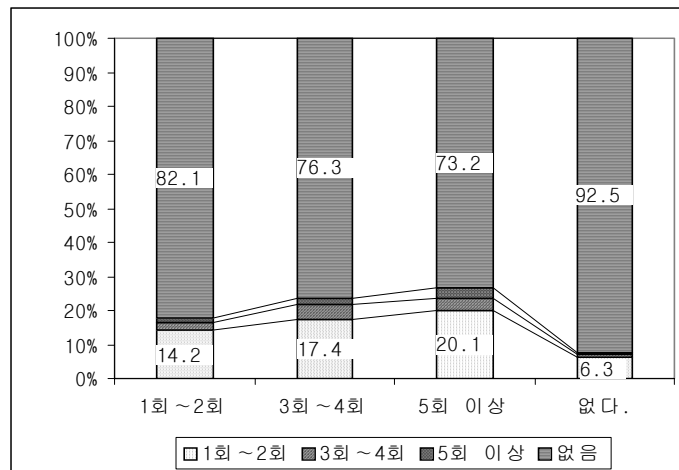


<그림 10> 인권교육 연수의 경험

<표 20> 인권교육의 실천과 인권교육 연수

		교사로 발령 받은 이후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항(2-7)				합계 (%)
		1회~2회	3회~4회	5회 이상	없음	
최근 1년간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활동(수업, 조·종례 등)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2-1)	1회~2회	14.2	2.3	1.3	82.1	100
	3회~4회	17.4	4.3	1.9	76.3	100
	5회 이상	20.1	3.6	3.1	73.2	100
	없다.	6.3	0.7	0.5	92.5	100

(사례수=1536)



<그림 11> 인권교육의 실천과 인권교육 연수의 관계

이러한 조사결과는 관찰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관찰조사 문항(10)의 ‘인권교육을 수업시간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에서, 피관찰자 가운데 40.5%가 수업시간에 인권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표 21> 관찰조사 : 인권교육 실천

		응답비율(%)
인권교육을 수업시간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편이다. (관찰조사 문항10)	전혀 그렇지 않다	26.2
	그렇다	40.5
	매우그렇다	2.4
	모르겠다	31.0
	합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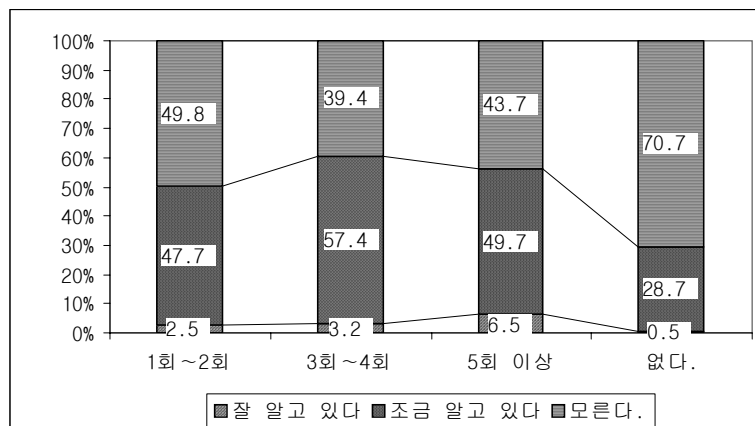
(사례수=42)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의 내용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한 교사가 40% 정도에 이르고 있다(<표 21> 참조). 인권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표 22> 인권교육의 실천과 인권지식의 관계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A협약, B협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항(1-1)			합계 (%)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모른다.	
최근 1년간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활동(수업, 조·종례 등)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2-1)	1회~2회	2.5	47.7	49.8	100
	3회~4회	3.2	57.4	39.4	100
	5회 이상	6.5	49.7	43.7	100
	없다.	0.5	28.7	70.7	100

(사례수=1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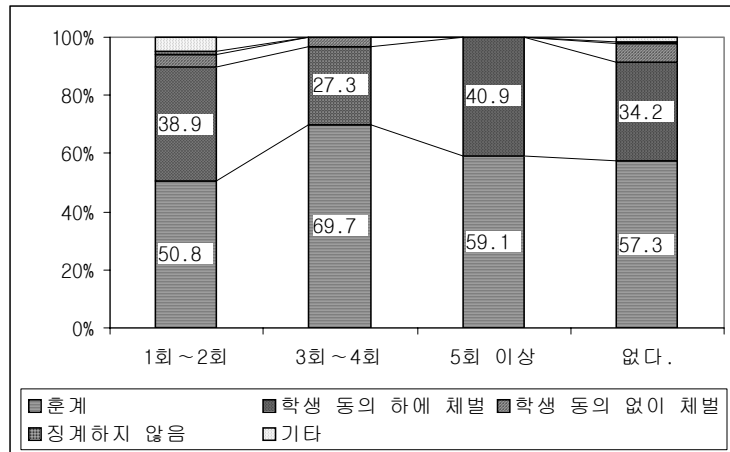
<그림 12> 인권교육의 실천과 인권지식의 관계

교사들이 인권개념의 인식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교사 연수의 기회가 거의 없었거나 있다 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가령 학생지도에서 체벌에 의존하는 정도를 질문한 문항(2-2)와 인권에 관한 연수정도를 질문한 문항(2-7)의 교차표 분석결과에서 인권교육연수와 체벌과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음을 보여준다(<표 22> 참조). 인권연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도 학교의 교육적 상황을 배려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표 23> 인권교육 연수 경험과 체벌 관계

		학생을 처벌해야 할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문항(2-2)					합계 (%)
		훈계	학생 동의 하에 체벌	학생 동의 없이 체벌	징계하지 않음	기타	
교사로 발령받은 이후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항(2-7)	1회~2회	50.8	38.9	4.3	1.1	4.9	100
	3회~4회	69.7	27.3	3.0	-	-	100
	5회 이상	59.1	40.9	-	-	-	100
	없다.	57.3	34.2	6.4	0.4	1.7	100

(사례수=1465)



<그림 13> 인권교육 연수의 경험과 체벌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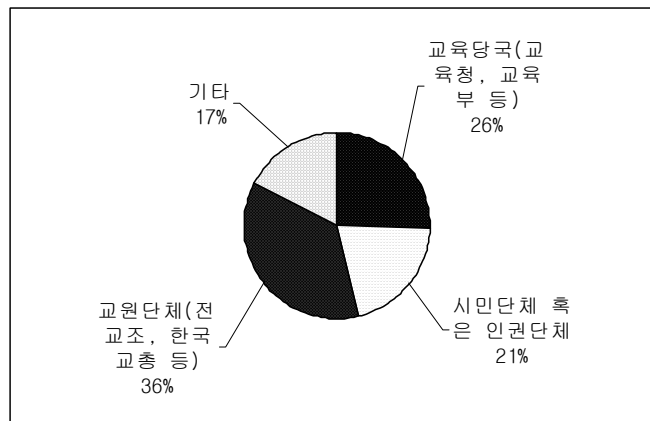
문항(2-8)에서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연수를 진행한 주체를 살펴보면, 교원단체(전교조, 교총 등)가 36.3%로 가장 많고, 교육당국(교육청,

교육부 등)이 25.6%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 경우를 합하면 61.9%에 이르고 있다(<표 23> 참조). 이러한 기관에서 진행한 연수들은 대체로 교권신장에 초점을 맞춘 연수일 가능성이 많으며, 학생지도에 필요한 교육적 상황을 고려하거나 인권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근접한 연수일 가능성은 낮다.

<표 24> 기존 인권연수 실시 주체

문항	응답	응답비율(%)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어디서 받아 보셨습니까? 문항(2-8)	교육당국(교육청, 교육부 등)	25.6
	시민단체 혹은 인권단체	20.7
	교원단체(전교조, 한국교총 등)	36.3
	기타	17.4
합계		100

(사례수 =270)



<그림 14> 기존 인권 연수 실시 주체

그 결과 교사들 스스로가 새로운 형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문항(2-9)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연수를 진행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90%정도에 이르고 있다.

또한 특이한 사실은 앞서 문항(2-8)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가운데 ‘기타’에 응답한 경우가 17.4%로서 처음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기타’에 응답한 경우는 주로 자발적이면서 비공식적인 교사 연구모임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율연수일 가능성이 높으며, 어쩌면 인권연수에 가장 열성적인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관찰조사 문항(12)에서도 ‘교사들이 동료들과 더불어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고 조사된 경우가 61.9%(그렇다 57.1% + 매우 그렇다 4.8%)로 확인되어, 교사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4> 참조).

<표 25> 관찰조사 :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문항	응답	응답비율(%)
동료들과 더불어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는 편이다. (관찰조사 문항12)	전혀그렇지않다	23.8
	그렇다	57.1
	매우그렇다	4.8
	모르겠다	14.3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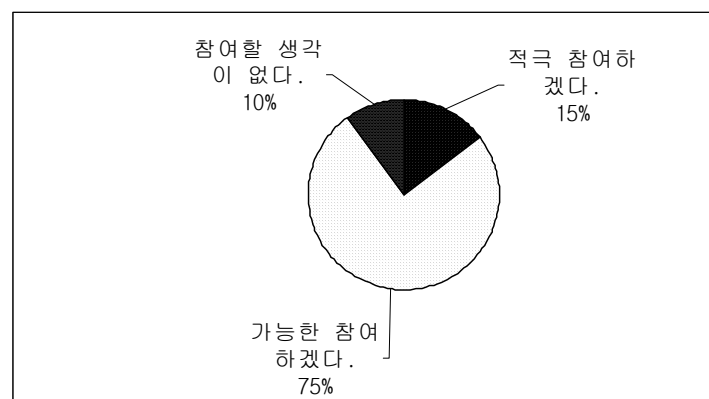
(사례수=42)

이러한 2가지 사실을 통해 교사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인권연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25> 참조).

<표 26> 인권교육을 연수 참여 희망도

문항	응답	응답비율(%)	소계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연수를 진행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항(2-9)	적극 참여하겠다.	14.7	90.1
	가능한 참여하겠다.	75.4	
	참여할 생각이 없다.	9.9	9.9
합계		100	

(사례수=1547)



<그림 15> 인권교육 연수의 참여 희망도

그렇다면 교사들의 인권 지식이 빈약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일부 질적 연구의 결과와 연구진들의 토의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추출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징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특징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는 과도기이다. 즉 집단적 가치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사회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현대사회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사회의 질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영역에서 인정되는 삶의 논리이다. 그 결과 한국의 사회문화는 공사를 불문하고 계약이나 합리적 절차보다는 암시적이고 수직적인 인간관계와 집단적 질서를 존중한다. 특히 분단체제와 오랜 군부독재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 가운데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대 후반에서 50대는 전통적 사회의 삶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수직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상호간에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교사의 언어이다. 교내에서 선배교사는 후배교사에게 반말을 하고 교장, 교감은 교사들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배의 반말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어를 들으면 불편하다고 낮춤말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공개된 자리에서의 교사들끼리의 다툼이나 관리자가 교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은 학생들에 의해 소문이 나고 교사의 권위는 떨어진다. (40, 남, 중학교 교사)

초임교사인 1972년에 10월 유신 홍보를 위해 차출되어 근무지의 각 마을을 돌며 억지논리를 펴야 했던 일(그들이 준 교재를 버리고 나는 주로 국제정세-당시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된 사건-로 건강부회하였음) (50, 남, 사립계고등학교 교사)

전통적 양식에 익숙한 교사들에게 인권 개념은 생소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사회는 사회구성원들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만이 정당성

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삶의 의식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이다. 결국 전통적 삶의 논리에 익숙한 교사들은 타인의 인권은 물론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의식조차 매우 희박하며, 인권에 대해 막연하게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15여 년 전 여교사가 청바지 입는 것을 아주 싫어하던 모 교무부장이 직원조례에서 여교사들이 청바지를 입고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이 토요일이라 몇 교사들이 등산을 가기로 되어 있어서 청바지를 입고 출근을 했다. 그러자 그 교무부장이 아침 직원모임에서,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도 오늘도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몇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왔다고 말하면서 화를 냈다. 그리고 자기는 교무부장 자리를 사퇴하겠다고 약 1주일간을 급사 아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그 학교에서 교육운동을 하는 어떤 여교사에게 테이프 등의 우편물이 배달되자 먼저 뜯어서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수업을 마치고 온 그 여교사가 왜 남의 우편물을 마음대로 뜯어보느냐고 하자, 교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난리를 피운 적도 있었다. (40, 여, 중학교 교사)

둘째, 학교의 사회·문화적 특성이다. 학교의 사회·문화적 특성은 관료체제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다. 학교의 관료제적 특징은 능력보다 서열을 중시하는 인사체제와 승진체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관리직(교장, 교감, 장학사 등)으로 승진하는데 관심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와 승진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승진점수 평가권이 상급자(교장·교감)에게 있다는 것이다. 외부의 공정한 기관이나 다면적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야하고 몸조심을 하여야 한다. 교사들은 상급자들로부터 부당한 통제나 억압이 있어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윗사람들의 눈밖에 나면 인사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개인주의 또는 보신주의에 매몰되는 것이다.

나는 평교사로 평생을 교단에 서고 싶다. 주위에 친구들은 장학사도 되고 교감도 되었지만, 나는 평교사로 퇴임을 하고 싶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

시선이 주위의 젊은 선생님에게 향한다. 늙은이가 너무 늦게 교단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눈치가 보인다. 더구나 요즘 젊은 선생님은 두렵다. 예전에는 나이든 교사는 수업시수나 담임배정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모두가 똑같이 교사이므로 법정시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젊었을 때 승진을 포기한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40-50대 교사들 가운데서 승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교무실 분위기가 비인간화되어 가는 모습이 답답하다. (40, 남, 초등학교 교사)

교사 초임 발령 후 신규교사 시절, 연구 수업을 할 때, 그 당시는 평가회 때 의례히 수업자는 울어야만 한다는 게 통과의례처럼 되어 있었다. 함께 온 사회과 교사가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건축 양식 부분을 연구 수업을 한 그 날, 교장실에서 평가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그 교사가 수업한 부분과 관계된 사진자료를 몇 권 쌓아 놓고는 “○선생 그 아까 수업 중에 그게 뭐요. 뭐 그런 조그만 사진을 들고, 여기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큰 사진들이 많은데”, 라면서 마구 야단을 치셨고, 그 날 결국 그 교사는 평가회를 마치고 여교사 화장실에서 평평 울었다. 그 후로 결혼하고 나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 교사는 교직을 그만 두었다고 한다. (40, 여, 중학교 교사)

셋째,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독립성을 가진 분과영역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윤리과와 사회과의 교과교육에서 인권에 관한 개념이 일부 소개되어 있지만, 인권교육의 본질적 문제의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도덕과의 경우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징(산업화, 대중사회화 등)에 따른 인간소외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소외 현상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권의 본질적 요소를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사회과 교육의 경우 윤리과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인권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다음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1학년~10학년)¹⁶⁾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16)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1학년~10학년)의 내용은 모든 학생이 학

있는 인권교육의 내용을 학교 급별로 비교·검토한 결과이다. 인권에 관한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중학교 2학년(8학년) 『사회』, 고등학교 1학년(11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다.(<표 26> 참조).

<표 27> 초·중등학교의 교과서에서 인권관련 개념에 대한 내용제시

학교 급별	학년 및 교과서명 (교과서의 출판사)	교과서의 내용
초등 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교육인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암묵적으로 동일시 하고 있음 - 국민의 기본권을 제시하고 있음 - 소수자(장애인, 노인,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인권보장을 위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함
중학 교	8학년(중2) 『사회』 (금성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근대 시민혁명에서 제기되었던 시민권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갔던 역사적 과정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함 - 시민권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우리나라 헌법에 제시된 ‘국민의 6대 기본권’을 제시하고 있음
고등 학교	10학년(고1) 『사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의 시민혁명을 제시하면서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제기된 시민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권리청원, 권리장전, 프랑스 인권선언, 미국 독립선언문 등이 참고자료로 이용됨) - 우리나라의 신분질서 해체과정(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독립협회 등)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사(4·19혁명, 유신 반대투쟁, 5·18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등)를 제시함. - 주로 시민사회의 성립과정으로서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참정권의 확대 등을 다루고 있음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는 인권교육이 법 교육의 하위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으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암묵적으로 동일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⁷⁾ 중학교부터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크게 줄어들고, 대신에 시민사회가 성립되는 역사적 과정, 시민사회의 조건과 시민권, 국민의 기본권 등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교육이 세계사 교육이나 법 교육의 하위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

습을 한다. 하지만 11학년(고 2)과 12학년(고 3)의 선택교육과정은 선택한 일부 학생들만 학습하게 되므로 모든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인권에 관해 언급된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17) 『국민의 권리와 의무 (1-3단원)』에서 국민의 6대 기본권을 설명하고 있다. 『보호해야 할 인권 (1-3-2)단원』에서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다.¹⁸⁾ 고등학교의 경우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시민들이 추구하였던 이념을 고찰하고 있다.¹⁹⁾

결국 인권과 관련된 개념과 용어들이 사회과 교과서 여기저기에 나오기는 하지만,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적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다. Banks(1999 : 196-226)는 사회과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 가지 학습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①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한 국내외의 역사적 사건에 관한 학습, ②헌법이나 법률 및 인권선언에 관련된 문건에 관한 학습, ③최근의 인권침해 사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에 관한 학습 등이 그것이다.

Banks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사회과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의 한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권개념의 형성 과정 면에서 볼 때 인권교육 내용이 시민혁명기에 한정되어 있다. 서구의 경우 근대 시민혁명기에 인권의 기본적 개념을 담은 문건을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세와 신분사회를 극복하고 권위주의 군부 독재

18)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혁명과 시민사회의 성립(2-2단원)』, 『현대시민사회의 모습(5-1-2단원)』,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7-3단원)』에서 ‘시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권에 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2-2단원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시민혁명의 원인과 진행과정, 혁명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개념과 의미를 탐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저항권, 국민주권의 확립 등을 시민사회의 성립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5-1-2단원에서는 근대 시민혁명이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유와 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고 평가한다.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외세와 신분사회의 불합리를 타파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광복이후 권위주의 정권들에 의해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이념을 되찾고, 새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저항의 역사(60년 4·19혁명, 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87년 6월 민주항쟁)를 소개하고 있다. 7-3단원에서는 헌법에 제시된 ‘국민의 6대 기본권(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원권)을 기본적인 시민권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인권운동으로서 동학농민운동(1894)과 동학농민군의 개혁안을 소개하고 있다.

19) 10학년(고 1)의 『사회』교과서를 살펴보면, 『VI.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시민』이라는 단원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의 시민혁명과 우리나라에서 봉건사회 해체 및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사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건으로서 권리청원, 권리장전, 프랑스 혁명 당시의 인권선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도 주로 동학농민운동과 같이 근대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반제반봉건(反帝反封建)의 저항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해방이후에 대해서는 4·19혁명과 5·18광주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등과 같이 사회민주화를 위해 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였던 저항의 역사가 제시되어 있다.

정권에 저항하면서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이룩하였던 투쟁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서양과 한국의 근·현대사를 망라하면서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저항이라는 의미에서 인권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천부인권이나 자연권 사상에 근거한 인권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인권개념(2세대 인권 혹은 3세대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권의 내용 면에서 볼 때, 그 범위가 협소하다. 교과서를 통해 설명되고 있는 인권의 내용은 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참정권, 적법절차의 원리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것은 주로 시민혁명기에 강조되었던 고전적 의미의 인권이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권과 경제권, 복지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인권선언(1948), 국제인권협약(A협약, B협약, 1966) 등은 현대의 인권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지칭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관한 내용도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표 27> 참조).

<표 28>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과의 인권교육 내용 비교

	세계인권선언(1948)		사회과 교육과정
	고전적 권리	현대적 권리	
내용	자유·평등, 차별금지, 생명·자유·신체의 안전, 노예·노역의 금지, 고문·잔악한 처우·형벌의 금지,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 법 앞의 평등, 기본권 침해 구제, 인신의 보호, 공개재판, 죄형법정주의, 사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피난권, 국적을 가질 권리, 혼인·가정을 가질 권리, 재산소유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휴식·여가권, 생활보호·모자보호, 교육권, 문화생활권, 권리·자유를 실현하는 질서의 권리, 타인의 자유·권리의 존중과 그에 따른 권리의 제한, 권리·자유에의 파괴 금지	· 암묵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동일시함 · 시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 국민의 6대 기본권(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원권)
특징	·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든 자연인이 가져야할 권리를 제시함 · 소극적 자유권, 적극적 자유권, 시민·정치권, 재산권, 적법한 절차, 사회권, 경제권, 복지권 등에 관한 권리를 망라함		· 사회구성원으로 시민이 가져야할 권리를 의미함 · 헌법과 실정법상의 권리로 한정함

자료 :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내용 분석은 김외숙·김정래·고전(1999 : 68)에서 재구성

또한 인권확대를 위해 노력한 인류의 경험이나 사례에 관한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권의 확대를 위한 역사적 경험은 근대 부르조아 혁명기에 집중되어 있고, 헌법과 실정법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본질적 문제의식은 물론, 오늘날의 인권 실태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나 토론의 상황 등이 없으므로, 학습자 개인에게 마음 속 깊이 다가오는 개념으로서 ‘인권’에 대한 학습은 지극히 소홀한 셈이다.

요컨대,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인권교육은 세계사 교육이나 법 교육의 일부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진술에서 인권교육의 본질적 문제의식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정규교육과정 통해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대단히 협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교육주체들의 인권에 관한 의식 수준

(1) 교사의 인권

연구자들은 교사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교사들이 각 교육주체(교사, 학부모, 학생)의 인권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교사들 자신의 권리에 대한 자각은 학부모,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28> 참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항별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는 1점, ‘중요하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는 2점, ‘중요하다’에 응답한 경우는 3점, ‘매우 중요하다’에 응답한 경우는 4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학부모의 인권을 나타내는 문항(1-11) ~ 문항(1-14), 학생의 인권을 나타내는 문항(1-20) ~ 문항(1-28), 교사의 인권을 나타내는 문항(1-39) ~ 문항(1-44)을 묶어서 계산한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교사인권에 관한 중요성 인식의 평균은 3.5 정도이며, 학부모의 경우는 3.1, 학생의 경우는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의 인권에 비해 교사의 권리 그 자체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함을 나타낸다.

<표 29> 교사, 학부모, 학생 인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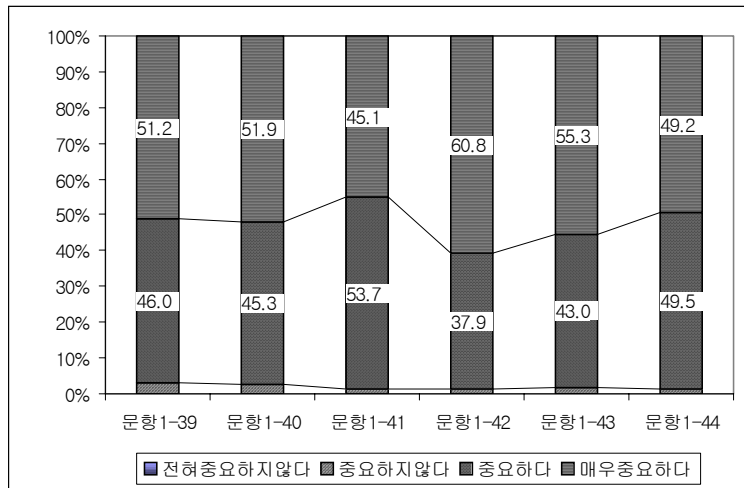
	교사의 인권 문항(1-39)~문항(1-44)	학부모의 인권 문항(1-11)~문항(1-14)	학생의 인권 문항(1-20) ~ 문항(1-28)
평균	3.5033 (사례수=1478)	3.1754 (사례수=1478)	3.0574 (사례수=1474)

교사의 인권이라 함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함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할 권리 즉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권, 교재의 채택 및 선정권, 교육방법의 결정권, 교육평가의 권한 등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사의 인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문항(1-39) ~ 문항(1-44)에서 교사들에게 남자교사 혹은 여자교사인 것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직급이나 서열·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예결산, 인사, 학교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교재 채택료, 공문, 출장 등), 교육당국(교육부 등)이나 학교 관리자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기자재,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하다’로 응답한 경우는 97% 이상이었다(<표 29> 참조).

‘교사로서 인권침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조사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항(1-46)~문항(1-51)의 모든 문항에서 ‘침해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 이상이었다(<표 30> 참조)

<표 30> 교사인권의 중요성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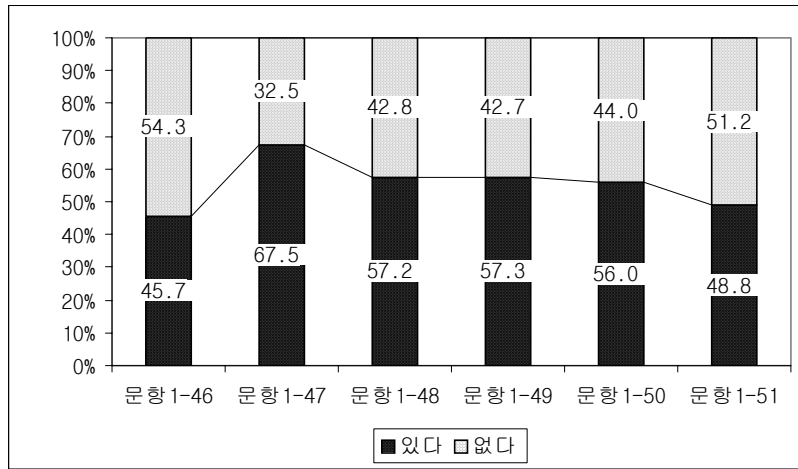
문항 번호	권리 항목	내 생각에는				합계 (%)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39	남자교사 혹은 여자교사인 것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0.1	2.8	46.0	51.2	100
1-40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0.0	2.8	45.3	51.9	100
1-41	예결산, 인사, 학교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0.1	1.2	53.7	45.1	100
1-42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0.1	1.2	37.9	60.8	100
1-43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교재 채택료, 공문, 출장 등)	0.0	1.7	43.0	55.3	100
1-44	교육당국(교육부 등)이나 학교 관리자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기자재,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0.1	1.2	49.5	49.2	100



<그림 16> 교사인권의 중요성 인식도

<표 31> 교사로서 인권을 침해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번호	권리 항목	침해 받은 적이 있는가?		합계 (%)
		있다	없다	
1-46	남자교사 혹은 여자교사인 것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45.7	54.3	100
1-47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67.5	32.5	100
1-48	예결산, 인사, 학교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57.2	42.8	100
1-49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57.3	42.7	100
1-50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교재채택료, 공문, 출장 등)	56.0	44.0	100
1-51	교육당국(교육부 등)이나 학교 관리자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기자재,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8.8	51.2	100



<그림 17> 교사로서 인권을 침해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그 가운데 문항(1-47)에서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5%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문항(1-49)와 문항(1-50)에서 교사로서 양심과 교육관을 침해받았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주체가 학교운영권자, 행정관료, 혹은 연령이 높은 부장교사들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다음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질적연구

자료이다.

처음으로 학교운영회의가 열렸습니다. 결산심의회가 있었는데 지난 년도의 심의이니 그냥 넘어가자는 의견이 대다수라 어영부영 그냥 넘기고, 졸업 앨범 심의는 그 안건 차례에 교장이 자기는 조달요청 계약을 통해 앨범을 제작코자 하는 이유라고 쓴 프린트물을 나누어주고...(중략)... 그 다음 6학년 부장이 들어와 이러저러한 앨범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심의하라며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수가 그 의견에 동조하고 다른 의견은 논의도 되지 못하고 거수투표로 그렇게 하자고 했으며...(중략)... 수련회 건도 차례가 되니 학년부장선생님이 자료를 주며 (답사비교표, 가격, 선정기준등) 심의하십니다. 다들 장소도 정하고 알아봤으니 좋다고 합니다. 원래 심의할 때 그 자리에서 자료 주고 심의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원래 그렇게 한다고 했다. 작년에도 다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의견은 토론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다수에 의해 교장이 말한대로 되었다.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교장이 자신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니 무슨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냥 따라가지지...(중략... (30, 여, 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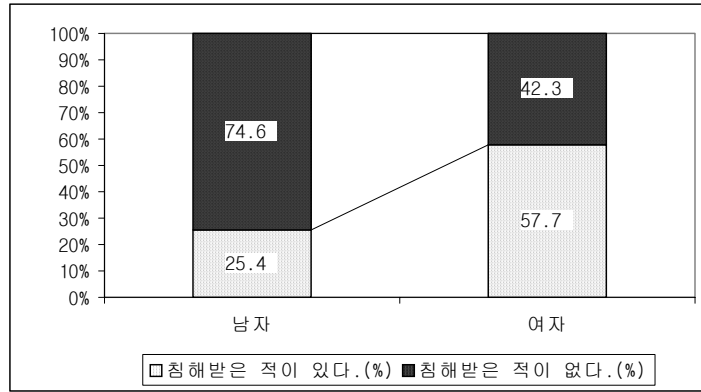
그리고 문항(1-46)과 문항(1-47)을 성별로 구분해보면, 여교사들이 불합리한 이유(성, 직급, 연령, 서열 등)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57.7%, 74.7%로서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1> 참조).

<표 32> 직급, 서열,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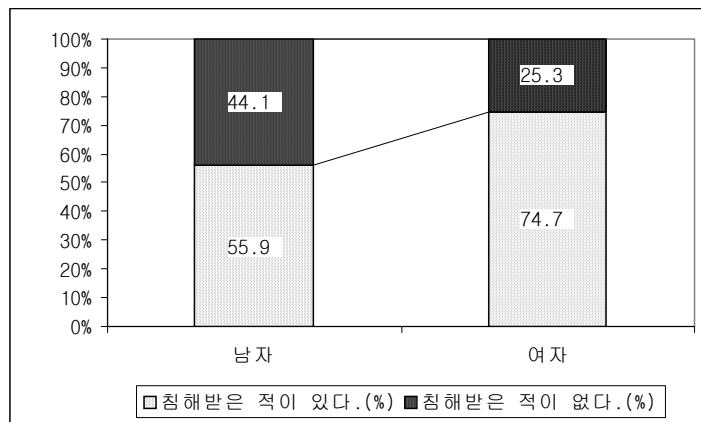
성 별	남자 여자	남자교사 혹은 여자교사인 것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항(1-46)		합계 (%)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 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 받 지 않을 권리. 문항(1-47)		합계 (%)
		침해받은 적이 있다.	침해받은 적이 없다.		침해받은 적이 있다.	침해받은 적이 없다.	
		25.4	74.6	100	55.9	44.1	100
		57.7	42.3	100	74.7	25.3	100

(사례수=1424)

(사례수=1428)



<그림 18> 문항(1-46)에 대한 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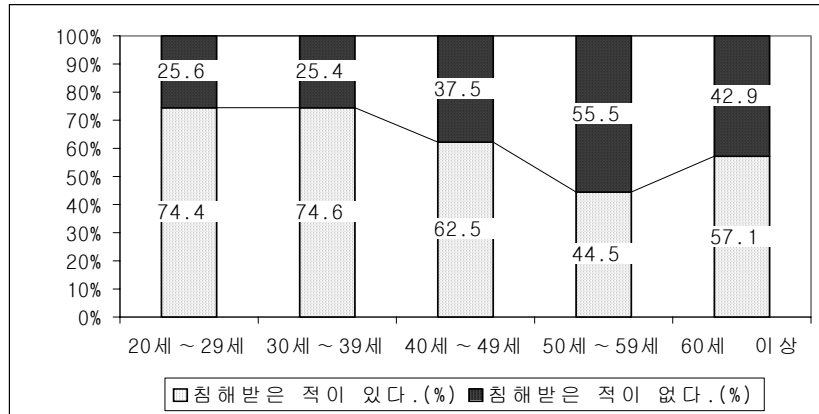
<그림 19> 문항(1-47)에 대한 성별 분석

문항(1-47)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젊은 층(20대~30대)에서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74% 이상으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2> 참조).

<표 33> 직급, 서열,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연령별 분석)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문항(1-47)		합계 (%)
		침해받은 적이 있다.	침해받은 적이 없다.	
연령	20세~29세	74.4	25.6	100
	30세~39세	74.6	25.4	100
	40세~49세	62.5	37.5	100
	50세~59세	44.5	55.5	100
	60세 이상	57.1	42.9	100

(사례수=1359)



<그림 20> 직급, 서열,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연령별)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은 대체로 학교장의 권한(설치자의 권한)에 의해 침해 받는 경우가 많다. 학교장은 단위 학교가 행사할 수 있는 학교 운영상의 고유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여 인권침해까지 이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84년 설레이는 가슴으로 첫 발령을 받아 교문에 들어서던 날 교문 앞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야구 방망이를 든 학생부 교사와 눈이 마주치면서 가슴이 싸늘해 졌다. 중학교 남학생들의 생활 속에 군사문화가 학교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음을 곳곳에서 느끼게 되었다. 체벌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었고, 전체모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희생양이 생겼다.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의 인격이나 인권은 마구 짓밟히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러한 방법이 옳다는 생각도 자리잡고 있음을 알고 난 절망하기도 했다. 학교의 관리자들도 그렇게 아이들을 잡아주는 교사를 공로자로 인정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 아침 주변 모임 시에 어느 여교사가 늦게 온 주변에게 머리를 쥐어박자 이를 보던 교감선생님께서 “○○선생, 빨리 이리 오시오.”라고 마이크로 부르더니, “여자가 재수 없게 아침부터 왜 남자 머리를 때리는 거요.” 정말 어이가 없었다. 우리 여교사들은 대책을 마련하고자 모였지만, 흥분만 할 뿐 어떤 일도 하지 못했다.(40, 여, 중학교 교사)

수업을 하던 중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어보았다. 시끄럽던 교실이 일순간 조용해지더니 아이들이 눈초리가 이상했다. 매 수업시간 마다 순서를 하던 교감선생님이 머리를 유리창으로 들여 밀고는 떠드는 아이를 보고 눈치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교감선생님 눈치만 보고 있었다.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자존심이 너무나 상했고, 서러웠다.(40, 여, 중학교 교사)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주체로 행정관료들을 꼽을 수 있다. 행정관료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보신주의, 보다 나은 승진 등을 목적으로 한 안일주의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히 관료주의적 교육행정 체계가 갖고 있는 특성 즉 엄격한 위계질서, 문서위주의 서면행정 등이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²⁰⁾ 행정관료가 교사의 인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교사들을 통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양적인 전시행정, 그리고 학교평가와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다.

교사들의 인권침해는 주로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또는 행정직원에게 의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관료적인 행정과 인사체제가 지배하는 학교분위기와,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정을 잘 받아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관리자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교사의 입장 때문이다. 교장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회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학부모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항의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평가권을 침해한 사례도 있다.(40, 남, 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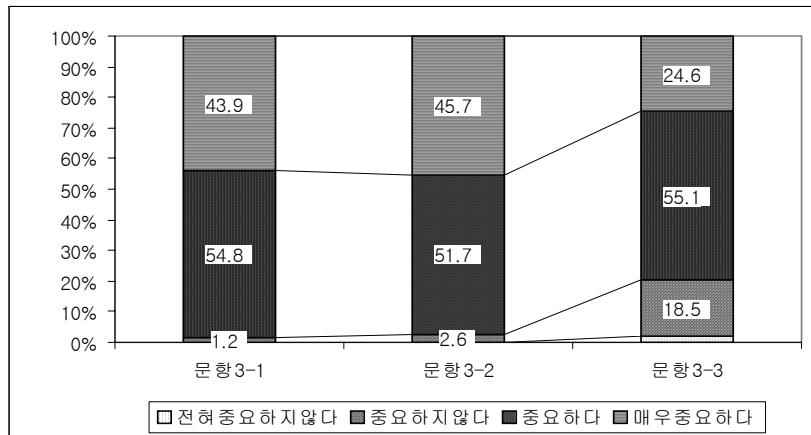
이러한 침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들은 자신의 권리 찾기에 적극적인 태도를

20) 이돈희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교사들의 교육권한이 중앙의 통제하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을 더해 준다. 해방후 우리의 교육체제는 한 번도 국가적 통제의 손에서 벗어난 본 적이 없고, 그 자체의 내적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자체의 자율적 힘에 의해서 운영되어 본 적이 없다. 지역별 조직, 각급 학교 운영, 목표와 내용체계, 심지어는 방법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반적 원리가 중앙기구의 통제하에 있어 왔다(이돈희, “교육문화의 재정립”,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개혁 국민대토론회 주제강연 원고, 1998.11.30. p.7).

나타내었고, 그것을 회복하는 방식도 조직적·연대의 방식을 선호하였다. 교사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방식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정도를 나타내는 문항(3-1)과 문항(3-2)에서 학내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평교사회, 교원단체 분회모임 등)에 대해 응답자의 97% 이상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33> 참조).

<표 34> 교사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방식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문항 번호	권리 항목	내 생각에는				합계 (%)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3-1	학내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권리	0.1	1.2	54.8	43.9	100
3-2	교사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평교사회, 교원단체 분회모임 등)	0.0	2.6	51.7	45.7	100
3-3	교사가 학교 밖에서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1.8	18.5	55.1	24.6	100



<그림 21> 교사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방식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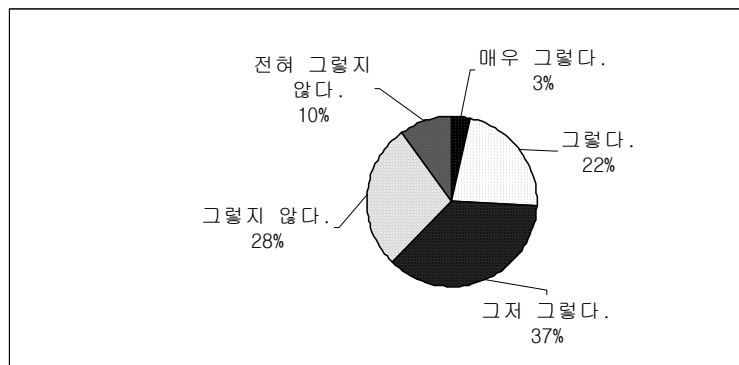
하지만 문항(3-9)에서 ‘선생님께서서는 학교운영위원회나 각종 교직원회의(교무회의, 부장교사회의 등)에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응답자의 25.6%만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표 34> 참조). 이는 중요성에 관한 인식수준이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5> 각종 회의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제기

선생님께서서는 학교운영위원회나 각종 교직원회의(교무회의, 부장교사회의 등)에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편입니까? 문항(3-9)					합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4	22.4	36.4	27.9	9.9	100

(사례수=1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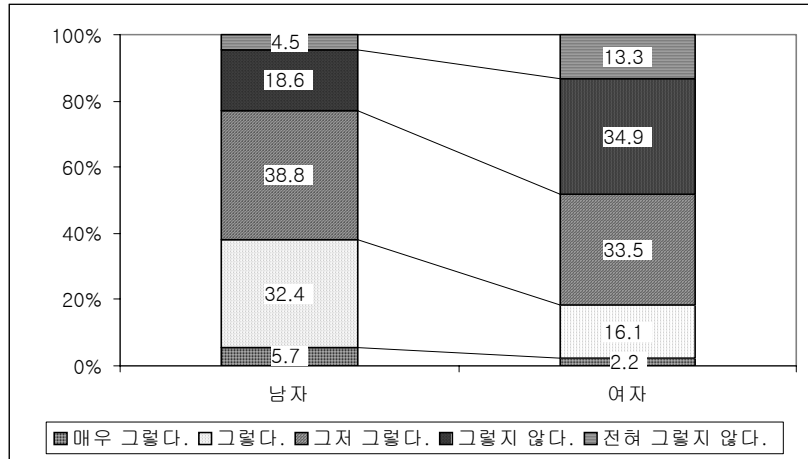
<그림 22> 각종 회의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제기는 남자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여자교사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 참조).

<표 36> 각종 회의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제기(성별 분석)

	선생님께서서는 학교운영위원회나 각종 교직원회의(교무회의, 부장교사회의 등)에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편입니까? 문항(3-9)					합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남자	5.7	32.4	38.8	18.6	4.5	100
여자	2.2	16.1	33.5	34.9	13.3	100

(사례수=1430)



<그림 23> 각종 회의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 제기(성별)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사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권리에 관련된 것에 한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조직적 연대의 형태로 저항하고자 하는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주도계층으로 인권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개인주의나 보신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사회문화적으로 교사들에게 무비판적 태도가 강요된다는 점이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시민이며, 시민은 그 사회의 여론과 담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계층이다. 여기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비판적 사고력과 판단력 그리고 실천력이다. 그런데 오랜 군부독재를 경험한 한국사회는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양성시키지 못하였다.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의미지도 성숙한 시민으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모범의 기준은 책임성, 희생성, 성실성, 청빈함 등이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에서도 의미하듯이 교사는 임금과 아버지의 지위를 부여받는 존재였다. 임금과 아버지 다음(君君, 臣臣)은 자기 규정적인 의미보다는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조건이 많다는 것이다. 교사가 교사다워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임금이나 아버지같이 희생적이고 절제하며, 스스로 고상한 삶의 논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체화된 상태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권리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

나라,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교사의 인권수준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무시하는 속에 자기도 학교장으로부터 무시당하면서 인권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라는 곳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같이 서야하는 곳이고 교사의 인권은 교사 스스로에 의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이 세워진 속에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을 모두 무시한 강제적인 ‘특기적성 수업’ 이런 것은 거부해야 하지만 실천에는 옮기지 못하는, 생각한 것을 실천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 여, 중학교 교사)

둘째, 교사들은 자기통제력과 절제력이 왜곡되어서 한 사회에 순응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생각한다. 그 사회가 어떤 특성을 지니든 순응하고 적응하며 사는 것이 가치로운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중·고등학교 재학시절 우등생(혹은 모범생)에 속하였으며, 교사양성기관인 대학에도 우등생이어야 입학할 수 있었다. 졸업과 동시에 교사로서 임용되던 시절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교사임용고시를 통해서만 임용이 가능하다. 교사임용고시는 대학기간 내내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경쟁률이 높은 고시이다. 따라서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시절에 교사들은 스스로가 표준화된 삶의 양식에 길들여지고 이러한 요구를 무리 없이 자신의 삶으로 체득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통제력과 자기검열체제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회에서 왜곡된 도덕률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보통 선생님이 된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학창 시절도 모범생으로 생활했을 겁니다. 그 당시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위계 질서, 규격화된 예절의식 등이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고려해 보지 않고 기존의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인권 침해인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40, 여, 중학교 교사)

셋째, 교사가 행정관료나 학교 운영권자로부터 인권을 억압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관료들의 인권의식의 수준이 낮음은 물론 제도적으로 교사들의 인권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로서 교사의 복지권을 들 수 있다. 1960-70년대만 하더라도 학교의 시설은 다른 사회시설과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지만, 지금의 학교환경은 일반적인 주거 환경보다 열악하다. 좁은 교무실 공간, 휴식공간의 부족, 연구공간의 부족 등은 누구나 호소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교사의 경우 육아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가 마음놓고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 학교 가까이에 탁아방을 만든 경우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개월의 아이를 둔 나로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아이의 양육이다. 친정이나 시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누군가에 맡겨야 한다. 탁아를 전적으로 마음놓고 맡길 곳이 없어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나와 아기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30, 여, 중학교 교사)

(2) 학부모의 인권

학교공동체의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영역을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관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부모가 선택할 권리, 학부모가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학생의 징계에 대해 학부모가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 등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검토하였다. 다음은 교사들이 학부모의 인권에 관해 그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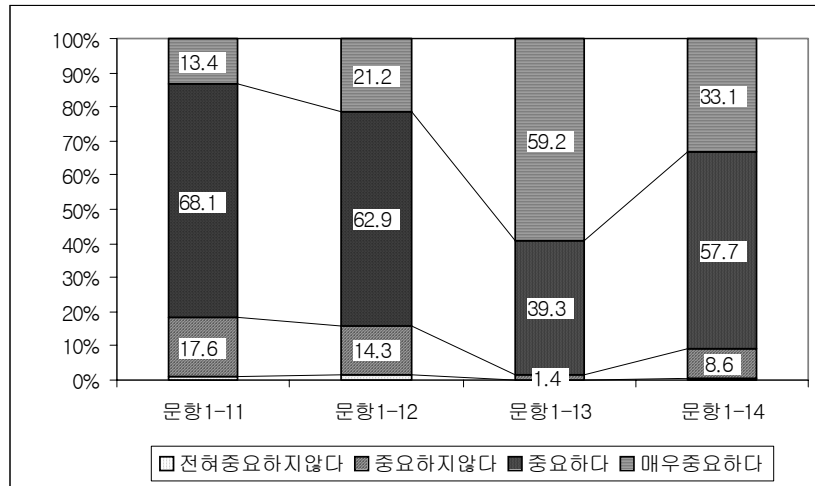
학부모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관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5%가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부모가 선택할 권리

에 대해서는 84.1%가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부모가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98.5%가, 학생의 징계에 대해 학부모가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90.8% 정도가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36> 참조). 문항(1-11), 문항(1-12), 문항(1-14)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사들은 학부모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항(1-16) ~ 문항(1-19)에서 학부모의 권리 침해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침해한 경우가 최소 17%이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학교조직이나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교사 개인의 가치관과 달리 행동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관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문항(1-16)과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부모가 선택할 권리에 관한 문항(1-17), 학생의 징계에 대해 학부모가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에 관한 문항(1-19)의 응답을 보면 침해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20%, 33%, 26% 수준으로서 학부모가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문항(1-18)의 17%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7> 참조). 문항(1-11), 문항(1-12), 문항(1-14)와 문항(1-16), 문항(1-17)의 응답결과는 모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7> 학부모 인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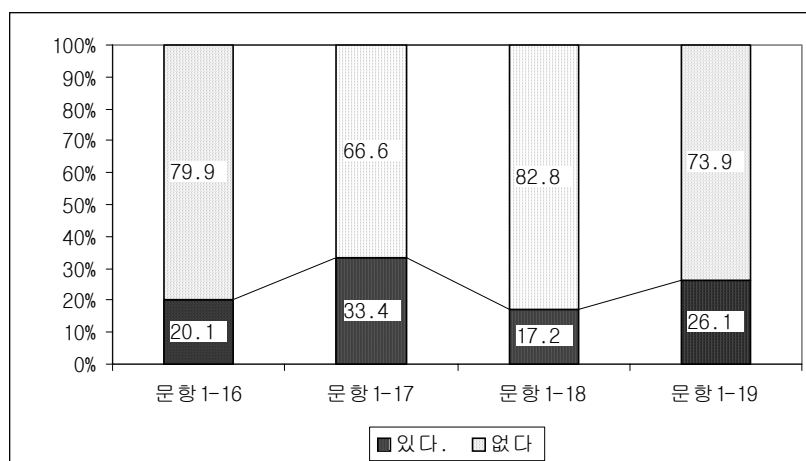
문항 번호	권리 항목	내 생각에는				합계 (%)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11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관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0.8	17.6	68.1	13.4	100
1-12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부모가 선택할 권리	1.6	14.3	62.9	21.2	100
1-13	학부모가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0.1	1.4	39.3	59.2	100
1-14	학생의 징계에 대해 학부모가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	0.7	8.6	57.7	33.1	100



<그림 24> 학부모 인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표 38> 학부모 인권에 대한 침해 여부

문항 번호	권리 항목	침해한 적이 있는가?		합계 (%)
		있다.	없다	
1-16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관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20.1	79.9	100
1-17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부모가 선택할 권리	33.4	66.6	100
1-18	학부모가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17.2	82.8	100
1-19	학생의 징계에 대해 학부모가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	26.1	73.9	100



<그림 25> 학부모 인권에 대한 침해 여부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질적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녀의 문제에 대하여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와 대화가 잘 되지 않아 교감이나 교장선생님을 찾아가면 교사의 권위나 권한만 강조하면서 간섭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교사의 편만 들기가 일쑤다. 이런 때 학부모들의 불만은 커진다. 아이에게 부과되는 과제의 내용과 양이 지나쳐서 시정을 요구하면 교사들은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고 교감이나 교장은 우선 교사입장만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40, 여, 학부모)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한 고령층과 농어촌·도시지역의 교사들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권리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대한 침해 사례도 높게 조사되었다. 이것은 경력과 나이가 많은 교사일수록 교육활동은 교사 개인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대도시의 문화적 특징은 학부모의 발언권이 우세한 반면, 농어촌이나 도시지역일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면서 교사의 발언권이 우세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라 생각한다.

다음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분석결과이다. 문항(1-11)과 문항(1-12), 문항(1-14)의 응답결과를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중요하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18.4%, 15.9%, 9.3% 정도로서 다른 문항의 1.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그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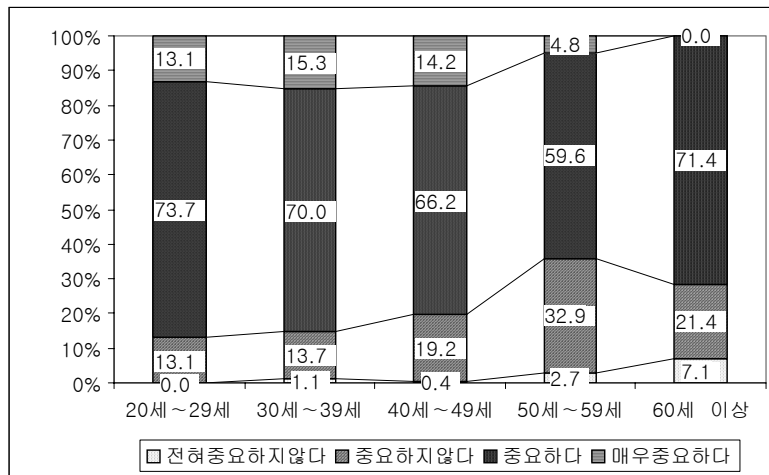
교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학부모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경우 교사들은 교육의 전문성을 주장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한다. 이것은 자기 자녀의 교육방법이나 학교와 학급의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등 학교 교육 전반에서 일상화 되어있다.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 학부모가 일찍 귀가를 요구해도 학교의 방침이라고 하거나 학급 전체가 다 참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제로 참가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40, 여, 학부모)

그리고 문항(1-11)을 연령과 지역별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연령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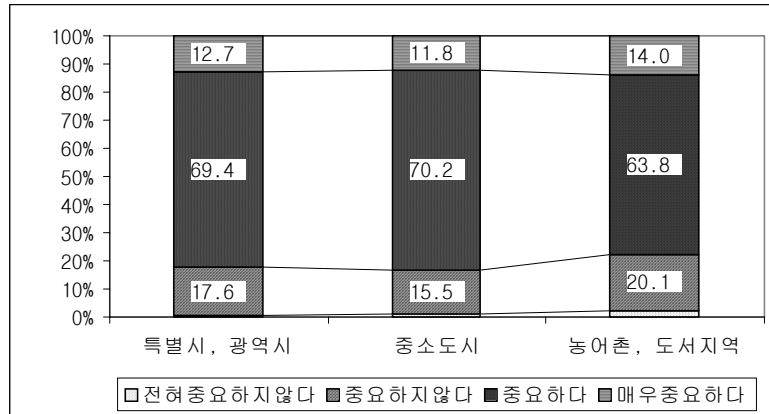
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중요하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가 32%수준이며, 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2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도서지역의 경우는 22.3%로서 도시지역의 17%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8> 참조).

<표 39>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권에 관한 중요성 인식(연령, 지역별)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관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문항(1-11)				합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연령	20세~29세	0.0	13.1	73.7	13.1	100
	30세~39세	1.1	13.7	70.0	15.3	100
	40세~49세	0.4	19.2	66.2	14.2	100
	50세~59세	2.7	32.9	59.6	4.8	100
	60세 이상	7.1	21.4	71.4	0.0	100
(사례수=1421)						
근무지역	특별시, 광역시	0.3	17.6	69.4	12.7	100
	중소도시	1.0	15.5	70.2	11.8	100
	농어촌, 도서지역	2.2	20.1	63.8	14.0	100
(사례수=1483)						



<그림 26>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에 관한 중요성 인식(연령별)



<그림 27>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에 관한 중요성 인식(지역별)

교사들이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는, 교사가 교육의 우선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권과 교수-학습방법의 선택권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고 보고 있다.

아이가 받아쓰기 점수를 10점을 받자 선생님은 아이의 노트를 다른 아이들에게 보이면서 10점이 표시된 노트를 들고 있으라는 벌을 주었다. 학생은 노트를 들고 교실 뒤에서 남아 있었는데, 그 교사는 학생을 교실에 남겨둔 채 퇴근을 했다. 나중에 학부모가 항의를 하자 교사는 교권침해라고 맞섰고, 학부모와 교사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그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40, 여, 학부모)

나는 특정 선생님이 특정 개인에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본다. 그것은 아무래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교사는 학생을 볼모(극단적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로 잡고 있고 따라서 부모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참다못해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많이 보았다. 예컨대 잘못된 학생의 부모님을 [호출]하여 놓고는 학생을 죄인시하면서 면전에서 비난하고 가정 교육을 탓하고 부모는 죽을죄를 지은 양 머리를 조아리고, 어휴! (40, 여, 인문계고등학교 교사)

그런데 교사가 학부모의 인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다.

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학부모가 망원경으로 학교를 감시하고 있다가, 수시로 학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대로 수업을 하라고 한 적이 있었다. 교장은 교사들의 인권보다 학부모의 전화를 더 중시했고, 이 사실을 안 학부모는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빈번해졌다.(40, 여, 중학교 교사)

이와 같이 교사와 학부모가 상호침해 하는 것은, 이들 모두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막연하고 모호하여 발생하는 갈등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목적을 자식의 성공적 삶에 두기 때문에 자신의 인권조차 포기하는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성공이데올로기에 매몰됨으로서 인권의식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실력 있는 교사를 원한다. 더구나 교사평가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들 역시 노골적으로 실력 있는 교사를 원한다. 실력 있는 교사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다.(40, 남, 인문계고등학교 교사)

교사의 평가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평가권을 제지시켰다. 그것도 학교장의 힘을 빌어서...(40, 여, 중학교 교사)

(3) 학생의 인권

다음은 학생의 인권에 관해 교사들이 그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학생의 학습권, 자치 활동권, 사생활 보호, 체벌, 징계, 학교운영위 참여 등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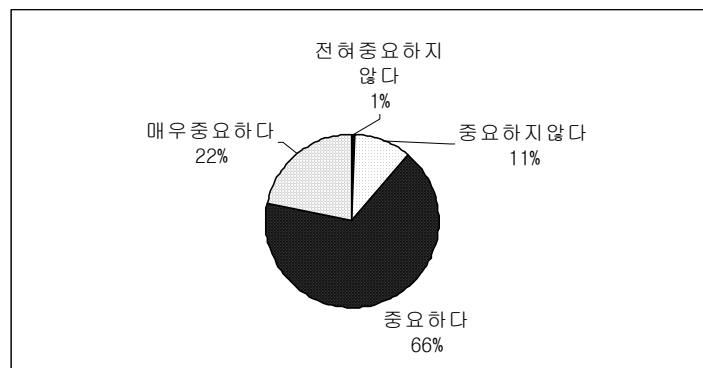
가. 학습권

학생의 학습권과 관련해서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이를 침해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그 중요성의 인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과 달리 학교공동체나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행동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에게 정규 교과 외의 교육활동에 관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88.9%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39> 참조).

<표 40> 정규 교과 외 교육활동 선택권의 중요성 인식 정도

문항 번호	권리 항목	내 생각에는				합계 (%)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24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0.5	10.6	67.1	21.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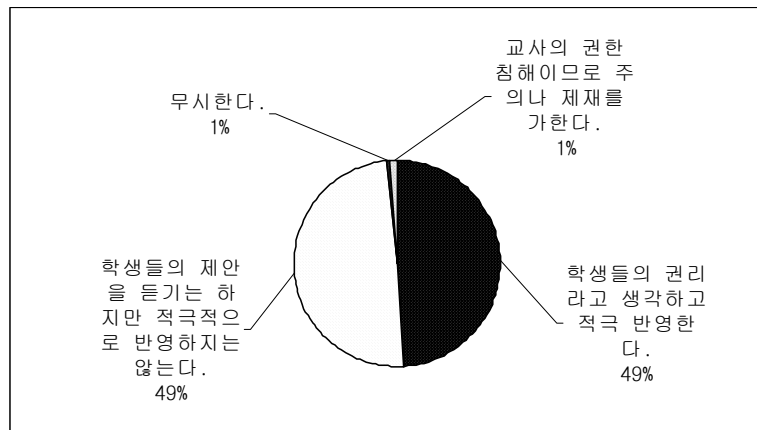
<그림 28>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선택권의 중요성 인식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권을 학교에서 보장하는 실천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 실천정도가 낮았다. 즉 학생들이 수업을 평가하고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제안했을 때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8.9%만이 학생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적극 반영한다고 응답하였다(<표 40> 참조).

<표 41> 학생의 수업평가, 수업내용, 방법 등의 제안에 대한 교사의 반응

문항	응답	응답비율(%)
학생들이 수업을 평가하고,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제안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문항 2-4)	학생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적극 반영한다.	48.9
	학생들의 제안을 듣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49.4
	무시한다.	0.6
	교사의 권한 침해이므로 주의나 제재를 가한다.	1.2
합계		100

(사례수= 1543)



<그림 29> 학생의 수업평가, 수업내용, 방법 등의 제안에 대한 교사의 반응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를 생활지도와 학급운영 면에서 비교해 볼 때도 학습지도나 수업권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아졌지만, 학생의 학습권 보다는 교사의 교육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생활지도, 학급운영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판단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더하면 97.3%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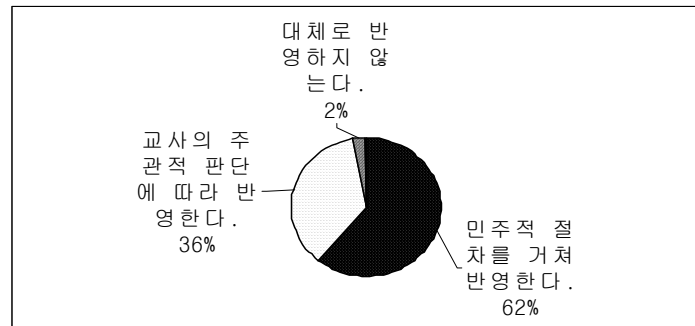
또한 간혹 교사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침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찰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관찰조사 문항(5)에서도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을 무시하는 편이다’에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35.7%로 조사되었다(<표 42> 참조)

<표 42> 생활지도와 학급운영에 대한 학생의 의견 처리 방법

문항	응답	응답비율(%)	소계(%)
생활지도, 학급운영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문항(2-3)	민주적 절차를 거쳐 반영한다.	61.0	97.3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반영한다.	36.3	
	대체로 반영하지 않는다.	2.4	2.7
	무시한다.	0.3	
합계		100	

(사례수=1544)



<그림 30> 생활지도와 학급운영에 대한 학생의 의견 처리방법

<표 43> 관찰조사 : 학생 의견 처리

문항	응답	응답비율(%)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무시하는 편이다. (관찰조사 문항5)	전혀 그렇지 않다	64.3
	그렇다	26.2
	매우그렇다	2.4
	모르겠다	7.1
	합계	100

(사례수=42)

학습권에 대한 침해는 중학교 보다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시키면서 주입식이나 일제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고3은 특히 진도를 빨리 마치고 문제집 풀이를 해야 한다. 진도를 빨리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여타의 교육적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학습활동을 하게 되면 진도에 지장이 생긴다.(30, 남, 인문계고등학교 교사)

지금과 같은 입시상태에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어린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가는 진도도 다 나가지 못한다.
(40, 남,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학습권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실업계고등학교에서 나타난다. 실업계고등학교는 입시의 사각지대이다.²¹⁾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전문 교과에 대해 일정 비율을 실험·실습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기가 힘들다. 실습장비의 부족, 전문적인 교사의 부족, 교육과정 구성의 어려움 등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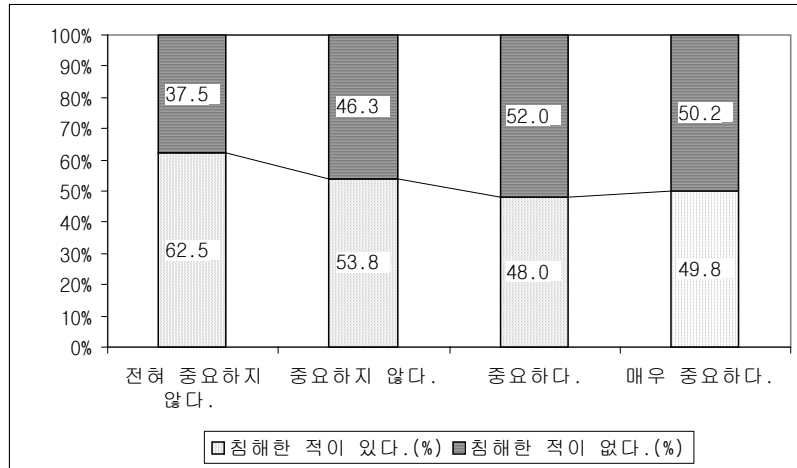
교사들의 학습권 침해는 형식적인 정규교과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비정규교육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의무적인 보충수업 등이 그 예에 속한다. 문항(1-24)와 문항(1-34)에서 응답자들은 비정규 교육활동의 학생 선택권에 관해 88%가 ‘매우 중요하다’ 혹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한 사례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3> 참조). 이것은 학교조직내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강압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인해 교사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44> 학생의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선택권의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문항(1-34)		합계 (%)
		침해한 적이 있다.	침해한 적이 없다.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문항(1-24)	전혀 중요하지 않다.	62.5	37.5	100
	중요하지 않다.	53.8	46.3	100
	중요하다.	48.0	52.0	100
	매우 중요하다.	49.8	50.2	100

(사례수=1526)

21) 특성화고등학교의 양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가 교명을 변경하여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림 31> 학생의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선택권의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

학습권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학교의 목적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상당수가 학교교육 목표를 상급학교 진학에 두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교사들의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교사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그다지 문제삼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일에 불과하다. 우리사회에서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학생들과 주위의 교사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적절한 진학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키는 분이다.(30, 남, 인문계고등학교교사)

교사들은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는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학교교육이 입시를 위한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입지가 위축되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요즈음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보다 학원교사들의 설명을 더 중요하게 생

각한다. 학교보다 학원의 공부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의 교육이 좀더 입시를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 남, 인문계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본인이나 여타의 다른 교사들이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해도 대부분 무시하거나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1학년 영어선생님이 연령이 60대이다. 영어발음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수업도 거의 하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이면 영어에 대한 기초를 잡을 시기인데, 너무나 걱정이다. 그런데 어찌하리, 그냥 모르는 척 했다. 학생들에게 학원에 가라고 이야기만 했다. (30, 여, 중학교 교사)

둘째, 교사가 학습내용 및 수업방법을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생들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교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상의 사례('A전산정보 회사가 교사의 강의를 평가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이 사이트에서는 해당 교사들의 사전 인지 및 동의 없이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하여 수업준비도, 수업방식, 인성교육 및 전문성을 체크하여 평가한 결과를 올리도록 되어있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대다수의 교사들이 감정적으로 불쾌하게 여기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의 동의도 없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매우 기분이 나쁠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체크당하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교사의 동의도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30, 남, 인문계고등학교 교사)

사전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몹시 기분이 나쁠 것이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삶에 회의가 들지 않을까 싶다. 교사라 하면 전문적 교육을 받고 나름의 평가를 통과하고 국가가 부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러한 평가는 이전에 받았던 모든 자격을 쓰레기로 취급하는 행위인 것

같다. 물론 현재 인터넷에 자기의 수업내용을 알차게 올려놓고 정보를 공유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동의 하에 자신의 수업을 평가받고 싶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평가기준도 의심스럽고 평가하는 단체로 믿기 힘들고 평가하려는 의도도 의심스럽지만, 평가결과는 너무도 큰 파장을 갖고 올 것이다. 대중매체의 힘은 너무도 엄청나지만 대부분은 믿을 수 없는 것과 같다.(50, 남, 인문계고등학교 교사)

나. 자치권

학생의 자치권은 학생인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다. 학생의 자치권은 학교 교육활동 중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권 보장을 위한 기구로는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활동 등이 있다.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전달되어야 하고 학교의 규칙이나 규율 제정을 통해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²²⁾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명목상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학사운영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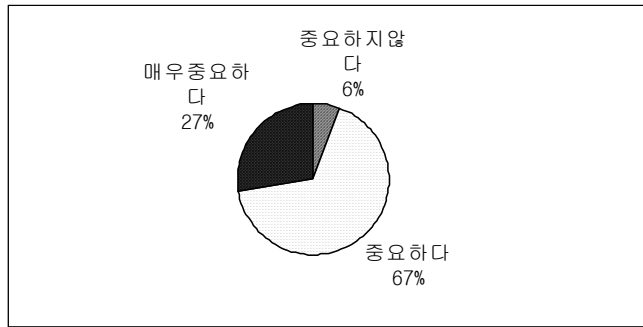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문항(1-25)에서 교사들은 학생의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해 94.5%정도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44> 참조).

22) 초·중등교육법 제3장 제1절 [학생]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제17조)고 하고, 시행령에서도 ‘학교의 장은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제30조)고 규정하고 있다.

23)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 혹은 자율적이라는 문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학생회의 위상을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취미특기신장, 건전한 학풍 조성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학생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중 김한영(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자치활동부)의 「학생회칙의 문제점」)

<표 45> 학생자치활동의 중요성 인식 정도

문항 번호	권리 항목	내 생각에는				합계 (%)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25	학생의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권리	0.0	5.5	67.1	27.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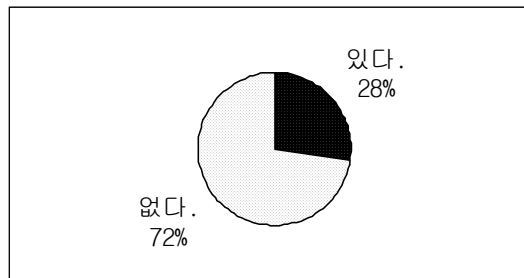


<그림 32> 학생자치 활동의 중요성 인식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항(1-35)에서 학생들의 자치권 침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 27.5% 정도가 침해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표 45> 참조). 중요성 인식의 수준에 비해 침해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생자치가 침해될 때 발생하는 심각성도 문제이지만 교사들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표 46> 학생자치활동의 침해 여부

번호	권리 항목	침해한적이 있는가		합계 (%)
		있다.	없다.	
1-35	학생의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권리	27.5	72.5	100



<그림 33> 학생자치활동의 침해 여부

이는 관찰조사 문항(8)에서도 '학생들의 자치권 보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에 대해 관찰자의 40%정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46> 참조). 여기서 자치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수준과 실천사이의 괴리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표 47> 관찰조사 : 학생들의 자치권 보장

문항	응답	응답비율(%)
학생들의 자치권 보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관찰조사 문항8)	전혀 그렇지 않다	19.0
	그렇다	40.5
	매우그렇다	19.0
	모르겠다	21.4
	합계	100

(사례수=42)

질적 연구에서도 교사들보다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그 피해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회 간부이거나 회장, 부회장을 했을 경우 수시 입학의 기회를 주거나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회를 하는 이유가 가산점을 받기 위하여 회장이나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오직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 '꼭 대학을 가야한다'는 선입견이 학생의 의견을 대변해야할 중요한 자치기구로서의 학생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 학교에서 행해지는 학생회 임원의 비민주적인 선출, 학생들의 자치성과 주체성의 부족, 교사들의 개입과 학생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탁상공론의 학생회칙, 예산의 독립성 없는 대부분의 학생회 등이다.(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다. 사생활 보호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 유지의 권리 및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나아가 학교나 교사가 수집·보관하고 있는 학생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의 권리까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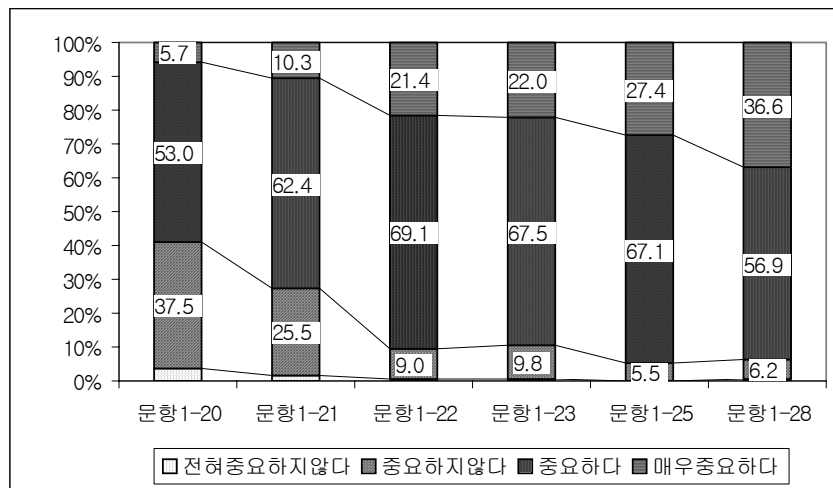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생활보호를 다른 영역에 비해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1-25)에서 학생의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94.5%가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문항(1-20)에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58.7% 정도가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문항(1-21)에서 소지품검사, 몸수색, 사물함 수색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72.7% 정도가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생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항목 중 두발이나 복장의 선택권 및 몸수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항(1-23)에서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개인신상 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87.5%가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문항(1-28)에서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93.5%가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47> 참조).

그리고 문항(1-30)과 문항(1-31)에서 학생들의 사생활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침해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각각 67.1%, 58.3%로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48> 참조). 이 문제는 최근 학생들과 교사 혹은 학교당국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표 48>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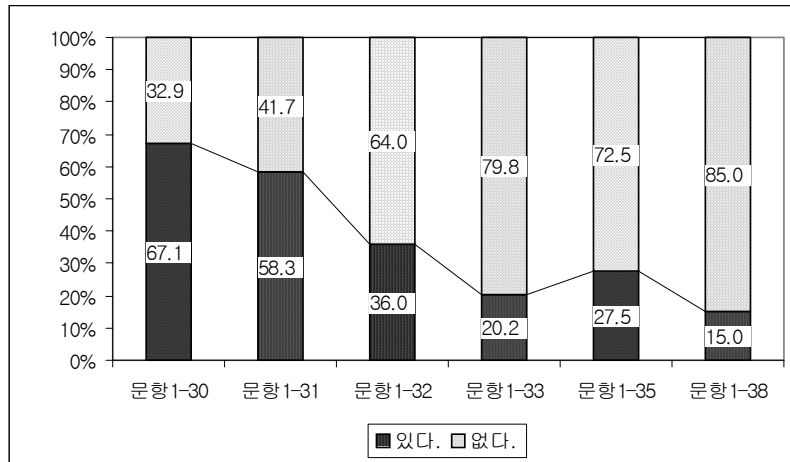
문항 번호	권리 항목	내 생각에는				합계 (%)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20	학생이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3.8	37.5	53.0	5.7	100
1-21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소지품검사, 몸수색, 사물함 수색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1.8	25.5	62.4	10.3	100
1-22	학생의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성적이나 학생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0.5	9.0	69.1	21.4	100
1-23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0.7	9.8	67.5	22.0	100
1-25	학생의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권리	0.0	5.5	67.1	27.4	100
1-28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0.3	6.2	56.9	36.6	100



<그림 34>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 인식 정도

<표 49>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침해 여부

번호	권리 항목	침해한 적이 있는가		합계 (%)
		있다.	없다.	
1-30	학생이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67.1	32.9	100
1-31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소지품검사, 몸수색, 사물함 수색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58.3	41.7	100
1-32	학생의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성적이나 학생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6.0	64.0	100
1-33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20.2	79.8	100
1-35	학생의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권리	27.5	72.5	100
1-38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 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15.0	85.0	100



<그림 35> 학생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침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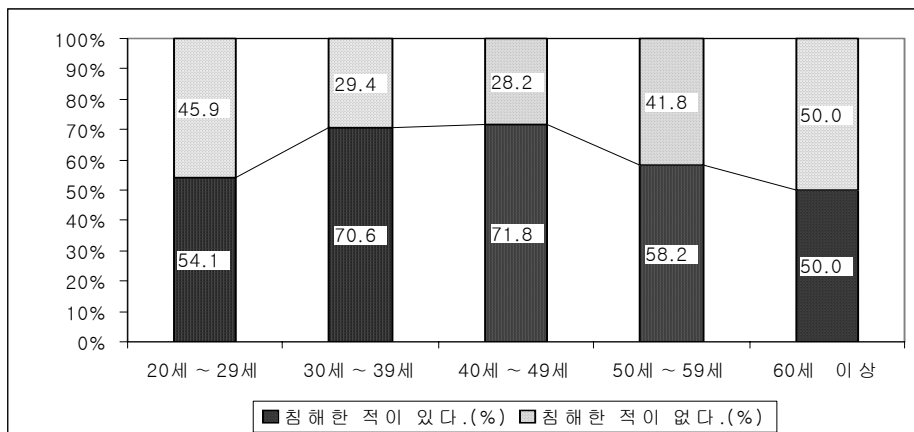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체벌, 소지품 검사, 두발검사, 일기장 검사 등이다. 이 부분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사들보다 더 억압적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인권의식에 민감하여 억울하다 싶으면 인터넷에 올려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교사에 의한 일방적 침해는

줄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40, 남, 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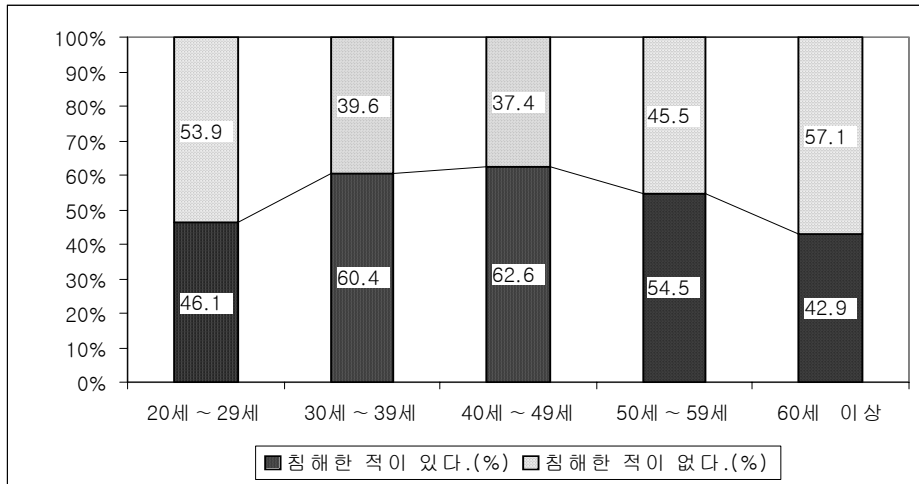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문항(1-30)과 문항(1-31)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30대~40대의 중견 교사들에 대해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0%와 60%수준으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9> 참조). 30대~40대의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중심적인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과 무관하게 학교행사나 업무속성상(생활검열, 등·하교시 교문지도 등) 어쩔 수 없이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0>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연령별)

		학생이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문항(1-30)		합계 (%)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소지품검사, 몸수색, 사물함수색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문항(1-31)		합계 (%)
		침해한 적이 있다.	침해한 적이 없다.		침해한 적이 있다.	침해한 적이 없다.	
연령	20세~29세	54.1	45.9	100	46.1	53.9	100
	30세~39세	70.6	29.4	100	60.4	39.6	100
	40세~49세	71.8	28.2	100	62.6	37.4	100
	50세~59세	58.2	41.8	100	54.5	45.5	100
	60세 이상	50.0	50.0	100	42.9	57.1	100



<그림 36> 학생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연령별, 문항1-30)



<그림 37>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연령별, 문항1-31)

교사들의 인권의식은 매우 낮다. 아니 어쩌면 인권의식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편이 옳겠다. 교육은 인간을 다루는 일이다. 한 인간의 성장을 지도하는 일임에도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선 그 대상자인 학생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 면죄부인 냥 말이다.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교사들의 체벌, 소지품 검사 등의 일은 반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교지 편집부장과 반장의 역할을 맡고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때마다 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권위적이고 위엄을 내세운 모습이였다.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선생님들을 뵈게 되면 놀랄 따름이다. (사립계 인문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학생들의 사생활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관찰조사의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관찰조사 문항(6)의 경우 ‘학생들이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시하는 편이다’는 관찰내용에 대해 31%정도가 동료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표 50> 참조).

한편 문항(1-38)에서 학생의 종교 선택권에 대한 침해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학생의 종교선택권을 침해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9.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51> 참조). 종교계 사학재단의 운영 방침이나 미션스쿨의 전반적 분위기로 인해 교사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학생의

종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어 준다.

<표 51> 관찰조사 :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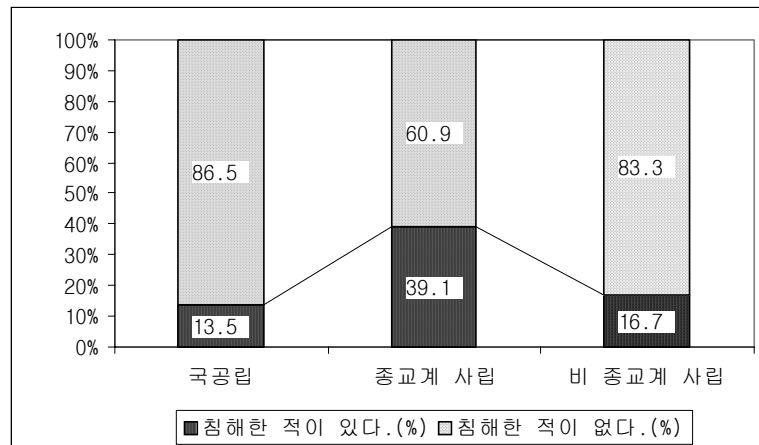
문항	응답	응답비율(%)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시하는 편이다. (관찰조사 문항6)	전혀 그렇지 않다	50.0
	그렇다	31.0
	매우그렇다	7.1
	모르겠다	11.9
	합계	100.0

(사례수=42)

<표 52> 학생의 종교 선택권의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 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문항(1-38)		합계 (%)
		침해한 적이 있다.	침해한 적이 없다.	
학교의 설립유형	국공립	13.5	86.5	100
	종교계 사립	39.1	60.9	100
	비 종교계 사립	16.7	83.3	100

(사례수=1470)



<그림 38> 학생의 종교선택권의 중요성 인식과 침해 여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교사들이 학생들의 사생활을 중요한 인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을 유용한 학생통제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학습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 가운데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본보기가 되는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면, 저절로 질서가 잡힌다.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비인격적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30, 여, 중학교 교사)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말도 많이 한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는 교사들도 있다. 아이들에게 존칭을 쓰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야 한다. 반말을 쓰는 모습을 없애고 학생들에게도 존칭을 썼으면 좋겠다.(30, 여, 중학교 교사)

또 다른 이유는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소수의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애들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 같다. 주로 “말로 해선 안 된다” “어떻게든 교사를 속이려 든다” “근본이 틀려먹었다” 이런 말을 수시로 듣는다. 그러니 그 학생들 가방 속을 뒤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아마 이런 교사들은 자신이 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인격이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아이들을 어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30, 여, 고등학교 교사)

교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사생활에 대한 간섭은 통제만능주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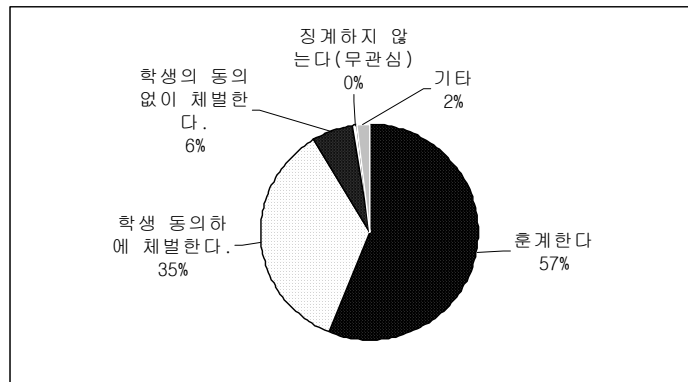
학생 체벌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 문제에 심리적 갈

등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교육수단으로서 체벌이 최선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체벌에 의존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처벌에 대한 질문의 경우 41.5%가 학생의 동의 하에 또는 동의 없이 체벌을 한다고 하였으며, 체벌 이외의 방법을 선택한다고 한 응답자는 56.1%였다.(<표 52> 참조).

<표 53> 학생 처벌의 방법에 관한 응답

문항	응답	응답비율(%)
학생을 처벌할 경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문항(2-2)	혼계한다	56.1
	학생 동의하에 체벌한다.	35.4
	학생의 동의 없이 체벌한다.	6.1
	징계하지 않는다(무관심)	0.4
	기타	2.0
합계		100

(사례수=1548)



<그림 39> 학생 처벌의 방법에 대한 응답

이러한 조사결과는 관찰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관찰조사 문항(7)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 체벌을 주로 사용한다’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40.1%였다.(<표 53> 참조).

다음은 체벌에 의존하는 교사들의 연령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문항1-26)은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50세 이상의 교사들에게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각각 19.2%, 28.5%인 반면에 5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표 54> 참조).

<표 54> 관찰조사 : 체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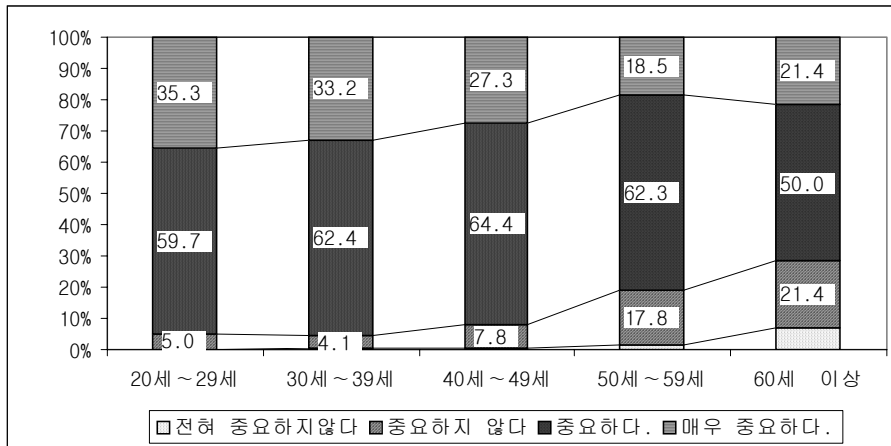
문항	응답	응답비율(%)
학생들에 대한 체벌의 수단으로 체벌을 주로 사용한다. (관찰조사 문항7)	전혀 그렇지 않다	59.5
	그렇다	23.8
	매우그렇다	7.1
	모르겠다	9.5
	합계	100

(사례수=42)

<표 55> 학생이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에 관한 인식(연령별)

		학생이 징계를 받을 경우,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체벌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 문항(1-26)				합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연령	20세~29세	0.0	5.0	59.7	35.3	100
	30세~39세	0.4	4.1	62.4	33.2	100
	40세~49세	0.4	7.8	64.4	27.3	100
	50세~59세	1.4	17.8	62.3	18.5	100
	60세 이상	7.1	21.4	50.0	21.4	100

(사례수 = 1426)



<그림 40> 학생이 체벌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에 관한 인식(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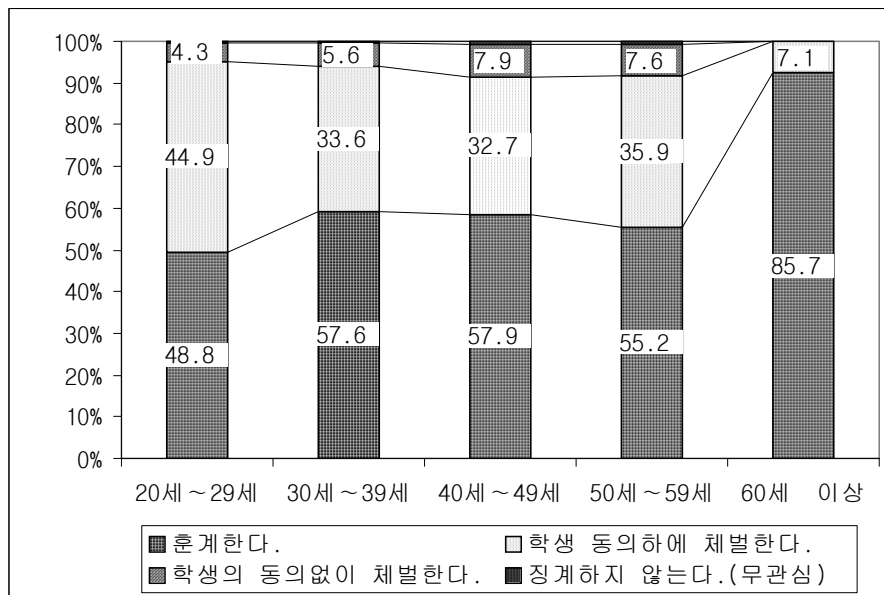
그런데 (문항2-2)의 연령별 분석결과에서 실제로 체벌을 하는 경우는 20대의 젊은층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 경우가 49%정도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55> 참조). 젊은층 교사일수록 체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젊은 층의 교사일수록 체벌금지에 관한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거나, 자신의 가치관

과 행동이 불일치하여 심리적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표 56> 학생을 처벌하는 방법에 관한 응답(연령별 분석)

		학생을 처벌할 경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문항(2-2)					합계 (%)
		훈계한다.	학생 동의 하에 처벌한다.	학생의 동의 없이 처벌한다.	징계하지 않는다.(무관심)	기타	
연령	20세~29세	48.8	44.9	4.3	0.4	1.6	100
			49.2				
	30세~39세	57.6	33.6	5.6	0.4	2.9	100
			39.2				
	40세~49세	57.9	32.7	7.9	0.7	0.9	100
		40.6					
50세~59세	55.2	35.9	7.6	0.7	0.7	100	
		43.5					
60세 이상	85.7	7.1	0.0	0.0	7.1	100	
		7.1					

(사례수=1428)



<그림 41> 학생을 처벌하는 방법에 관한 응답(연령별)

이처럼 교육수단으로서 체벌이 최선이 아님을 알면서도 체벌에 의존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체벌을 최선의 교육수단으로 생각한다면 학생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체벌과정에서 학생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체벌이 최선의 교육수단이 아니며 여기에 일정한 심리적 가치갈등이 내재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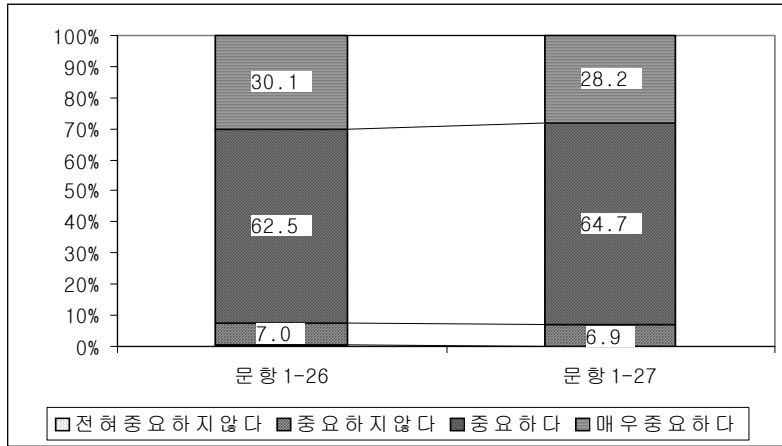
다고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심리적 갈등요인은 크게 2가지로서 ① 체벌이 최선은 아니지만 학생동의 하의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나 ② 체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학부모나 해당학생 혹은 다른 학생들의 문제제기 등)에 대비한 조그마한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체벌에 관한 연령별 특징을 보면 젊은 층의 교사들이 학생지도과정에서 체벌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교육의 수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과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체벌을 인권침해라기보다 교육(혹은 훈육)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2-2)에서 과반수 이상의 교사가 체벌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41.1%의 교사가 체벌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체벌을 할 경우라도 학생의 동의를 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사들에게 체벌을 포함한 징계에 대하여 타당한 규정을 적용 받을 권리의 중요성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92.6%가 중요하다고 답했다(<표 56> 참조). 그러나 실제로 체벌을 포함한 징계절차에서 타당한 규정을 적용 받을 권리에 대해 32.6% 정도가 침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57> 참조). 이는 체벌이 학생의 동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가부를 묻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사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 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않는 한 인권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표 57> 학생의 징계과정에서 타당한 규정의 적용과 자신을 변호할 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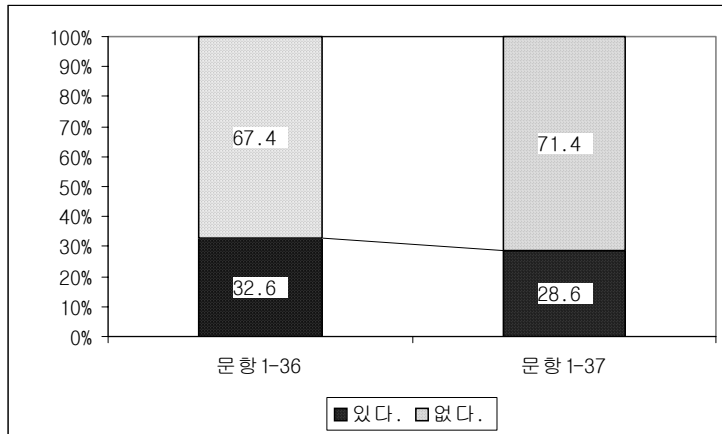
문항 번호	권리 항목	내 생각에는				합 계 (%)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26	체벌을 포함한 징계에 대하여 타당한 규정을 적용 받을 권리	0.5	7.0	62.5	30.1	100
1-27	학생이 징계절차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	0.2	6.9	64.7	28.2	100



<그림 42> 학생 징계에서 타당한 규정의 적용과 자신을 변호할 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표 58> 학생의 징계과정에서 타당한 규정의 적용과 자신을 변호할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번호	권리 항목	침해한 적이 있는가		합계 (%)
		있다.	없다.	
1-36	체벌을 포함한 징계에 대하여 타당한 규정을 적용 받을 권리	32.6	67.4	100
1-37	학생이 징계절차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	28.6	71.4	100



<그림 43> 학생 징계에서 타당한 규정의 적용과 자신을 변호할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교사들이 체벌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학생의 징계과정에서 타당한 규정의 적용과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침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교사의 비합리적인 교육 수단(물리력 및 여타의 통제기제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다인수학급을 운영하면서 물리적·비민주적 권력을 동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통제가 쉽지 않고, 이는 무질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장래와 학습태도의 교정, 그리고 생활태도의 교정 등의 이유로 전략적 차원에서 권력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학생들에게 약하게 보이면 한 학기 동안 수업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 여학교에서 남학교로 전근 와서 힘든 점은 학생들을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학기초 학생들에게 좋은 말로 타일렀고 이에 대해 학생들도 태도를 고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야단을 치려고 하면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말로만 야단치는 나를 무시하는 기분이 든다. 이런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다음 학기에는 학기초부터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어야겠다.(40, 여, 중학교 교사)

물리력에 의존하는 상당수 교사들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적이며, 성적이 학생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본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입시와 생활지도라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입시성과만 좋으면 인권 침해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입시는 인권침해의 면죄부나 다름없다. 생활지도를 위해서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체벌도 그러하다. 교사가 출석부로 여학생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반인권적이고 모욕적인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30, 남, 인문계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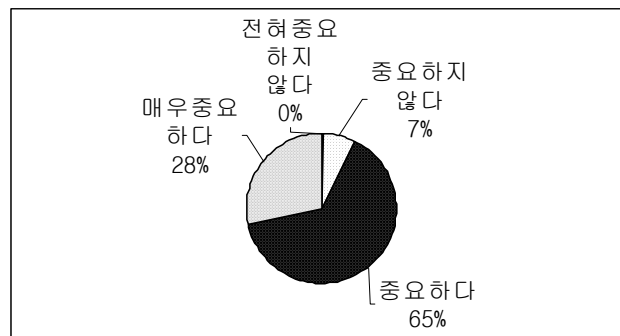
마. 징계

학생의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적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막연하고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학생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적법절차의 원리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고 절차 역시 형사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당국이나 교사의 부당한 권력행사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징계절차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에 대해 92.9%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58> 참조). 그런데 교사들에게 이러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8.6%가 침해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59> 참조).

<표 59> 학생이 징계절차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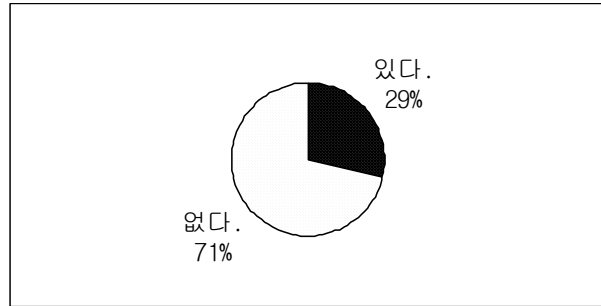
문항 번호	권리 항목	내 생각에는				합계 (%)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27	학생이 징계절차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	0.2	6.9	64.7	28.2	100



<그림 44> 학생이 징계과정에 참여하고 변호할 권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표 60> 학생이 징계절차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번호	권리 항목	침해한 적이 있는가		합계(%)
		있다.	없다.	
1-37	학생이 징계절차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	28.6	71.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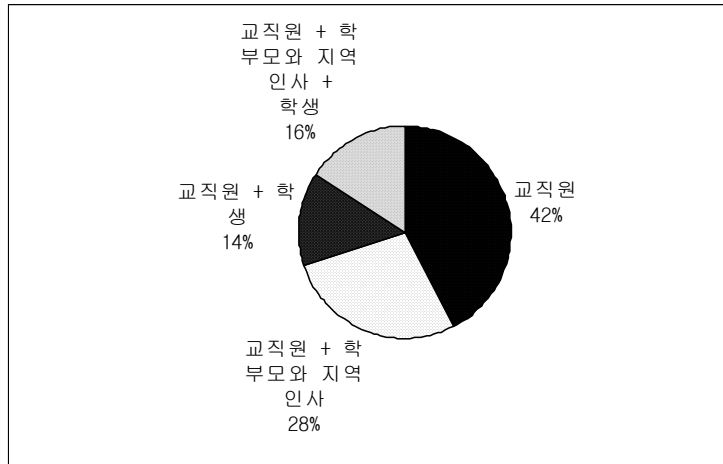
<그림 45> 학생이 징계과정에 참여하고 변호할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학생들이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징계와 관련한 교칙의 제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29.9%로 나타났다(<표 60> 참조).

<표 61> 교칙(학칙)제정과정의 구성원 분석

문항	응답	응답비율(%)	소계(%)
현재 선생님의 학교에서 학칙(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어디까지입니까?(문항2-5)	교직원	42.6	70.1
	교직원 + 학부모와 지역인사	27.5	
	교직원 + 학생	14.0	29.9
	교직원 + 학부모와 지역인사 + 학생	15.9	
합계		100	

(사례수=1476)



<그림 46> 교칙(학칙) 제정과정의 구성원 분석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교정조치나 처벌이 있어야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교육적 목적이라면 학생의 징계문제와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다. 예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성향과 요즈음의 학생들의 성향은 너무나 다르다. 갈수록 난폭하고 생활태도가 어른 흉내를 낸다. 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교실 전체 분위기를 물론 다른 아이들의 분위기도 어지럽게 만든다. 따라서 이들을 학교에서 분리시켜야 소수의 아이들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 만약 이 학생들에게 온갖 합리성과 규칙을 적용한다면 시간낭비이다.(50, 남, 실업계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퇴학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학생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지킬 수 있지만 경미한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다.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업분위기만 어렵게 만든다.
(50, 남, 실업계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교사들은 징계 규정이 학생지도에 합당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의

목적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징계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문제제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은 징계규정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규범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규범의 성격을 갖는 만큼 학생들에게 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바. 학교운영의 학생 참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능동적인 자세로 학교운영에 동참하여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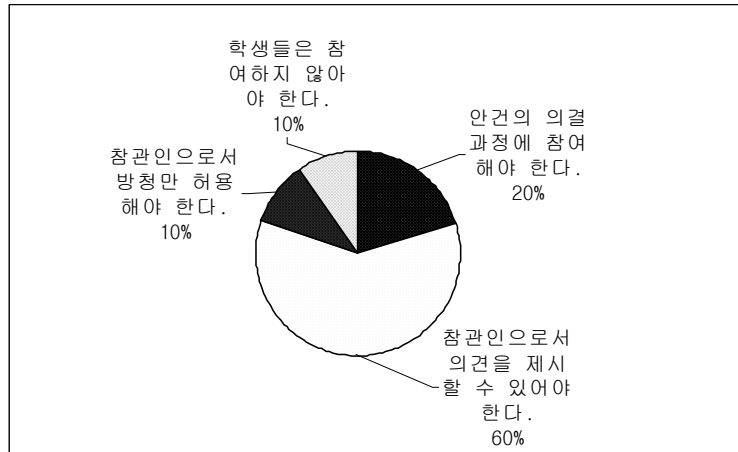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결기구로서 기능해야 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특히 학생도 학교운영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80.1%의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들이 의결과정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비율은 20.0%에 머물렀다(<표 61> 참조). 이는 아직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적극적인 의미의 교육주체로서 인정하는 데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표 62>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정도에 관한 인식

문항	응답	응답비율(%)	소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2-6)	안건의 의결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20.0	80.1
	참관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0.1	
	참관인으로서 방청만 허용해야 한다.	10.1	19.9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9.8	
합계		100	

(사례수=1532)



<그림 47>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석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3) 인권보호와 확대를 위한 실천수준

(1) 인간관계 기술의 부족과 권위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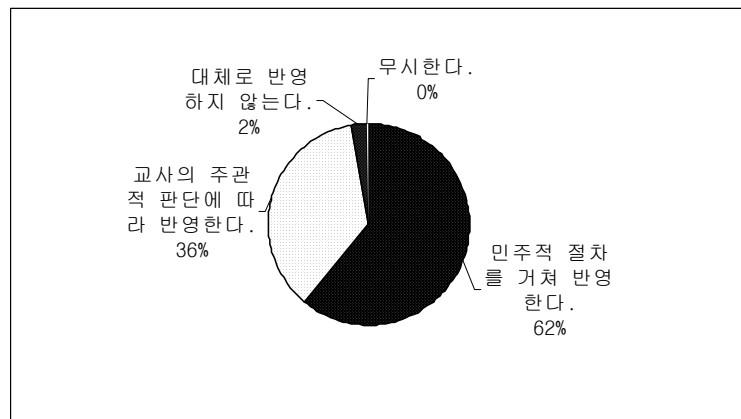
교사들의 인권의식은 구체적인 생활에서 나타난다. 인권의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타인의 감정과 의견에 귀기울이는 능력, 타인과 협력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능력, 그리고 상호 존중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참여하는 태도 등이다. 그러면 교사들은 이러한 태도를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가?

먼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교사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61%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라고 보여지나,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반영한다는 응답자가 36.3%로 나타났으며 더구나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7%로 나타났다(<표 62> 참조).

<표 63> 학생들의 의견 처리 방법

문항	응답	응답비율(%)	소계(%)
생활지도, 학급운영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문항2-3)	민주적 절차를 거쳐 반영한다.	61.0	97.3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반영한다.	36.3	
	대체로 반영하지 않는다.	2.4	2.7
	무시한다.	0.3	
합계		100	

(사례수= 1544)



<그림 48> 학생 의견의 처리 방법

양적 조사에서 보여진 교사의 태도와는 달리 질적 조사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태도가 비인격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인식상의 괴리는 상호간에 불신의 감정을 낳은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다. 생활지도나 학급운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요즘 학생들은 너무나 감각적이어서 흥미와 재미가 없으면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 한 동안 학생과 교사사이의 관계를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나만 손해라는 생각을 했다.(40, 여, 중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나 수업과 관련된 건의를 해도 들어 주시지도 않아요.(중학교 3학년 학생)

생)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더 나아가 불신의 관계로 형성되는 이유는 교사들의 권위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요즘 N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신세대들은 교사들의 권위의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권위적인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는 멀어지고 고착화되며, 그 결과 학생과 교사들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굳어진다. 다음 사례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사소통구조 자체가 원활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63> 참조).

<표 64> 관찰조사 :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 관계

문항	응답	응답비율(%)
학생들과 인격적이고 일상적인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는다. (관찰조사 문항2)	전혀 그렇지 않다	19.0
	그렇다	47.6
	매우 그렇다	28.6
	모르겠다	4.8
	합계	100

(사례수=42)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힘들어요. 교무실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다른 선생님의 눈초리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중학교 3학년 학생)

어떤 담임 교사가 한 학생을 교무실에서 다그치고 있었다. 학생은 무엇인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담임 교사가 그 학생들 불러 놓고 훈계중인 교사에게 가서 사죄를 하라고 학생에게 말했다.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 ○○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너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 지금까지 너는 항상 그런 아이였잖아. 그러니까 선생님께 사죄해.... (50, 남, 중학교 교사)

교사가 갖고 있는 왜곡된 권위의식은 학생과 교사들 간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만

들고 정서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와 교사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학교에 등교하면 컴퓨터 보기에 바쁘다. 같은 부서, 같은 과목 선생님들 과도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학교에 오면 답답하다(30, 여, 중학교 교사)

과거와 다른 학교 분위기 때문에 교사들 상호간에도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나이 많은 교사들은 젊은 교사들에게 무시당하며 산다고 생각하고, 젊은 교사들은 나이 많은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한다고 생각하므로 교사 상호간의 존중의식이 약화되고 갈등도 많다. 한 예로 나이 50이 넘으면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없어서 젊은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못마땅해 하고 수업시수 배당과 분장업무 배당에서는 젊은 교사들이 많은 부담을 안게되어 젊은 교사들의 불만이 생긴다. (50, 남, 실업계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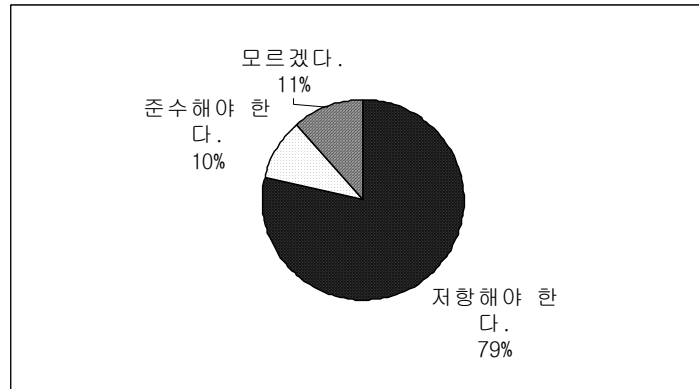
(2) 사회참여와 연대 수준

인권은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 조직적인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 교사들은 인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저항하는 것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악법은 준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개폐를 위해 저항해야 합니까? 라는 문항(3-7)에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것보다는 개폐를 위해 저항해야 한다는 응답이 78.8%로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64> 참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허구적으로 유포되었던 ‘악법도 법’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과정이 15년 정도 지나면서 교사들의 참여의식과 저항의식이 높아진 것이다.

<표 65> 교사들의 악법에 대한 저항의식

문항	응답	응답비율(%)
악법은 준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개폐를 위해 저항해야 합니까? 문항(3-7)	저항해야 한다.	78.7
	준수해야 한다.	9.9
	모르겠다.	11.4
합계		100

(사례수=1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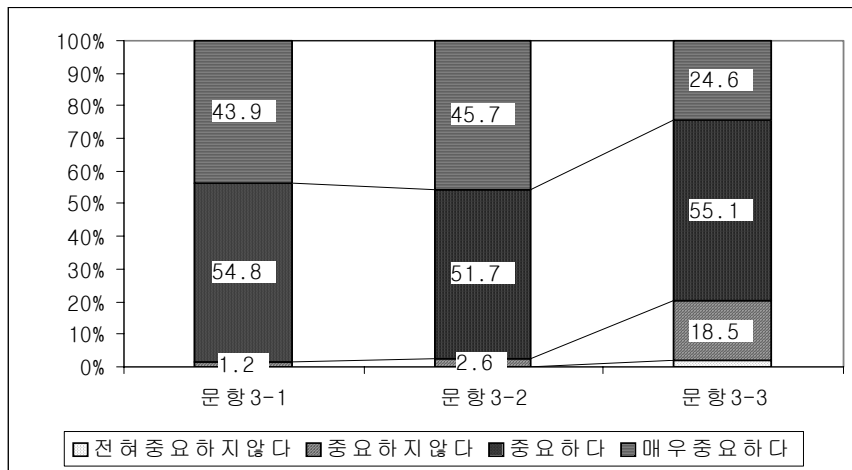
<그림 49> 악법에 대한 교사들의 저항의식

하지만 이것을 사안별로 구분해 보면, 자신의 주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만, 사회공동체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교사들의 자치활동과 교내·외 사회문제에 대해 참여하는 것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3-1)과 (3-2)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중요하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은 3% 미만이지만, 교사가 ‘학교 밖에서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20%수준으로서 자신의 주변이나 학내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표 65> 참조).

<표 66> 교내·외의 사회문제에 대해 표현하거나 참여하는 것에 관한 인식

문항 번호	권리 항목	내 생각에는				합계 (%)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3-1	학내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권리	0.1	1.2	54.8	43.9	100
3-2	교사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평교사회, 교원단체 분회모임 등)	0.1	2.6	51.7	45.7	100
3-3	교사가 학교 밖에서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1.8	18.5	55.1	24.6	100



<그림 50> 교내·외의 사회문제에 대해 표현하고 참여하는 것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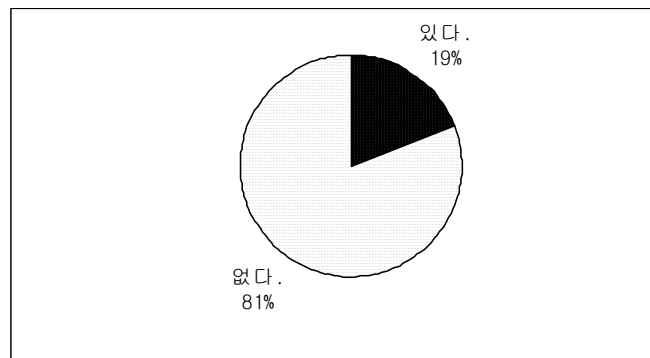
다소 기분이 나쁘더라도 나에게 직접 큰 피해가 오지 않는 일이라면 참아낸다. 기분 나쁜 상황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일 처리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 처리 방식이 다른 사람을 문제로 삼는 경향이 있다. 나의 경우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편이나 같은 생각을 지닌 동료조차 적어서 외로울 때가 더러 있다.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함’을 늘 되새긴다. (남, 40, 중학교 교사)

교사들은 사회참여의 권리의 중요성을 여타의 권리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운동단체나 인권관련 단체(엠네스티 등)에 회원으로 참여하시거나 후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3-8)의 응답에서도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비중이 19.2% 수준에 머물고 있다(<표 66> 참조). 다른 직종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앞서 문항(3-7)에 나타난 참여의식이나 저항의식에 비추어 보면 결코 높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표 67> 교사들이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 참여한 경험

문항	응답	응답비율(%)
시민운동단체나 인권관련 단체(엠네스티 등)에 회원으로 참여하시거나 후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항(3-8)	있다.	19.2
	없다.	80.8
합 계		100

(사례수=1544)



<그림 51> 교사들이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 참여한 경험

관찰조사의 결과도 동료교사의 21.4%만이 교사단체나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표 67> 참조).

<표 68> 관찰조사 : 인권단체, 시민단체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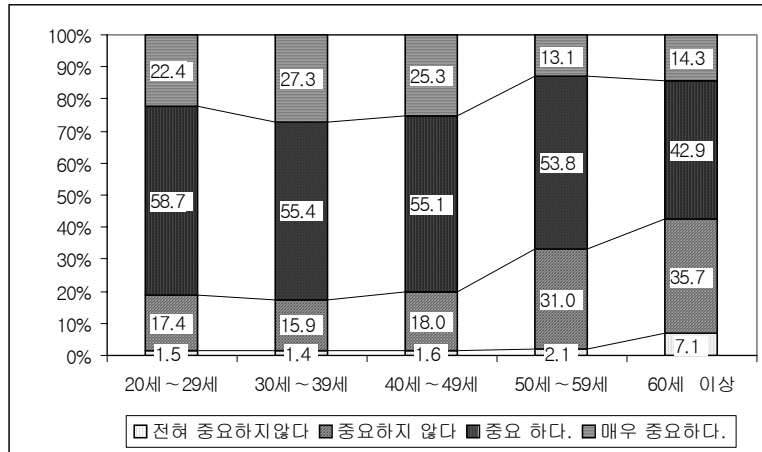
		응답비율(%)
인권관련 교사단체나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편이다. (관찰조사 문항14)	전혀 그렇지 않다	59.5
	그렇다	21.4
	모르겠다	19.0
	합계	100

(사례수=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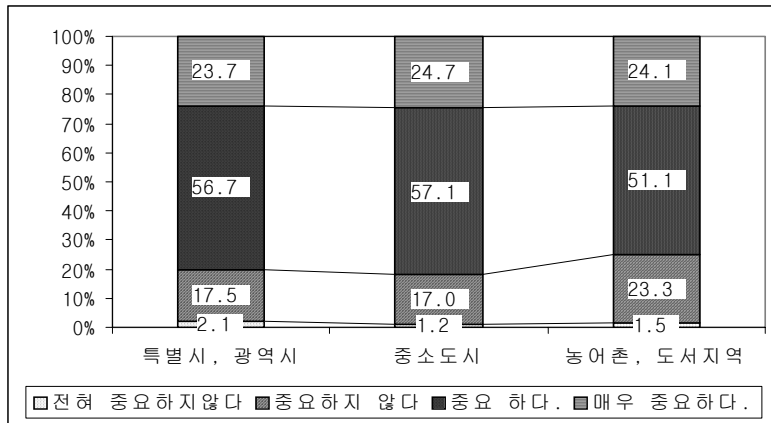
그리고 교사의 사회참여의식에 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변동의 속도가 빠르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적게 받는 젊은층과 도시지역에서 사회참여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문화적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교 밖에서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 인식을 묻는 문항(3-3)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20대~40대의 경우는 80%를 상회하는 반면, 나머지 연령층은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시지역 역시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한 반면,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서는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표 68> 참조).

<표 69> 교사의 사회참여의식의 중요성 인식(연령, 지역별)

		교사가 학교 밖에서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문항(3-3)				합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연령	20세~29세	1.5	17.4	58.7	22.4	100
	30세~39세	1.4	15.9	55.4	27.3	100
	40세~49세	1.6	18.0	55.1	25.3	100
	50세~59세	2.1	31.0	53.8	13.1	100
	60세 이상	7.1	35.7	42.9	14.3	100
(사례수 = 1422)						
근무 지역	특별시, 광역시	2.1	17.5	56.7	23.7	100
	중소도시	1.2	17.0	57.1	24.7	100
	농어촌, 도서지역	1.5	23.3	51.1	24.1	100
(사례수 = 1500)						



<그림 52> 교사의 사회참여의 중요성 인식(연령별)



<그림 53> 교사의 사회참여의 중요성 인식(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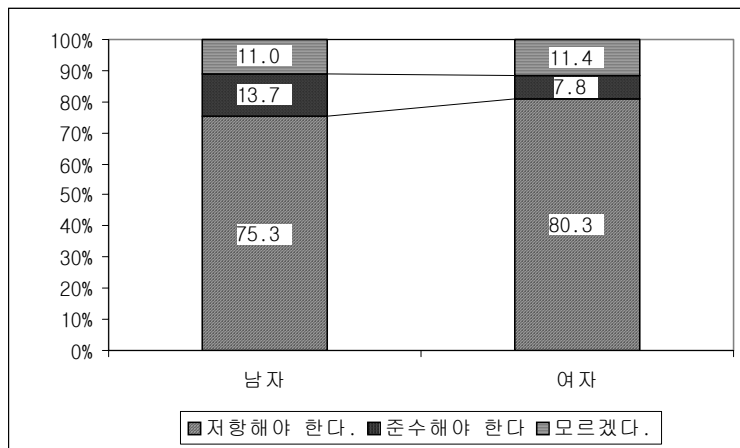
그리고 여교사들의 사회참여와 저항의식이 남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를 생활화하고 실천할 정도의 의식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사회참여에 관한 가치갈등은 남교사들보다 여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느낄 것으로 추측되었다. 사회문제에 관한 저항의식은 여교사들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학내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주로 남교사들의 참여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설문 응답 분석 결과를 보면 문항(3-7)에서 악법의 개폐를 위해 저항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교사들이 80.3%로서 남교사들의 75.3%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표 69> 참조).

<표 70> 악법에 대한 저항의식 분석(성별)

		악법은 준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개폐를 위해 저항해야 합니까? 문항(3-7)			합계 (%)
		저항해야 한다.	준수해야 한다	모르겠다.	
성별	남자	75.3	13.7	11.0	100
	여자	80.8	7.8	11.4	100

(사례수=1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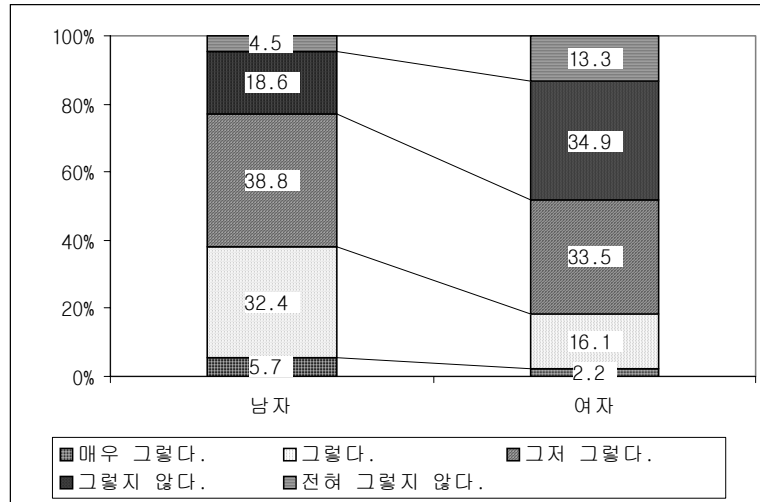
<그림 54> 악법에 대한 교사들의 저항의식 분석(성별)

하지만 문항(3-9)에서 학교운영위원회나 각종 교직원회의(교무회의, 부장교사회의 등)에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제기는 남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여교사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70> 참조).

<표 71> 학내문제에 대한 참여 여부(성별 분석)

		선생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나 각종 교직원회의(교무회의, 부장교사회의 등)에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편입니까? 문항(3-9)					합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남자	5.7	32.4	38.8	18.6	4.5	100
	여자	2.2	16.1	33.5	34.9	13.3	100

(사례수=1430)



<그림 55> 학내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 여부(성별)

질적조사에서도 교사들은 인권문제에 대하여 인식은 있으나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인 것 같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다. 인권의식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 개인적으로 본인의 경우 의식은 있으되,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거나 혹은 항의할 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사립학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의식이 있으되 현실에 순응해야하는 설움은 때로 더욱 크다.(30, 남, 사립계고등학교 교사)

IV. 요약 및 제언

1. 조사결과의 요약

1) 인권지식의 수준

교사들은 인권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빈약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정확한 인권 개념이 형성되지 못한 교사들에 의해 체계적이지 못한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권의식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인권지식 조차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학교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기본적인 인권지식부터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자기연찬과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다음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교사들이 지닌 인권의식의 두드러진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교사들은 인권의식에 있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 교사의 권리는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에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둘째, 인권의식의 수준은 성별, 연령별, 학교 급별 및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없다. 다만 인권문제와 관련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젊은층과 여성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인권침해에 대해 다소 저항적인 속성을 보여주었으나, 학교공동체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었다.

셋째, 교사들은 인권교육을 못 받았거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활동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부지불식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교육주체의 인권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수준

(1) 교사의 인권

교사들은 교사인권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 수준에 비해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은 소극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관료주의적인 학교운영 형태, 능력보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학교풍토, 과거의 관례에 안주하려는 무기력한 태도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교사들이 자신의 인권과 관련하여 보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인권에는 교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부여된 교육할 권리, 즉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권, 교재의 채택 및 선정권, 교육방법의 결정권, 교육평가의 권한, 징계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둘째, 교사들은 자신들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로 학교 운영권자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침해의 주체가 학교운영권자, 행정관료, 혹은 연령이 높은 선배교사나 부장교사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남교사 보다 여교사들이 불합리한 이유(성, 직급, 연령, 서열 등)로, 혹은 학교 운영권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많이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교사들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할 경우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교사의 경우, 인식수준에 비해 실천은 남교사들 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교사들 스스로의 패배주의와 연결되며, 직업에 대한 자존감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의 인권의식과 실천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학교교육에서 관료적 권위주의가 교사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학부모의 인권

교사들이 학부모의 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학부모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이를 침해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중요성의 인식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학교조직이나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교사 개인의

가치관과 달리 행동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한 높은 연령의 교사들과 농어촌·도서지역의 교사들이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를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해 사례도 높게 조사되었다. 이것은 경력과 나이가 많은 교사일수록 교육활동을 교사 개인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 문화의 특성상 대도시에서는 학부모의 발언권이 우세한 반면,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일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면서 교사의 발언권이 우세하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3) 학생의 인권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의 학교생활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로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상은 교사의 인권에서와 같이, 구조적 요인에 의해 교사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달리 행동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 학습권

중등학교의 현실적 교육목표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있으며, 교사들 역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이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배경은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입시와 학벌사회라는 제도적 조건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습내용과 교육방법을 결정하게 되고 성적 향상이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이라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 자치권

학생의 자치권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치

기구(학생회, 학급회, 동아리활동 등)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하고 학교의 규칙이나 규율의 제정을 통해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에도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명목상의 자치활동일 뿐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치권을 중요하게 인식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다. 사생활보호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생활보호를 학생인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두발, 복장 등)가 학생과 교사(혹은 학교당국)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사생활을 중요한 인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교사들이 처한 제도적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과밀학급에서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을 학생지도의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또한 교사들은, 성공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가능한 많은 개인정보의 수집·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들의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교사 중심의 사고, 통제 중심주의, 결과 중심주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학생의 종교 선택권의 경우,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학생의 종교선택권을 침해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계 사학재단의 운영방침이나 미션스쿨의 전반적 분위기로 인해 교사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학생의 종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체벌

체벌에 관해서는 상당수의 교사들이 심리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교육수단으로서의 체벌이 최선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체벌에 의존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체벌을 최선의 교육수단으로 생각한다면 학생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체벌과정에서 학생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체벌이 최선의 교육수단이 아니며 여기에 일정한 심리적 가치갈등이 내재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심리적 갈등요인은 크게 2가지로서 ①체벌이 최선은 아니지만 학생 동의 하의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와 ② 체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학부모나 해당학생 혹은 다른 학생들의 문제제기 등)에 대비한 조그마한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젊은 층의 교사들이 학생지도과정에서 체벌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적절한 교육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과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체벌을 인권침해라기보다 교육(혹은 훈육)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 징계

학생의 징계와 인권의 관련성은 적법절차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적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학생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적 차원에서 적법절차의 원리는 징계의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형사법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학교당국이나 교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최소한의 교육적 의의는 인정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징계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보호할 권리에 대해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가 교사들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징계 규정 자체가 학생선도라는 합목적성을 지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절차적 정의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 학교운영의 학생참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사들은 주요한 학사운영의 의결과정(혹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

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전히 교사들이 학생들을 적극적인 의미의 교육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3) 인권신장을 위한 교사들의 실천 수준

다음은 교사들이 인권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인권침해나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것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불합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주로 자신의 주변 문제에 한하여 적극적인 반면, 사회공동체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회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교사들의 참여와 저항의식은 신장되었지만, 자신의 주변 일에 국한한 참여와 저항에 머물고 있어서 ‘잃어버린 자신의 권리 찾기’와 같은 소집단 이기주의의 편향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교사의 사회참여의식에 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며,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전통적인 가치관에 적게 영향을 받은 젊은층과 도시지역에서 사회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연령과 지역의 문화적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여교사들의 사회참여와 저항의식이 남자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를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남교사들 보다 여교사들이 사회참여에 관한 가치갈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2. 제언 : 교사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5대 과제

지금까지 제시한 조사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교사들은 인권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 상당히 빈약하고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권의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더군

나 사회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신장된 참여의식과 저항의식은 아직 소집단 이기주의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신장되고 바람직한 학교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지식부터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교사들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들의 인권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수가 필요하다. 교육 및 연수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니세프,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육관련 연구소와 교육청,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등으로 다양화시키고 연수경비 지원, 학점인정, 강사풀 제도 등의 제도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인권관련 단체나 시설 견학,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봉사활동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인권교육 강좌를 개설한다면 교육적 효과가 크리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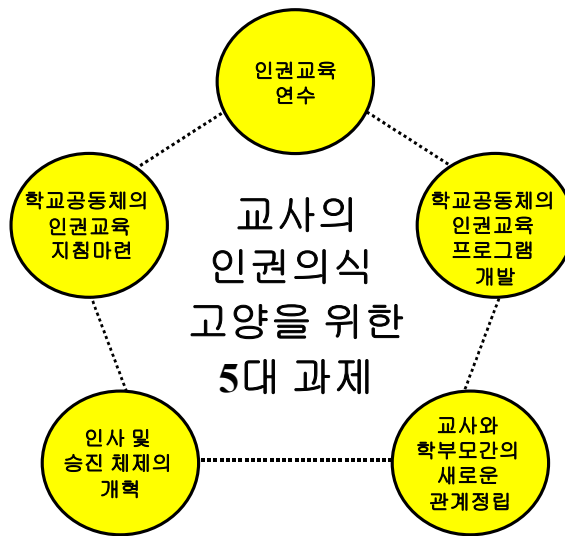
둘째, 인권교육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내 자료의 성격을 띄는 『학교공동체의 인권지침서』(가칭)의 개발·보급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 『지침서』 내에는, 인권의 명확한 의미와 행사 범위, 아동·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 교사의 권리·의무 및 권한 행사의 한계 등에 관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인권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가령 세계인권의 날을 기점으로 하여 영화상영, 초청인사 강연, 전시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회, 연극 공연 등도 가능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권의식의 고양과 실천을 위해 상담활동과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현장에는 인권에 관한 관심을 가진 교사들이 자생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영속성이 부족하고 연구성과의 공유와 확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자생적 모임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학생들의 인권 동아리 활동도 지원한다면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사와 승진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는 교사들이 자신의 인권은 물론 타인의 인권을 소신 있게 보호·실천하기가 힘들다. 교장의 선출 보직제, 교감의 권한 조정, 평교사에 대한 대우 등을 중심으로 한 승진체제가 개혁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와 학부모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참여권은 상호협력적 권리관계라고 볼 수 있으나, 때로는 긴장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서로 침해하여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제 교사들은 학부모 권리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야할 시점에 와 있으며,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유의미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자각하고 참여하는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인간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참여해야 하며 교사들은 학부모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위의 5대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림 56> 교사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5대 과제

참 고 문 헌

1. 국내 단행본

- 김외숙·김정래·고전(1999),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RR 99-12), 한국교육개발원.
- 김중섭(2001), 『한국지역사회의 인권』, 서울: 오름.
- 김중섭(2002), 『한국어린이, 청소년의 인권』, 서울: 오름.
- 강성빈(1992), 『교육이라는 이름의 신화』, 서울: 양서원.
- 강순원(편역)(1987), 『미국의 대학과 노동계급』, 서울: 창작사.
- 강순원(2000), 『평화, 인권, 교육』, 서울: 한울아카데미
- 교육개혁위원회(1997), 『학생체벌,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교육개혁위원회 참고자료 97-1.
- 교육법전편찬회(편)(1998), 『교육법전』, 서울: 교학사.
- 국제인권위원회(1997), 『인권교육의 기법』, 서울: 인간과 복지.
- 권영성(1994),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경동 외(2000),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 김대현·김인용(역)(1991), 『교육과 권리』, 서울: 양서원
- 김성재(2002), 『인권시대를 향하여』, 서울, 나남.
- 김신일(1995), 『시민의 교육학』, 서울: 한길사.
- 김철수(1994),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 김해동(2000), 『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 김효전(역)(1991), 『인권선언논쟁』, 서울: 법문사.
- 김흥주 외(1998), 『한국 중등학생의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남억우 외(1988), 『최신 교육학 사전』, 서울: 교육과학사.
- 또 하나의 문화(1997), 『새로쓰는 청소년 이야기 1』,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또 하나의 문화(1997), 『새로쓰는 청소년 이야기 2』,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문홍주(1987), 『제6공화국 한국헌법』, 서울: 해암사.

문화관광부(1999),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 문화관광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1992), 『한국의 인권 실상』 서울: 역사와비평사.

박경서(2002), 『인권대사가 경험한 한반도와 아시아』, 서울: 울림사.

박기갑(1999),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서울: 삼우사.

박윤흔(1993), 『최신행정법강의(상)』, 서울: 국민서관.

배경내(2000),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서울: 우리교육.

사회민주주의연구소(편)(1993), 『현대사회와 인권』, 사회민주주의연구소.

석인선(역)(1995), 『인권의 역사』, 서울: 한울.

손호철(1995),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서울: 새길.

심정보 외(1989), 『교육현장』, 서울: 사계절.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7),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9), 『유네스코포럼』 제9호, 서울: 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0), 『인간은...』, 서울: 사람생각.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0), 『아시아의 인권교육』, 서울: 사람생각.

윤후정(1992), 『기본적 인권과 재판』, 서울: 이대출판부.

이관기(1993),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서울: 한국교육문화원.

이봉철(2001), 『현대인권사상』, 서울: 아카넷.

이봉철(1994), 『포스트모던 변화와 정치사상』, 서울: 인간사랑.

이상규(1989), 『신행정법론(하)』, 서울: 법문사.

이승희(1994),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이종각(1990), 『한국교육학의 논리와 운동』, 서울: 문음사.

이종각(1997), 『교육사회학총론』, 서울: 동문사.

이종각(1997), 『교육인류학 탐색』, 춘천: 하우.

이혜영 외(1990),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길사.

인권운동사랑방(1999),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2000), 『어린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을 여는책.

윤후정(1997), 『기본적 인권과 평등』, 서울: 박영사.

장호순(1998),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서울: 개마고원.

전명화(1996), 『고3엄마 고생엄마』, 서울: 창조사.

- 정범모(1997), 『인간의 자아실현』, 서울: 나남.
- 정범모 외(1994),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서울: 나남.
- 정재걸(1992),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구상(Ⅲ)--학생들의 삶과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 정태수(1991), 『아동의 권리협약--청소년의 권리--』, 서울: 예지사.
- 조명한(외)(1993),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I』,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조 은(1998), 『091012』,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혜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희연(1998),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서울: 당대.
-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3), 『청소년의 삶, 고민과 대화』
- 최용기(1999), 『법과 인권』, 서울: 대명출판사.
- 최용기·서경무(1992), 『인권과 법』, 서울: 한철학과 통일헌법연구소.
- 최윤진(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하승수(1999),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서울: 사계절.
- 한국인권재단(2002),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I.Ⅱ』, 서울: 사람생각.
- 한국인권재단(2000), 『21세기의 인권 1,2』 서울: 한길사.
- 한국교육개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7), 『공고 2·1체제 운영 안내 자료』
- 한국교육연구소(1999), 『한국교육연구소소식 제37호』, 서울: 한국교육연구소.
- 한국교육연구소(1993), 『참교육, 그 이해와 오해』,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한상범(1999), 『인권수첩』, 서울: 현암사.
- 한상진(1999),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
- 한국여성의 전화(1997), 『교사·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 한국청소년학회(1999), 『청소년의 인권 정책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2. 국내 논문류

- 강순원(1998), “한국인권교육에 관한 종합적 고찰과 방향”, 세계인권선언50주년

- 기념사업위원회 국제회의 발표원고.
- 강정인(1997), “대안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서울: 창작과비평사, pp.49-75.
- 김대환(1998),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
- 김도중(1997), “외국 학생운동사의 흐름과 시사점”, 『대학교육』 1997/9-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범주(1994), “교사와 학생을 위한 적법절차”, 『미국헌법연구』 제5호, 미국헌법연구소.
- 김성기(1994),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 재량권의 근거와 한계 : 교육의 근거와 법리를 중심으로”, 『교육법연구』 제6호, 대한교육법학회.
- 김신일(1998), “학교에서의 학습권”, 『새교육』 1998년11월호,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 김은경(1999), “학생인권 신장방안 모색”, 『학생인권세미나 자료집』
- 김종길(1996),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사회”, 『현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사회비평사, 1996, pp.31-68.
- 김진경(1997), “학교교육, 존재 자체의 위기 그리고 대안(1)”, 『한국교육연구소 소식』, 한국교육연구소, pp.16-24.
- 김철수(1994), “한국에서의 인권론의 도입과 전개”, 한국법학교수회(편), 『법학교육과 법조개혁』, 서울: 길안사, pp.187-227.
- 김태선(1989),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결성사”, 『교육현장』 2호, 서울: 사계절, pp.12-21.
- 김혜선(1997),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의식 조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한국여성의 집 성폭력 상담소, pp.6-38.
- 김형곤(1990), “자연법이론의 기본적 인권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다산인권센터(2002), “청소년 인권의식 표본 조사 발표 및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토론회”, 다산인권센터
- 류은숙(1997),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각 조항 해설”,

-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은 여는 책, pp.25-99.
- 류은숙(1998), “그들에게 인권을 가르치자”, 『우리교육』 1998년 11월, 서울: 우리 교육사, pp.58-61.
- 문부식(1999), “안이함을 거슬러, 자유정신을 찾아서”, 『당대비평』 제8호, 서울: 삼인, pp.18-26.
- 문용린(1988), “학교는 학생들의 삶을 왜곡시키고 있는가? ---차분한 논의를 위한 출발 ---”, 한국교육개발원 원내 세미나 발제원고.
- 문용린(1999), “교육개혁과 신뢰사회 형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21주년 개원 기념 ‘신뢰사회와 21세기 한국’ 세미나 원고.
- 박형준(1997), “민주화, 권력의 재구조화, 그리고 성찰적 시민사회”, 『경제와 사회』 제34호, 서울: 한울, pp.20-50.
- 서남수(1995),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원우·이강혁(1986), “학교와 학생간의 법적관계”, 『공법학연습』, 서울: 법지사, pp.406-410.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 학교 교육에서의 인권, 교권, 학습권의 위상”, 『제3회 관악교육정책포럼 자료집』
- 서준식(2000),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자료.
- 심희기(1999), “한국의 교육체벌의 실태와 한국인의 체벌담론의 현위치”,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 오인탁(1996), “사회갈등·비평화·비인간화의 교육적 해결의 과제”, 『사회과학 연구』 제5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pp.385-445.
- 유팔무(1998), “참여민주주의와 대안적 교육체제의 모색”,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제38호, 서울: 한울, pp.6-32.
- 윤명선(1994),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高鳳法學』 창간호, 고황법학교수 연구회, pp.31-55.
- 이관기(1993),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광호(1988), “인권의 국제적 보장”, 『법학논총』 제1집,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pp.39-56.

- 이돈희(1998), “교육문화의 재정립”,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개혁 국민대토론회 주제강연원고.
- 이봉철(1992),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 등』, 한국청소년연구원, pp.99-127.
- 이석호(1999), “인권교육과정 구성방안에 관한 연구”-초등사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수광(1999), “학생인권신장방안연구”, 강원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 이영희(1999), “정보화와 사회적 논쟁 - 전자주민카드 논쟁에 대한 과학기술 사회학적 분석”, 『경제와 사회』 제42호, 서울: 한울, pp.171-203.
- 이용교(1998), “한국에서 인권교육의 현실과 대안”, 세계인권선언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국제회의 발표원고, 1998년 10월 19일.
- 이용숙(1996), “한국 학교문화의 특성과 잠재적 교육과정”,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제29호2권, 서울: 소화, pp.289-340.
- 이원희(1999), “‘체벌없는 학교만들기’가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를 초대하지 않아야”, 『교육적 체벌,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토론회 자료집, pp.48-49.
- 이명균(1999),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교총.
- 이천수(1994),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인권운동사랑방(2002), “청소년 노동실태 보고서”, 카톨릭 대학생 연합회 현장 실천위원회.
- 이충일(1996),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교조 학생생활연구회(2002),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교사운동”, 대숲, 여름8호
- 정다희(1999), “학생체벌, 교육적 체벌의 기준으로 행해져야”,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교육적 체벌,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pp.55-57.
-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1998), 『98사이버 권리백서』
- 정진환(1996), “학생체벌 및 징계의 법리적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14권 4호, 한국교육행정학회, pp.227-254.
- 조동기(1996),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간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의 문제-전자공

- 동체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한국사회학회,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현대 사회』, pp.41-57.
- 조명환(외)(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권 2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pp.61-93.
- 조석훈(1996), “학생징계의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용환(1993), “청소년연구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청소년의 실체와 청소년 문화의 이해”, 『한국청소년연구』 제4권 제3호, 한국청소년연구원, pp.5-17.
- 조용환(1995), “학교 구성원의 삶과 문화: 교사와 학생, 그들은 행복한가? ”, 『교육학연구』 제 33권 4호, 한국교육학회, pp.77-91.
- 조용환(1998), “인권, 민주주의, 국가: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세계인권선언50주년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1998.11.19.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1999),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1999.4.3일 토론회 자료집.
-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5), “오빠부대 어떻게 볼 것인가?”, 제12회 청소년문제 토론광장 자료.
-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1999), 학교폭력상담사례집 제3호,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 최상룡(1997), “한국의 민주화는 공고화 단계”, 대학신문, 1997년 9월 1일.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9), “교육적 차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1999), “학생의 인권에 관한 보고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청소년 개발원(1997), 『청소년인권보고서』 서울: 인간과 복지.
- 한국산업사회연구회(1993),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학술단체협의회(편),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서울: 창작과 비평사, pp.177-211.
- 한국여성의 전화(1997),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성폭력 실태 및 대책 토론회 자료집.
- 한신대학교 민중교육 연구소 (1999), 『인권교육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완상(1997), “한국사회의 민주화: 반성과 전망”, 『경제와 사회』 제34호, 서울: 한울, pp.8-19.
- 한완상·리영희(1999), “기로에 선 현정권의 대북정책”, 『창작과 비평』 제105호,

창작과 비평사, pp.122-123.

한완상(1999), “청년·사회·역사, 『한국청년의 시대적 역할과 과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외) 공동세미나 자료집, pp.7-15.

홍성방(1996), “제3세대 인권”, 『법정고시』 2월호, pp.32-44.

3. 영문 단행본 및 논문

Bartlett, Larry & James McCullagh(1993), "Exciusion from the Eduactionnal Process in the Public Schools: What Process is Now Due", Brigham Young University Education and Law Journal, Spring.

Bell, D(1978),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rlism, N. Y.: Basic Bks, Inc.,Publishers.

Banks, James A. and Cherry A, McGee Banks(1999), 'Teaching social issues and human rights', The Social Studies : Nature and goals, Teaching Strategies for Social Studies, Longman.

Schwarz Bernard(1971), The Bill of Right: A Documentary History, New York: McGrow Hill Book Company.

Bowdoin, W. R.(1974), "Balancing In Loco Parentis and the Constitution: Definingthe Limits of Authority over Florida's Public High School Students", 26 Univ.of Florida L. Rev, pp.272-274.

Campbell, T. D.(1992), The Right of the Minor: as Person, as Child, as Juvenile, as Future Adult, in: P. Alston et al.(eds), Children, and the Law p.1(1992)

Carl, J. Friedirich, 박남규(역)(1987), 『헌법의 기본정신』, 서울: 법문사.

Correnti, R. J.(1988), How Pudlic and Private Institutions Differ Under the Law, Student Services and the Law, Jossey-bass Publ.

Dale, M., 한국교육정치학회(1994), “참여, 대표, 통제”, 『교육정치학론』, 서울: 학지사.

Daniel, B., 심영희 역(1996), “서구적 인권체제에 대한 동아시아의 도전”, 사회과학원, 『계간 사상』, pp.46-56.

- Feinberg, J.(1973), Social Philosophy, N. J.: Prentic Hall Inc.
- Foucault, M., Surveiller et Punir, 오생근 역(1994),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
- Habermas, J.(1971), "Vorbereitende Bemerkungen zu einer Theorie der Kommunikativen Kompetenz", in J. Habermas and N. Luhmann,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 - Was leistet die System- forschung? F.a.M., pp.101-142.
- Habermas, J.(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Two, Boston: Beacon Press.
- Huber, W & Tödt, H. E.(1976), 주재용·김현구(역)(1992), 『인권의 사상적 배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Jack, D.(1988),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Cornell University Press.
- Dever, James C.(1985), "Tinker Revisited: Fraser v. Bethel School District and Regulation of Speech in the Public Schools," 1985 Duke L. J. 1164, pp.1171-1192.
- Karier, C.(1967), Man, Society, and Education,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 Katz, M. S.(1992), 'Respect for Persons and Students : Charting Some Ethical Territory' in Philosophy of Education 1991(Normal, II: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 1992).
- Lauterpacht, H.(1950),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Stevens & Sons,
- Louis, F & David Schimmel(1982), The Right of Students and Teachers,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 Mackinnon, C. A(1979),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 Miller, A. R.(1971), The Assault on Privac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1994), Curriculum Standard for

- Social Studies, Washington, D.C. NCSS, pp3-30.
- Popper, K. R.(1971),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 1,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wls, J.(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
- Reutter, E .E.(1985), The Law of Public Education,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Inc.
- Richard, S. D & Turner, L. C.(1987), The Courts and the Schools, New York: Wald, M. S.(1979), "Children's. Rights : A Framework for Analysi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aw Review(vol. 12), pp.242-273.
- Webster, Frank(1995), Theories of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조동기(역), 『정보화사회론』, 서울: 사회비평사, 1997.
- Weckstein, P.(1982), School Discipline and Student Right : An Advocate's Nannual, Cambridge Center for Law & Education.

4. 기타

-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사용 지도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중학교 2학년 『사회』 교과서, 금성출판사.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부 록

-
1. 설문지
 2. 관찰조사지
 3. 면접조사지
 4. 포트폴리오 작성지
 5. 설문 조사결과 분석표(빈도분석)
 6. 설문 조사결과 분석표(교차분석)
 7. 관찰조사 결과 분석표
 8. 면접조사 자료
 9. 포트폴리오 자료
 10. 포커스 조사 분석자료
 11. 면접조사자 훈련자료
-

1. 설문지

II

--	--	--	--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사단법인 부산교육연구소가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학문적 연구와 정책개발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부산교육연구소
Bus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051-556-6785 / <http://www.pusanedu.or.kr>)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700 / <http://www.humanrights.go.kr>)

다음 질문은 인권에 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질문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보기에 V표를 하십시오.

1-1.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A협약과 B협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모른다.

※ 현대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에 관한 설문입니다.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사회적 쟁점	내 생각에는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2	사형제도 폐지				
1-3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1-4	소수자(장애인, 아동, 노인 등) 권리 보호				
1-5	여권신장운동(호주제 폐지, 모성보호 등)				
1-6	환경우선정책(동강 살리기, 새만금갯벌 살리기 등)				
1-7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대체 복무제 도입 등)				
1-8	난민의 인권보호(탈북자 난민지위 인정 등)				
1-9	재소자의 인권보호(의료권 보장 등)				
1-10	공권력(검·경찰, 교도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				

※학부모의 인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권리 항목	내 생각에는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11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관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1-12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부모가 선택할 권리				
1-13	학부모가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1-14	학생의 징계에 대해 학부모가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				
1-15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에 대해 학점을 준다면?	①F	②D	③C	④B ⑤A

※학부모의 인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침해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 해당되는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권리 항목	침해한 적이 있는가?	
		있다	없다
1-16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관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1-17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부모가 선택할 권리		
1-18	학부모가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1-19	학생의 징계에 대해 학부모가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권리 항목	내 생각에는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20	학생이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1-21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소지품검사, 몸수색, 사물함 수색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1-22	학생의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성적이나 학생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1-23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1-24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1-25	학생의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권리				
1-26	학생이 징계를 받을 경우,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				
1-27	학생이 징계절차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				
1-28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 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1-29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에 대해 학점을 준다면?	①F ②D ③C ④B ⑤A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침해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 해당되는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권리 항목	침해한적이 있는가	
		있다.	없다.
1-30	학생이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1-31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소지품검사, 몸수색, 사물함 수색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1-32	학생의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성적이나 학생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1-33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1-34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1-35	학생의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권리		
1-36	학생이 징계를 받을 경우,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		
1-37	학생이 징계절차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		
1-38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 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교사의 인권에 관한 문항입니다.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권리 항목	내 생각에는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39	남자교사 혹은 여자교사인 것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1-40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1-41	예결산, 인사, 학교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 받을 수 있는 권리				
1-42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1-43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교재채택료, 공문, 출장 등)				
1-44	교육당국(교육부 등)이나 학교 관리자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기자재,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45	학교에서 교사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에 대해 학점을 준다면?	①F ②D ③C ④B ⑤A			

※교사의 인권에 관한 문항입니다. 생활 속에서 침해받아 본적이 있는가 없는가 해당되는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권리 항목	침해 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	없다
1-46	남자교사 혹은 여자교사인 것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1-47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1-48	예결산, 인사, 학교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1-49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1-50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교재채택료, 공문, 출장 등)		
1-51	교육당국(교육부 등)이나 학교 관리자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기자재,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음 질문은 인권에 관해 알고 있는 개념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질문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보기에 V표를 하십시오.

2-1. 최근 1년 간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활동(수업, 조·종례, 훈화 등)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1회~2회 ②3회~4회 ③4회 이상 ④없다.

2-2. 학생을 처벌해야 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 ①훈계한다.
②학생의 동의 하에 체벌한다.
③학생의 동의 없이 체벌한다.
④징계하지 않는다(무관심).
⑤기타

2-3. 생활지도, 학급운영 시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①민주적 절차를 거쳐 반영한다.
②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반영한다.
③대체로 반영하지 않는다.
④무시한다.

2-4. 학생들이 수업을 평가하고,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제안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 ①학생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적극 반영한다.
②학생들의 제안을 듣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③무시한다.
④교사의 권한 침해이므로 주의를 주거나 제재를 가한다.

다음 질문은 사회참여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질문을 잘 읽어 보시고 해당되는 보기에 V표를 하십시오.

※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권리 항목	내 생각에는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3-1	교사가 학내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권리				
3-2	교사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평교사회, 교원단체 분회모임 등)				
3-3	교사가 학교 밖의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실제로 생활 속에서 침해받아 본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 해당되는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항목	침해 받아 본적이 있는가?	
		있다	없다
3-4	교사가 학내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권리		
3-5	교사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평교사회, 교원단체 분회모임 등)		
3-6	교사가 학교 밖의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7. 악법은 준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개폐를 위해 저항해야 합니까?

- ①저항해야 한다. ②준수해야 한다. ③모르겠다.

3-8. 시민운동단체나 인권운동 관련단체(엠네스티 등)에 회원으로 참여하시거나 후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3-9. 선생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나 각종 교직원회의(교무회의, 교과협의회, 부장 교사회의 등) 에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편입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3-10.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학생회, 축제, 동아리 활동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거나 후원하시는 편입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3-11.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편입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다음 문항은 통계처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을 잘 읽어 보시고 해당되는 보기에 V표를 하십시오.

- 4-1. 선생님의 성별은 어떠합니까? ①남자 ②여자
- 4-2. 선생님의 연령은?
①20세~29세 ②30세~39세 ③40세~49세 ④50세~59세 ⑤60세 이상
- 4-3. 선생님의 교육 경력은?
① 0년~5년 ② 6년~10년 ③ 11년~20년 ④ 20년~30년 ⑤ 30년 이상
- 4-4. 선생님은 다음 중 어느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실업계 고교 ④인문고교 ⑤예체능계 고교 ⑥특수목적고
- 4-5.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학교의 설립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국공립 ②종교계 사립 ③비 종교계 사립
- 4-6. 현재 선생님이 담당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중등학교 선생님만 답하십시오.)
①국어교과 ②사회 및 도덕교과 ③과학교과 ④외국어교과 ⑤수학교과
⑥실과(기술·가정) 및 실업교과 ⑦예체능 및 교련교과 ⑧기타
- 4-7. 현재 선생님이 근무하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특별시 혹은 광역시 ②중소도시 ③농어촌 및 도서지역
- 4-8. 현재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어느 지역입니까?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남 ⑬전북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 끝까지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의 분석결과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2. 관찰조사지

관찰조사 체크리스트

()월 ()주 학교 ()
관찰자 교사명(), 피관찰자의 인적사항 (나이:) 성별:)

◆ 일주일 교사 평가 척도 -----

1.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모르겠다

2. 학생들과 인격적이고 일상적인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는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모르겠다

3.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인권침해가 일어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모르겠다

4.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잘못을 하면 벌을 심하게 주는 편이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모르겠다

5.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무시하는 편이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모르겠다

6.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시하는 편이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모르겠다

7. 학생들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 체벌을 주로 사용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모르겠다

8. 학생들이 자치권 보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모르겠다

9. 학생들의 자치와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모르겠다

10. 인권교육을 수업시간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모르겠다

11.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며, 교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모르겠다

12. 동료들과 더불어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는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모르겠다

13. 본인이나 주위의 교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모르겠다

14. 인권관련 교사단체나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모르겠다

◆ 동료들의 인권의식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작성하면서 느끼는 간단한 소감을 적어 주십시오.

※ 끝까지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의 분석결과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3. 면접조사지

다음 문항은 기초자료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보기에 V표를 하십시오.

1. 선생님의 성별은 어떠합니까? ①남자 ②여자
2. 선생님의 연령은?
①20세~29세 ②30세~39세 ③40세~49세 ④50세~59세 ⑤60세 이상
3. 선생님의 교육 경력은?
① 0년~5년 ② 6년~10년 ③ 11년~20년 ④ 20년~30년 ⑤ 30년 이상
4. 선생님은 다음 중 어느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실업고교 ④인문고교 ⑤예체능계 고교 ⑥특수목적고
5.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학교의 설립유형은 어떠합니까
①국공립 ②종교계 사립 ③비 종교계 사립
6. 현재 선생님이 담당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중등학교 선생님만 답하십시오.)
①국어교과 ②사회 및 윤리교과 ③과학교과 ④외국어교과
⑤수학교과 ⑥가정 및 실업교과 ⑦예체능 및 교련교과
7. 현재 선생님이 근무하는 지역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①특별시 혹은 광역시 ②중소도시 ③농어촌 및 도서지역
8. 현재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어느 지역입니까?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남 ⑬전북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9. 선생님은 교사로 발령 받은 이후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몇 회 정도 받아보셨습니까?
①1회~2회 ②3회~4회 ③5회~6회 ④7회 이상 ⑤ 받은 적이 없다.

1. ‘교사의 인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2. 선생님이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3. 다음의 예와 같은 일이 있을 경우 선생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교사평가사이트」 개설 운영에 관한 대응

A전산정보 회사가 교사의 강의를 평가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이 사이트에서는 해당 교사들의 사전 인지 및 동의 없이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하여 수업준비도, 수업방식, 인성교육 및 전문성을 체크하여 평가한 결과를 올리도록 되어있다.

4. 선생님은 우리나라 교사의 인권의식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포트폴리오

다음 문항은 기초자료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보기에 V표를 하십시오.

1. 선생님의 성별은 어떠합니까? ①남자 ②여자
2. 선생님의 연령은?
①20세~29세 ②30세~39세 ③40세~49세 ④50세~59세 ⑤60세 이상
3. 선생님의 교육 경력은?
① 0년~5년 ② 6년~10년 ③ 11년~20년 ④ 20년~30년 ⑤ 30년 이상
4. 선생님은 다음 중 어느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실업고교 ④인문고교 ⑤예체능계 고교 ⑥특수목적고
5.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학교의 설립유형은 어떠합니까
①국공립 ②종교계 사립 ③비 종교계 사립
6. 현재 선생님이 담당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중등학교 선생님만 답하십시오.)
①국어교과 ②사회 및 윤리교과 ③과학교과 ④외국어교과
⑤수학교과 ⑥가정 및 실업교과 ⑦예체능 및 교련교과
7. 현재 선생님이 근무하는 지역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①특별시 혹은 광역시 ②중소도시 ③농어촌 및 도서지역
8. 현재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어느 지역입니까?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남 ⑬전북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9. 선생님은 교사로 발령 받은 이후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몇 회 정도 받아보셨습니까?
①1회~2회 ②3회~4회 ③5회~6회 ④7회 이상 ⑤ 받은 적이 없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겪었던 체험 중 인권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형식에 관계없이 기술해 주십시오.

(예문 : 별지 참조)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예문>

뒤돌아본 나의 인권 체험-교사시절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시작한 교사생활이었지만 아직 학교현장은 봄이 오지 않았다. 오래 살아남기 위해 우회적 표현을 쓰며 수업을 해야 했다. 어쩌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면 가슴을 떨어야 했다. 조금 비판적 이야기를 수업에서 하고 나오다가 교실의 계단을 내려오던 중 ‘선생님’하고 누가 부르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시대에는 양심을 가지고 수업을 하려는 교사는 모두 심장병을 조금씩 가지고 교육활동을 해야 했다.

수업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잠깐 수업을 하다가도 간혹 왁자지껄 시끄러운 경우가 적지 않은데 어느날 스피커에서 ‘그 어느 수업인데 그렇게 떠들어!’하는 것이었다. 스피커가 나의 수업을 도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는지는 미처 몰랐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방금 누구 목소리야!’ 하고 말했다. 아이들은 ‘교장선생님요!’ 하는 것이었다. 순간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분명 수업이 감시당하는 것이고 ‘강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한 후 뒤에 가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혔다. 수업이 끝난 후 교감선생님에게 이럴 수 있는냐고 말씀드렸더니 대신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 한국의 학교에서는 토론문화가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침묵의 문화가 온 교정을 에워싸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침묵의 문화 속에서는 창의적 사고가 발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의 학교에서는 강패교사가 주름을 잡는다. 월요일 애국조회에 때가 되면 평퍼짐한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학생들을 정열시키는 교사가 있다. 그 교사는 이 날만 되면 활개를 친다. 조금이라도 장난을 치거나 줄을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앞드려 뺨치게 하여 몽둥이로 치기가 일 수이다. 이 날만 되면 여기저기서 ‘딱’ ‘딱’ 소리가 요동을 치기에 그 교사의 별명이 ‘딱선생’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이런 ‘폭력적 교사’가 활개를 치는 데도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다. 명문 사립학교가 이 정도니 다른 학교는 오죽 하겠는가? 이런 분위기는 결국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이 학교를 몽둥이로 다스리게 하는 폭력을 방조한 문화를 조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적 분위기보다 치안적 분위기가 학교문화를 장악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납부금을 제 때 내지 못한 아이들을 오후에 교무실에 불러 약속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손바닥에 매를 대는 교사들도 있다. 사립

학교 교사들은 학급아이들로 하여금 등록금 독촉을 하는 징수원의 역할을 해야 했지만, 가난한 아이들이 돈을 제 때 내지 못한 아이들에 향해 ‘이 악어새끼야! 말 안들을래! 조센징은 때려야 말을 들어!’ 하면서 ‘손을 내!’하고 매질을 하는 교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척 아팠다. 악어라는 표현은 산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물이 부족하여 손을 잘 씻지 못해 손등이 때가 끼어 뻘뻘하게 된 산동네 아이들을 두고 비하한 말인데 이런 ‘계층적 모독’의 말을 교사가 쉽게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중대한 인격의 모독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행정에 있어 상담적 기능보다 치안적 기능이 지배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웠다. 담임으로서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 ‘담임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거의 학생부에 의해 박탈되는 것이 일상이 되곤 하였다. 간신히 내가 담임을 맡고 있을 때 보호를 잘 해도 학생이 학년이 바뀌면서 퇴학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을 담임이 보호하기가 쉽지가 않다. 말썽을 부리는 학생이 같은 반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의 태도를 견디어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때 학교의 질서를 주도하는 세력은 학생부이다. 정권의 막강한 후원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는 부서가 학생부이다. 지금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생부는 경찰서의 형사적 기능을 하는 것 같았다. 학생부가 상담실을 제압하는 학교, 이런 학교를 양산하는 풍토가 당시의 교육환경이었지만, 지금도 이런 경향은 좀처럼 사라지고 있지 않는 듯하다. 사랑과 배려가 교육정신의 본래성임에도 처벌이 능사인 것처럼 처리하는 학생부의 교육관은 학생들의 권리 및 인격의 침해를 가져오기가 쉽다.

교사시절 늘 인권의 피해자 또는 인권의 수호자로서 교육활동을 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다른 동료교사로부터 우리 반이 위낙 떠든다고 잦은 지적이 있자, 떠든 사람을 횡수별로 체크를 하여 몽땅 적어내라고 하였다. 당시 교사를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떠드는 것도 교육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하던 때였기에 우리 반은 유달리 떠들었다. 이랬기에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이다. 누가 적는지를 모르게 비밀로 하여 남몰래 적어내게 했고, 그 지적을 받은 아이들로 하여금 오후에 남게 하여 교무실로 오라는 일을 몇 일간 계속하였고, 교무실 오기를 경찰서 가는 일보다 겁을 먹는지라 아이들은 조용해지기 시작하였다. 때로는 종례 시간에 잔소리도 하고, 떠드는 학생들을 청소도 시키고 하였으니 아이들은 쥐죽은듯 조용하였다.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왜 일어나며 달려졌다고 나에게 고무적인 발언을 몇 마디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일 주일쯤 지났을까? 아이들과 나와의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서로

사무적으로 바뀌었고, 서먹서먹한 관계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서로 진실한 말과 친근한 대화가 없어지기 시작했으니 교육적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었다. 너무 조용해진 것이다. 수업에 모두 쥐죽은듯 너무 조용해졌으니 활력이 있을 리 없었고, 마치 죽은 시체나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입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수업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답답해지기 시작하였다. 생명이 없는 물건을 놓고 수업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항복을 하고 말았다. 이름적어 내라는 일은 안할테니 떠들더라도 담임의 체면도 보아 적당히 떠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더 이상 이름적어내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후 떠드는 것 때문에 받는 동료교사로부터의 압력은 혼자 참아내려고 마음먹고 다시 이전의 교육관으로 돌아갔다. ‘떠드는 것도 교육이라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억압적 제도교육 속에서 해방감을 맛보는 것도 교육이라고!’ ‘떠드는 것도 아이들의 권리라고’

-중략-

교사는 학생들의 사상을 존중하고 경청하지 않고 억박지르며 무시해 버리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시하는 일이며, 비록 똥딴지같은 말이라도 대화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했다.

5. 설문 조사결과 분석표(빈도분석)

문1_1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A협약과 B협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잘 알고 있다	34	2.2	2.4	2.4
	조금 알고 있다	600	38.5	42.0	44.4
	모른다	793	50.8	55.6	100.0
	합계	1427	91.5	100.0	
결측	0	133	8.5		
합계		1560	100.0		

※현대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에 관한 설문입니다.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_2 사형제도 폐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56	3.6	3.6	3.6
	중요하지않다	260	16.7	16.9	20.6
	중요하다	866	55.5	56.4	77.0
	매우중요하다	353	22.6	23.0	100.0
	합계	1535	98.4	100.0	
결측	0	25	1.6		
합계		1560	100.0		

문1_3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1	.1	.1	.1
	중요하지않다	15	1.0	1.0	1.0
	중요하다	706	45.3	45.4	46.4
	매우중요하다	834	53.5	53.6	100.0
	합계	1556	99.7	100.0	
결측	0	4	.3		
합계		1560	100.0		

문1_4 소수자(장애인, 아동, 노인 등) 권리 보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중요하지않다	6	.4	.4	.4
	중요하다	501	32.1	32.3	32.7
	매우중요하다	1042	66.8	67.3	100.0
	합계	1549	99.3	100.0	
결측	0	11	.7		
합계		1560	100.0		

문1_5 여권신장운동(호주제 폐지, 모성보호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15	1.0	1.0	1.0
	중요하지않다	104	6.7	6.7	7.7
	중요하다	697	44.7	44.9	52.5
	매우중요하다	738	47.3	47.5	100.0
	합계	1554	99.6	100.0	
결측	0	6	.4		
합계		1560	100.0		

문1_6 환경우선정책(동강 살리기, 새만금갯벌 살리기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3	.2	.2	.2
	중요하지않다	15	1.0	1.0	1.2
	중요하다	574	36.8	37.0	38.2
	매우중요하다	959	61.5	61.8	100.0
	합계	1551	99.4	100.0	
결측	0	9	.6		
합계		1560	100.0		

문1_7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대체 복무제 도입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114	7.3	7.4	7.4
	중요하지않다	415	26.6	27.0	34.5
	중요하다	761	48.8	49.6	84.0
	매우중요하다	245	15.7	16.0	100.0
	합계	1535	98.4	100.0	
결측	0	25	1.6		
합계		1560	100.0		

문1_8 난민의 인권보호(탈북자 난민지위 인정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6	.4	.4	.4
	중요하지않다	84	5.4	5.5	5.8
	중요하다	1058	67.8	68.7	74.5
	매우중요하다	392	25.1	25.5	100.0
	합계	1540	98.7	100.0	
결측	0	20	1.3		
합계		1560	100.0		

문1_9 재소자의 인권보호(의료권 보장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3	.2	.2	.2
	중요하지않다	86	5.5	5.6	5.7
	중요하다	1062	68.1	68.6	74.4
	매우중요하다	397	25.4	25.6	100.0
	합계	1548	99.2	100.0	
결측	0	12	.8		
합계		1560	100.0		

문1_10 공권력(검·경찰, 교도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2	.1	.1	.1
	중요하지않다	20	1.3	1.3	1.4
	중요하다	627	40.2	40.3	41.7
	매우중요하다	908	58.2	58.3	100.0
	합계	1557	99.8	100.0	
결측	0	3	.2		
합계		1560	100.0		

※학부모의 인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_11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관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13	.8	.8	.8
	중요하지않다	273	17.5	17.6	18.5
	중요하다	1055	67.6	68.1	86.6
	매우중요하다	208	13.3	13.4	100.0
	합계	1549	99.3	100.0	
결측	0	11	.7		
합계		1560	100.0		

문1_12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부모가 선택할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25	1.6	1.6	1.6
	중요하지않다	222	14.2	14.3	15.9
	중요하다	975	62.5	62.9	78.8
	매우중요하다	329	21.1	21.2	100.0
	합계	1551	99.4	100.0	
결측	0	9	.6		
합계		1560	100.0		

문1_13 학부모가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1	.1	.1	.1
	중요하지않다	22	1.4	1.4	1.5
	중요하다	611	39.2	39.3	40.8
	매우중요하다	919	58.9	59.2	100.0
	합계	1553	99.6	100.0	
결측	0	7	.4		
합계		1560	100.0		

문1_14 학생의 징계에 대해 학부모가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10	.6	.7	.7
	중요하지않다	132	8.5	8.6	9.3
	중요하다	885	56.7	57.7	66.9
	매우중요하다	507	32.5	33.1	100.0
	합계	1534	98.3	100.0	
결측	0	26	1.7		
합계		1560	100.0		

문1_15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에 대해 학점을 준다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F	89	5.7	5.9	5.9
	D	273	17.5	18.2	24.1
	C	606	38.8	40.4	64.6
	B	457	29.3	30.5	95.1
	A	74	4.7	4.9	100.0
	합계	1499	96.1	100.0	
결측	0	61	3.9		
합계		1560	100.0		

※학부모의 인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침해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 해당되는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_16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관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308	19.7	20.1	20.1
	없다	1224	78.5	79.9	100.0
	합계	1532	98.2	100.0	
결측	0	28	1.8		
합계		1560	100.0		

문1_17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부모가 선택할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511	32.8	33.4	33.4
	없다	1017	65.2	66.6	100.0
	합계	1528	97.9	100.0	
결측	0	32	2.1		
합계		1560	100.0		

문1_18 학부모가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264	16.9	17.2	17.2
	없다	1274	81.7	82.8	100.0
	합계	1538	98.6	100.0	
결측	0	22	1.4		
합계		1560	100.0		

문1_19 학생의 징계에 대해 학부모가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400	25.6	26.1	26.1
	없다	1131	72.5	73.9	100.0
	합계	1531	98.1	100.0	
결측	0	29	1.9		
합계		1560	100.0		

※학생의 인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_20 학생이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59	3.8	3.8	3.8
	중요하지않다	577	37.0	37.5	41.3
	중요하다	816	52.3	53.0	94.3
	매우중요하다	87	5.6	5.7	100.0
	합계	1539	98.7	100.0	
결측	0	21	1.3		
합계		1560	100.0		

문1_21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소지품검사, 몸수색, 사물함 수색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28	1.8	1.8	1.8
	중요하지않다	394	25.3	25.5	27.3
	중요하다	963	61.7	62.4	89.7
	매우중요하다	159	10.2	10.3	100.0
	합계	1544	99.0	100.0	
결측	0	16	1.0		
합계		1560	100.0		

문1_22 학생의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성적이나 학생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7	.4	.5	.5
	중요하지않다	139	8.9	9.0	9.4
	중요하다	1068	68.5	69.1	78.6
	매우중요하다	331	21.2	21.4	100.0
	합계	1545	99.0	100.0	
결측	0	15	1.0		
합계		1560	100.0		

문1_23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11	.7	.7	.7
	중요하지않다	151	9.7	9.8	10.5
	중요하다	1039	66.6	67.5	78.0
	매우중요하다	339	21.7	22.0	100.0
	합계	1540	98.7	100.0	
결측	0	20	1.3		
합계		1560	100.0		

문1_24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8	.5	.5	.5
	중요하지않다	163	10.4	10.6	11.1
	중요하다	1036	66.4	67.1	78.2
	매우중요하다	336	21.5	21.8	100.0
	합계	1543	98.9	100.0	
결측	0	17	1.1		
합계		1560	100.0		

문1_25 학생의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중요하지않다	85	5.4	5.5	5.5
	중요하다	1032	66.2	67.1	72.6
	매우중요하다	422	27.1	27.4	100.0
	합계	1539	98.7	100.0	
결측	0	21	1.3		
합계		1560	100.0		

문1_26 학생이 징계를 받을 경우,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7	.4	.5	.5
	중요하지않다	108	6.9	7.0	7.4
	중요하다	966	61.9	62.5	69.9
	매우중요하다	465	29.8	30.1	100.0
	합계	1546	99.1	100.0	
결측	0	14	.9		
합계		1560	100.0		

문1_27 학생이 징계절차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3	.2	.2	.2
	중요하지않다	106	6.8	6.9	7.1
	중요하다	996	63.8	64.7	71.8
	매우중요하다	435	27.9	28.2	100.0
	합계	1540	98.7	100.0	
결측	0	20	1.3		
합계		1560	100.0		

문1_28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 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4	.3	.3	.3
	중요하지않다	94	6.0	6.2	6.4
	중요하다	870	55.8	56.9	63.4
	매우중요하다	560	35.9	36.6	100.0
	합계	1528	97.9	100.0	
결측	0	32	2.1		
합계		1560	100.0		

문1_29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에 대해 학점을 준다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F	65	4.2	4.3	4.3
	D	288	18.5	18.9	23.1
	C	674	43.2	44.2	67.3
	B	456	29.2	29.9	97.2
	A	42	2.7	2.8	100.0
	합계	1525	97.8	100.0	
결측	0	35	2.2		
합계		1560	100.0		

※학생의 인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침해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 해당 되는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_30 학생이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1033	66.2	67.1	67.1
	없다	507	32.5	32.9	100.0
	합계	1540	98.7	100.0	
결측	0	20	1.3		
합계		1560	100.0		

문1_31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소지품검사, 몸수색, 사물함 수색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896	57.4	58.3	58.3
	없다	640	41.0	41.7	100.0
	합계	1536	98.5	100.0	
결측	0	24	1.5		
합계		1560	100.0		

문1_32 학생의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성적이나 학생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554	35.5	36.0	36.0
	없다	984	63.1	64.0	100.0
	합계	1538	98.6	100.0	
결측	0	22	1.4		
합계		1560	100.0		

문1_33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311	19.9	20.2	20.2
	없다	1226	78.6	79.8	100.0
	합계	1537	98.5	100.0	
결측	0	23	1.5		
합계		1560	100.0		

문1_34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750	48.1	49.1	49.1
	없다	779	49.9	50.9	100.0
	합계	1529	98.0	100.0	
결측	0	31	2.0		
합계		1560	100.0		

문1_35 학생의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419	26.9	27.5	27.5
	없다	1107	71.0	72.5	100.0
	합계	1526	97.8	100.0	
결측	0	34	2.2		
합계		1560	100.0		

문1_36 학생이 징계를 받을 경우,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500	32.1	32.6	32.6
	없다	1032	66.2	67.4	100.0
	합계	1532	98.2	100.0	
결측	0	28	1.8		
합계		1560	100.0		

문1_37 학생이 징계절차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437	28.0	28.6	28.6
	없다	1092	70.0	71.4	100.0
	합계	1529	98.0	100.0	
결측	0	31	2.0		
합계		1560	100.0		

문1_38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 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231	14.8	15.0	15.0
	없다	1304	83.6	85.0	100.0
	합계	1535	98.4	100.0	
결측	0	25	1.6		
합계		1560	100.0		

※교사의 인권에 관한 문항입니다.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_39 남자교사 혹은 여자교사인 것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1	.1	.1	.1
	중요하지않다	43	2.8	2.8	2.8
	중요하다	715	45.8	46.0	48.8
	매우중요하다	797	51.1	51.2	100.0
	합계	1556	99.7	100.0	
결측	0	4	.3		
합계		1560	100.0		

문1_40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중요하지않다	43	2.8	2.8	2.8
	중요하다	705	45.2	45.3	48.1
	매우중요하다	807	51.7	51.9	100.0
	합계	1555	99.7	100.0	
결측	0	5	.3		
합계		1560	100.0		

문1_41 예결산, 인사, 학교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1	.1	.1	.1
	중요하지않다	18	1.2	1.2	1.2
	중요하다	834	53.5	53.7	54.9
	매우중요하다	700	44.9	45.1	100.0
	합계	1553	99.6	100.0	
결측	0	7	.4		
합계		1560	100.0		

문1_42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1	.1	.1	.1
	중요하지않다	19	1.2	1.2	1.3
	중요하다	590	37.8	37.9	39.2
	매우중요하다	946	60.6	60.8	100.0
	합계	1556	99.7	100.0	
결측	0	4	.3		
합계		1560	100.0		

문1_43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교재채택료, 공문, 출장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중요하지않다	26	1.7	1.7	1.7
	중요하다	669	42.9	43.0	44.7
	매우중요하다	860	55.1	55.3	100.0
	합계	1555	99.7	100.0	
결측	0	5	.3		
합계		1560	100.0		

문1_44 교육당국(교육부 등)이나 학교 관리자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기자재,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2	.1	.1	.1
	중요하지않다	18	1.2	1.2	1.3
	중요하다	768	49.2	49.5	50.8
	매우중요하다	763	48.9	49.2	100.0
	합계	1551	99.4	100.0	
결측	0	9	.6		
합계		1560	100.0		

문1_45 학교에서 교사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에 대해 학점을 준다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F	79	5.1	5.2	5.2
	D	311	19.9	20.3	25.5
	C	619	39.7	40.5	65.9
	B	476	30.5	31.1	97.1
	A	45	2.9	2.9	100.0
	합계	1530	98.1	100.0	
결측	0	30	1.9		
합계		1560	100.0		

※교사의 인권에 관한 문항입니다. 생활 속에서 침해받아 본적이 있는가 없는가 해당되는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_46 남자교사 혹은 여자교사인 것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707	45.3	45.7	45.7
	없다	840	53.8	54.3	100.0
	합계	1547	99.2	100.0	
결측	0	13	.8		
합계		1560	100.0		

문1_47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1045	67.0	67.5	67.5
	없다	504	32.3	32.5	100.0
	합계	1549	99.3	100.0	
결측	0	11	.7		
합계		1560	100.0		

문1_48 예결산, 인사, 학교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883	56.6	57.2	57.2
	없다	660	42.3	42.8	100.0
	합계	1543	98.9	100.0	
결측	0	17	1.1		
합계		1560	100.0		

문1_49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886	56.8	57.3	57.3
	없다	660	42.3	42.7	100.0
	합계	1546	99.1	100.0	
결측	0	14	.9		
합계		1560	100.0		

문1_50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교재 채택료, 공문, 출장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865	55.4	56.0	56.0
	없다	681	43.7	44.0	100.0
	합계	1546	99.1	100.0	
결측	0	14	.9		
합계		1560	100.0		

문1_51 교육당국(교육부 등)이나 학교 관리자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기자재,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754	48.3	48.8	48.8
	없다	790	50.6	51.2	100.0
	합계	1544	99.0	100.0	
결측	0	16	1.0		
합계		1560	100.0		

문2_1 최근 1년 간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활동(수업, 조·종례, 훈화 등)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회-2회	521	33.4	33.8	33.8
	3회-4회	208	13.3	13.5	47.3
	4회이상	225	14.4	14.6	61.9
	없다	587	37.6	38.1	100.0
	합계	1541	98.8	100.0	
결측	0	19	1.2		
합계		1560	100.0		

문2_2 학생을 처벌해야 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훈계한다	868	55.6	56.1	56.1
	동의하에 체벌	548	35.1	35.4	91.5
	동의없이 체벌	94	6.0	6.1	97.5
	징계하지않음	7	.4	.5	98.0
	기타	31	2.0	2.0	100.0
	합계	1548	99.2	100.0	
결측	0	12	.8		
합계		1560	100.0		

문2_3 생활지도, 학급운영 시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민주적 반영	942	60.4	61.0	61.0
	교사주관적 반영	561	36.0	36.3	97.3
	대체로 반영않음	37	2.4	2.4	99.7
	무시한다	4	.3	.3	100.0
	합계	1544	99.0	100.0	
결측	0	16	1.0		
합계		1560	100.0		

문2_4 학생들이 수업을 평가하고,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제안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적극반영한다	754	48.3	48.9	48.9
	적극반영은 안함	762	48.8	49.4	98.3
	무시한다	9	.6	.6	98.8
	주의나 제재 가함	18	1.2	1.2	100.0
	합계	1543	98.9	100.0	
결측	0	17	1.1		
합계		1560	100.0		

문2_5 현재 선생님의 학교에서 학칙(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어디까지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교직원	629	40.3	42.6	42.6
	교직원+학생	206	13.2	14.0	56.6
	교직원+학부모등	406	26.0	27.5	84.1
	교직원+학부모등+학생	235	15.1	15.9	100.0
	합계	1476	94.6	100.0	
결측	0	84	5.4		
합계		1560	100.0		

문2_6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의결과정 참여	307	19.7	20.0	20.0
	참관인 의견 제시	921	59.0	60.1	80.2
	참관인 방청 허용	154	9.9	10.1	90.2
	참여 하지 않아야함	150	9.6	9.8	100.0
	합계	1532	98.2	100.0	
결측	0	28	1.8		
합계		1560	100.0		

문2_7 교사로 발령 받은 이후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회-2회	193	12.4	12.5	12.5
	3회-4회	33	2.1	2.1	14.6
	5회이상	22	1.4	1.4	16.1
	받은적 없음	1297	83.1	83.9	100.0
	합계	1545	99.0	100.0	
결측	0	15	1.0		
합계		1560	100.0		

문2_8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어디서 받아 보셨습니까?(위 문항에서 연수를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만 답변하십시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교육당국	69	4.4	25.6	25.6
	시민,인권단체	56	3.6	20.7	46.3
	교원단체	98	6.3	36.3	82.6
	기타	47	3.0	17.4	100.0
	합계	270	17.3	100.0	
결측	0	1290	82.7		
합계		1560	100.0		

문2_9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연수를 진행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적극 참여	228	14.6	14.7	14.7
	가능한 참여	1166	74.7	75.4	90.1
	참여의사 없음	153	9.8	9.9	100.0
	합계	1547	99.2	100.0	
결측	0	13	.8		
합계		1560	100.0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_1 교사가 학내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1	.1	.1	.1
	중요하지않다	19	1.2	1.2	1.3
	중요하다	850	54.5	54.8	56.1
	매우중요하다	682	43.7	43.9	100.0
	합계	1552	99.5	100.0	
결측	0	8	.5		
합계		1560	100.0		

문3_2 교사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평교사회, 교원단체 분회모임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1	.1	.1	.1
	중요하지않다	40	2.6	2.6	2.6
	중요하다	800	51.3	51.7	54.3
	매우중요하다	707	45.3	45.7	100.0
	합계	1548	99.2	100.0	
결측	0	12	.8		
합계		1560	100.0		

문3_3 교사가 학교 밖의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중요하지않다	27	1.7	1.8	1.8
	중요하지않다	285	18.3	18.5	20.3
	중요하다	848	54.4	55.1	75.4
	매우중요하다	378	24.2	24.6	100.0
	합계	1538	98.6	100.0	
결측	0	22	1.4		
합계		1560	100.0		

※ 실제로 생활 속에서 침해받아 본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 해당되는 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3_4 교사가 학내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698	44.7	45.3	45.3
	없다	844	54.1	54.7	100.0
	합계	1542	98.8	100.0	
결측	0	18	1.2		
합계		1560	100.0		

문3_5 교사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평교사회, 교원단체 분회모임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674	43.2	43.8	43.8
	없다	866	55.5	56.2	100.0
	합계	1540	98.7	100.0	
결측	0	20	1.3		
합계		1560	100.0		

문3_6 교사가 학교 밖의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669	42.9	43.8	43.8
	없다	858	55.0	56.2	100.0
	합계	1527	97.9	100.0	
결측	0	33	2.1		
합계		1560	100.0		

문3_7 악법은 준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개폐를 위해 저항해야 합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저항해야 한다	1214	77.8	78.7	78.7
	준수해야 한다	152	9.7	9.9	88.6
	모르겠다	176	11.3	11.4	100.0
	합계	1542	98.8	100.0	
결측	0	18	1.2		
합계		1560	100.0		

문3_8 시민운동단체나 인권운동 관련단체(엠네스티 등)에 회원으로 참여하시거나 후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297	19.0	19.2	19.2
	없다	1247	79.9	80.8	100.0
	합계	1544	99.0	100.0	
결측	0	16	1.0		
합계		1560	100.0		

문3_9 선생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나 각종 교직원회의(교무회의, 교과협의회, 부장 교사회의 등)에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편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그렇다	53	3.4	3.4	3.4
	그렇다	347	22.2	22.4	25.8
	그저그렇다	564	36.2	36.4	62.2
	그렇지않다	433	27.8	27.9	90.1
	전혀그렇지않다	153	9.8	9.9	100.0
	합계	1550	99.4	100.0	
결측	0	10	.6		
합계		1560	100.0		

문3_10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학생회, 축제, 동아리 활동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후원하시는 편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그렇다	81	5.2	5.2	5.2
	그렇다	515	33.0	33.2	38.5
	그저그렇다	674	43.2	43.5	81.9
	그렇지않다	239	15.3	15.4	97.4
	전혀그렇지않다	41	2.6	2.6	100.0
	합계	1550	99.4	100.0	
결측	0	10	.6		
합계		1560	100.0		

문3_11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편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그렇다	36	2.3	2.3	2.3
	그렇다	273	17.5	17.6	19.9
	그저그렇다	809	51.9	52.2	72.1
	그렇지않다	356	22.8	23.0	95.0
	전혀그렇지않다	77	4.9	5.0	100.0
	합계	1551	99.4	100.0	
결측	0	9	.6		
합계		1560	100.0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남자	560	35.9	39.0	39.0
	여자	875	56.1	61.0	100.0
	합계	1435	92.0	100.0	
결측	무응답	125	8.0		
합계		1560	100.0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0-29세	259	16.6	18.0	18.0
	30-39세	561	36.0	39.0	57.1
	40-49세	457	29.3	31.8	88.9
	50-59세	146	9.4	10.2	99.0
	60세이상	14	.9	1.0	100.0
	합계	1437	92.1	100.0	
결측	무응답	123	7.9		
합계		1560	100.0		

교육경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0-5년	344	22.1	24.0	24.0
	6-10년	195	12.5	13.6	37.5
	11-20년	607	38.9	42.3	79.8
	20-30년	220	14.1	15.3	95.1
	30년이상	70	4.5	4.9	100.0
	합계	1436	92.1	100.0	
결측	무응답	124	7.9		
합계		1560	100.0		

근무학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초등학교	564	36.2	37.8	37.8
	중학교	357	22.9	23.9	61.6
	실업계고교	173	11.1	11.6	73.2
	인문고교	329	21.1	22.0	95.2
	특수목적고	20	1.3	1.3	96.6
	특수학교	51	3.3	3.4	100.0
	합계	1494	95.8	100.0	
결측	무응답	66	4.2		
합계		1560	100.0		

설립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국공립	1283	82.2	85.9	85.9
	종교계사립	88	5.6	5.9	91.8
	비종교계사립	122	7.8	8.2	100.0
	합계	1493	95.7	100.0	
결측	무응답	67	4.3		
합계		1560	100.0		

담당과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국어교과	142	9.1	16.2	16.2
	사회및도덕교과	183	11.7	20.9	37.1
	과학교과	74	4.7	8.4	45.5
	외국어교과	124	7.9	14.2	59.7
	수학교과	109	7.0	12.4	72.1
	실과및실업교과	127	8.1	14.5	86.6
	예체능및교련교과	86	5.5	9.8	96.5
	기타	31	2.0	3.5	100.0
합계		876	56.2	100.0	
결측	무응답	684	43.8		
합계		1560	100.0		

근무지역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특별시,광역시	739	47.4	49.5	49.5
	중소도시	485	31.1	32.5	82.0
	농어촌,도서지역	269	17.2	18.0	100.0
	합계	1493	95.7	100.0	
결측	무응답	67	4.3		
합계		1560	100.0		

학교지역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서울	19	1.2	1.3	1.3
	부산	359	23.0	24.0	25.3
	대구	55	3.5	3.7	29.0
	인천	110	7.1	7.4	36.3
	광주	53	3.4	3.5	39.9
	대전	77	4.9	5.2	45.0
	울산	70	4.5	4.7	49.7
	경기	36	2.3	2.4	52.1
	강원	45	2.9	3.0	55.2
	충북	102	6.5	6.8	62.0
	충남	119	7.6	8.0	69.9
	전남	68	4.4	4.6	74.5
	전북	105	6.7	7.0	81.5
	경북	93	6.0	6.2	87.8
	경남	113	7.2	7.6	95.3
제주	70	4.5	4.7	100.0	
합계	1494	95.8	100.0		
결측	무응답	66	4.2		
합계		1560	100.0		

6. 설문 조사결과 분석표(교차분석)

문1-1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A협약과 B협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사례수	잘알고있다	조금알고있다	모른다
성별	남자	(505)	4.2	48.3	47.5
	여자	(813)	1.4	38.7	59.9
연령	20-29세	(252)	1.6	38.5	59.9
	30-39세	(525)	2.1	38.5	59.4
	40-49세	(405)	2.5	46.9	50.6
	50-59세	(127)	4.7	52.8	42.5
	60세이상	(11)	.0	36.4	63.6
교육경력	0-5년	(332)	1.8	41.3	56.9
	6-10년	(185)	2.7	33.0	64.3
	11-20년	(545)	2.8	40.7	56.5
	20-30년	(200)	1.5	56.0	42.5
	30년이상	(57)	5.3	49.1	45.6
근무학교	초등학교	(526)	1.9	43.5	54.6
	중학교	(330)	3.0	41.5	55.5
	실업계고교	(156)	1.9	43.6	54.5
	인문고교	(295)	3.1	42.0	54.9
	특수목적고	(18)	.0	38.9	61.1
	특수학교	(49)	2.0	30.6	67.3
설립유형	국공립	(1184)	2.6	41.7	55.7
	종교계사립	(75)	1.3	45.3	53.3
	비종교계사립	(114)	.9	45.6	53.5
담당과목	국어교과	(130)	.8	29.2	70.0
	사회및도덕교과	(164)	9.8	62.8	27.4
	과학교과	(65)	.0	24.6	75.4
	외국어교과	(115)	1.7	43.5	54.8
	수학교과	(104)	1.0	29.8	69.2
	실과및실업교과	(116)	.9	39.7	59.5
	예체능및교련교과	(73)	1.4	50.7	47.9
	기타	(29)	.0	34.5	65.5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685)	2.0	40.0	58.0
	중소도시	(446)	2.0	42.8	55.2
	농어촌,도서지역	(242)	4.1	47.1	48.8
학교지역	서울	(15)	13.3	40.0	46.7
	부산	(337)	1.8	38.3	59.9
	대구	(50)	.0	32.0	68.0
	인천	(104)	.0	44.2	55.8
	광주	(48)	4.2	25.0	70.8
	대전	(70)	4.3	50.0	45.7
	울산	(63)	1.6	47.6	50.8
	경기	(35)	.0	40.0	60.0
	강원	(41)	4.9	51.2	43.9
	충북	(99)	2.0	52.5	45.5
	충남	(97)	3.1	47.4	49.5
	전남	(64)	1.6	28.1	70.3
	전북	(98)	6.1	51.0	42.9
	경북	(81)	1.2	32.1	66.7
	경남	(106)	2.8	45.3	51.9
제주	(66)	1.5	45.5	53.0	

문1-2 사형제도 폐지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2)	6.3	20.3	47.5	25.9
	여자	(861)	1.7	14.8	63.2	20.3
연령	20-29세	(257)	.4	15.2	66.9	17.5
	30-39세	(553)	2.4	13.7	59.9	24.1
	40-49세	(446)	5.4	18.6	53.6	22.4
	50-59세	(145)	6.9	27.6	40.7	24.8
	60세이상	(14)	14.3	14.3	42.9	28.6
교육경력	0-5년	(340)	.3	12.1	65.3	22.4
	6-10년	(193)	2.6	10.9	66.8	19.7
	11-20년	(595)	4.7	18.0	53.6	23.7
	20-30년	(217)	3.7	24.9	50.7	20.7
	30년이상	(69)	11.6	24.6	37.7	26.1
근무학교	초등학교	(559)	3.9	15.7	59.2	21.1
	중학교	(351)	2.8	14.5	58.1	24.5
	실업계고교	(171)	4.7	22.2	53.8	19.3
	인문고교	(320)	3.4	18.1	54.7	23.8
	특수목적고	(19)	5.3	36.8	42.1	15.8
	특수학교	(50)	.0	14.0	56.0	30.0
설립유형	국공립	(1262)	3.6	16.5	57.4	22.6
	종교계사립	(86)	2.3	17.4	58.1	22.1
	비종교계사립	(121)	4.1	22.3	52.1	21.5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7	14.2	58.9	26.2
	사회및도덕교과	(181)	3.3	13.8	55.2	27.6
	과학교과	(73)	4.1	20.5	57.5	17.8
	외국어교과	(118)	2.5	22.0	55.9	19.5
	수학교과	(108)	4.6	18.5	58.3	18.5
	실과및실업교과	(123)	5.7	19.5	51.2	23.6
	예체능및교련교과	(84)	3.6	21.4	51.2	23.8
	기타	(31)	3.2	22.6	54.8	19.4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8)	3.0	16.5	57.7	22.8
	중소도시	(478)	3.8	16.5	57.7	22.0
	농어촌,도서지역	(263)	4.6	19.4	53.6	22.4
학교지역	서울	(19)	.0	5.3	63.2	31.6
	부산	(354)	3.4	17.8	59.6	19.2
	대구	(55)	1.8	27.3	50.9	20.0
	인천	(110)	2.7	10.9	58.2	28.2
	광주	(49)	.0	20.4	51.0	28.6
	대전	(76)	3.9	9.2	55.3	31.6
	울산	(68)	5.9	16.2	55.9	22.1
	경기	(36)	2.8	11.1	75.0	11.1
	강원	(45)	6.7	13.3	46.7	33.3
	충북	(99)	4.0	19.2	56.6	20.2
	충남	(119)	2.5	16.0	56.3	25.2
	전남	(67)	3.0	14.9	55.2	26.9
	전북	(105)	3.8	17.1	59.0	20.0
	경북	(90)	3.3	16.7	61.1	18.9
	경남	(109)	5.5	22.9	49.5	22.0
제주	(69)	4.3	20.3	56.5	18.8	

문1-3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8)	.2	.9	45.2	53.8
	여자	(873)	.0	1.0	46.0	52.9
연령	20-29세	(258)	.0	.4	39.5	60.1
	30-39세	(561)	.0	1.1	42.2	56.7
	40-49세	(454)	.2	.9	48.9	50.0
	50-59세	(146)	.0	2.1	58.9	39.0
	60세이상	(14)	.0	.0	50.0	50.0
교육경력	0-5년	(343)	.0	.3	40.2	59.5
	6-10년	(195)	.0	.5	43.1	56.4
	11-20년	(604)	.2	1.5	44.0	54.3
	20-30년	(220)	.0	.9	53.6	45.5
	30년이상	(70)	.0	1.4	65.7	32.9
근무학교	초등학교	(563)	.0	1.2	48.1	50.6
	중학교	(357)	.0	.8	41.7	57.4
	실업계고교	(172)	.6	1.2	47.7	50.6
	인문고교	(327)	.0	.3	45.6	54.1
	특수목적고	(20)	.0	5.0	45.0	50.0
	특수학교	(51)	.0	.0	37.3	62.7
설립유형	국공립	(1280)	.1	.9	45.8	53.2
	종교계사립	(87)	.0	.0	34.5	65.5
	비종교계사립	(122)	.0	1.6	50.8	47.5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0	.7	37.3	62.0
	사회및도덕교과	(183)	.0	.5	37.2	62.3
	과학교과	(74)	.0	2.7	43.2	54.1
	외국어교과	(123)	.0	.8	46.3	52.8
	수학교과	(109)	.0	.0	48.6	51.4
	실과및실업교과	(125)	.8	1.6	49.6	48.0
	예체능및교련교과	(86)	.0	.0	52.3	47.7
	기타	(31)	.0	3.2	35.5	61.3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6)	.1	.7	45.1	54.1
	중소도시	(484)	.0	.8	47.9	51.2
	농어촌,도서지역	(269)	.0	1.9	42.8	55.4
학교지역	서울	(19)	.0	.0	47.4	52.6
	부산	(358)	.3	.8	46.9	52.0
	대구	(55)	.0	.0	43.6	56.4
	인천	(110)	.0	.0	36.4	63.6
	광주	(52)	.0	.0	46.2	53.8
	대전	(77)	.0	1.3	37.7	61.0
	울산	(69)	.0	1.4	58.0	40.6
	경기	(36)	.0	.0	50.0	50.0
	강원	(45)	.0	4.4	37.8	57.8
	충북	(102)	.0	1.0	44.1	54.9
	충남	(119)	.0	1.7	44.5	53.8
	전남	(68)	.0	1.5	39.7	58.8
	전북	(105)	.0	1.0	50.5	48.6
	경북	(93)	.0	1.1	47.3	51.6
경남	(112)	.0	.0	48.2	51.8	
제주	(70)	.0	1.4	48.6	50.0	

문1-4 소수자(장애인, 아동, 노인 등) 권리 보호

		사례수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9)	.5	35.8	63.7
	여자	(866)	.3	29.9	69.7
연령	20-29세	(257)	.0	23.3	76.7
	30-39세	(558)	.4	27.4	72.2
	40-49세	(453)	.4	37.7	61.8
	50-59세	(145)	1.4	47.6	51.0
	60세이상	(14)	.0	42.9	57.1
교육경력	0-5년	(341)	.0	24.9	75.1
	6-10년	(194)	.5	24.7	74.7
	11-20년	(604)	.3	32.6	67.1
	20-30년	(217)	.9	40.6	58.5
	30년이상	(70)	1.4	57.1	41.4
근무학교	초등학교	(559)	.4	32.6	67.1
	중학교	(355)	.6	32.4	67.0
	실업계고교	(172)	.6	31.4	68.0
	인문고교	(327)	.3	31.5	68.2
	특수목적고	(20)	.0	35.0	65.0
	특수학교	(51)	.0	31.4	68.6
설립유형	국공립	(1273)	.4	31.7	67.9
	종교계사립	(88)	.0	28.4	71.6
	비종교계사립	(122)	.8	38.5	60.7
담당과목	국어교과	(139)	.0	25.2	74.8
	사회및도덕교과	(183)	1.1	27.3	71.6
	과학교과	(74)	.0	41.9	58.1
	외국어교과	(124)	.0	30.6	69.4
	수학교과	(109)	.0	36.7	63.3
	실과및실업교과	(125)	.0	32.8	67.2
	예체능및교련교과	(86)	2.3	33.7	64.0
	기타	(31)	.0	41.9	58.1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2)	.4	31.6	68.0
	중소도시	(484)	.2	31.6	68.2
	농어촌,도서지역	(267)	.7	34.8	64.4
학교지역	서울	(19)	.0	31.6	68.4
	부산	(355)	.6	32.7	66.8
	대구	(55)	.0	40.0	60.0
	인천	(109)	.0	20.2	79.8
	광주	(52)	.0	36.5	63.5
	대전	(77)	1.3	26.0	72.7
	울산	(69)	.0	42.0	58.0
	경기	(36)	.0	36.1	63.9
	강원	(45)	.0	26.7	73.3
	충북	(102)	.0	33.3	66.7
	충남	(119)	.8	32.8	66.4
	전남	(68)	.0	23.5	76.5
	전북	(104)	1.9	26.9	71.2
	경북	(93)	.0	33.3	66.7
경남	(111)	.0	38.7	61.3	
제주	(70)	.0	38.6	61.4	

문1-5 여권신장운동(호주제 폐지, 모성보호 등)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8)	2.3	12.5	60.2	24.9
	여자	(874)	.1	3.0	35.9	61.0
연령	20-29세	(258)	.0	1.2	36.8	62.0
	30-39세	(561)	.5	3.9	38.9	56.7
	40-49세	(456)	1.1	7.2	55.0	36.6
	50-59세	(146)	3.4	24.0	54.1	18.5
	60세이상	(13)	7.7	23.1	53.8	15.4
교육경력	0-5년	(343)	.3	1.2	39.4	59.2
	6-10년	(194)	.5	3.1	39.7	56.7
	11-20년	(606)	.7	7.1	45.2	47.0
	20-30년	(220)	1.8	10.5	55.9	31.8
	30년이상	(70)	5.7	28.6	57.1	8.6
근무학교	초등학교	(564)	1.1	6.0	42.0	50.9
	중학교	(355)	.0	5.9	42.8	51.3
	실업계고교	(172)	2.9	9.3	47.7	40.1
	인문고교	(328)	.3	7.0	50.0	42.7
	특수목적고	(20)	5.0	10.0	55.0	30.0
	특수학교	(51)	2.0	3.9	51.0	43.1
설립유형	국공립	(1280)	.8	6.6	43.5	49.1
	종교계사립	(88)	1.1	5.7	46.6	46.6
	비종교계사립	(122)	2.5	7.4	60.7	29.5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7	2.8	44.7	51.8
	사회및도덕교과	(182)	.5	3.8	42.9	52.7
	과학교과	(74)	.0	5.4	59.5	35.1
	외국어교과	(124)	.8	9.7	45.2	44.4
	수학교과	(109)	.0	7.3	53.2	39.4
	실과및실업교과	(126)	2.4	12.7	43.7	41.3
	예체능및교련교과	(86)	2.3	10.5	50.0	37.2
	기타	(31)	.0	3.2	48.4	48.4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8)	1.2	5.3	46.1	47.4
	중소도시	(483)	.4	6.0	45.5	48.0
	농어촌,도서지역	(268)	1.1	11.2	41.8	45.9
학교지역	서울	(19)	.0	5.3	63.2	31.6
	부산	(359)	1.7	5.8	46.2	46.2
	대구	(55)	1.8	3.6	50.9	43.6
	인천	(110)	.0	2.7	36.4	60.9
	광주	(53)	1.9	3.8	56.6	37.7
	대전	(77)	1.3	5.2	50.6	42.9
	울산	(69)	.0	8.7	37.7	53.6
	경기	(36)	.0	5.6	25.0	69.4
	강원	(44)	.0	9.1	47.7	43.2
	충북	(102)	1.0	6.9	48.0	44.1
	충남	(118)	.0	14.4	44.1	41.5
	전남	(68)	1.5	2.9	29.4	66.2
	전북	(105)	.0	7.6	41.0	51.4
	경북	(93)	.0	8.6	46.2	45.2
	경남	(112)	1.8	5.4	50.9	42.0
제주	(70)	1.4	7.1	52.9	38.6	

문1-6 환경우선정책(동강 살리기, 새만금갯벌 살리기 등)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8)	.4	1.6	42.5	55.6
	여자	(869)	.1	.6	33.8	65.5
연령	20-29세	(258)	.0	1.2	34.1	64.7
	30-39세	(558)	.4	.5	35.5	63.6
	40-49세	(453)	.2	.9	38.4	60.5
	50-59세	(146)	.0	2.1	45.2	52.7
	60세이상	(14)	.0	7.1	35.7	57.1
교육경력	0-5년	(341)	.0	1.2	34.3	64.5
	6-10년	(194)	.5	.5	38.1	60.8
	11-20년	(604)	.3	.8	36.1	62.7
	20-30년	(219)	.0	.9	40.6	58.4
	30년이상	(70)	.0	2.9	45.7	51.4
근무학교	초등학교	(562)	.0	.5	38.3	61.2
	중학교	(355)	.0	.8	36.1	63.1
	실업계고교	(173)	1.7	2.3	33.5	62.4
	인문고교	(324)	.0	1.2	37.3	61.4
	특수목적고	(20)	.0	5.0	30.0	65.0
	특수학교	(51)	.0	.0	39.2	60.8
설립유형	국공립	(1274)	.2	1.1	37.2	61.5
	종교계사립	(88)	.0	.0	27.3	72.7
	비종교계사립	(122)	.8	.8	39.3	59.0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0	2.1	33.8	64.1
	사회및도덕교과	(182)	.5	.0	32.4	67.0
	과학교과	(74)	.0	2.7	36.5	60.8
	외국어교과	(123)	.0	.8	36.6	62.6
	수학교과	(108)	.0	.9	36.1	63.0
	실과및실업교과	(126)	1.6	2.4	41.3	54.8
	예체능및교련교과	(84)	.0	1.2	40.5	58.3
	기타	(31)	.0	.0	45.2	54.8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4)	.3	.7	37.1	62.0
	중소도시	(483)	.0	1.0	35.8	63.1
	농어촌,도서지역	(267)	.4	1.9	38.2	59.6
학교지역	서울	(18)	.0	16.7	27.8	55.6
	부산	(357)	.3	.3	35.9	63.6
	대구	(55)	.0	.0	36.4	63.6
	인천	(110)	.0	.0	36.4	63.6
	광주	(52)	.0	.0	48.1	51.9
	대전	(77)	1.3	.0	32.5	66.2
	울산	(69)	.0	1.4	44.9	53.6
	경기	(36)	.0	.0	33.3	66.7
	강원	(45)	2.2	.0	31.1	66.7
	충북	(102)	.0	2.9	41.2	55.9
	충남	(117)	.0	1.7	41.9	56.4
	전남	(67)	.0	1.5	29.9	68.7
	전북	(105)	.0	1.0	45.7	53.3
	경북	(92)	.0	.0	33.7	66.3
	경남	(113)	.0	1.8	27.4	70.8
제주	(70)	.0	1.4	38.6	60.0	

문1-7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대체 복무제 도입 등)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2)	14.1	34.8	36.6	14.5
	여자	(860)	2.6	22.8	57.2	17.4
연령	20-29세	(254)	1.6	24.0	59.1	15.4
	30-39세	(553)	5.1	24.8	51.9	18.3
	40-49세	(449)	9.6	27.6	47.2	15.6
	50-59세	(144)	15.3	41.7	28.5	14.6
	60세이상	(14)	21.4	42.9	28.6	7.1
교육경력	0-5년	(338)	2.4	25.7	53.3	18.6
	6-10년	(194)	7.2	24.7	54.6	13.4
	11-20년	(596)	7.6	25.0	49.7	17.8
	20-30년	(216)	9.3	36.1	42.1	12.5
	30년이상	(69)	18.8	37.7	29.0	14.5
근무학교	초등학교	(556)	7.2	25.2	49.8	17.8
	중학교	(350)	2.9	23.4	54.6	19.1
	실업계고교	(171)	9.9	32.7	45.0	12.3
	인문고교	(323)	10.2	30.3	45.2	14.2
	특수목적고	(20)	10.0	45.0	40.0	5.0
	특수학교	(50)	6.0	34.0	50.0	10.0
설립유형	국공립	(1262)	6.3	26.1	50.2	17.4
	종교계사립	(85)	7.1	32.9	49.4	10.6
	비종교계사립	(122)	16.4	35.2	40.2	8.2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4.9	23.9	57.7	13.4
	사회및도덕교과	(177)	5.6	27.1	50.8	16.4
	과학교과	(73)	8.2	26.0	49.3	16.4
	외국어교과	(122)	8.2	26.2	49.2	16.4
	수학교과	(108)	5.6	35.2	44.4	14.8
	실과및실업교과	(124)	10.5	37.9	38.7	12.9
	예체능및교련교과	(85)	8.2	24.7	48.2	18.8
	기타	(31)	3.2	29.0	48.4	19.4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6)	6.2	28.2	50.6	15.0
	중소도시	(482)	7.1	29.3	45.9	17.8
	농어촌,도서지역	(262)	9.9	21.4	51.9	16.8
학교지역	서울	(19)	5.3	52.6	15.8	26.3
	부산	(352)	5.1	27.8	52.0	15.1
	대구	(55)	5.5	47.3	41.8	5.5
	인천	(108)	2.8	25.9	51.9	19.4
	광주	(51)	9.8	25.5	54.9	9.8
	대전	(77)	11.7	23.4	50.6	14.3
	울산	(67)	7.5	16.4	58.2	17.9
	경기	(35)	2.9	20.0	54.3	22.9
	강원	(45)	8.9	24.4	42.2	24.4
	충북	(102)	7.8	31.4	51.0	9.8
	충남	(118)	12.7	23.7	45.8	17.8
	전남	(68)	7.4	23.5	44.1	25.0
	전북	(104)	6.7	22.1	53.8	17.3
	경북	(89)	5.6	29.2	51.7	13.5
	경남	(111)	5.4	26.1	46.8	21.6
제주	(69)	13.0	37.7	37.7	11.6	

문1-8 난민의 인권보호(탈북자 난민지위 인정 등)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2)	.4	5.4	67.2	27.0
	여자	(864)	.5	5.3	69.6	24.7
연령	20-29세	(256)	.0	4.3	69.1	26.6
	30-39세	(558)	.2	4.5	65.8	29.6
	40-49세	(446)	.7	6.3	68.2	24.9
	50-59세	(144)	.7	8.3	80.6	10.4
	60세이상	(14)	7.1	.0	64.3	28.6
교육경력	0-5년	(340)	.0	5.0	65.6	29.4
	6-10년	(194)	.5	3.1	68.0	28.4
	11-20년	(598)	.3	5.0	67.1	27.6
	20-30년	(217)	.9	6.5	76.5	16.1
	30년이상	(68)	1.5	13.2	72.1	13.2
근무학교	초등학교	(557)	.5	6.3	69.8	23.3
	중학교	(356)	.3	4.2	67.4	28.1
	실업계고교	(170)	.6	8.8	69.4	21.2
	인문고교	(321)	.3	3.7	69.5	26.5
	특수목적고	(20)	.0	10.0	60.0	30.0
	특수학교	(51)	.0	5.9	51.0	43.1
설립유형	국공립	(1266)	.5	5.5	68.2	25.8
	종교계사립	(87)	.0	4.6	67.8	27.6
	비종교계사립	(121)	.0	5.8	71.9	22.3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0	2.8	67.4	29.8
	사회및도덕교과	(178)	.0	3.4	61.2	35.4
	과학교과	(73)	1.4	.0	68.5	30.1
	외국어교과	(122)	.0	7.4	66.4	26.2
	수학교과	(109)	.0	6.4	68.8	24.8
	실과및실업교과	(124)	.8	4.0	75.8	19.4
	예체능및교련교과	(86)	1.2	9.3	67.4	22.1
	기타	(31)	.0	12.9	64.5	22.6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9)	.5	6.3	66.9	26.2
	중소도시	(479)	.4	4.6	68.7	26.3
	농어촌,도서지역	(266)	.0	5.3	71.8	22.9
학교지역	서울	(19)	.0	10.5	68.4	21.1
	부산	(353)	1.1	6.2	63.5	29.2
	대구	(55)	.0	7.3	76.4	16.4
	인천	(110)	.0	6.4	70.0	23.6
	광주	(52)	.0	3.8	75.0	21.2
	대전	(77)	.0	5.2	70.1	24.7
	울산	(67)	.0	7.5	64.2	28.4
	경기	(36)	.0	.0	75.0	25.0
	강원	(45)	.0	2.2	66.7	31.1
	충북	(102)	.0	4.9	76.5	18.6
	충남	(118)	.8	3.4	66.9	28.8
	전남	(67)	.0	9.0	59.7	31.3
	전북	(104)	.0	6.7	68.3	25.0
	경북	(91)	.0	4.4	71.4	24.2
	경남	(111)	.0	3.6	73.0	23.4
제주	(68)	1.5	7.4	66.2	25.0	

문1-9 재소자의 인권보호(의료권 보장 등)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7)	.5	8.6	67.7	23.2
	여자	(868)	.0	3.9	69.4	26.7
연령	20-29세	(256)	.0	3.9	72.3	23.8
	30-39세	(559)	.0	4.3	64.9	30.8
	40-49세	(453)	.2	7.1	68.2	24.5
	50-59세	(145)	.0	10.3	77.9	11.7
	60세이상	(14)	14.3	7.1	71.4	7.1
교육경력	0-5년	(341)	.0	4.4	66.0	29.6
	6-10년	(192)	.0	5.2	70.8	24.0
	11-20년	(604)	.2	5.3	66.6	28.0
	20-30년	(219)	.0	8.2	72.6	19.2
	30년이상	(70)	2.9	10.0	80.0	7.1
근무학교	초등학교	(560)	.4	6.3	68.6	24.8
	중학교	(355)	.0	2.3	69.9	27.9
	실업계고교	(171)	.6	9.9	71.9	17.5
	인문고교	(327)	.0	4.9	68.5	26.6
	특수목적고	(20)	.0	20.0	45.0	35.0
	특수학교	(51)	.0	5.9	58.8	35.3
설립유형	국공립	(1274)	.2	5.8	68.4	25.6
	종교계사립	(88)	.0	.0	67.0	33.0
	비종교계사립	(121)	.0	7.4	71.9	20.7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0	4.3	66.7	29.1
	사회및도덕교과	(181)	.0	2.2	65.2	32.6
	과학교과	(74)	.0	5.4	70.3	24.3
	외국어교과	(124)	.0	8.9	69.4	21.8
	수학교과	(108)	.0	8.3	63.9	27.8
	실과및실업교과	(125)	.8	8.0	67.2	24.0
	예체능및교련교과	(86)	.0	2.3	80.2	17.4
	기타	(31)	.0	9.7	67.7	22.6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5)	.1	5.6	67.6	26.7
	중소도시	(482)	.2	6.2	70.1	23.4
	농어촌,도서지역	(266)	.4	4.9	68.4	26.3
학교지역	서울	(19)	.0	15.8	63.2	21.1
	부산	(357)	.3	6.7	64.7	28.3
	대구	(55)	.0	3.6	80.0	16.4
	인천	(110)	.0	4.5	66.4	29.1
	광주	(52)	.0	1.9	75.0	23.1
	대전	(76)	.0	5.3	67.1	27.6
	울산	(70)	.0	2.9	72.9	24.3
	경기	(36)	.0	5.6	80.6	13.9
	강원	(45)	.0	8.9	66.7	24.4
	충북	(102)	.0	7.8	74.5	17.6
	충남	(118)	.8	1.7	65.3	32.2
	전남	(68)	.0	4.4	66.2	29.4
	전북	(104)	.0	7.7	71.2	21.2
	경북	(92)	.0	6.5	69.6	23.9
	경남	(111)	.0	5.4	69.4	25.2
제주	(69)	1.4	5.8	63.8	29.0	

문1-10 공권력(검·경찰, 교도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

		사례수	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9)	.2	2.1	39.9	57.8
	여자	(874)	.1	.8	41.0	58.1
연령	20-29세	(259)	.0	.4	40.5	59.1
	30-39세	(559)	.2	1.1	37.6	61.2
	40-49세	(457)	.2	1.8	41.8	56.2
	50-59세	(146)	.0	2.1	47.9	50.0
	60세이상	(14)	.0	7.1	42.9	50.0
교육경력	0-5년	(344)	.0	.9	39.8	59.3
	6-10년	(195)	.5	1.0	36.9	61.5
	11-20년	(605)	.0	1.2	39.3	59.5
	20-30년	(220)	.5	1.8	44.1	53.6
	30년이상	(70)	.0	4.3	51.4	44.3
근무학교	초등학교	(563)	.2	1.4	42.1	56.3
	중학교	(357)	.0	.3	37.8	61.9
	실업계고교	(173)	.0	1.7	42.8	55.5
	인문고교	(328)	.3	1.8	39.0	58.8
	특수목적고	(20)	.0	.0	40.0	60.0
	특수학교	(51)	.0	2.0	35.3	62.7
설립유형	국공립	(1281)	.2	1.2	40.6	58.0
	종교계사립	(88)	.0	.0	35.2	64.8
	비종교계사립	(122)	.0	1.6	40.2	58.2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0	1.4	36.6	62.0
	사회및도덕교과	(182)	.0	1.1	29.7	69.2
	과학교과	(74)	1.4	2.7	36.5	59.5
	외국어교과	(124)	.0	1.6	46.0	52.4
	수학교과	(109)	.0	.0	47.7	52.3
	실과및실업교과	(127)	.0	1.6	40.2	58.3
	예체능및교련교과	(86)	.0	1.2	38.4	60.5
	기타	(31)	.0	.0	51.6	48.4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9)	.1	1.6	38.4	59.8
	중소도시	(485)	.2	.6	43.1	56.1
	농어촌,도서지역	(267)	.0	1.5	40.4	58.1
학교지역	서울	(19)	.0	5.3	42.1	52.6
	부산	(359)	.3	1.4	39.3	59.1
	대구	(55)	.0	.0	43.6	56.4
	인천	(110)	.0	1.8	35.5	62.7
	광주	(53)	.0	3.8	37.7	58.5
	대전	(77)	.0	1.3	27.3	71.4
	울산	(70)	.0	1.4	47.1	51.4
	경기	(36)	.0	.0	52.8	47.2
	강원	(45)	.0	2.2	35.6	62.2
	충북	(102)	1.0	.0	53.9	45.1
	충남	(119)	.0	.0	42.0	58.0
	전남	(68)	.0	.0	33.8	66.2
	전북	(105)	.0	3.8	36.2	60.0
	경북	(91)	.0	1.1	45.1	53.8
	경남	(113)	.0	.9	42.5	56.6
제주	(70)	.0	.0	35.7	64.3	

문1-11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관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6)	1.3	20.9	64.6	13.3
	여자	(869)	.7	15.2	70.9	13.2
연령	20-29세	(259)	.0	13.1	73.7	13.1
	30-39세	(556)	1.1	13.7	70.0	15.3
	40-49세	(452)	.4	19.2	66.2	14.2
	50-59세	(146)	2.7	32.9	59.6	4.8
	60세이상	(14)	7.1	21.4	71.4	.0
교육경력	0-5년	(343)	.3	10.8	72.6	16.3
	6-10년	(195)	1.0	13.3	73.8	11.8
	11-20년	(600)	1.0	17.2	67.8	14.0
	20-30년	(218)	.0	28.0	61.0	11.0
	30년이상	(70)	5.7	30.0	60.0	4.3
근무학교	초등학교	(562)	1.2	18.9	67.4	12.5
	중학교	(355)	.6	13.5	71.3	14.6
	실업계고교	(172)	1.2	17.4	70.9	10.5
	인문고교	(324)	.6	19.8	64.8	14.8
	특수목적고	(20)	.0	20.0	75.0	5.0
	특수학교	(51)	.0	11.8	76.5	11.8
설립유형	국공립	(1275)	.9	16.9	68.9	13.4
	종교계사립	(86)	.0	24.4	58.1	17.4
	비종교계사립	(122)	1.6	18.0	73.0	7.4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0	9.2	73.8	17.0
	사회및도덕교과	(180)	.0	15.0	69.4	15.6
	과학교과	(74)	1.4	13.5	71.6	13.5
	외국어교과	(123)	.8	17.1	71.5	10.6
	수학교과	(109)	1.8	14.7	71.6	11.9
	실과및실업교과	(125)	.8	25.6	60.0	13.6
	예체능및교련교과	(85)	1.2	25.9	63.5	9.4
	기타	(31)	.0	9.7	67.7	22.6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1)	.3	17.6	69.4	12.7
	중소도시	(484)	1.0	15.5	70.2	13.2
	농어촌,도서지역	(268)	2.2	20.1	63.8	13.8
학교지역	서울	(19)	.0	26.3	63.2	10.5
	부산	(353)	.0	16.7	71.1	12.2
	대구	(55)	.0	14.5	63.6	21.8
	인천	(110)	.0	16.4	68.2	15.5
	광주	(52)	1.9	23.1	65.4	9.6
	대전	(77)	1.3	22.1	66.2	10.4
	울산	(69)	.0	14.5	76.8	8.7
	경기	(36)	.0	25.0	66.7	8.3
	강원	(45)	2.2	15.6	66.7	15.6
	충북	(102)	2.0	18.6	69.6	9.8
	충남	(119)	1.7	24.4	58.8	15.1
	전남	(68)	.0	13.2	66.2	20.6
	전북	(105)	1.9	10.5	76.2	11.4
	경북	(92)	1.1	19.6	64.1	15.2
	경남	(112)	.0	15.2	68.8	16.1
제주	(70)	4.3	12.9	74.3	8.6	

문1-12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부모가 선택할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6)	3.8	17.6	59.7	18.9
	여자	(871)	.5	12.1	64.4	23.1
연령	20-29세	(258)	.4	15.5	63.2	20.9
	30-39세	(557)	1.3	11.8	63.7	23.2
	40-49세	(455)	2.4	12.5	61.5	23.5
	50-59세	(145)	4.1	24.1	62.1	9.7
	60세이상	(14)	.0	35.7	42.9	21.4
교육경력	0-5년	(343)	.6	15.2	62.4	21.9
	6-10년	(195)	1.0	12.8	65.1	21.0
	11-20년	(601)	2.5	11.1	61.2	25.1
	20-30년	(219)	1.8	17.4	64.8	16.0
	30년이상	(70)	2.9	30.0	60.0	7.1
근무학교	초등학교	(562)	1.4	14.6	65.1	18.9
	중학교	(356)	1.7	11.8	62.9	23.6
	실업계고교	(171)	1.2	13.5	60.8	24.6
	인문고교	(326)	2.5	17.5	58.6	21.5
	특수목적고	(20)	5.0	15.0	65.0	15.0
	특수학교	(51)	.0	9.8	72.5	17.6
설립유형	국공립	(1275)	1.4	14.2	63.1	21.3
	종교계사립	(88)	2.3	19.3	58.0	20.5
	비종교계사립	(122)	4.1	11.5	64.8	19.7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2.8	9.9	62.4	24.8
	사회및도덕교과	(181)	1.7	15.5	56.9	26.0
	과학교과	(74)	4.1	12.2	60.8	23.0
	외국어교과	(123)	1.6	17.1	60.2	21.1
	수학교과	(109)	2.8	13.8	65.1	18.3
	실과및실업교과	(125)	.8	16.0	61.6	21.6
	예체능및교련교과	(86)	1.2	9.3	66.3	23.3
	기타	(31)	.0	16.1	58.1	25.8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5)	1.5	12.9	62.4	23.1
	중소도시	(483)	1.4	13.0	64.4	21.1
	농어촌,도서지역	(267)	2.6	20.2	61.4	15.7
학교지역	서울	(19)	5.3	21.1	57.9	15.8
	부산	(357)	1.1	12.6	66.9	19.3
	대구	(55)	.0	9.1	56.4	34.5
	인천	(110)	.9	11.8	63.6	23.6
	광주	(52)	.0	9.6	61.5	28.8
	대전	(77)	6.5	20.8	55.8	16.9
	울산	(69)	.0	13.0	47.8	39.1
	경기	(36)	.0	11.1	72.2	16.7
	강원	(45)	2.2	13.3	62.2	22.2
	충북	(102)	4.9	17.6	65.7	11.8
	충남	(119)	1.7	13.4	63.0	21.8
	전남	(67)	.0	10.4	67.2	22.4
	전북	(104)	1.0	16.3	66.3	16.3
	경북	(92)	1.1	15.2	59.8	23.9
	경남	(112)	.9	19.6	58.9	20.5
제주	(70)	4.3	15.7	62.9	17.1	

문1-13 학부모가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8)	.2	1.1	40.3	58.4
	여자	(872)	.0	1.5	39.3	59.2
연령	20-29세	(259)	.0	1.2	29.7	69.1
	30-39세	(558)	.2	1.4	36.2	62.2
	40-49세	(455)	.0	.9	44.8	54.3
	50-59세	(146)	.0	2.7	53.4	43.8
	60세이상	(14)	.0	.0	57.1	42.9
교육경력	0-5년	(344)	.0	1.5	28.8	69.8
	6-10년	(194)	.0	1.5	36.6	61.9
	11-20년	(605)	.2	1.2	40.5	58.2
	20-30년	(218)	.0	.9	52.3	46.8
	30년이상	(70)	.0	2.9	55.7	41.4
근무학교	초등학교	(561)	.0	1.6	42.6	55.8
	중학교	(356)	.3	1.1	36.8	61.8
	실업계고교	(173)	.0	1.2	36.4	62.4
	인문고교	(328)	.0	1.5	39.6	58.8
	특수목적고	(20)	.0	5.0	30.0	65.0
	특수학교	(51)	.0	.0	35.3	64.7
설립유형	국공립	(1278)	.1	1.3	39.7	58.8
	종교계사립	(88)	.0	3.4	31.8	64.8
	비종교계사립	(122)	.0	.8	41.8	57.4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0	.0	37.6	62.4
	사회및도덕교과	(182)	.0	1.1	37.4	61.5
	과학교과	(74)	1.4	4.1	44.6	50.0
	외국어교과	(124)	.0	1.6	38.7	59.7
	수학교과	(109)	.0	.9	37.6	61.5
	실과및실업교과	(127)	.0	2.4	33.1	64.6
	예체능및교련교과	(86)	.0	1.2	41.9	57.0
	기타	(31)	.0	.0	38.7	61.3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4)	.1	1.6	37.3	60.9
	중소도시	(485)	.0	.6	41.0	58.4
	농어촌,도서지역	(269)	.0	2.2	42.4	55.4
학교지역	서울	(19)	.0	.0	47.4	52.6
	부산	(355)	.3	1.7	38.3	59.7
	대구	(55)	.0	1.8	38.2	60.0
	인천	(110)	.0	1.8	34.5	63.6
	광주	(52)	.0	.0	44.2	55.8
	대전	(77)	.0	3.9	33.8	62.3
	울산	(70)	.0	.0	32.9	67.1
	경기	(36)	.0	.0	41.7	58.3
	강원	(45)	.0	4.4	22.2	73.3
	충북	(102)	.0	.0	36.3	63.7
	충남	(119)	.0	2.5	39.5	58.0
	전남	(68)	.0	1.5	32.4	66.2
	전북	(105)	.0	1.0	44.8	54.3
	경북	(93)	.0	.0	51.6	48.4
	경남	(113)	.0	.0	42.5	57.5
제주	(70)	.0	2.9	52.9	44.3	

문1-14 학생의 징계에 대해 학부모가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1)	1.5	10.5	58.1	29.9
	여자	(861)	.0	7.7	57.5	34.8
연령	20-29세	(253)	1.2	12.6	60.1	26.1
	30-39세	(554)	.2	7.2	56.0	36.6
	40-49세	(450)	.4	8.4	55.1	36.0
	50-59세	(143)	.7	8.4	69.9	21.0
	60세이상	(14)	7.1	14.3	57.1	21.4
교육경력	0-5년	(337)	.9	12.5	54.6	32.0
	6-10년	(194)	.5	5.2	59.8	34.5
	11-20년	(598)	.3	7.9	56.9	34.9
	20-30년	(214)	.0	7.0	62.6	30.4
	30년이상	(70)	2.9	14.3	61.4	21.4
근무학교	초등학교	(554)	.7	12.6	58.1	28.5
	중학교	(349)	.3	5.4	57.9	36.4
	실업계고교	(172)	.6	8.1	59.9	31.4
	인문고교	(325)	.9	6.8	57.2	35.1
	특수목적고	(20)	.0	10.0	55.0	35.0
	특수학교	(50)	.0	2.0	58.0	40.0
설립유형	국공립	(1262)	.6	8.6	59.2	31.7
	종교계사립	(86)	1.2	9.3	38.4	51.2
	비종교계사립	(121)	.8	9.9	60.3	28.9
담당과목	국어교과	(139)	.0	5.0	56.1	38.8
	사회및도덕교과	(179)	.6	3.9	58.7	36.9
	과학교과	(73)	2.7	11.0	57.5	28.8
	외국어교과	(122)	.0	8.2	61.5	30.3
	수학교과	(109)	.9	4.6	59.6	34.9
	실과및실업교과	(126)	.0	11.1	57.1	31.7
	예체능및교련교과	(84)	.0	6.0	54.8	39.3
	기타	(31)	.0	6.5	54.8	38.7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9)	.8	9.5	56.7	33.1
	중소도시	(480)	.6	6.3	59.8	33.3
	농어촌,도서지역	(261)	.0	11.1	58.6	30.3
학교지역	서울	(19)	5.3	15.8	73.7	5.3
	부산	(353)	.3	8.5	55.8	35.4
	대구	(55)	.0	5.5	56.4	38.2
	인천	(108)	.0	13.0	57.4	29.6
	광주	(51)	.0	11.8	70.6	17.6
	대전	(77)	2.6	13.0	46.8	37.7
	울산	(69)	2.9	4.3	55.1	37.7
	경기	(36)	.0	2.8	61.1	36.1
	강원	(45)	.0	4.4	53.3	42.2
	충북	(102)	.0	8.8	69.6	21.6
	충남	(118)	.8	9.3	51.7	38.1
	전남	(65)	.0	6.2	56.9	36.9
	전북	(103)	1.0	5.8	67.0	26.2
	경북	(91)	.0	14.3	51.6	34.1
	경남	(110)	.0	6.4	61.8	31.8
제주	(68)	1.5	8.8	58.8	30.9	

문1-15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에 대해 학점을 준다면?

		사례수	F	D	C	B	A
성별	남자	(535)	7.5	21.7	42.2	25.4	3.2
	여자	(845)	5.0	16.0	40.2	33.3	5.6
연령	20-29세	(252)	2.8	15.1	42.1	36.9	3.2
	30-39세	(539)	7.8	16.9	39.0	31.2	5.2
	40-49세	(438)	6.8	22.6	41.3	24.9	4.3
	50-59세	(141)	1.4	17.0	44.0	31.2	6.4
	60세이상	(12)	8.3	.0	66.7	25.0	.0
교육경력	0-5년	(336)	7.7	15.5	39.0	34.2	3.6
	6-10년	(186)	2.7	15.1	41.4	35.5	5.4
	11-20년	(583)	7.2	21.4	40.5	26.8	4.1
	20-30년	(208)	3.8	15.9	43.3	31.3	5.8
	30년이상	(68)	1.5	19.1	47.1	23.5	8.8
근무학교	초등학교	(545)	4.0	13.8	42.8	33.0	6.4
	중학교	(341)	5.6	21.4	34.9	32.6	5.6
	실업계고교	(168)	7.7	23.8	43.5	22.6	2.4
	인문고교	(313)	8.0	20.1	40.3	29.1	2.6
	특수목적고	(20)	10.0	25.0	45.0	20.0	.0
	특수학교	(49)	6.1	14.3	42.9	30.6	6.1
설립유형	국공립	(1232)	5.4	17.3	40.5	31.7	5.0
	종교계사립	(84)	13.1	25.0	39.3	20.2	2.4
	비종교계사립	(119)	5.0	23.5	41.2	26.1	4.2
담당과목	국어교과	(138)	8.0	28.3	37.0	22.5	4.3
	사회및도덕교과	(174)	9.2	25.9	40.8	23.0	1.1
	과학교과	(71)	8.5	18.3	38.0	28.2	7.0
	외국어교과	(122)	4.9	14.8	42.6	36.1	1.6
	수학교과	(105)	6.7	21.0	29.5	38.1	4.8
	실과및실업교과	(119)	5.9	19.3	43.7	26.1	5.0
	예체능및교련교과	(81)	4.9	12.3	44.4	33.3	4.9
	기타	(29)	17.2	13.8	37.9	31.0	.0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13)	5.5	20.5	39.1	31.0	3.9
	중소도시	(467)	6.2	16.7	40.3	31.3	5.6
	농어촌,도서지역	(255)	6.3	15.3	45.1	27.5	5.9
학교지역	서울	(18)	.0	22.2	22.2	50.0	5.6
	부산	(351)	6.0	18.8	37.9	31.9	5.4
	대구	(52)	1.9	36.5	48.1	13.5	.0
	인천	(104)	4.8	19.2	35.6	39.4	1.0
	광주	(51)	2.0	11.8	35.3	43.1	7.8
	대전	(74)	6.8	14.9	43.2	31.1	4.1
	울산	(67)	9.0	31.3	43.3	16.4	.0
	경기	(35)	.0	11.4	37.1	34.3	17.1
	강원	(41)	2.4	7.3	56.1	29.3	4.9
	충북	(101)	2.0	9.9	47.5	31.7	8.9
	충남	(114)	8.8	16.7	43.0	27.2	4.4
	전남	(67)	11.9	28.4	34.3	23.9	1.5
	전북	(100)	2.0	21.0	41.0	29.0	7.0
	경북	(87)	13.8	20.7	40.2	21.8	3.4
	경남	(107)	5.6	15.0	45.8	30.8	2.8
제주	(67)	6.0	7.5	34.3	44.8	7.5	

문1-16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관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3)	20.8	79.2
	여자	(857)	19.8	80.2
연령	20-29세	(254)	15.7	84.3
	30-39세	(550)	19.1	80.9
	40-49세	(450)	24.0	76.0
	50-59세	(144)	18.8	81.3
	60세이상	(14)	42.9	57.1
교육경력	0-5년	(334)	16.5	83.5
	6-10년	(192)	16.7	83.3
	11-20년	(599)	23.7	76.3
	20-30년	(216)	21.3	78.7
	30년이상	(70)	15.7	84.3
근무학교	초등학교	(557)	15.4	84.6
	중학교	(353)	20.4	79.6
	실업계고교	(170)	18.2	81.8
	인문고교	(320)	28.4	71.6
	특수목적고	(19)	21.1	78.9
	특수학교	(50)	24.0	76.0
설립유형	국공립	(1264)	19.3	80.7
	종교계사립	(84)	27.4	72.6
	비종교계사립	(120)	23.3	76.7
담당과목	국어교과	(140)	22.9	77.1
	사회및도덕교과	(178)	24.7	75.3
	과학교과	(74)	20.3	79.7
	외국어교과	(119)	23.5	76.5
	수학교과	(108)	20.4	79.6
	실과및실업교과	(125)	23.2	76.8
	예체능및교련교과	(84)	17.9	82.1
	기타	(31)	29.0	71.0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2)	19.1	80.9
	중소도시	(480)	21.5	78.5
	농어촌,도서지역	(266)	20.3	79.7
학교지역	서울	(19)	26.3	73.7
	부산	(349)	19.2	80.8
	대구	(53)	17.0	83.0
	인천	(108)	18.5	81.5
	광주	(52)	19.2	80.8
	대전	(77)	18.2	81.8
	울산	(68)	23.5	76.5
	경기	(36)	13.9	86.1
	강원	(45)	15.6	84.4
	충북	(101)	20.8	79.2
	충남	(117)	26.5	73.5
	전남	(67)	13.4	86.6
	전북	(105)	18.1	81.9
	경북	(91)	28.6	71.4
경남	(111)	22.5	77.5	
제주	(70)	17.1	82.9	

문1-17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부모가 선택할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1)	39.6	60.4
	여자	(854)	30.0	70.0
연령	20-29세	(254)	21.3	78.7
	30-39세	(543)	34.1	65.9
	40-49세	(452)	39.8	60.2
	50-59세	(144)	34.7	65.3
	60세이상	(14)	35.7	64.3
교육경력	0-5년	(332)	23.8	76.2
	6-10년	(191)	31.4	68.6
	11-20년	(595)	39.8	60.2
	20-30년	(218)	35.3	64.7
	30년이상	(70)	30.0	70.0
근무학교	초등학교	(548)	19.0	81.0
	중학교	(353)	38.8	61.2
	실업계고교	(171)	42.1	57.9
	인문고교	(324)	48.5	51.5
	특수목적고	(19)	47.4	52.6
	특수학교	(49)	30.6	69.4
설립유형	국공립	(1257)	32.1	67.9
	중교계사립	(86)	48.8	51.2
	비중교계사립	(120)	40.0	60.0
담당과목	국어교과	(139)	43.9	56.1
	사회및도덕교과	(179)	44.7	55.3
	과학교과	(73)	38.4	61.6
	외국어교과	(122)	51.6	48.4
	수학교과	(108)	35.2	64.8
	실과및실업교과	(125)	42.4	57.6
	예체능및교련교과 기타	(86) (30)	39.5 33.3	60.5 66.7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0)	32.6	67.4
	중소도시	(477)	36.7	63.3
	농어촌,도서지역	(266)	31.2	68.8
학교지역	서울	(19)	42.1	57.9
	부산	(346)	31.8	68.2
	대구	(54)	33.3	66.7
	인천	(107)	22.4	77.6
	광주	(52)	40.4	59.6
	대전	(77)	31.2	68.8
	울산	(69)	49.3	50.7
	경기	(35)	20.0	80.0
	강원	(44)	27.3	72.7
	충북	(100)	30.0	70.0
	충남	(118)	37.3	62.7
	전남	(66)	28.8	71.2
	전북	(105)	37.1	62.9
	경북	(90)	43.3	56.7
경남	(112)	40.2	59.8	
제주	(70)	28.6	71.4	

문1-18 학부모가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4)	18.8	81.2
	여자	(863)	16.0	84.0
연령	20-29세	(256)	10.2	89.8
	30-39세	(550)	14.9	85.1
	40-49세	(454)	20.9	79.1
	50-59세	(145)	24.8	75.2
	60세이상	(14)	35.7	64.3
교육경력	0-5년	(336)	11.9	88.1
	6-10년	(191)	12.0	88.0
	11-20년	(603)	19.1	80.9
	20-30년	(218)	23.4	76.6
	30년이상	(70)	21.4	78.6
근무학교	초등학교	(555)	15.0	85.0
	중학교	(354)	18.1	81.9
	실업계고교	(172)	15.7	84.3
	인문고교	(325)	21.2	78.8
	특수목적고	(20)	15.0	85.0
	특수학교	(50)	16.0	84.0
설립유형	국공립	(1267)	16.4	83.6
	종교계사립	(87)	21.8	78.2
	비종교계사립	(121)	22.3	77.7
담당과목	국어교과	(140)	14.3	85.7
	사회및도덕교과	(181)	17.7	82.3
	과학교과	(74)	21.6	78.4
	외국어교과	(122)	22.1	77.9
	수학교과	(108)	17.6	82.4
	실과및실업교과	(127)	17.3	82.7
	예체능및교련교과	(85)	21.2	78.8
	기타	(31)	25.8	74.2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7)	16.8	83.2
	중소도시	(480)	15.8	84.2
	농어촌,도서지역	(268)	20.9	79.1
학교지역	서울	(19)	21.1	78.9
	부산	(351)	15.7	84.3
	대구	(54)	18.5	81.5
	인천	(108)	15.7	84.3
	광주	(52)	15.4	84.6
	대전	(77)	18.2	81.8
	울산	(70)	21.4	78.6
	경기	(35)	11.4	88.6
	강원	(44)	9.1	90.9
	충북	(101)	15.8	84.2
	충남	(119)	24.4	75.6
	전남	(67)	11.9	88.1
	전북	(105)	21.0	79.0
	경북	(91)	27.5	72.5
	경남	(113)	12.4	87.6
제주	(70)	12.9	87.1	

문1-19 학생의 징계에 대해 학부모가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49)	29.0	71.0
	여자	(860)	24.8	75.2
연령	20-29세	(254)	27.2	72.8
	30-39세	(551)	24.0	76.0
	40-49세	(447)	26.4	73.6
	50-59세	(145)	33.8	66.2
	60세이상	(14)	42.9	57.1
교육경력	0-5년	(334)	27.2	72.8
	6-10년	(192)	21.4	78.6
	11-20년	(597)	25.5	74.5
	20-30년	(217)	31.8	68.2
	30년이상	(70)	28.6	71.4
근무학교	초등학교	(553)	25.0	75.0
	중학교	(354)	25.1	74.9
	실업계고교	(171)	25.1	74.9
	인문고교	(322)	29.2	70.8
	특수목적고	(19)	36.8	63.2
	특수학교	(49)	36.7	63.3
설립유형	국공립	(1261)	26.2	73.8
	종교계사립	(87)	23.0	77.0
	비종교계사립	(119)	31.9	68.1
담당과목	국어교과	(139)	25.9	74.1
	사회및도덕교과	(180)	28.3	71.7
	과학교과	(73)	30.1	69.9
	외국어교과	(122)	29.5	70.5
	수학교과	(108)	21.3	78.7
	실과및실업교과	(125)	27.2	72.8
	예체능및교련교과	(84)	32.1	67.9
	기타	(31)	25.8	74.2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3)	25.9	74.1
	중소도시	(477)	27.9	72.1
	농어촌,도서지역	(268)	25.7	74.3
학교지역	서울	(19)	31.6	68.4
	부산	(349)	23.2	76.8
	대구	(54)	24.1	75.9
	인천	(108)	27.8	72.2
	광주	(50)	30.0	70.0
	대전	(77)	26.0	74.0
	울산	(69)	33.3	66.7
	경기	(35)	34.3	65.7
	강원	(44)	15.9	84.1
	충북	(101)	23.8	76.2
	충남	(119)	25.2	74.8
	전남	(67)	16.4	83.6
	전북	(104)	37.5	62.5
	경북	(90)	33.3	66.7
	경남	(112)	26.8	73.2
제주	(70)	25.7	74.3	

문1-20 학생이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4)	5.6	40.6	47.5	6.3
	여자	(864)	2.9	34.1	57.4	5.6
연령	20-29세	(257)	1.9	27.2	65.4	5.4
	30-39세	(555)	3.4	32.8	56.9	6.8
	40-49세	(449)	3.8	41.0	49.0	6.2
	50-59세	(145)	6.9	55.2	35.9	2.1
	60세이상	(14)	35.7	28.6	35.7	.0
교육경력	0-5년	(342)	1.8	26.0	64.9	7.3
	6-10년	(191)	2.6	33.0	59.2	5.2
	11-20년	(601)	5.0	37.1	51.1	6.8
	20-30년	(216)	3.2	52.3	41.7	2.8
	30년이상	(69)	11.6	44.9	42.0	1.4
근무학교	초등학교	(559)	4.5	34.5	55.8	5.2
	중학교	(350)	2.6	35.7	55.7	6.0
	실업계고교	(170)	4.7	33.5	54.7	7.1
	인문고교	(326)	4.0	44.8	44.8	6.4
	특수목적고	(19)	.0	36.8	57.9	5.3
	특수학교	(51)	2.0	29.4	64.7	3.9
설립유형	국공립	(1266)	3.6	35.6	54.7	6.1
	종교계사립	(88)	3.4	40.9	48.9	6.8
	비종교계사립	(120)	5.0	46.7	45.8	2.5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2.8	38.3	49.6	9.2
	사회및도덕교과	(178)	3.4	34.3	53.9	8.4
	과학교과	(74)	5.4	37.8	50.0	6.8
	외국어교과	(124)	4.0	31.5	60.5	4.0
	수학교과	(109)	3.7	45.9	47.7	2.8
	실과및실업교과	(122)	1.6	45.1	49.2	4.1
	예체능및교련교과	(85)	5.9	41.2	47.1	5.9
	기타	(31)	.0	29.0	61.3	9.7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9)	3.8	37.3	52.5	6.3
	중소도시	(479)	4.2	36.7	54.1	5.0
	농어촌,도서지역	(266)	3.0	35.3	55.6	6.0
학교지역	서울	(19)	10.5	52.6	21.1	15.8
	부산	(354)	2.8	38.7	52.8	5.6
	대구	(54)	1.9	40.7	53.7	3.7
	인천	(110)	1.8	30.9	60.0	7.3
	광주	(51)	5.9	47.1	45.1	2.0
	대전	(77)	5.2	37.7	44.2	13.0
	울산	(68)	10.3	26.5	60.3	2.9
	경기	(35)	2.9	28.6	65.7	2.9
	강원	(43)	9.3	27.9	55.8	7.0
	충북	(102)	3.9	33.3	60.8	2.0
	충남	(118)	3.4	36.4	48.3	11.9
	전남	(67)	6.0	22.4	67.2	4.5
	전북	(104)	4.8	35.6	54.8	4.8
	경북	(92)	1.1	38.0	55.4	5.4
	경남	(111)	2.7	43.2	48.6	5.4
제주	(70)	1.4	48.6	48.6	1.4	

문1-21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소지품검사, 몸수색, 사물함 수색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4)	2.3	27.1	59.6	11.0
	여자	(868)	1.3	23.4	65.3	10.0
연령	20-29세	(257)	1.6	20.2	66.5	11.7
	30-39세	(557)	.9	20.8	66.1	12.2
	40-49세	(450)	1.8	26.7	62.0	9.6
	50-59세	(146)	2.7	42.5	50.7	4.1
	60세이상	(14)	21.4	28.6	42.9	7.1
교육경력	0-5년	(342)	1.5	19.3	64.9	14.3
	6-10년	(192)	.0	20.3	68.8	10.9
	11-20년	(601)	1.8	24.1	63.2	10.8
	20-30년	(218)	2.3	34.9	58.3	4.6
	30년이상	(70)	4.3	40.0	51.4	4.3
근무학교	초등학교	(561)	1.4	25.8	63.5	9.3
	중학교	(353)	1.7	22.7	65.2	10.5
	실업계고교	(169)	2.4	28.4	59.8	9.5
	인문고교	(326)	1.5	23.6	62.3	12.6
	특수목적고	(20)	.0	20.0	65.0	15.0
	특수학교	(51)	3.9	27.5	60.8	7.8
설립유형	국공립	(1271)	1.7	24.1	63.9	10.3
	종교계사립	(87)	1.1	26.4	58.6	13.8
	비종교계사립	(121)	1.7	32.2	57.9	8.3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1.4	21.1	60.6	16.9
	사회및도덕교과	(181)	.6	21.5	65.2	12.7
	과학교과	(74)	.0	24.3	67.6	8.1
	외국어교과	(122)	2.5	23.8	64.8	9.0
	수학교과	(109)	1.8	29.4	59.6	9.2
	실과및실업교과	(122)	1.6	28.7	59.8	9.8
	예체능및교련교과	(85)	5.9	25.9	60.0	8.2
	기타	(31)	.0	12.9	77.4	9.7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3)	1.8	26.5	61.3	10.5
	중소도시	(479)	1.5	23.8	65.1	9.6
	농어촌,도서지역	(267)	1.9	22.1	64.8	11.2
학교지역	서울	(19)	5.3	31.6	57.9	5.3
	부산	(357)	2.2	27.7	60.8	9.2
	대구	(55)	1.8	29.1	61.8	7.3
	인천	(110)	.9	20.0	64.5	14.5
	광주	(51)	2.0	29.4	62.7	5.9
	대전	(77)	.0	29.9	54.5	15.6
	울산	(68)	1.5	19.1	66.2	13.2
	경기	(35)	.0	20.0	77.1	2.9
	강원	(43)	2.3	23.3	67.4	7.0
	충북	(102)	2.0	28.4	59.8	9.8
	충남	(119)	1.7	26.1	56.3	16.0
	전남	(67)	3.0	14.9	76.1	6.0
	전북	(103)	2.9	21.4	64.1	11.7
	경북	(93)	1.1	23.7	63.4	11.8
	경남	(111)	.9	22.5	67.6	9.0
제주	(70)	.0	24.3	68.6	7.1	

문1-22 학생의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성적이나 학생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5)	.9	12.1	69.7	17.3
	여자	(867)	.1	6.5	68.3	25.1
연령	20-29세	(256)	.0	5.5	63.7	30.9
	30-39세	(558)	.4	6.6	67.9	25.1
	40-49세	(450)	.4	10.2	71.8	17.6
	50-59세	(146)	.7	16.4	74.7	8.2
	60세이상	(14)	7.1	14.3	50.0	28.6
교육경력	0-5년	(341)	.0	5.0	62.5	32.6
	6-10년	(193)	.0	6.7	67.4	25.9
	11-20년	(601)	.5	10.0	69.9	19.6
	20-30년	(218)	.5	9.6	77.5	12.4
	30년이상	(70)	2.9	17.1	68.6	11.4
근무학교	초등학교	(561)	.4	6.8	66.8	26.0
	중학교	(352)	.6	8.2	73.0	18.2
	실업계고교	(170)	.0	11.2	72.9	15.9
	인문고교	(326)	.6	12.0	67.5	19.9
	특수목적고	(20)	.0	10.0	65.0	25.0
	특수학교	(51)	2.0	5.9	58.8	33.3
설립유형	국공립	(1271)	.5	8.3	68.6	22.6
	종교계사립	(87)	1.1	13.8	57.5	27.6
	비종교계사립	(121)	.0	9.9	80.2	9.9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0	9.9	67.6	22.5
	사회및도덕교과	(180)	.6	8.3	71.7	19.4
	과학교과	(74)	.0	10.8	70.3	18.9
	외국어교과	(122)	.8	13.1	70.5	15.6
	수학교과	(109)	.9	9.2	72.5	17.4
	실과및실업교과	(123)	.0	11.4	70.7	17.9
	예체능및교련교과	(85)	1.2	9.4	68.2	21.2
	기타	(31)	.0	9.7	61.3	29.0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4)	.5	8.9	67.4	23.2
	중소도시	(479)	.6	9.0	70.4	20.0
	농어촌,도서지역	(266)	.0	8.3	70.3	21.4
학교지역	서울	(19)	.0	21.1	73.7	5.3
	부산	(358)	.8	8.7	66.8	23.7
	대구	(55)	.0	16.4	69.1	14.5
	인천	(110)	.0	3.6	61.8	34.5
	광주	(51)	2.0	11.8	68.6	17.6
	대전	(77)	.0	9.1	66.2	24.7
	울산	(68)	1.5	5.9	75.0	17.6
	경기	(35)	.0	2.9	68.6	28.6
	강원	(43)	2.3	7.0	76.7	14.0
	충북	(102)	1.0	6.9	76.5	15.7
	충남	(118)	.0	12.7	68.6	18.6
	전남	(67)	.0	6.0	68.7	25.4
	전북	(103)	.0	7.8	72.8	19.4
	경북	(92)	.0	9.8	67.4	22.8
	경남	(112)	.0	11.6	64.3	24.1
제주	(70)	.0	7.1	74.3	18.6	

문1-23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4)	1.3	11.7	68.2	18.8
	여자	(864)	.3	8.2	67.2	24.2
연령	20-29세	(257)	.0	8.9	65.0	26.1
	30-39세	(556)	.7	6.1	68.0	25.2
	40-49세	(447)	1.1	12.8	66.9	19.2
	50-59세	(146)	.0	14.4	73.3	12.3
	60세이상	(14)	7.1	7.1	71.4	14.3
교육경력	0-5년	(342)	.3	7.9	63.7	28.1
	6-10년	(192)	1.0	8.3	68.8	21.9
	11-20년	(599)	.8	10.4	66.8	22.0
	20-30년	(216)	.5	10.6	73.1	15.7
	30년이상	(70)	1.4	11.4	72.9	14.3
근무학교	초등학교	(558)	.2	7.5	66.8	25.4
	중학교	(351)	1.1	8.5	72.4	17.9
	실업계고교	(170)	.6	12.4	70.0	17.1
	인문고교	(326)	1.2	12.6	64.7	21.5
	특수목적교	(20)	.0	20.0	50.0	30.0
	특수학교	(51)	2.0	11.8	58.8	27.5
설립유형	국공립	(1267)	.6	9.5	67.5	22.5
	종교계사립	(87)	2.3	10.3	64.4	23.0
	비종교계사립	(121)	1.7	12.4	70.2	15.7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1.4	11.3	66.2	21.1
	사회및도덕교과	(180)	1.1	7.2	69.4	22.2
	과학교과	(74)	2.7	9.5	74.3	13.5
	외국어교과	(122)	1.6	15.6	63.9	18.9
	수학교과	(109)	.0	9.2	71.6	19.3
	실과및실업교과	(122)	.0	11.5	72.1	16.4
	예체능및교련교과	(85)	2.4	10.6	64.7	22.4
	기타	(31)	.0	9.7	54.8	35.5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1)	1.0	9.4	67.3	22.3
	중소도시	(478)	.6	10.0	68.8	20.5
	농어촌,도서지역	(266)	.4	10.2	66.2	23.3
학교지역	서울	(19)	.0	26.3	63.2	10.5
	부산	(355)	1.1	9.9	64.2	24.8
	대구	(55)	1.8	3.6	78.2	16.4
	인천	(110)	.0	4.5	69.1	26.4
	광주	(51)	.0	11.8	76.5	11.8
	대전	(77)	1.3	14.3	66.2	18.2
	울산	(68)	1.5	8.8	64.7	25.0
	경기	(35)	.0	8.6	74.3	17.1
	강원	(43)	.0	7.0	74.4	18.6
	충북	(102)	1.0	10.8	71.6	16.7
	충남	(118)	1.7	15.3	59.3	23.7
	전남	(67)	.0	6.0	68.7	25.4
	전북	(104)	1.0	5.8	72.1	21.2
	경북	(92)	.0	10.9	63.0	26.1
	경남	(111)	.0	12.6	65.8	21.6
제주	(69)	.0	7.2	73.9	18.8	

문1-24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6)	1.1	12.2	65.3	21.4
	여자	(864)	.2	9.5	68.2	22.1
연령	20-29세	(255)	.0	9.8	69.0	21.2
	30-39세	(559)	.5	10.0	63.7	25.8
	40-49세	(448)	1.1	10.0	68.5	20.3
	50-59세	(146)	.0	15.8	70.5	13.7
	60세이상	(14)	.0	7.1	78.6	14.3
교육경력	0-5년	(340)	.0	9.7	65.3	25.0
	6-10년	(194)	.5	8.8	67.5	23.2
	11-20년	(601)	.8	10.5	65.9	22.8
	20-30년	(216)	.9	13.0	72.2	13.9
	30년이상	(70)	.0	12.9	67.1	20.0
근무학교	초등학교	(559)	.0	11.8	65.5	22.7
	중학교	(353)	.8	7.4	70.5	21.2
	실업계고교	(169)	1.8	9.5	66.9	21.9
	인문고교	(327)	.6	12.5	66.1	20.8
	특수목적고	(20)	.0	.0	80.0	20.0
	특수학교	(50)	.0	10.0	62.0	28.0
설립유형	국공립	(1268)	.6	10.1	66.8	22.5
	종교계사립	(88)	.0	15.9	61.4	22.7
	비종교계사립	(121)	.0	9.9	73.6	16.5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7	9.2	68.1	22.0
	사회및도덕교과	(180)	.0	10.6	66.7	22.8
	과학교과	(74)	1.4	12.2	66.2	20.3
	외국어교과	(123)	.8	10.6	74.0	14.6
	수학교과	(109)	1.8	9.2	72.5	16.5
	실과및실업교과	(123)	2.4	11.4	65.0	21.1
	예체능및교련교과	(85)	.0	7.1	67.1	25.9
	기타	(31)	.0	3.2	71.0	25.8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2)	.1	10.4	66.0	23.5
	중소도시	(478)	1.0	9.0	69.7	20.3
	농어촌,도서지역	(267)	.7	13.1	65.5	20.6
학교지역	서울	(19)	5.3	.0	73.7	21.1
	부산	(356)	.0	10.7	67.7	21.6
	대구	(55)	.0	12.7	65.5	21.8
	인천	(110)	.0	5.5	68.2	26.4
	광주	(51)	.0	11.8	64.7	23.5
	대전	(77)	.0	13.0	62.3	24.7
	울산	(68)	.0	11.8	54.4	33.8
	경기	(35)	.0	8.6	85.7	5.7
	강원	(43)	.0	14.0	58.1	27.9
	충북	(102)	1.0	15.7	69.6	13.7
	충남	(118)	.8	8.5	68.6	22.0
	전남	(67)	.0	3.0	64.2	32.8
	전북	(103)	1.0	9.7	67.0	22.3
	경북	(92)	.0	10.9	64.1	25.0
	경남	(112)	2.7	12.5	69.6	15.2
제주	(70)	1.4	10.0	74.3	14.3	

문1-25 학생의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권리					
		사례수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3)	6.5	62.7	30.7
	여자	(863)	5.2	69.2	25.6
연령	20-29세	(256)	1.2	63.7	35.2
	30-39세	(557)	4.5	67.1	28.4
	40-49세	(447)	7.8	66.4	25.7
	50-59세	(144)	11.8	68.8	19.4
	60세이상	(14)	7.1	85.7	7.1
교육경력	0-5년	(341)	1.5	60.1	38.4
	6-10년	(192)	4.2	66.7	29.2
	11-20년	(600)	6.0	68.5	25.5
	20-30년	(214)	9.8	71.5	18.7
	30년이상	(70)	15.7	67.1	17.1
근무학교	초등학교	(556)	7.2	66.0	26.8
	중학교	(351)	3.4	68.4	28.2
	실업계고교	(169)	4.1	71.0	24.9
	인문고교	(327)	6.4	64.8	28.7
	특수목적고	(20)	.0	80.0	20.0
	특수학교	(51)	5.9	56.9	37.3
설립유형	국공립	(1264)	6.0	66.0	28.0
	종교계사립	(88)	4.5	62.5	33.0
	비종교계사립	(121)	2.5	77.7	19.8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4.2	63.4	32.4
	사회및도덕교과	(181)	1.1	68.5	30.4
	과학교과	(74)	4.1	67.6	28.4
	외국어교과	(123)	8.1	65.0	26.8
	수학교과	(109)	3.7	74.3	22.0
	실과및실업교과	(121)	9.1	73.6	17.4
	예체능및교련교과	(84)	4.8	58.3	36.9
	기타	(31)	3.2	61.3	35.5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1)	6.2	66.3	27.5
	중소도시	(478)	4.2	68.4	27.4
	농어촌,도서지역	(264)	6.8	65.5	27.7
학교지역	서울	(19)	10.5	57.9	31.6
	부산	(355)	8.7	65.1	26.2
	대구	(55)	1.8	78.2	20.0
	인천	(110)	1.8	62.7	35.5
	광주	(51)	3.9	66.7	29.4
	대전	(77)	6.5	61.0	32.5
	울산	(68)	2.9	72.1	25.0
	경기	(35)	.0	85.7	14.3
	강원	(43)	.0	74.4	25.6
	충북	(102)	4.9	72.5	22.5
	충남	(118)	7.6	65.3	27.1
	전남	(67)	3.0	52.2	44.8
	전북	(102)	5.9	57.8	36.3
	경북	(92)	6.5	62.0	31.5
	경남	(110)	6.4	71.8	21.8
제주	(70)	4.3	81.4	14.3	

문1-26 학생이 정계를 받을 경우,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6)	.9	10.4	61.5	27.2
	여자	(868)	.2	4.8	63.2	31.7
연령	20-29세	(258)	.0	5.0	59.7	35.3
	30-39세	(558)	.4	4.1	62.4	33.2
	40-49세	(450)	.4	7.8	64.4	27.3
	50-59세	(146)	1.4	17.8	62.3	18.5
	60세이상	(14)	7.1	21.4	50.0	21.4
교육경력	0-5년	(343)	.0	4.4	58.9	36.7
	6-10년	(194)	1.0	4.1	61.9	33.0
	11-20년	(600)	.3	6.8	63.5	29.3
	20-30년	(218)	.9	10.6	65.6	22.9
	30년이상	(70)	1.4	18.6	61.4	18.6
근무학교	초등학교	(561)	.2	5.9	60.2	33.7
	중학교	(353)	.6	7.1	66.0	26.3
	실업계고교	(170)	.6	7.6	70.0	21.8
	인문고교	(327)	.9	8.9	58.7	31.5
	특수목적교	(20)	.0	5.0	70.0	25.0
	특수학교	(51)	.0	5.9	60.8	33.3
설립유형	국공립	(1272)	.4	6.7	62.5	30.4
	종교계사립	(88)	1.1	10.2	54.5	34.1
	비종교계사립	(121)	.8	8.3	69.4	21.5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7	6.3	61.3	31.7
	사회및도덕교과	(181)	.6	5.0	61.3	33.1
	과학교과	(74)	2.7	6.8	63.5	27.0
	외국어교과	(124)	.0	8.1	67.7	24.2
	수학교과	(109)	.0	9.2	68.8	22.0
	실과및실업교과	(123)	1.6	11.4	66.7	20.3
	예체능및교련교과	(84)	.0	13.1	58.3	28.6
	기타	(31)	.0	.0	54.8	45.2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5)	.3	6.5	62.3	30.9
	중소도시	(477)	.8	6.7	63.5	28.9
	농어촌,도서지역	(269)	.4	8.6	62.1	29.0
학교지역	서울	(19)	.0	21.1	57.9	21.1
	부산	(359)	.3	6.4	61.0	32.3
	대구	(55)	.0	9.1	58.2	32.7
	인천	(110)	.0	3.6	60.9	35.5
	광주	(51)	.0	5.9	70.6	23.5
	대전	(77)	.0	9.1	63.6	27.3
	울산	(68)	1.5	4.4	67.6	26.5
	경기	(35)	2.9	.0	62.9	34.3
	강원	(43)	.0	2.3	72.1	25.6
	충북	(102)	.0	3.9	69.6	26.5
	충남	(118)	.0	9.3	60.2	30.5
	전남	(67)	.0	3.0	58.2	38.8
	전북	(104)	1.0	6.7	63.5	28.8
	경북	(92)	.0	10.9	56.5	32.6
	경남	(112)	.9	10.7	66.1	22.3
	제주	(70)	2.9	11.4	58.6	27.1

문1-27 학생이 징계절차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5)	.4	8.5	65.6	25.6
	여자	(865)	.1	5.9	64.4	29.6
연령	20-29세	(255)	.0	4.7	65.1	30.2
	30-39세	(558)	.2	5.7	62.9	31.2
	40-49세	(449)	.2	7.8	65.7	26.3
	50-59세	(146)	.0	11.6	69.2	19.2
	60세이상	(14)	7.1	14.3	64.3	14.3
교육경력	0-5년	(341)	.0	4.1	62.2	33.7
	6-10년	(193)	.5	6.2	66.8	26.4
	11-20년	(599)	.2	6.7	65.1	28.0
	20-30년	(218)	.0	9.2	66.1	24.8
	30년이상	(70)	1.4	17.1	64.3	17.1
근무학교	초등학교	(559)	.4	5.5	61.2	32.9
	중학교	(352)	.0	7.4	69.9	22.7
	실업계고교	(169)	.6	7.7	69.2	22.5
	인문고교	(326)	.0	8.6	64.4	27.0
	특수목적고	(20)	.0	5.0	70.0	25.0
	특수학교	(51)	.0	5.9	56.9	37.3
설립유형	국공립	(1268)	.2	7.0	64.1	28.6
	종교계사립	(87)	.0	5.7	63.2	31.0
	비종교계사립	(121)	.0	6.6	74.4	19.0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0	5.0	68.1	27.0
	사회및도덕교과	(181)	.0	6.1	60.2	33.7
	과학교과	(74)	.0	6.8	68.9	24.3
	외국어교과	(121)	.0	7.4	69.4	23.1
	수학교과	(109)	.0	12.8	70.6	16.5
	실과및실업교과	(123)	.8	10.6	73.2	15.4
	예체능및교련교과 기타	(85) (31)	.0 .0	10.6 3.2	67.1 54.8	22.4 41.9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4)	.1	7.1	62.1	30.7
	중소도시	(478)	.2	6.9	69.0	23.8
	농어촌,도서지역	(264)	.4	6.4	65.2	28.0
학교지역	서울	(19)	.0	10.5	78.9	10.5
	부산	(358)	.3	8.7	60.3	30.7
	대구	(55)	.0	3.6	70.9	25.5
	인천	(110)	.0	2.7	62.7	34.5
	광주	(51)	.0	13.7	58.8	27.5
	대전	(77)	.0	5.2	63.6	31.2
	울산	(68)	.0	5.9	61.8	32.4
	경기	(35)	2.9	.0	62.9	34.3
	강원	(43)	.0	4.7	65.1	30.2
	충북	(102)	.0	8.8	72.5	18.6
	충남	(119)	.8	5.0	65.5	28.6
	전남	(65)	.0	6.2	61.5	32.3
	전북	(103)	.0	5.8	67.0	27.2
	경북	(92)	.0	7.6	60.9	31.5
	경남	(111)	.0	10.8	73.0	16.2
제주	(69)	.0	4.3	72.5	23.2	

문1-28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 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48)	.5	7.8	54.0	37.6
	여자	(861)	.1	5.2	59.8	34.8
연령	20-29세	(254)	.0	3.9	57.9	38.2
	30-39세	(555)	.0	4.9	56.6	38.6
	40-49세	(442)	.5	7.5	57.7	34.4
	50-59세	(146)	.7	11.6	58.2	29.5
	60세이상	(14)	7.1	7.1	64.3	21.4
교육경력	0-5년	(340)	.0	3.2	54.4	42.4
	6-10년	(189)	.0	3.7	56.1	40.2
	11-20년	(595)	.3	7.6	57.0	35.1
	20-30년	(216)	.0	7.4	64.8	27.8
	30년이상	(70)	2.9	12.9	55.7	28.6
근무학교	초등학교	(553)	.2	6.3	57.9	35.6
	중학교	(349)	.3	5.4	57.6	36.7
	실업계고교	(170)	.0	5.9	61.2	32.9
	인문고교	(323)	.6	6.8	58.2	34.4
	특수목적고	(20)	.0	15.0	25.0	60.0
	특수학교	(50)	.0	2.0	52.0	46.0
설립유형	국공립	(1259)	.3	5.8	58.1	35.7
	종교계사립	(86)	.0	7.0	58.1	34.9
	비종교계사립	(120)	.0	9.2	51.7	39.2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0	7.0	54.2	38.7
	사회및도덕교과	(179)	.6	6.1	54.7	38.5
	과학교과	(72)	1.4	1.4	70.8	26.4
	외국어교과	(121)	.0	6.6	55.4	38.0
	수학교과	(109)	.9	4.6	66.1	28.4
	실과및실업교과	(123)	.0	6.5	61.0	32.5
	예체능및교련교과 기타	(84) (31)	.0 .0	8.3 9.7	51.2 38.7	40.5 51.6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6)	.0	6.1	58.1	35.8
	중소도시	(473)	.4	5.5	58.6	35.5
	농어촌,도서지역	(265)	.8	7.5	54.7	37.0
학교지역	서울	(19)	.0	10.5	52.6	36.8
	부산	(352)	.0	6.8	54.8	38.4
	대구	(54)	.0	5.6	70.4	24.1
	인천	(110)	.0	1.8	64.5	33.6
	광주	(50)	.0	10.0	52.0	38.0
	대전	(77)	.0	5.2	57.1	37.7
	울산	(68)	.0	5.9	61.8	32.4
	경기	(35)	.0	.0	62.9	37.1
	강원	(43)	.0	11.6	51.2	37.2
	충북	(102)	.0	7.8	58.8	33.3
	충남	(117)	1.7	3.4	53.8	41.0
	전남	(66)	.0	6.1	56.1	37.9
	전북	(104)	.0	3.8	60.6	35.6
	경북	(90)	1.1	6.7	51.1	41.1
	경남	(110)	.9	8.2	62.7	28.2
	제주	(68)	.0	8.8	55.9	35.3

문1-29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에 대해 학점을 준다면?							
		사례수	F	D	C	B	A
성별	남자	(547)	4.9	19.6	41.9	31.4	2.2
	여자	(856)	4.0	17.5	46.6	28.9	3.0
연령	20-29세	(252)	4.0	18.7	42.1	32.9	2.4
	30-39세	(554)	4.3	18.8	47.7	27.4	1.8
	40-49세	(443)	5.6	19.9	42.9	28.2	3.4
	50-59세	(142)	1.4	12.7	43.7	38.7	3.5
	60세이상	(14)	.0	7.1	42.9	35.7	14.3
교육경력	0-5년	(338)	4.7	19.2	42.9	30.5	2.7
	6-10년	(191)	1.6	16.8	46.6	31.9	3.1
	11-20년	(593)	6.1	18.5	45.9	27.8	1.7
	20-30년	(213)	2.8	20.7	42.3	30.5	3.8
	30년이상	(69)	.0	8.7	44.9	39.1	7.2
근무학교	초등학교	(552)	2.0	16.8	46.4	30.3	4.5
	중학교	(350)	6.9	14.6	45.1	30.9	2.6
	실업계고교	(169)	6.5	25.4	44.4	21.3	2.4
	인문고교	(320)	5.0	20.6	41.6	32.2	.6
	특수목적고	(19)	.0	26.3	36.8	36.8	.0
	특수학교	(51)	2.0	29.4	41.2	23.5	3.9
설립유형	국공립	(1257)	4.2	18.5	44.9	29.4	3.0
	종교계사립	(85)	8.2	20.0	37.6	32.9	1.2
	비종교계사립	(118)	2.5	20.3	44.9	29.7	2.5
담당과목	국어교과	(140)	10.0	22.1	43.6	23.6	.7
	사회및도덕교과	(178)	6.7	24.2	41.6	27.5	.0
	과학교과	(73)	6.8	15.1	41.1	35.6	1.4
	외국어교과	(121)	4.1	15.7	47.1	31.4	1.7
	수학교과	(107)	2.8	12.1	52.3	30.8	1.9
	실과및실업교과	(123)	2.4	21.1	46.3	28.5	1.6
	예체능및교련교과	(83)	4.8	14.5	34.9	39.8	6.0
	기타	(31)	12.9	32.3	29.0	25.8	.0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5)	4.3	20.6	44.0	29.0	2.2
	중소도시	(472)	4.2	18.0	43.4	30.9	3.4
	농어촌,도서지역	(263)	4.6	15.2	47.5	28.9	3.8
학교지역	서울	(19)	5.3	15.8	36.8	36.8	5.3
	부산	(354)	3.7	21.8	42.1	30.2	2.3
	대구	(54)	1.9	24.1	51.9	22.2	.0
	인천	(108)	3.7	23.1	47.2	25.0	.9
	광주	(51)	2.0	5.9	47.1	39.2	5.9
	대전	(75)	8.0	13.3	42.7	32.0	4.0
	울산	(68)	7.4	26.5	44.1	22.1	.0
	경기	(34)	.0	17.6	32.4	41.2	8.8
	강원	(42)	4.8	16.7	35.7	40.5	2.4
	충북	(100)	.0	18.0	41.0	37.0	4.0
	충남	(117)	6.8	12.8	54.7	23.9	1.7
	전남	(66)	9.1	22.7	45.5	19.7	3.0
	전북	(103)	1.9	14.6	46.6	32.0	4.9
	경북	(91)	7.7	22.0	47.3	19.8	3.3
	경남	(110)	3.6	17.3	47.3	30.0	1.8
제주	(69)	4.3	13.0	36.2	40.6	5.8	

문1-30 학생이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2)	68.8	31.2
	여자	(865)	65.1	34.9
연령	20-29세	(257)	54.1	45.9
	30-39세	(555)	70.6	29.4
	40-49세	(447)	71.8	28.2
	50-59세	(146)	58.2	41.8
	60세이상	(14)	50.0	50.0
교육경력	0-5년	(342)	56.4	43.6
	6-10년	(190)	69.5	30.5
	11-20년	(599)	75.3	24.7
	20-30년	(217)	61.3	38.7
	30년이상	(70)	48.6	51.4
근무학교	초등학교	(557)	40.4	59.6
	중학교	(353)	83.6	16.4
	실업계고교	(169)	86.4	13.6
	인문고교	(326)	82.5	17.5
	특수목적고	(19)	78.9	21.1
	특수학교	(51)	64.7	35.3
설립유형	국공립	(1267)	64.1	35.9
	종교계사립	(88)	83.0	17.0
	비종교계사립	(119)	82.4	17.6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83.7	16.3
	사회및도덕교과	(178)	82.6	17.4
	과학교과	(73)	78.1	21.9
	외국어교과	(124)	81.5	18.5
	수학교과	(109)	85.3	14.7
	실과및실업교과	(124)	85.5	14.5
	예체능및교련교과	(85)	82.4	17.6
	기타	(31)	77.4	22.6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8)	66.2	33.8
	중소도시	(477)	68.3	31.7
	농어촌,도서지역	(269)	65.1	34.9
학교지역	서울	(19)	78.9	21.1
	부산	(354)	66.1	33.9
	대구	(55)	80.0	20.0
	인천	(109)	49.5	50.5
	광주	(51)	66.7	33.3
	대전	(77)	70.1	29.9
	울산	(68)	75.0	25.0
	경기	(35)	45.7	54.3
	강원	(43)	62.8	37.2
	충북	(102)	60.8	39.2
	충남	(119)	73.9	26.1
	전남	(67)	61.2	38.8
	전북	(104)	64.4	35.6
	경북	(91)	69.2	30.8
	경남	(112)	76.8	23.2
제주	(70)	68.6	31.4	

문1-31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소지품검사, 몸수색, 사물함 수색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2)	58.5	41.5
	여자	(861)	57.3	42.7
연령	20-29세	(256)	46.1	53.9
	30-39세	(553)	60.4	39.6
	40-49세	(447)	62.6	37.4
	50-59세	(145)	54.5	45.5
	60세이상	(14)	42.9	57.1
교육경력	0-5년	(340)	45.9	54.1
	6-10년	(190)	58.9	41.1
	11-20년	(598)	65.9	34.1
	20-30년	(217)	57.6	42.4
	30년이상	(69)	42.0	58.0
근무학교	초등학교	(556)	43.7	56.3
	중학교	(352)	70.2	29.8
	실업계고교	(169)	76.9	23.1
	인문고교	(324)	60.2	39.8
	특수목적고	(19)	57.9	42.1
	특수학교	(51)	54.9	45.1
설립유형	국공립	(1263)	56.8	43.2
	종교계사립	(88)	58.0	42.0
	비종교계사립	(119)	69.7	30.3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68.1	31.9
	사회및도덕교과	(178)	62.9	37.1
	과학교과	(73)	67.1	32.9
	외국어교과	(124)	62.9	37.1
	수학교과	(109)	67.9	32.1
	실과및실업교과	(121)	71.1	28.9
	예체능및교련교과	(85)	69.4	30.6
	기타	(31)	61.3	38.7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6)	57.3	42.7
	중소도시	(476)	59.5	40.5
	농어촌,도서지역	(268)	57.5	42.5
학교지역	서울	(19)	68.4	31.6
	부산	(353)	54.1	45.9
	대구	(55)	65.5	34.5
	인천	(109)	53.2	46.8
	광주	(51)	64.7	35.3
	대전	(77)	58.4	41.6
	울산	(67)	64.2	35.8
	경기	(35)	45.7	54.3
	강원	(43)	60.5	39.5
	충북	(102)	55.9	44.1
	충남	(118)	63.6	36.4
	전남	(67)	58.2	41.8
	전북	(104)	52.9	47.1
	경북	(91)	61.5	38.5
경남	(111)	62.2	37.8	
제주	(70)	60.0	40.0	

문1-32 학생의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성적이나 학생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3)	38.0	62.0
	여자	(863)	34.9	65.1
연령	20-29세	(256)	30.5	69.5
	30-39세	(555)	33.3	66.7
	40-49세	(447)	42.1	57.9
	50-59세	(146)	37.0	63.0
	60세이상	(14)	50.0	50.0
교육경력	0-5년	(341)	28.4	71.6
	6-10년	(190)	27.9	72.1
	11-20년	(600)	42.2	57.8
	20-30년	(216)	38.4	61.6
	30년이상	(70)	35.7	64.3
근무학교	초등학교	(557)	27.1	72.9
	중학교	(350)	44.9	55.1
	실업계고교	(170)	44.7	55.3
	인문고교	(326)	35.3	64.7
	특수목적고	(20)	55.0	45.0
	특수학교	(51)	37.3	62.7
설립유형	국공립	(1265)	34.9	65.1
	종교계사립	(88)	37.5	62.5
	비종교계사립	(120)	45.0	55.0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43.3	56.7
	사회및도덕교과	(178)	35.4	64.6
	과학교과	(73)	46.6	53.4
	외국어교과	(124)	45.2	54.8
	수학교과	(109)	41.3	58.7
	실과및실업교과	(125)	41.6	58.4
	예체능및교련교과	(84)	32.1	67.9
	기타	(30)	60.0	40.0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9)	35.5	64.5
	중소도시	(477)	34.2	65.8
	농어촌,도서지역	(267)	39.7	60.3
학교지역	서울	(19)	21.1	78.9
	부산	(355)	33.0	67.0
	대구	(55)	47.3	52.7
	인천	(109)	28.4	71.6
	광주	(51)	37.3	62.7
	대전	(77)	36.4	63.6
	울산	(68)	54.4	45.6
	경기	(35)	25.7	74.3
	강원	(43)	34.9	65.1
	충북	(102)	30.4	69.6
	충남	(117)	41.0	59.0
	전남	(67)	28.4	71.6
	전북	(104)	43.3	56.7
	경북	(91)	36.3	63.7
	경남	(112)	33.9	66.1
제주	(70)	41.4	58.6	

문1-33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3)	23.1	76.9
	여자	(862)	18.9	81.1
연령	20-29세	(256)	12.5	87.5
	30-39세	(555)	20.5	79.5
	40-49세	(446)	23.8	76.2
	50-59세	(146)	24.7	75.3
	60세이상	(14)	28.6	71.4
교육경력	0-5년	(341)	13.2	86.8
	6-10년	(190)	15.3	84.7
	11-20년	(599)	24.7	75.3
	20-30년	(216)	25.0	75.0
	30년이상	(70)	21.4	78.6
근무학교	초등학교	(557)	15.1	84.9
	중학교	(351)	22.8	77.2
	실업계고교	(169)	29.0	71.0
	인문고교	(325)	20.6	79.4
	특수목적고	(20)	30.0	70.0
	특수학교	(51)	25.5	74.5
설립유형	국공립	(1264)	19.5	80.5
	종교계사립	(88)	26.1	73.9
	비종교계사립	(120)	25.8	74.2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25.5	74.5
	사회및도덕교과	(178)	19.1	80.9
	과학교과	(73)	30.1	69.9
	외국어교과	(124)	20.2	79.8
	수학교과	(109)	21.1	78.9
	실과및실업교과	(123)	26.0	74.0
	예체능및교련교과	(85)	24.7	75.3
	기타	(30)	36.7	63.3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8)	21.0	79.0
	중소도시	(477)	19.5	80.5
	농어촌,도서지역	(267)	20.2	79.8
학교지역	서울	(19)	10.5	89.5
	부산	(355)	20.3	79.7
	대구	(55)	18.2	81.8
	인천	(109)	22.0	78.0
	광주	(51)	21.6	78.4
	대전	(77)	18.2	81.8
	울산	(67)	31.3	68.7
	경기	(35)	14.3	85.7
	강원	(43)	16.3	83.7
	충북	(102)	15.7	84.3
	충남	(118)	17.8	82.2
	전남	(67)	16.4	83.6
	전북	(104)	25.0	75.0
	경북	(91)	34.1	65.9
	경남	(111)	15.3	84.7
제주	(70)	17.1	82.9	

문1-34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0)	54.4	45.6
	여자	(857)	45.7	54.3
연령	20-29세	(253)	34.4	65.6
	30-39세	(552)	51.8	48.2
	40-49세	(444)	55.4	44.6
	50-59세	(146)	46.6	53.4
	60세이상	(14)	50.0	50.0
교육경력	0-5년	(337)	36.5	63.5
	6-10년	(190)	47.9	52.1
	11-20년	(596)	57.6	42.4
	20-30년	(215)	51.6	48.4
	30년이상	(70)	35.7	64.3
근무학교	초등학교	(552)	27.5	72.5
	중학교	(351)	54.7	45.3
	실업계고교	(169)	62.7	37.3
	인문고교	(325)	72.6	27.4
	특수목적고	(19)	73.7	26.3
	특수학교	(49)	34.7	65.3
설립유형	국공립	(1257)	46.6	53.4
	종교계사립	(88)	64.8	35.2
	비종교계사립	(119)	61.3	38.7
담당과목	국어교과	(140)	67.9	32.1
	사회및도덕교과	(177)	62.1	37.9
	과학교과	(73)	54.8	45.2
	외국어교과	(124)	66.9	33.1
	수학교과	(109)	66.1	33.9
	실과및실업교과	(123)	57.7	42.3
	예체능및교련교과	(85)	54.1	45.9
	기타	(30)	63.3	36.7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1)	45.1	54.9
	중소도시	(476)	55.5	44.5
	농어촌,도서지역	(267)	47.6	52.4
학교지역	서울	(19)	47.4	52.6
	부산	(349)	42.4	57.6
	대구	(55)	52.7	47.3
	인천	(108)	36.1	63.9
	광주	(51)	56.9	43.1
	대전	(77)	40.3	59.7
	울산	(67)	67.2	32.8
	경기	(35)	40.0	60.0
	강원	(43)	51.2	48.8
	충북	(102)	47.1	52.9
	충남	(118)	55.9	44.1
	전남	(66)	34.8	65.2
	전북	(104)	53.8	46.2
	경북	(91)	61.5	38.5
경남	(111)	61.3	38.7	
제주	(70)	48.6	51.4	

문1-35 학생의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49)	32.8	67.2
	여자	(855)	24.9	75.1
연령	20-29세	(253)	17.4	82.6
	30-39세	(550)	26.9	73.1
	40-49세	(443)	30.9	69.1
	50-59세	(146)	39.7	60.3
	60세이상	(14)	50.0	50.0
교육경력	0-5년	(337)	18.7	81.3
	6-10년	(189)	27.0	73.0
	11-20년	(594)	29.8	70.2
	20-30년	(215)	37.7	62.3
	30년이상	(70)	31.4	68.6
근무학교	초등학교	(554)	22.0	78.0
	중학교	(349)	27.5	72.5
	실업계고교	(167)	36.5	63.5
	인문고교	(323)	31.6	68.4
	특수목적고	(19)	42.1	57.9
	특수학교	(50)	26.0	74.0
설립유형	국공립	(1254)	26.2	73.8
	종교계사립	(88)	29.5	70.5
	비종교계사립	(119)	38.7	61.3
담당과목	국어교과	(139)	29.5	70.5
	사회및도덕교과	(177)	31.6	68.4
	과학교과	(73)	34.2	65.8
	외국어교과	(124)	31.5	68.5
	수학교과	(108)	30.6	69.4
	실과및실업교과	(122)	26.2	73.8
	예체능및교련교과	(83)	37.3	62.7
	기타	(30)	40.0	60.0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2)	27.1	72.9
	중소도시	(472)	28.6	71.4
	농어촌,도서지역	(267)	26.6	73.4
학교지역	서울	(19)	21.1	78.9
	부산	(350)	25.4	74.6
	대구	(55)	32.7	67.3
	인천	(108)	23.1	76.9
	광주	(51)	33.3	66.7
	대전	(77)	27.3	72.7
	울산	(67)	35.8	64.2
	경기	(35)	28.6	71.4
	강원	(43)	20.9	79.1
	충북	(100)	28.0	72.0
	충남	(116)	33.6	66.4
	전남	(67)	20.9	79.1
	전북	(103)	33.0	67.0
	경북	(91)	26.4	73.6
	경남	(111)	27.9	72.1
제주	(70)	21.4	78.6	

문1-36 학생이 징계를 받을 경우,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1)	36.1	63.9
	여자	(859)	30.4	69.6
연령	20-29세	(254)	30.7	69.3
	30-39세	(555)	31.4	68.6
	40-49세	(443)	34.1	65.9
	50-59세	(146)	35.6	64.4
	60세이상	(14)	42.9	57.1
교육경력	0-5년	(339)	30.1	69.9
	6-10년	(190)	29.5	70.5
	11-20년	(597)	35.0	65.0
	20-30년	(215)	35.3	64.7
	30년이상	(70)	25.7	74.3
근무학교	초등학교	(555)	28.6	71.4
	중학교	(351)	31.9	68.1
	실업계고교	(169)	43.8	56.2
	인문고교	(324)	32.4	67.6
	특수목적고	(19)	36.8	63.2
	특수학교	(50)	36.0	64.0
설립유형	국공립	(1261)	31.4	68.6
	종교계사립	(88)	36.4	63.6
	비종교계사립	(118)	39.8	60.2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36.2	63.8
	사회및도덕교과	(177)	28.8	71.2
	과학교과	(72)	38.9	61.1
	외국어교과	(124)	36.3	63.7
	수학교과	(109)	32.1	67.9
	실과및실업교과	(123)	36.6	63.4
	예체능및교련교과	(85)	36.5	63.5
	기타	(30)	50.0	50.0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3)	33.1	66.9
	중소도시	(477)	32.3	67.7
	농어촌,도서지역	(267)	30.7	69.3
학교지역	서울	(19)	21.1	78.9
	부산	(352)	30.7	69.3
	대구	(55)	38.2	61.8
	인천	(108)	36.1	63.9
	광주	(50)	36.0	64.0
	대전	(77)	28.6	71.4
	울산	(67)	44.8	55.2
	경기	(35)	31.4	68.6
	강원	(43)	44.2	55.8
	충북	(102)	26.5	73.5
	충남	(118)	30.5	69.5
	전남	(67)	14.9	85.1
	전북	(104)	37.5	62.5
	경북	(91)	39.6	60.4
경남	(111)	30.6	69.4	
제주	(70)	30.0	70.0	

문1-37 학생이 징계절차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49)	33.0	67.0
	여자	(858)	26.1	73.9
연령	20-29세	(254)	19.7	80.3
	30-39세	(553)	27.1	72.9
	40-49세	(442)	33.9	66.1
	50-59세	(146)	33.6	66.4
	60세이상	(14)	50.0	50.0
교육경력	0-5년	(338)	20.1	79.9
	6-10년	(190)	25.8	74.2
	11-20년	(595)	33.4	66.6
	20-30년	(215)	33.0	67.0
	30년이상	(70)	25.7	74.3
근무학교	초등학교	(553)	19.7	80.3
	중학교	(350)	31.4	68.6
	실업계고교	(169)	45.0	55.0
	인문고교	(324)	32.1	67.9
	특수목적고	(19)	31.6	68.4
	특수학교	(50)	28.0	72.0
설립유형	국공립	(1258)	27.7	72.3
	종교계사립	(88)	27.3	72.7
	비종교계사립	(118)	38.1	61.9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36.9	63.1
	사회및도덕교과	(178)	31.5	68.5
	과학교과	(72)	36.1	63.9
	외국어교과	(123)	32.5	67.5
	수학교과	(108)	29.6	70.4
	실과및실업교과	(123)	39.0	61.0
	예체능및교련교과	(85)	32.9	67.1
	기타	(30)	40.0	60.0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1)	29.8	70.2
	중소도시	(476)	28.6	71.4
	농어촌,도서지역	(267)	25.5	74.5
학교지역	서울	(19)	26.3	73.7
	부산	(351)	26.2	73.8
	대구	(55)	32.7	67.3
	인천	(108)	32.4	67.6
	광주	(50)	36.0	64.0
	대전	(77)	26.0	74.0
	울산	(66)	43.9	56.1
	경기	(35)	25.7	74.3
	강원	(43)	32.6	67.4
	충북	(102)	17.6	82.4
	충남	(117)	28.2	71.8
	전남	(67)	16.4	83.6
	전북	(104)	27.9	72.1
	경북	(91)	37.4	62.6
	경남	(111)	33.3	66.7
제주	(70)	24.3	75.7	

문1-38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 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3)	17.7	82.3
	여자	(860)	14.0	86.0
연령	20-29세	(256)	7.4	92.6
	30-39세	(554)	14.3	85.7
	40-49세	(445)	18.0	82.0
	50-59세	(146)	24.7	75.3
	60세이상	(14)	35.7	64.3
교육경력	0-5년	(340)	8.5	91.5
	6-10년	(190)	12.6	87.4
	11-20년	(599)	17.4	82.6
	20-30년	(215)	22.3	77.7
	30년이상	(70)	20.0	80.0
근무학교	초등학교	(556)	10.8	89.2
	중학교	(352)	17.9	82.1
	실업계고교	(169)	15.4	84.6
	인문고교	(324)	20.4	79.6
	특수목적고	(20)	5.0	95.0
	특수학교	(50)	18.0	82.0
설립유형	국공립	(1263)	13.5	86.5
	종교계사립	(87)	39.1	60.9
	비종교계사립	(120)	16.7	83.3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12.8	87.2
	사회및도덕교과	(178)	15.7	84.3
	과학교과	(73)	21.9	78.1
	외국어교과	(124)	22.6	77.4
	수학교과	(109)	18.3	81.7
	실과및실업교과	(123)	12.2	87.8
	예체능및교련교과	(85)	27.1	72.9
	기타	(30)	33.3	66.7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5)	16.4	83.6
	중소도시	(477)	13.4	86.6
	농어촌,도서지역	(268)	15.7	84.3
학교지역	서울	(19)	10.5	89.5
	부산	(352)	15.1	84.9
	대구	(55)	18.2	81.8
	인천	(109)	12.8	87.2
	광주	(51)	19.6	80.4
	대전	(77)	19.5	80.5
	울산	(67)	23.9	76.1
	경기	(35)	14.3	85.7
	강원	(43)	11.6	88.4
	충북	(102)	10.8	89.2
	충남	(119)	19.3	80.7
	전남	(67)	6.0	94.0
	전북	(104)	13.5	86.5
	경북	(91)	25.3	74.7
	경남	(111)	12.6	87.4
제주	(70)	8.6	91.4	

문1-39 남자교사 혹은 여자교사인 것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7)	.2	5.4	58.9	35.5
	여자	(875)	.0	1.3	38.1	60.7
연령	20-29세	(259)	.0	1.5	35.9	62.5
	30-39세	(560)	.0	1.4	41.6	57.0
	40-49세	(455)	.2	3.5	54.7	41.5
	50-59세	(146)	.0	8.2	54.8	37.0
	60세이상	(14)	.0	7.1	50.0	42.9
교육경력	0-5년	(344)	.0	1.5	38.1	60.5
	6-10년	(194)	.0	1.0	45.4	53.6
	11-20년	(605)	.2	2.5	46.6	50.7
	20-30년	(220)	.0	5.9	56.4	37.7
	30년이상	(70)	.0	8.6	50.0	41.4
근무학교	초등학교	(564)	.2	2.8	41.3	55.7
	중학교	(356)	.0	2.0	42.7	55.3
	실업계고교	(172)	.0	4.7	55.8	39.5
	인문고교	(327)	.0	3.1	49.5	47.4
	특수목적고	(20)	.0	5.0	60.0	35.0
	특수학교	(51)	.0	2.0	56.9	41.2
설립유형	국공립	(1281)	.1	3.0	44.1	52.8
	종교계사립	(87)	.0	3.4	44.8	51.7
	비종교계사립	(121)	.0	.8	66.1	33.1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0	2.1	45.8	52.1
	사회및도덕교과	(183)	.0	1.6	46.4	51.9
	과학교과	(74)	.0	1.4	58.1	40.5
	외국어교과	(123)	.0	3.3	51.2	45.5
	수학교과	(108)	.0	3.7	55.6	40.7
	실과및실업교과	(126)	.0	5.6	44.4	50.0
	예체능및교련교과 기타	(86) (31)	.0 .0	4.7 .0	46.5 51.6	48.8 48.4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7)	.1	2.6	47.4	49.9
	중소도시	(484)	.0	3.1	43.8	53.1
	농어촌,도서지역	(268)	.0	3.4	45.9	50.7
학교지역	서울	(19)	.0	5.3	57.9	36.8
	부산	(358)	.0	3.6	46.4	50.0
	대구	(55)	.0	.0	60.0	40.0
	인천	(110)	.9	.9	30.0	68.2
	광주	(52)	.0	1.9	57.7	40.4
	대전	(77)	.0	.0	57.1	42.9
	울산	(70)	.0	4.3	45.7	50.0
	경기	(36)	.0	.0	33.3	66.7
	강원	(45)	.0	6.7	46.7	46.7
	충북	(102)	.0	2.0	51.0	47.1
	충남	(118)	.0	2.5	47.5	50.0
	전남	(68)	.0	1.5	32.4	66.2
	전북	(105)	.0	3.8	47.6	48.6
	경북	(93)	.0	7.5	35.5	57.0
	경남	(112)	.0	.9	50.0	49.1
	제주	(70)	.0	4.3	47.1	48.6

문1-40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례수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7)	5.2	56.6	38.2
	여자	(875)	1.5	38.7	59.8
연령	20-29세	(259)	1.9	32.4	65.6
	30-39세	(560)	1.3	40.0	58.8
	40-49세	(455)	4.8	54.7	40.4
	50-59세	(146)	5.5	61.6	32.9
	60세이상	(14)	.0	42.9	57.1
교육경력	0-5년	(344)	1.7	34.0	64.2
	6-10년	(194)	1.5	39.7	58.8
	11-20년	(605)	3.1	46.6	50.2
	20-30년	(220)	5.0	61.8	33.2
	30년이상	(70)	4.3	57.1	38.6
근무학교	초등학교	(564)	2.0	39.4	58.7
	중학교	(355)	2.0	46.5	51.5
	실업계고교	(172)	4.7	50.6	44.8
	인문고교	(328)	3.7	51.5	44.8
	특수목적고	(20)	.0	55.0	45.0
	특수학교	(51)	9.8	43.1	47.1
설립유형	국공립	(1280)	2.8	43.9	53.3
	종교계사립	(88)	5.7	44.3	50.0
	비종교계사립	(121)	1.7	62.0	36.4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1.4	50.0	48.6
	사회및도덕교과	(183)	.5	48.1	51.4
	과학교과	(74)	2.7	62.2	35.1
	외국어교과	(124)	4.0	53.2	42.7
	수학교과	(108)	5.6	46.3	48.1
	실과및실업교과	(126)	5.6	49.2	45.2
	예체능및교련교과	(85)	8.2	42.4	49.4
	기타	(31)	.0	45.2	54.8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8)	2.7	47.6	49.7
	중소도시	(484)	3.7	43.0	53.3
	농어촌,도서지역	(267)	1.9	44.2	53.9
학교지역	서울	(19)	5.3	63.2	31.6
	부산	(359)	3.1	48.2	48.7
	대구	(55)	1.8	54.5	43.6
	인천	(110)	1.8	29.1	69.1
	광주	(52)	1.9	53.8	44.2
	대전	(77)	2.6	53.2	44.2
	울산	(70)	2.9	51.4	45.7
	경기	(36)	.0	36.1	63.9
	강원	(45)	4.4	42.2	53.3
	충북	(102)	2.0	43.1	54.9
	충남	(118)	2.5	48.3	49.2
	전남	(68)	.0	26.5	73.5
	전북	(105)	3.8	47.6	48.6
	경북	(93)	6.5	33.3	60.2
	경남	(112)	3.6	50.0	46.4
제주	(69)	2.9	52.2	44.9	

문1-41 예결산, 인사, 학교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8)	.0	2.2	59.7	38.2
	여자	(871)	.1	.7	50.1	49.1
연령	20-29세	(258)	.4	1.9	47.3	50.4
	30-39세	(560)	.0	.7	50.4	48.9
	40-49세	(453)	.0	1.1	56.5	42.4
	50-59세	(146)	.0	2.7	69.2	28.1
	60세이상	(14)	.0	.0	64.3	35.7
교육경력	0-5년	(343)	.3	1.5	46.6	51.6
	6-10년	(194)	.0	.5	55.2	44.3
	11-20년	(605)	.0	1.2	52.7	46.1
	20-30년	(218)	.0	2.3	62.4	35.3
	30년이상	(70)	.0	.0	67.1	32.9
근무학교	초등학교	(562)	.2	1.2	52.1	46.4
	중학교	(355)	.0	.6	52.4	47.0
	실업계고교	(172)	.0	1.7	56.4	41.9
	인문고교	(327)	.0	1.2	57.5	41.3
	특수목적고	(20)	.0	5.0	60.0	35.0
	특수학교	(51)	.0	2.0	51.0	47.1
설립유형	국공립	(1277)	.1	1.0	53.1	45.8
	종교계사립	(88)	.0	3.4	58.0	38.6
	비종교계사립	(121)	.0	1.7	60.3	38.0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0	.7	52.1	47.2
	사회및도덕교과	(182)	.0	1.1	51.6	47.3
	과학교과	(74)	.0	.0	64.9	35.1
	외국어교과	(124)	.0	3.2	59.7	37.1
	수학교과	(108)	.0	1.9	53.7	44.4
	실과및실업교과	(125)	.0	.0	60.0	40.0
	예체능및교련교과	(86)	.0	2.3	48.8	48.8
	기타	(31)	.0	.0	54.8	45.2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5)	.0	1.8	53.9	44.4
	중소도시	(484)	.0	.8	54.3	44.8
	농어촌,도서지역	(267)	.4	.4	53.9	45.3
학교지역	서울	(19)	.0	.0	73.7	26.3
	부산	(357)	.0	1.7	52.4	45.9
	대구	(55)	.0	3.6	58.2	38.2
	인천	(110)	.0	1.8	47.3	50.9
	광주	(52)	.0	1.9	67.3	30.8
	대전	(77)	.0	.0	51.9	48.1
	울산	(69)	.0	2.9	52.2	44.9
	경기	(36)	.0	.0	52.8	47.2
	강원	(45)	.0	2.2	44.4	53.3
	충북	(102)	1.0	1.0	58.8	39.2
	충남	(117)	.0	.0	58.1	41.9
	전남	(68)	.0	.0	36.8	63.2
	전북	(105)	.0	1.0	53.3	45.7
	경북	(93)	.0	2.2	47.3	50.5
	경남	(112)	.0	.0	58.9	41.1
	제주	(70)	.0	.0	68.6	31.4

문1-42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9)	.2	2.3	44.7	52.8
	여자	(874)	.0	.7	34.1	65.2
연령	20-29세	(259)	.0	1.2	26.3	72.6
	30-39세	(560)	.2	1.3	32.7	65.9
	40-49세	(456)	.0	.9	44.5	54.6
	50-59세	(146)	.0	3.4	57.5	39.0
	60세이상	(14)	.0	.0	64.3	35.7
교육경력	0-5년	(344)	.0	1.2	27.6	71.2
	6-10년	(194)	.0	1.0	34.5	64.4
	11-20년	(606)	.2	1.3	36.5	62.0
	20-30년	(220)	.0	1.8	55.5	42.7
	30년이상	(70)	.0	1.4	60.0	38.6
근무학교	초등학교	(564)	.0	1.1	35.8	63.1
	중학교	(356)	.0	1.4	37.9	60.7
	실업계고교	(173)	.6	1.2	38.2	60.1
	인문고교	(327)	.0	1.5	42.8	55.7
	특수목적고	(20)	.0	.0	40.0	60.0
	특수학교	(51)	.0	2.0	31.4	66.7
설립유형	국공립	(1281)	.1	1.2	36.9	61.8
	종교계사립	(88)	.0	2.3	46.6	51.1
	비종교계사립	(121)	.0	1.7	43.0	55.4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7	.7	33.8	64.8
	사회및도덕교과	(183)	.0	.5	38.8	60.7
	과학교과	(74)	.0	1.4	44.6	54.1
	외국어교과	(124)	.0	2.4	45.2	52.4
	수학교과	(108)	.0	.9	39.8	59.3
	실과및실업교과	(126)	.0	2.4	41.3	56.3
	예체능및교련교과	(86)	.0	3.5	37.2	59.3
	기타	(31)	.0	.0	38.7	61.3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7)	.0	1.5	37.0	61.5
	중소도시	(485)	.2	1.2	37.7	60.8
	농어촌,도서지역	(268)	.0	.7	41.4	57.8
학교지역	서울	(19)	.0	.0	68.4	31.6
	부산	(359)	.0	1.1	37.9	61.0
	대구	(55)	.0	1.8	43.6	54.5
	인천	(110)	.0	1.8	22.7	75.5
	광주	(52)	.0	.0	34.6	65.4
	대전	(77)	.0	2.6	32.5	64.9
	울산	(69)	.0	2.9	46.4	50.7
	경기	(36)	.0	.0	30.6	69.4
	강원	(45)	.0	2.2	24.4	73.3
	충북	(102)	.0	.0	44.1	55.9
	충남	(118)	.0	2.5	41.5	55.9
	전남	(68)	.0	.0	19.1	80.9
	전북	(105)	.0	.0	39.0	61.0
	경북	(93)	.0	2.2	36.6	61.3
	경남	(113)	.9	1.8	49.6	47.8
	제주	(70)	.0	.0	47.1	52.9

문1-43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교재 채택료, 공문, 출장 등)

		사례수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8)	3.2	46.6	50.2
	여자	(874)	.9	40.8	58.2
연령	20-29세	(259)	.8	35.5	63.7
	30-39세	(560)	.9	36.3	62.9
	40-49세	(455)	2.0	49.9	48.1
	50-59세	(146)	5.5	61.0	33.6
	60세이상	(14)	14.3	35.7	50.0
교육경력	0-5년	(344)	.6	36.3	63.1
	6-10년	(194)	.5	35.6	63.9
	11-20년	(605)	1.5	42.1	56.4
	20-30년	(220)	5.0	59.1	35.9
	30년이상	(70)	4.3	51.4	44.3
근무학교	초등학교	(564)	1.4	42.2	56.4
	중학교	(356)	1.1	39.6	59.3
	실업계고교	(172)	2.3	43.6	54.1
	인문고교	(327)	2.4	49.2	48.3
	특수목적고	(20)	.0	45.0	55.0
	특수학교	(51)	3.9	37.3	58.8
설립유형	국공립	(1280)	1.8	41.9	56.3
	종교계사립	(88)	3.4	53.4	43.2
	비종교계사립	(121)	.0	48.8	51.2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7	41.5	57.7
	사회및도덕교과	(183)	1.6	43.7	54.6
	과학교과	(74)	.0	52.7	47.3
	외국어교과	(124)	3.2	47.6	49.2
	수학교과	(108)	.9	43.5	55.6
	실과및실업교과	(125)	4.0	42.4	53.6
	예체능및교련교과	(86)	3.5	43.0	53.5
	기타	(31)	.0	29.0	71.0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7)	1.6	42.6	55.8
	중소도시	(484)	2.1	43.2	54.8
	농어촌,도서지역	(268)	1.5	44.8	53.7
학교지역	서울	(19)	5.3	63.2	31.6
	부산	(359)	1.9	41.8	56.3
	대구	(55)	1.8	50.9	47.3
	인천	(110)	.9	40.0	59.1
	광주	(52)	.0	38.5	61.5
	대전	(77)	.0	37.7	62.3
	울산	(69)	2.9	43.5	53.6
	경기	(36)	.0	38.9	61.1
	강원	(45)	2.2	31.1	66.7
	충북	(102)	.0	44.1	55.9
	충남	(118)	5.1	44.1	50.8
	전남	(68)	.0	26.5	73.5
	전북	(105)	1.0	42.9	56.2
	경북	(93)	5.4	43.0	51.6
경남	(112)	.9	51.8	47.3	
제주	(70)	.0	61.4	38.6	

문1-44 교육당국(교육부 등)이나 학교 관리자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기자재,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8)	.4	2.0	53.6	44.1
	여자	(869)	.0	.8	47.0	52.2
연령	20-29세	(259)	.0	1.2	43.6	55.2
	30-39세	(558)	.2	.4	46.2	53.2
	40-49세	(452)	.2	1.3	53.1	45.4
	50-59세	(146)	.0	3.4	61.6	34.9
	60세이상	(14)	.0	14.3	50.0	35.7
교육경력	0-5년	(344)	.0	.9	44.2	54.9
	6-10년	(194)	.0	.0	46.9	53.1
	11-20년	(603)	.3	1.2	48.3	50.2
	20-30년	(217)	.0	2.3	61.3	36.4
	30년이상	(70)	.0	4.3	57.1	38.6
근무학교	초등학교	(560)	.0	1.4	47.0	51.6
	중학교	(355)	.0	.8	49.3	49.9
	실업계고교	(172)	.6	.0	52.9	46.5
	인문고교	(327)	.0	2.1	53.5	44.3
	특수목적고	(20)	5.0	.0	60.0	35.0
	특수학교	(51)	.0	.0	37.3	62.7
설립유형	국공립	(1275)	.1	1.0	49.1	49.8
	종교계사립	(88)	.0	4.5	47.7	47.7
	비종교계사립	(121)	.8	.8	55.4	43.0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7	.7	49.6	48.9
	사회및도덕교과	(183)	.5	1.1	50.3	48.1
	과학교과	(74)	.0	.0	56.8	43.2
	외국어교과	(124)	.0	2.4	58.1	39.5
	수학교과	(108)	.0	.9	50.0	49.1
	실과및실업교과	(125)	.0	.8	56.8	42.4
	예체능및교련교과	(86)	.0	1.2	39.5	59.3
	기타	(31)	.0	3.2	45.2	51.6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4)	.1	1.1	49.6	49.2
	중소도시	(483)	.2	1.0	49.7	49.1
	농어촌,도서지역	(267)	.0	1.9	49.4	48.7
학교지역	서울	(19)	.0	5.3	63.2	31.6
	부산	(356)	.3	.8	46.6	52.2
	대구	(55)	.0	1.8	50.9	47.3
	인천	(110)	.0	.9	48.2	50.9
	광주	(52)	.0	.0	59.6	40.4
	대전	(77)	.0	.0	50.6	49.4
	울산	(69)	.0	2.9	50.7	46.4
	경기	(36)	.0	.0	47.2	52.8
	강원	(45)	.0	4.4	40.0	55.6
	충북	(102)	.0	1.0	55.9	43.1
	충남	(118)	.0	1.7	47.5	50.8
	전남	(68)	.0	.0	36.8	63.2
	전북	(105)	.0	1.0	50.5	48.6
	경북	(92)	.0	3.3	44.6	52.2
	경남	(111)	.9	.0	55.0	44.1
제주	(70)	.0	1.4	61.4	37.1	

문1-45 학교에서 교사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에 대해 학점을 준다면?							
		사례수	F	D	C	B	A
성별	남자	(547)	6.0	19.9	38.0	32.9	3.1
	여자	(861)	4.6	20.8	42.5	29.3	2.8
연령	20-29세	(255)	5.1	26.3	43.1	22.4	3.1
	30-39세	(552)	6.2	21.2	41.7	29.7	1.3
	40-49세	(446)	5.2	18.8	41.3	30.3	4.5
	50-59세	(143)	2.1	12.6	32.9	48.3	4.2
	60세이상	(14)	.0	14.3	35.7	50.0	.0
교육경력	0-5년	(337)	6.2	26.1	41.2	23.4	3.0
	6-10년	(191)	3.7	22.0	44.0	27.7	2.6
	11-20년	(596)	6.0	20.1	40.8	31.2	1.8
	20-30년	(215)	3.3	14.0	40.0	37.7	5.1
	30년이상	(70)	2.9	10.0	32.9	48.6	5.7
근무학교	초등학교	(553)	6.0	19.5	40.3	30.7	3.4
	중학교	(350)	4.3	17.4	39.4	34.9	4.0
	실업계고교	(171)	5.3	25.7	42.7	25.1	1.2
	인문고교	(320)	5.3	22.5	38.8	31.6	1.9
	특수목적고	(20)	5.0	40.0	35.0	20.0	.0
	특수학교	(51)	.0	15.7	52.9	25.5	5.9
설립유형	국공립	(1261)	5.2	19.9	41.0	30.9	2.9
	종교계사립	(85)	7.1	29.4	29.4	29.4	4.7
	비종교계사립	(118)	2.5	20.3	43.2	31.4	2.5
담당과목	국어교과	(140)	6.4	19.3	42.1	28.6	3.6
	사회및도덕교과	(179)	4.5	25.1	38.5	30.7	1.1
	과학교과	(73)	5.5	16.4	35.6	39.7	2.7
	외국어교과	(123)	1.6	20.3	45.5	30.1	2.4
	수학교과	(105)	4.8	21.0	35.2	37.1	1.9
	실과및실업교과	(126)	5.6	18.3	44.4	28.6	3.2
	예체능및교련교과	(82)	7.3	25.6	35.4	26.8	4.9
	기타	(31)	3.2	19.4	54.8	22.6	.0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7)	5.8	22.1	40.0	30.5	1.5
	중소도시	(476)	4.4	18.7	40.3	32.8	3.8
	농어촌,도서지역	(261)	4.6	19.5	41.8	28.4	5.7
학교지역	서울	(19)	5.3	10.5	26.3	47.4	10.5
	부산	(354)	5.6	22.6	39.0	31.4	1.4
	대구	(54)	3.7	16.7	42.6	37.0	.0
	인천	(109)	7.3	27.5	42.2	22.0	.9
	광주	(51)	2.0	15.7	41.2	39.2	2.0
	대전	(75)	6.7	14.7	41.3	33.3	4.0
	울산	(69)	7.2	29.0	39.1	24.6	.0
	경기	(35)	2.9	25.7	40.0	28.6	2.9
	강원	(44)	2.3	22.7	36.4	36.4	2.3
	충북	(100)	.0	15.0	41.0	38.0	6.0
	충남	(116)	6.9	19.8	39.7	30.2	3.4
	전남	(66)	10.6	28.8	34.8	24.2	1.5
	전북	(104)	4.8	12.5	35.6	41.3	5.8
	경북	(90)	7.8	25.6	42.2	20.0	4.4
	경남	(112)	2.7	17.9	50.9	24.1	4.5
	제주	(67)	1.5	11.9	44.8	35.8	6.0

문1-46 남자교사 혹은 여자교사인 것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6)	25.4	74.6
	여자	(868)	57.7	42.3
연령	20-29세	(257)	46.7	53.3
	30-39세	(558)	53.2	46.8
	40-49세	(451)	39.0	61.0
	50-59세	(146)	30.8	69.2
	60세이상	(14)	50.0	50.0
교육경력	0-5년	(341)	44.3	55.7
	6-10년	(194)	45.4	54.6
	11-20년	(602)	48.3	51.7
	20-30년	(218)	44.0	56.0
	30년이상	(70)	25.7	74.3
근무학교	초등학교	(561)	44.2	55.8
	중학교	(354)	50.0	50.0
	실업계고교	(169)	39.1	60.9
	인문고교	(326)	44.8	55.2
	특수목적고	(20)	20.0	80.0
	특수학교	(51)	47.1	52.9
설립유형	국공립	(1273)	46.4	53.6
	종교계사립	(88)	48.9	51.1
	비종교계사립	(119)	25.2	74.8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43.7	56.3
	사회및도덕교과	(181)	45.9	54.1
	과학교과	(74)	35.1	64.9
	외국어교과	(122)	51.6	48.4
	수학교과	(108)	45.4	54.6
	실과및실업교과	(125)	45.6	54.4
	예체능및교련교과	(86)	46.5	53.5
	기타	(30)	46.7	53.3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1)	44.6	55.4
	중소도시	(483)	47.0	53.0
	농어촌,도서지역	(266)	41.7	58.3
학교지역	서울	(19)	31.6	68.4
	부산	(356)	46.3	53.7
	대구	(54)	48.1	51.9
	인천	(109)	45.0	55.0
	광주	(51)	49.0	51.0
	대전	(77)	26.0	74.0
	울산	(69)	55.1	44.9
	경기	(36)	58.3	41.7
	강원	(45)	46.7	53.3
	충북	(102)	37.3	62.7
	충남	(117)	45.3	54.7
	전남	(68)	57.4	42.6
	전북	(105)	44.8	55.2
	경북	(93)	48.4	51.6
	경남	(110)	50.0	50.0
제주	(70)	24.3	75.7	

문1-47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6)	55.9	44.1
	여자	(872)	74.7	25.3
연령	20-29세	(258)	74.4	25.6
	30-39세	(559)	74.6	25.4
	40-49세	(453)	62.5	37.5
	50-59세	(146)	44.5	55.5
	60세이상	(14)	57.1	42.9
교육경력	0-5년	(342)	72.8	27.2
	6-10년	(194)	71.6	28.4
	11-20년	(604)	70.5	29.5
	20-30년	(219)	55.3	44.7
	30년이상	(70)	41.4	58.6
근무학교	초등학교	(563)	66.8	33.2
	중학교	(354)	68.4	31.6
	실업계고교	(171)	68.4	31.6
	인문고교	(325)	65.2	34.8
	특수목적고	(20)	70.0	30.0
	특수학교	(51)	72.5	27.5
설립유형	국공립	(1276)	67.5	32.5
	종교계사립	(88)	69.3	30.7
	비종교계사립	(119)	63.0	37.0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66.7	33.3
	사회및도덕교과	(181)	68.5	31.5
	과학교과	(74)	63.5	36.5
	외국어교과	(123)	68.3	31.7
	수학교과	(108)	63.9	36.1
	실과및실업교과	(127)	66.9	33.1
	예체능및교련교과	(85)	67.1	32.9
	기타	(31)	74.2	25.8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3)	69.4	30.6
	중소도시	(484)	65.5	34.5
	농어촌,도서지역	(266)	63.9	36.1
학교지역	서울	(18)	55.6	44.4
	부산	(357)	68.6	31.4
	대구	(54)	72.2	27.8
	인천	(110)	72.7	27.3
	광주	(51)	76.5	23.5
	대전	(77)	62.3	37.7
	울산	(70)	74.3	25.7
	경기	(36)	69.4	30.6
	강원	(45)	73.3	26.7
	충북	(102)	56.9	43.1
	충남	(116)	65.5	34.5
	전남	(68)	72.1	27.9
	전북	(105)	65.7	34.3
	경북	(93)	69.9	30.1
	경남	(113)	61.9	38.1
제주	(69)	58.0	42.0	

문1-48 예결산, 인사, 학교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6)	55.6	44.4
	여자	(866)	58.5	41.5
연령	20-29세	(257)	49.8	50.2
	30-39세	(556)	63.7	36.3
	40-49세	(451)	58.8	41.2
	50-59세	(146)	44.5	55.5
	60세이상	(14)	42.9	57.1
교육경력	0-5년	(341)	53.1	46.9
	6-10년	(193)	56.5	43.5
	11-20년	(602)	65.0	35.0
	20-30년	(217)	50.2	49.8
	30년이상	(70)	38.6	61.4
근무학교	초등학교	(562)	53.6	46.4
	중학교	(352)	58.2	41.8
	실업계고교	(170)	62.9	37.1
	인문고교	(323)	58.5	41.5
	특수목적고	(20)	60.0	40.0
	특수학교	(51)	62.7	37.3
설립유형	국공립	(1271)	57.2	42.8
	중교계사립	(88)	61.4	38.6
	비중교계사립	(118)	55.1	44.9
담당과목	국어교과	(140)	62.1	37.9
	사회및도덕교과	(181)	65.7	34.3
	과학교과	(74)	52.7	47.3
	외국어교과	(123)	56.9	43.1
	수학교과	(108)	51.9	48.1
	실과및실업교과	(125)	59.2	40.8
	예체능및교련교과	(83)	60.2	39.8
	기타	(31)	71.0	29.0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1)	57.3	42.7
	중소도시	(481)	58.2	41.8
	농어촌,도서지역	(265)	55.1	44.9
학교지역	서울	(19)	57.9	42.1
	부산	(356)	57.0	43.0
	대구	(54)	64.8	35.2
	인천	(110)	57.3	42.7
	광주	(51)	56.9	43.1
	대전	(77)	49.4	50.6
	울산	(69)	60.9	39.1
	경기	(36)	66.7	33.3
	강원	(44)	68.2	31.8
	충북	(102)	48.0	52.0
	충남	(115)	61.7	38.3
	전남	(68)	61.8	38.2
	전북	(105)	61.9	38.1
	경북	(92)	58.7	41.3
	경남	(111)	54.1	45.9
제주	(70)	44.3	55.7	

문1-49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5)	52.4	47.6
	여자	(869)	61.4	38.6
연령	20-29세	(258)	57.4	42.6
	30-39세	(558)	62.9	37.1
	40-49세	(451)	56.5	43.5
	50-59세	(145)	46.2	53.8
	60세이상	(14)	35.7	64.3
교육경력	0-5년	(342)	58.8	41.2
	6-10년	(193)	56.0	44.0
	11-20년	(603)	61.5	38.5
	20-30년	(217)	56.2	43.8
	30년이상	(70)	32.9	67.1
근무학교	초등학교	(562)	54.6	45.4
	중학교	(354)	60.5	39.5
	실업계고교	(170)	62.9	37.1
	인문고교	(324)	56.5	43.5
	특수목적고	(20)	60.0	40.0
	특수학교	(51)	56.9	43.1
설립유형	국공립	(1275)	57.5	42.5
	종교계사립	(87)	56.3	43.7
	비종교계사립	(118)	58.5	41.5
담당과목	국어교과	(140)	60.7	39.3
	사회및도덕교과	(181)	63.0	37.0
	과학교과	(74)	58.1	41.9
	외국어교과	(123)	61.0	39.0
	수학교과	(108)	48.1	51.9
	실과및실업교과	(124)	54.0	46.0
	예체능및교련교과	(86)	69.8	30.2
	기타	(31)	58.1	41.9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1)	60.3	39.7
	중소도시	(482)	55.2	44.8
	농어촌,도서지역	(267)	53.9	46.1
학교지역	서울	(19)	47.4	52.6
	부산	(356)	60.1	39.9
	대구	(54)	68.5	31.5
	인천	(110)	60.0	40.0
	광주	(51)	62.7	37.3
	대전	(77)	54.5	45.5
	울산	(69)	60.9	39.1
	경기	(36)	58.3	41.7
	강원	(44)	56.8	43.2
	충북	(102)	50.0	50.0
	충남	(117)	58.1	41.9
	전남	(68)	66.2	33.8
	전북	(105)	59.0	41.0
	경북	(93)	55.9	44.1
경남	(112)	51.8	48.2	
제주	(69)	40.6	59.4	

문1-50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교재채택료, 공문, 출장 등)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5)	53.0	47.0
	여자	(870)	57.6	42.4
연령	20-29세	(258)	57.8	42.2
	30-39세	(558)	59.7	40.3
	40-49세	(452)	54.2	45.8
	50-59세	(145)	44.8	55.2
	60세이상	(14)	42.9	57.1
교육경력	0-5년	(342)	58.5	41.5
	6-10년	(193)	56.5	43.5
	11-20년	(604)	57.5	42.5
	20-30년	(217)	52.1	47.9
	30년이상	(70)	40.0	60.0
근무학교	초등학교	(562)	56.8	43.2
	중학교	(354)	56.2	43.8
	실업계고교	(170)	55.3	44.7
	인문고교	(324)	54.6	45.4
	특수목적고	(20)	60.0	40.0
	특수학교	(51)	51.0	49.0
설립유형	국공립	(1275)	56.5	43.5
	종교계사립	(88)	53.4	46.6
	비종교계사립	(117)	49.6	50.4
담당과목	국어교과	(140)	52.9	47.1
	사회및도덕교과	(181)	54.7	45.3
	과학교과	(73)	58.9	41.1
	외국어교과	(123)	63.4	36.6
	수학교과	(108)	52.8	47.2
	실과및실업교과	(126)	50.8	49.2
	예체능및교련교과	(86)	54.7	45.3
	기타	(31)	58.1	41.9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1)	57.6	42.4
	중소도시	(483)	54.5	45.5
	농어촌,도서지역	(266)	53.0	47.0
학교지역	서울	(18)	50.0	50.0
	부산	(357)	58.8	41.2
	대구	(54)	59.3	40.7
	인천	(110)	64.5	35.5
	광주	(50)	54.0	46.0
	대전	(77)	45.5	54.5
	울산	(70)	57.1	42.9
	경기	(36)	69.4	30.6
	강원	(44)	63.6	36.4
	충북	(102)	54.9	45.1
	충남	(117)	55.6	44.4
	전남	(68)	61.8	38.2
	전북	(105)	51.4	48.6
	경북	(92)	55.4	44.6
경남	(112)	47.3	52.7	
제주	(70)	41.4	58.6	

문1-51 교육당국(교육부 등)이나 학교 관리자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기자재,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5)	49.4	50.6
	여자	(868)	48.6	51.4
연령	20-29세	(258)	36.8	63.2
	30-39세	(557)	54.6	45.4
	40-49세	(450)	51.1	48.9
	50-59세	(146)	43.2	56.8
	60세이상	(14)	35.7	64.3
교육경력	0-5년	(342)	42.7	57.3
	6-10년	(192)	46.9	53.1
	11-20년	(603)	54.6	45.4
	20-30년	(217)	50.2	49.8
	30년이상	(70)	32.9	67.1
근무학교	초등학교	(561)	46.0	54.0
	중학교	(354)	52.0	48.0
	실업계고교	(170)	52.9	47.1
	인문고교	(324)	48.8	51.2
	특수목적고	(19)	47.4	52.6
	특수학교	(51)	43.1	56.9
설립유형	국공립	(1273)	48.6	51.4
	종교계사립	(88)	53.4	46.6
	비종교계사립	(117)	46.2	53.8
담당과목	국어교과	(140)	50.7	49.3
	사회및도덕교과	(180)	50.6	49.4
	과학교과	(74)	41.9	58.1
	외국어교과	(123)	50.4	49.6
	수학교과	(108)	44.4	55.6
	실과및실업교과	(125)	51.2	48.8
	예체능및교련교과	(86)	62.8	37.2
	기타	(31)	51.6	48.4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9)	48.6	51.4
	중소도시	(483)	48.9	51.1
	농어촌,도서지역	(266)	48.5	51.5
학교지역	서울	(19)	42.1	57.9
	부산	(354)	50.8	49.2
	대구	(54)	53.7	46.3
	인천	(110)	50.0	50.0
	광주	(51)	49.0	51.0
	대전	(77)	32.5	67.5
	울산	(69)	49.3	50.7
	경기	(36)	63.9	36.1
	강원	(44)	56.8	43.2
	충북	(102)	44.1	55.9
	충남	(117)	51.3	48.7
	전남	(68)	51.5	48.5
	전북	(105)	52.4	47.6
	경북	(92)	57.6	42.4
경남	(112)	39.3	60.7	
제주	(70)	35.7	64.3	

문2-1 최근 1년 간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활동(수업, 조·종례, 훈화 등)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례수	1회-2회	3회-4회	4회이상	없다
성별	남자	(557)	32.7	15.8	16.2	35.4
	여자	(863)	34.1	12.1	13.9	40.0
연령	20-29세	(256)	32.0	9.8	10.9	47.3
	30-39세	(558)	34.8	13.6	16.1	35.5
	40-49세	(452)	33.4	15.0	14.2	37.4
	50-59세	(142)	32.4	15.5	16.9	35.2
	60세이상	(14)	42.9	7.1	21.4	28.6
교육경력	0-5년	(339)	31.0	11.5	13.6	44.0
	6-10년	(195)	41.0	12.3	14.4	32.3
	11-20년	(603)	32.8	14.4	15.3	37.5
	20-30년	(214)	34.1	13.6	15.0	37.4
	30년이상	(70)	32.9	18.6	17.1	31.4
근무학교	초등학교	(556)	33.6	15.5	17.1	33.8
	중학교	(355)	36.9	12.7	15.8	34.6
	실업계고교	(171)	30.4	13.5	15.2	40.9
	인문고교	(322)	32.9	11.8	10.9	44.4
	특수목적고	(20)	45.0	15.0	10.0	30.0
	특수학교	(51)	23.5	11.8	5.9	58.8
설립유형	국공립	(1271)	33.8	14.2	15.3	36.7
	종교계사립	(84)	32.1	10.7	10.7	46.4
	비종교계사립	(119)	32.8	10.1	11.8	45.4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37.6	11.3	12.8	38.3
	사회및도덕교과	(181)	26.0	22.7	26.5	24.9
	과학교과	(73)	46.6	5.5	8.2	39.7
	외국어교과	(122)	40.2	9.8	4.9	45.1
	수학교과	(109)	27.5	10.1	10.1	52.3
	실과및실업교과	(126)	34.1	10.3	8.7	46.8
	예체능및교련교과	(85)	36.5	12.9	11.8	38.8
	기타	(30)	23.3	6.7	13.3	56.7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5)	33.4	12.6	14.8	39.3
	중소도시	(483)	34.0	13.7	14.1	38.3
	농어촌,도서지역	(266)	33.5	16.5	15.8	34.2
학교지역	서울	(18)	44.4	.0	16.7	38.9
	부산	(351)	33.3	14.8	16.2	35.6
	대구	(54)	29.6	11.1	9.3	50.0
	인천	(108)	34.3	13.9	16.7	35.2
	광주	(51)	31.4	9.8	3.9	54.9
	대전	(77)	31.2	9.1	16.9	42.9
	울산	(70)	35.7	10.0	12.9	41.4
	경기	(36)	33.3	22.2	13.9	30.6
	강원	(45)	28.9	15.6	15.6	40.0
	충북	(102)	30.4	8.8	17.6	43.1
	충남	(119)	35.3	21.8	16.8	26.1
	전남	(68)	33.8	13.2	17.6	35.3
	전북	(105)	38.1	13.3	14.3	34.3
	경북	(92)	26.1	12.0	10.9	51.1
경남	(110)	40.0	13.6	9.1	37.3	
제주	(69)	34.8	14.5	18.8	31.9	

문2-2 학생을 처벌해야 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사례수	훈계한다	동의하에 체벌	동의없이 체벌	징계하지않음	기타
성별	남자	(559)	49.9	39.2	9.1	.4	1.4
	여자	(867)	60.2	32.8	4.4	.6	2.1
연령	20-29세	(256)	48.8	44.9	4.3	.4	1.6
	30-39세	(557)	57.6	33.6	5.6	.4	2.9
	40-49세	(456)	57.9	32.7	7.9	.7	.9
	50-59세	(145)	55.2	35.9	7.6	.7	.7
	60세이상	(14)	85.7	7.1	.0	.0	7.1
교육경력	0-5년	(340)	51.8	41.2	4.4	.3	2.4
	6-10년	(194)	54.6	38.7	4.6	.5	1.5
	11-20년	(605)	58.5	31.7	7.6	.3	1.8
	20-30년	(218)	54.1	35.8	7.3	1.4	1.4
	30년이상	(70)	67.1	27.1	4.3	.0	1.4
근무학교	초등학교	(557)	53.0	37.3	6.6	.5	2.5
	중학교	(356)	58.1	34.3	4.8	.3	2.5
	실업계고교	(171)	52.0	40.4	7.0	.6	.0
	인문고교	(327)	61.2	31.5	5.8	.6	.9
	특수목적교	(20)	65.0	25.0	5.0	.0	5.0
	특수학교	(51)	49.0	39.2	9.8	.0	2.0
설립유형	국공립	(1274)	56.0	35.9	5.7	.5	1.9
	종교계사립	(87)	62.1	29.9	6.9	.0	1.1
	비종교계사립	(120)	50.8	36.7	10.0	.0	2.5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58.2	35.5	5.0	.7	.7
	사회및도덕교과	(183)	62.8	30.1	4.4	.0	2.7
	과학교과	(74)	62.2	29.7	5.4	.0	2.7
	외국어교과	(122)	64.8	27.9	3.3	.8	3.3
	수학교과	(109)	49.5	42.2	8.3	.0	.0
	실과및실업교과	(127)	55.1	32.3	11.0	1.6	.0
	예체능및교련교과	(86)	50.0	44.2	4.7	.0	1.2
기타	(31)	48.4	35.5	9.7	.0	6.5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1)	59.0	33.8	5.3	.1	1.8
	중소도시	(483)	53.6	36.9	6.8	.4	2.3
	농어촌,도서지역	(267)	51.3	38.6	7.1	1.5	1.5
학교지역	서울	(19)	78.9	15.8	.0	.0	5.3
	부산	(354)	62.1	30.2	6.2	.0	1.4
	대구	(54)	59.3	37.0	1.9	.0	1.9
	인천	(109)	59.6	31.2	5.5	.0	3.7
	광주	(52)	42.3	51.9	5.8	.0	.0
	대전	(77)	51.9	37.7	6.5	.0	3.9
	울산	(70)	57.1	38.6	2.9	1.4	.0
	경기	(35)	74.3	22.9	2.9	.0	.0
	강원	(45)	60.0	33.3	4.4	2.2	.0
	충북	(102)	46.1	41.2	9.8	2.0	1.0
	충남	(119)	57.1	31.9	6.7	.8	3.4
	전남	(68)	39.7	48.5	10.3	.0	1.5
	전북	(105)	52.4	41.9	3.8	.0	1.9
	경북	(92)	52.2	32.6	10.9	1.1	3.3
경남	(111)	53.2	41.4	4.5	.9	.0	
제주	(70)	52.9	35.7	7.1	.0	4.3	

문2-3 생활지도, 학급운영 시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사례수	민주적 반영	교사주관적 반영	대체로 반영않음	무시한다
성별	남자	(559)	61.7	34.9	3.4	.0
	여자	(864)	60.9	37.2	1.7	.2
연령	20-29세	(253)	57.7	40.3	2.0	.0
	30-39세	(559)	60.3	38.1	1.3	.4
	40-49세	(454)	63.4	33.5	3.1	.0
	50-59세	(145)	62.8	31.7	5.5	.0
	60세이상	(14)	71.4	28.6	.0	.0
교육경력	0-5년	(337)	59.9	38.3	1.5	.3
	6-10년	(195)	57.9	40.5	1.5	.0
	11-20년	(604)	62.6	34.4	2.8	.2
	20-30년	(218)	61.5	35.3	3.2	.0
	30년이상	(70)	64.3	32.9	2.9	.0
근무학교	초등학교	(559)	56.4	41.5	2.0	.2
	중학교	(353)	63.2	34.3	2.3	.3
	실업계고교	(172)	59.3	37.2	2.9	.6
	인문고교	(324)	68.5	28.1	3.4	.0
	특수목적고	(20)	60.0	40.0	.0	.0
	특수학교	(50)	62.0	38.0	.0	.0
설립유형	국공립	(1270)	60.9	36.9	2.0	.2
	종교계사립	(86)	62.8	32.6	4.7	.0
	비종교계사립	(121)	64.5	30.6	4.1	.8
담당과목	국어교과	(140)	58.6	40.0	1.4	.0
	사회및도덕교과	(182)	72.5	26.9	.5	.0
	과학교과	(74)	54.1	44.6	1.4	.0
	외국어교과	(122)	64.8	30.3	4.9	.0
	수학교과	(107)	62.6	34.6	2.8	.0
	실과및실업교과	(126)	64.3	33.3	2.4	.0
	예체능및교련교과 기타	(86) (31)	68.6 54.8	23.3 41.9	7.0 3.2	1.2 .0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0)	60.7	37.3	1.8	.3
	중소도시	(484)	60.5	36.2	3.1	.2
	농어촌,도서지역	(263)	64.3	33.1	2.7	.0
학교지역	서울	(19)	73.7	26.3	.0	.0
	부산	(354)	61.3	37.6	.8	.3
	대구	(55)	60.0	36.4	1.8	1.8
	인천	(108)	55.6	42.6	1.9	.0
	광주	(52)	69.2	28.8	1.9	.0
	대전	(76)	59.2	34.2	6.6	.0
	울산	(70)	58.6	40.0	1.4	.0
	경기	(36)	77.8	19.4	2.8	.0
	강원	(45)	48.9	48.9	.0	2.2
	충북	(102)	55.9	39.2	4.9	.0
	충남	(118)	68.6	29.7	1.7	.0
	전남	(67)	55.2	44.8	.0	.0
	전북	(105)	64.8	32.4	2.9	.0
	경북	(90)	50.0	43.3	6.7	.0
	경남	(111)	70.3	28.8	.9	.0
제주	(70)	62.9	31.4	5.7	.0	

문2-4 학생들이 수업을 평가하고,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제안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례수	적극반영한다	적극반영은 안함	무시한다	주의나 제재 가함
성별	남자	(557)	50.8	46.7	1.4	1.1
	여자	(865)	48.8	49.9	.1	1.2
연령	20-29세	(254)	57.1	42.5	.4	.0
	30-39세	(558)	49.8	48.6	.4	1.3
	40-49세	(454)	48.7	48.9	.9	1.5
	50-59세	(144)	38.2	59.7	.7	1.4
	60세이상	(14)	57.1	35.7	7.1	.0
교육경력	0-5년	(338)	59.5	39.9	.3	.3
	6-10년	(195)	50.8	47.7	1.5	.0
	11-20년	(602)	47.3	50.2	.5	2.0
	20-30년	(218)	40.4	57.3	.9	1.4
	30년이상	(70)	48.6	51.4	.0	.0
근무학교	초등학교	(558)	48.9	49.5	.5	1.1
	중학교	(355)	49.9	49.3	.3	.6
	실업계고교	(171)	44.4	52.6	.0	2.9
	인문고교	(325)	51.4	46.2	1.5	.9
	특수목적고	(20)	60.0	40.0	.0	.0
	특수학교	(50)	52.0	48.0	.0	.0
설립유형	국공립	(1270)	48.7	49.6	.5	1.3
	종교계사립	(87)	59.8	39.1	1.1	.0
	비종교계사립	(121)	49.6	48.8	.8	.8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51.8	45.4	1.4	1.4
	사회및도덕교과	(183)	59.6	39.3	.5	.5
	과학교과	(74)	45.9	54.1	.0	.0
	외국어교과	(121)	52.9	45.5	.8	.8
	수학교과	(108)	43.5	54.6	.9	.9
	실과및실업교과	(126)	38.9	57.9	.8	2.4
	예체능및교련교과	(86)	53.5	45.3	.0	1.2
	기타	(31)	41.9	54.8	.0	3.2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9)	49.1	49.8	.3	.8
	중소도시	(483)	48.7	49.1	.6	1.7
	농어촌,도서지역	(266)	51.1	46.2	1.5	1.1
학교지역	서울	(19)	36.8	63.2	.0	.0
	부산	(352)	50.6	48.6	.0	.9
	대구	(55)	52.7	47.3	.0	.0
	인천	(108)	54.6	45.4	.0	.0
	광주	(52)	46.2	53.8	.0	.0
	대전	(77)	46.8	50.6	.0	2.6
	울산	(70)	35.7	58.6	2.9	2.9
	경기	(36)	61.1	38.9	.0	.0
	강원	(45)	46.7	48.9	2.2	2.2
	충북	(102)	52.0	45.1	2.0	1.0
	충남	(119)	47.9	51.3	.0	.8
	전남	(68)	47.1	51.5	.0	1.5
	전북	(105)	50.5	48.6	.0	1.0
	경북	(90)	45.6	47.8	3.3	3.3
	경남	(111)	55.0	44.1	.0	.9
제주	(70)	45.7	51.4	1.4	1.4	

문2-5 현재 선생님의 학교에서 학칙(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례수	교직원	교직원+학생	교직원+학부모등	교직원+학부모등+학생
성별	남자	(544)	46.9	16.0	20.0	17.1
	여자	(815)	39.5	12.6	32.6	15.2
연령	20-29세	(235)	28.9	11.1	41.3	18.7
	30-39세	(530)	44.9	12.1	27.7	15.3
	40-49세	(440)	46.1	16.4	22.0	15.5
	50-59세	(143)	44.1	18.2	21.0	16.8
	60세이상	(14)	50.0	14.3	28.6	7.1
교육경력	0-5년	(312)	33.7	9.0	39.4	17.9
	6-10년	(183)	41.0	15.8	27.3	15.8
	11-20년	(585)	46.5	15.6	23.4	14.5
	20-30년	(211)	42.7	15.6	24.2	17.5
	30년이상	(69)	52.2	13.0	20.3	14.5
근무학교	초등학교	(530)	39.6	5.8	42.8	11.7
	중학교	(341)	44.6	15.0	22.9	17.6
	실업계고교	(162)	48.1	19.8	16.0	16.0
	인문고교	(312)	41.3	21.5	15.4	21.8
	특수목적고	(18)	44.4	44.4	5.6	5.6
	특수학교	(50)	46.0	14.0	26.0	14.0
설립유형	국공립	(1216)	40.6	12.6	30.5	16.3
	종교계사립	(82)	62.2	12.2	15.9	9.8
	비종교계사립	(113)	48.7	27.4	8.0	15.9
담당과목	국어교과	(136)	41.2	19.9	19.1	19.9
	사회및도덕교과	(173)	48.6	14.5	17.3	19.7
	과학교과	(71)	42.3	16.9	28.2	12.7
	외국어교과	(117)	39.3	24.8	16.2	19.7
	수학교과	(103)	44.7	18.4	19.4	17.5
	실과및실업교과	(124)	43.5	17.7	15.3	23.4
	예체능및교련교과	(80)	48.8	22.5	15.0	13.8
	기타	(29)	44.8	20.7	20.7	13.8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690)	43.6	12.8	29.6	14.1
	중소도시	(466)	41.6	16.1	25.1	17.2
	농어촌,도서지역	(256)	40.6	12.9	28.1	18.4
학교지역	서울	(17)	35.3	11.8	35.3	17.6
	부산	(331)	42.3	13.3	29.3	15.1
	대구	(54)	53.7	18.5	16.7	11.1
	인천	(104)	40.4	3.8	44.2	11.5
	광주	(51)	35.3	17.6	29.4	17.6
	대전	(70)	54.3	8.6	25.7	11.4
	울산	(67)	43.3	20.9	20.9	14.9
	경기	(35)	42.9	2.9	48.6	5.7
	강원	(45)	33.3	8.9	42.2	15.6
	충북	(98)	40.8	12.2	20.4	26.5
	충남	(112)	38.4	19.6	16.1	25.9
	전남	(62)	59.7	8.1	22.6	9.7
	전북	(105)	39.0	13.3	31.4	16.2
	경북	(83)	51.8	15.7	25.3	7.2
	경남	(110)	38.2	19.1	22.7	20.0
제주	(69)	31.9	21.7	30.4	15.9	

문2-6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의결과정 참여	참관인 의견 제시	참관인 방청 허용	참여 하지 않아야함
성별	남자	(556)	17.4	57.7	13.3	11.5
	여자	(854)	21.4	61.9	8.0	8.7
연령	20-29세	(253)	27.3	65.2	5.5	2.0
	30-39세	(550)	20.2	64.2	8.7	6.9
	40-49세	(450)	19.3	56.0	12.4	12.2
	50-59세	(145)	9.7	50.3	15.2	24.8
	60세이상	(14)	.0	64.3	7.1	28.6
교육경력	0-5년	(336)	29.8	62.2	5.4	2.7
	6-10년	(194)	18.0	62.4	9.8	9.8
	11-20년	(597)	18.8	62.0	10.6	8.7
	20-30년	(214)	12.6	53.7	15.4	18.2
	30년이상	(70)	10.0	51.4	12.9	25.7
근무학교	초등학교	(547)	17.4	58.7	11.2	12.8
	중학교	(355)	19.2	65.9	8.5	6.5
	실업계고교	(170)	21.2	60.0	11.2	7.6
	인문고교	(325)	24.0	56.3	9.8	9.8
	특수목적고	(20)	20.0	65.0	5.0	10.0
	특수학교	(50)	32.0	58.0	4.0	6.0
설립유형	국공립	(1259)	20.0	59.9	10.4	9.7
	종교계사립	(86)	20.9	60.5	5.8	12.8
	비종교계사립	(120)	22.5	61.7	7.5	8.3
담당과목	국어교과	(138)	25.4	65.2	5.8	3.6
	사회및도덕교과	(182)	23.6	61.0	9.3	6.0
	과학교과	(74)	18.9	62.2	8.1	10.8
	외국어교과	(122)	15.6	65.6	9.0	9.8
	수학교과	(109)	19.3	65.1	9.2	6.4
	실과및실업교과	(126)	19.8	54.8	11.9	13.5
	예체능및교련교과	(86)	24.4	51.2	16.3	8.1
	기타	(30)	23.3	66.7	6.7	3.3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2)	22.6	57.5	8.6	11.4
	중소도시	(479)	18.4	62.2	11.1	8.4
	농어촌,도서지역	(264)	17.4	63.3	11.4	8.0
학교지역	서울	(19)	15.8	57.9	10.5	15.8
	부산	(348)	20.7	56.6	9.8	12.9
	대구	(55)	21.8	65.5	7.3	5.5
	인천	(107)	28.0	54.2	6.5	11.2
	광주	(51)	19.6	68.6	5.9	5.9
	대전	(76)	21.1	59.2	9.2	10.5
	울산	(70)	28.6	51.4	8.6	11.4
	경기	(36)	.0	80.6	11.1	8.3
	강원	(44)	15.9	61.4	18.2	4.5
	충북	(102)	13.7	58.8	13.7	13.7
	충남	(118)	27.1	49.2	13.6	10.2
	전남	(67)	17.9	71.6	9.0	1.5
	전북	(104)	18.3	62.5	11.5	7.7
	경북	(90)	24.4	62.2	7.8	5.6
	경남	(109)	20.2	66.1	7.3	6.4
제주	(70)	8.6	70.0	10.0	11.4	

문2-7 교사로 발령 받은 이후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례수	1회-2회	3회-4회	5회이상	받은적 없음
성별	남자	(560)	16.1	2.1	2.0	79.8
	여자	(863)	10.4	2.1	1.0	86.4
연령	20-29세	(255)	11.0	3.1	.8	85.1
	30-39세	(558)	11.3	1.4	.7	86.6
	40-49세	(453)	13.5	2.0	2.0	82.6
	50-59세	(145)	19.3	2.8	3.4	74.5
	60세이상	(14)	7.1	7.1	.0	85.7
교육경력	0-5년	(339)	12.1	2.7	.6	84.7
	6-10년	(195)	11.8	1.5	.5	86.2
	11-20년	(604)	11.8	1.5	1.7	85.1
	20-30년	(216)	14.4	2.8	2.3	80.6
	30년이상	(70)	21.4	4.3	2.9	71.4
근무학교	초등학교	(557)	13.8	1.6	1.3	83.3
	중학교	(355)	11.8	2.0	.6	85.6
	실업계고교	(172)	14.5	1.7	2.3	81.4
	인문고교	(324)	12.7	3.4	2.2	81.8
	특수목적고	(20)	5.0	5.0	.0	90.0
	특수학교	(51)	3.9	.0	2.0	94.1
설립유형	국공립	(1271)	12.7	2.0	1.5	83.7
	종교계사립	(86)	14.0	1.2	2.3	82.6
	비종교계사립	(121)	10.7	3.3	.0	86.0
담당과목	국어교과	(140)	12.1	2.1	1.4	84.3
	사회및도덕교과	(182)	18.1	3.8	1.6	76.4
	과학교과	(74)	8.1	2.7	2.7	86.5
	외국어교과	(122)	10.7	2.5	1.6	85.2
	수학교과	(109)	4.6	1.8	.0	93.6
	실과및실업교과	(126)	15.9	.8	2.4	81.0
	예체능및교련교과	(86)	11.6	2.3	2.3	83.7
	기타	(31)	16.1	3.2	.0	80.6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8)	12.6	2.5	1.4	83.5
	중소도시	(483)	13.3	1.0	1.4	84.3
	농어촌,도서지역	(267)	11.6	3.0	1.5	83.9
학교지역	서울	(17)	17.6	5.9	.0	76.5
	부산	(354)	10.2	2.0	.6	87.3
	대구	(55)	7.3	1.8	.0	90.9
	인천	(107)	17.8	1.9	1.9	78.5
	광주	(52)	11.5	3.8	.0	84.6
	대전	(77)	19.5	1.3	2.6	76.6
	울산	(70)	14.3	5.7	5.7	74.3
	경기	(36)	8.3	.0	2.8	88.9
	강원	(44)	11.4	.0	.0	88.6
	충북	(102)	14.7	.0	2.0	83.3
	충남	(119)	16.0	4.2	2.5	77.3
	전남	(68)	11.8	.0	.0	88.2
	전북	(105)	12.4	1.9	1.0	84.8
	경북	(92)	10.9	1.1	.0	88.0
	경남	(111)	9.9	2.7	1.8	85.6
	제주	(70)	15.7	2.9	2.9	78.6

문2-8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어디서 받아 보셨습니까?(위 문항에서 연수를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만 답변하십시오.)

		사례수	교육당국	시민,인권단체	교원단체	기타
성별	남자	(122)	29.5	22.1	33.6	14.8
	여자	(127)	19.7	20.5	38.6	21.3
연령	20-29세	(41)	22.0	19.5	31.7	26.8
	30-39세	(84)	15.5	20.2	45.2	19.0
	40-49세	(86)	20.9	23.3	38.4	17.4
	50-59세	(37)	54.1	21.6	16.2	8.1
	60세이상	(2)	100.0	.0	.0	.0
교육경력	0-5년	(55)	20.0	16.4	36.4	27.3
	6-10년	(34)	14.7	32.4	35.3	17.6
	11-20년	(98)	20.4	21.4	41.8	16.3
	20-30년	(43)	34.9	16.3	34.9	14.0
	30년이상	(20)	55.0	25.0	10.0	10.0
근무학교	초등학교	(99)	36.4	13.1	31.3	19.2
	중학교	(54)	14.8	20.4	53.7	11.1
	실업계고교	(37)	24.3	21.6	40.5	13.5
	인문고교	(63)	19.0	33.3	30.2	17.5
	특수목적고	(2)	.0	50.0	.0	50.0
	특수학교	(6)	.0	16.7	16.7	66.7
설립유형	국공립	(225)	24.4	20.9	36.9	17.8
	종교계사립	(15)	20.0	20.0	33.3	26.7
	비종교계사립	(21)	33.3	23.8	33.3	9.5
담당과목	국어교과	(24)	8.3	20.8	54.2	16.7
	사회및도덕교과	(45)	15.6	33.3	35.6	15.6
	과학교과	(10)	.0	20.0	80.0	.0
	외국어교과	(18)	27.8	11.1	38.9	22.2
	수학교과	(8)	12.5	50.0	25.0	12.5
	실과및실업교과	(28)	25.0	32.1	21.4	21.4
	예체능및교련교과	(16)	18.8	18.8	43.8	18.8
	기타	(7)	28.6	.0	42.9	28.6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137)	21.9	19.0	38.0	21.2
	중소도시	(77)	26.0	27.3	31.2	15.6
	농어촌,도서지역	(46)	32.6	17.4	41.3	8.7
학교지역	서울	(4)	50.0	50.0	.0	.0
	부산	(54)	18.5	20.4	31.5	29.6
	대구	(6)	16.7	16.7	66.7	.0
	인천	(25)	20.0	16.0	52.0	12.0
	광주	(10)	10.0	10.0	20.0	60.0
	대전	(21)	33.3	19.0	28.6	19.0
	울산	(19)	26.3	15.8	52.6	5.3
	경기	(3)	66.7	.0	33.3	.0
	강원	(4)	.0	25.0	75.0	.0
	충북	(18)	38.9	33.3	.0	27.8
	충남	(27)	22.2	22.2	44.4	11.1
	전남	(8)	25.0	12.5	37.5	25.0
	전북	(17)	23.5	29.4	47.1	.0
	경북	(12)	.0	16.7	75.0	8.3
	경남	(18)	38.9	22.2	22.2	16.7
	제주	(15)	40.0	26.7	20.0	13.3

문2-9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연수를 진행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사례수	적극 참여	가능한 참여	참여의사 없음
성별	남자	(560)	16.6	70.4	13.0
	여자	(866)	13.9	77.9	8.2
연령	20-29세	(256)	14.8	78.1	7.0
	30-39세	(557)	16.0	75.6	8.4
	40-49세	(456)	13.4	73.7	12.9
	50-59세	(145)	14.5	73.1	12.4
	60세이상	(14)	28.6	57.1	14.3
교육경력	0-5년	(339)	15.6	78.8	5.6
	6-10년	(195)	18.5	72.3	9.2
	11-20년	(605)	14.5	73.4	12.1
	20-30년	(218)	10.6	78.4	11.0
	30년이상	(70)	18.6	67.1	14.3
근무학교	초등학교	(557)	12.7	76.7	10.6
	중학교	(355)	16.3	77.5	6.2
	실업계고교	(172)	18.0	69.8	12.2
	인문고교	(327)	15.0	74.3	10.7
	특수목적고	(20)	15.0	55.0	30.0
	특수학교	(51)	13.7	74.5	11.8
설립유형	국공립	(1273)	15.2	75.6	9.3
	종교계사립	(87)	10.3	72.4	17.2
	비종교계사립	(121)	14.0	72.7	13.2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15.6	78.0	6.4
	사회및도덕교과	(182)	23.1	69.2	7.7
	과학교과	(74)	12.2	74.3	13.5
	외국어교과	(123)	9.8	78.9	11.4
	수학교과	(109)	11.0	77.1	11.9
	실과및실업교과	(127)	15.7	71.7	12.6
	예체능및교련교과	(86)	19.8	70.9	9.3
	기타	(31)	12.9	83.9	3.2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2)	11.2	76.9	11.9
	중소도시	(483)	17.4	74.1	8.5
	농어촌,도서지역	(266)	19.5	72.6	7.9
학교지역	서울	(19)	10.5	89.5	.0
	부산	(355)	10.4	74.1	15.5
	대구	(55)	12.7	81.8	5.5
	인천	(108)	11.1	78.7	10.2
	광주	(52)	11.5	76.9	11.5
	대전	(77)	14.3	80.5	5.2
	울산	(70)	11.4	78.6	10.0
	경기	(36)	8.3	80.6	11.1
	강원	(44)	15.9	75.0	9.1
	충북	(101)	14.9	75.2	9.9
	충남	(119)	18.5	75.6	5.9
	전남	(68)	17.6	80.9	1.5
	전북	(105)	25.7	67.6	6.7
	경북	(92)	16.3	69.6	14.1
	경남	(111)	23.4	68.5	8.1
	제주	(70)	12.9	77.1	10.0

문3-1 교사가 학내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9)	.0	1.1	54.0	44.9
	여자	(872)	.1	1.5	55.4	43.0
연령	20-29세	(259)	.0	.0	53.7	46.3
	30-39세	(559)	.2	1.1	52.1	46.7
	40-49세	(456)	.0	1.1	54.8	44.1
	50-59세	(145)	.0	4.8	66.2	29.0
	60세이상	(14)	.0	7.1	64.3	28.6
교육경력	0-5년	(343)	.0	.6	53.1	46.4
	6-10년	(194)	.0	.5	52.1	47.4
	11-20년	(606)	.2	.8	53.8	45.2
	20-30년	(220)	.0	3.2	59.5	37.3
	30년이상	(69)	.0	5.8	63.8	30.4
근무학교	초등학교	(561)	.2	1.6	55.1	43.1
	중학교	(356)	.0	.6	53.9	45.5
	실업계고교	(172)	.0	2.3	53.5	44.2
	인문고교	(327)	.0	1.2	55.4	43.4
	특수목적고	(20)	.0	.0	60.0	40.0
	특수학교	(51)	.0	.0	52.9	47.1
설립유형	국공립	(1278)	.1	1.3	54.3	44.4
	종교계사립	(88)	.0	3.4	54.5	42.0
	비종교계사립	(120)	.0	.0	59.2	40.8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0	.7	48.2	51.1
	사회및도덕교과	(183)	.0	.5	50.8	48.6
	과학교과	(74)	.0	.0	55.4	44.6
	외국어교과	(124)	.0	2.4	62.9	34.7
	수학교과	(109)	.0	.9	56.9	42.2
	실과및실업교과	(127)	.0	2.4	51.2	46.5
	예체능및교련교과 기타	(85) (31)	.0 .0	1.2 .0	57.6 67.7	41.2 32.3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4)	.1	1.4	53.3	45.2
	중소도시	(483)	.0	.8	55.1	44.1
	농어촌,도서지역	(269)	.0	1.9	58.4	39.8
학교지역	서울	(19)	.0	.0	57.9	42.1
	부산	(359)	.3	1.9	51.5	46.2
	대구	(55)	.0	.0	65.5	34.5
	인천	(108)	.0	.0	51.9	48.1
	광주	(51)	.0	.0	68.6	31.4
	대전	(76)	.0	.0	42.1	57.9
	울산	(69)	.0	4.3	52.2	43.5
	경기	(36)	.0	.0	50.0	50.0
	강원	(45)	.0	2.2	51.1	46.7
	충북	(102)	.0	2.9	61.8	35.3
	충남	(119)	.0	1.7	54.6	43.7
	전남	(68)	.0	.0	35.3	64.7
	전북	(104)	.0	1.0	58.7	40.4
	경북	(93)	.0	1.1	55.9	43.0
경남	(113)	.0	.0	64.6	35.4	
제주	(70)	.0	1.4	62.9	35.7	

문3-2 교사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평교사회, 교원단체 분회모임 등)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9)	.0	2.9	49.6	47.6
	여자	(870)	.1	2.5	53.4	43.9
연령	20-29세	(258)	.0	1.2	51.9	46.9
	30-39세	(559)	.2	1.8	47.2	50.8
	40-49세	(455)	.0	2.9	53.8	43.3
	50-59세	(145)	.0	7.6	60.0	32.4
	60세이상	(14)	.0	7.1	85.7	7.1
교육경력	0-5년	(342)	.0	1.8	49.7	48.5
	6-10년	(194)	.0	1.5	47.9	50.5
	11-20년	(605)	.2	1.8	49.8	48.3
	20-30년	(220)	.0	5.0	62.3	32.7
	30년이상	(69)	.0	10.1	59.4	30.4
근무학교	초등학교	(560)	.2	2.5	50.9	46.4
	중학교	(356)	.0	1.1	52.2	46.6
	실업계고교	(170)	.0	1.2	52.9	45.9
	인문고교	(327)	.0	4.0	53.5	42.5
	특수목적고	(20)	.0	15.0	40.0	45.0
	특수학교	(51)	.0	3.9	45.1	51.0
설립유형	국공립	(1275)	.1	2.2	51.8	45.9
	종교계사립	(88)	.0	8.0	45.5	46.6
	비종교계사립	(120)	.0	2.5	54.2	43.3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0	2.1	47.9	50.0
	사회및도덕교과	(183)	.0	.5	50.8	48.6
	과학교과	(74)	.0	1.4	55.4	43.2
	외국어교과	(123)	.0	5.7	56.1	38.2
	수학교과	(109)	.0	3.7	51.4	45.0
	실과및실업교과	(125)	.0	3.2	55.2	41.6
	예체능및교련교과	(85)	.0	4.7	50.6	44.7
	기타	(31)	.0	.0	58.1	41.9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3)	.1	3.5	48.6	47.7
	중소도시	(483)	.0	1.2	53.0	45.8
	농어촌,도서지역	(267)	.0	2.2	58.4	39.3
학교지역	서울	(19)	.0	5.3	57.9	36.8
	부산	(359)	.3	4.2	49.3	46.2
	대구	(55)	.0	3.6	54.5	41.8
	인천	(108)	.0	1.9	34.3	63.9
	광주	(51)	.0	2.0	58.8	39.2
	대전	(76)	.0	2.6	46.1	51.3
	울산	(68)	.0	4.4	52.9	42.6
	경기	(36)	.0	.0	52.8	47.2
	강원	(45)	.0	2.2	40.0	57.8
	충북	(102)	.0	1.0	68.6	30.4
	충남	(119)	.0	.8	57.1	42.0
	전남	(68)	.0	1.5	36.8	61.8
	전북	(103)	.0	1.9	51.5	46.6
	경북	(93)	.0	2.2	49.5	48.4
	경남	(112)	.0	.9	65.2	33.9
제주	(70)	.0	4.3	55.7	40.0	

문3-3 교사가 학교 밖의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성별	남자	(557)	1.8	17.2	50.6	30.3
	여자	(863)	1.5	19.4	59.1	20.0
연령	20-29세	(259)	1.5	17.4	58.7	22.4
	30-39세	(554)	1.4	15.9	55.4	27.3
	40-49세	(450)	1.6	18.0	55.1	25.3
	50-59세	(145)	2.1	31.0	53.8	13.1
	60세이상	(14)	7.1	35.7	42.9	14.3
교육경력	0-5년	(342)	.9	16.4	56.1	26.6
	6-10년	(193)	1.0	19.2	57.0	22.8
	11-20년	(599)	2.0	15.4	55.8	26.9
	20-30년	(218)	2.3	22.9	59.2	15.6
	30년이상	(69)	1.4	42.0	36.2	20.3
근무학교	초등학교	(555)	1.6	20.0	55.0	23.4
	중학교	(353)	1.4	16.4	56.4	25.8
	실업계고교	(170)	.0	24.7	55.3	20.0
	인문고교	(325)	2.5	15.4	56.0	26.2
	특수목적고	(20)	10.0	10.0	65.0	15.0
	특수학교	(51)	2.0	15.7	54.9	27.5
설립유형	국공립	(1268)	1.5	18.5	55.6	24.4
	종교계사립	(86)	2.3	22.1	53.5	22.1
	비종교계사립	(119)	3.4	14.3	58.0	24.4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1.4	13.4	60.6	24.6
	사회및도덕교과	(181)	.6	11.6	55.8	32.0
	과학교과	(74)	1.4	17.6	56.8	24.3
	외국어교과	(121)	3.3	17.4	57.9	21.5
	수학교과	(108)	.9	17.6	58.3	23.1
	실과및실업교과	(125)	1.6	32.0	48.0	18.4
	예체능및교련교과	(85)	2.4	18.8	55.3	23.5
	기타	(31)	.0	22.6	51.6	25.8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5)	2.1	17.5	56.7	23.7
	중소도시	(482)	1.2	17.0	57.1	24.7
	농어촌,도서지역	(266)	1.5	23.3	51.1	24.1
학교지역	서울	(19)	5.3	15.8	63.2	15.8
	부산	(353)	2.0	17.8	55.8	24.4
	대구	(55)	1.8	27.3	60.0	10.9
	인천	(108)	2.8	13.0	56.5	27.8
	광주	(50)	2.0	12.0	68.0	18.0
	대전	(76)	.0	18.4	46.1	35.5
	울산	(67)	3.0	17.9	56.7	22.4
	경기	(36)	.0	22.2	63.9	13.9
	강원	(45)	2.2	24.4	40.0	33.3
	충북	(102)	1.0	18.6	67.6	12.7
	충남	(119)	.0	18.5	56.3	25.2
	전남	(67)	.0	16.4	49.3	34.3
	전북	(104)	1.9	19.2	51.0	27.9
	경북	(92)	1.1	16.3	52.2	30.4
	경남	(112)	1.8	24.1	53.6	20.5
제주	(69)	4.3	15.9	58.0	21.7	

문3-4 교사가 학내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8)	47.8	52.2
	여자	(866)	44.1	55.9
연령	20-29세	(258)	37.2	62.8
	30-39세	(557)	50.8	49.2
	40-49세	(452)	47.8	52.2
	50-59세	(145)	34.5	65.5
	60세이상	(14)	42.9	57.1
교육경력	0-5년	(341)	40.5	59.5
	6-10년	(193)	46.1	53.9
	11-20년	(604)	50.8	49.2
	20-30년	(218)	43.1	56.9
	30년이상	(69)	30.4	69.6
근무학교	초등학교	(560)	42.7	57.3
	중학교	(354)	46.0	54.0
	실업계고교	(170)	48.2	51.8
	인문고교	(323)	47.7	52.3
	특수목적고	(20)	70.0	30.0
	특수학교	(51)	37.3	62.7
설립유형	국공립	(1272)	44.8	55.2
	종교계사립	(87)	47.1	52.9
	비종교계사립	(118)	50.0	50.0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52.8	47.2
	사회및도덕교과	(182)	52.7	47.3
	과학교과	(74)	37.8	62.2
	외국어교과	(123)	50.4	49.6
	수학교과	(109)	38.5	61.5
	실과및실업교과	(124)	42.7	57.3
	예체능및교련교과	(83)	49.4	50.6
	기타	(31)	45.2	54.8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7)	48.7	51.3
	중소도시	(482)	44.2	55.8
	농어촌,도서지역	(268)	38.4	61.6
학교지역	서울	(18)	55.6	44.4
	부산	(356)	48.0	52.0
	대구	(54)	46.3	53.7
	인천	(108)	52.8	47.2
	광주	(50)	42.0	58.0
	대전	(76)	42.1	57.9
	울산	(68)	57.4	42.6
	경기	(36)	44.4	55.6
	강원	(45)	31.1	68.9
	충북	(102)	43.1	56.9
	충남	(118)	50.0	50.0
	전남	(68)	55.9	44.1
	전북	(105)	42.9	57.1
	경북	(93)	45.2	54.8
경남	(111)	29.7	70.3	
제주	(70)	34.3	65.7	

문3-5 교사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평교사회, 교원단체
분회모임 등)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9)	46.7	53.3
	여자	(864)	42.8	57.2
연령	20-29세	(258)	29.8	70.2
	30-39세	(556)	52.5	47.5
	40-49세	(452)	46.0	54.0
	50-59세	(145)	33.8	66.2
	60세이상	(14)	42.9	57.1
교육경력	0-5년	(340)	30.0	70.0
	6-10년	(194)	52.1	47.9
	11-20년	(602)	53.5	46.5
	20-30년	(219)	40.2	59.8
	30년이상	(69)	26.1	73.9
근무학교	초등학교	(560)	42.9	57.1
	중학교	(353)	45.9	54.1
	실업계고교	(170)	45.9	54.1
	인문고교	(323)	44.0	56.0
	특수목적고	(20)	65.0	35.0
	특수학교	(51)	33.3	66.7
설립유형	국공립	(1272)	43.7	56.3
	종교계사립	(86)	40.7	59.3
	비종교계사립	(118)	50.8	49.2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49.3	50.7
	사회및도덕교과	(179)	49.7	50.3
	과학교과	(74)	40.5	59.5
	외국어교과	(122)	45.1	54.9
	수학교과	(109)	43.1	56.9
	실과및실업교과	(125)	40.8	59.2
	예체능및교련교과	(85)	45.9	54.1
	기타	(31)	38.7	61.3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4)	45.2	54.8
	중소도시	(484)	45.0	55.0
	농어촌,도서지역	(268)	39.6	60.4
학교지역	서울	(18)	50.0	50.0
	부산	(354)	42.4	57.6
	대구	(54)	35.2	64.8
	인천	(108)	57.4	42.6
	광주	(50)	46.0	54.0
	대전	(76)	36.8	63.2
	울산	(67)	56.7	43.3
	경기	(36)	66.7	33.3
	강원	(45)	40.0	60.0
	충북	(102)	39.2	60.8
	충남	(119)	48.7	51.3
	전남	(68)	45.6	54.4
	전북	(104)	43.3	56.7
	경북	(93)	51.6	48.4
경남	(113)	29.2	70.8	
제주	(70)	37.1	62.9	

문3-6 교사가 학교 밖의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6)	48.0	52.0
	여자	(854)	41.0	59.0
연령	20-29세	(257)	30.4	69.6
	30-39세	(552)	50.4	49.6
	40-49세	(445)	45.8	54.2
	50-59세	(144)	36.1	63.9
	60세이상	(14)	42.9	57.1
교육경력	0-5년	(339)	31.6	68.4
	6-10년	(193)	50.3	49.7
	11-20년	(595)	51.6	48.4
	20-30년	(215)	38.6	61.4
	30년이상	(69)	33.3	66.7
근무학교	초등학교	(557)	41.8	58.2
	중학교	(347)	44.1	55.9
	실업계고교	(169)	44.4	55.6
	인문고교	(320)	47.5	52.5
	특수목적고	(20)	60.0	40.0
	특수학교	(51)	35.3	64.7
설립유형	국공립	(1260)	44.1	55.9
	종교계사립	(85)	44.7	55.3
	비종교계사립	(118)	40.7	59.3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48.6	51.4
	사회및도덕교과	(178)	51.7	48.3
	과학교과	(71)	45.1	54.9
	외국어교과	(123)	45.5	54.5
	수학교과	(108)	44.4	55.6
	실과및실업교과	(123)	37.4	62.6
	예체능및교련교과	(82)	37.8	62.2
	기타	(30)	50.0	50.0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20)	47.5	52.5
	중소도시	(477)	39.6	60.4
	농어촌,도서지역	(266)	41.7	58.3
학교지역	서울	(18)	50.0	50.0
	부산	(352)	50.0	50.0
	대구	(53)	34.0	66.0
	인천	(107)	51.4	48.6
	광주	(50)	48.0	52.0
	대전	(76)	28.9	71.1
	울산	(67)	59.7	40.3
	경기	(36)	58.3	41.7
	강원	(44)	45.5	54.5
	충북	(100)	30.0	70.0
	충남	(118)	39.8	60.2
	전남	(68)	47.1	52.9
	전북	(105)	50.5	49.5
	경북	(91)	41.8	58.2
경남	(110)	31.8	68.2	
제주	(69)	33.3	66.7	

문3-7 악법은 준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개폐를 위해 저항해야 합니까?					
		사례수	저항해야 한다	준수해야 한다	모르겠다
성별	남자	(555)	75.3	13.7	11.0
	여자	(869)	80.8	7.8	11.4
연령	20-29세	(258)	78.7	7.4	14.0
	30-39세	(559)	82.1	7.2	10.7
	40-49세	(454)	80.2	11.0	8.8
	50-59세	(142)	61.3	22.5	16.2
	60세이상	(14)	71.4	21.4	7.1
교육경력	0-5년	(342)	79.2	7.0	13.7
	6-10년	(194)	79.4	9.3	11.3
	11-20년	(604)	82.9	8.6	8.4
	20-30년	(218)	70.2	16.1	13.8
	30년이상	(67)	64.2	20.9	14.9
근무학교	초등학교	(558)	78.5	10.0	11.5
	중학교	(355)	83.1	8.2	8.7
	실업계고교	(171)	74.9	11.7	13.5
	인문고교	(324)	76.5	12.0	11.4
	특수목적고	(20)	75.0	10.0	15.0
	특수학교	(51)	74.5	7.8	17.6
설립유형	국공립	(1273)	79.8	9.4	10.8
	종교계사립	(85)	75.3	12.9	11.8
	비종교계사립	(119)	68.1	16.0	16.0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87.2	4.3	8.5
	사회및도덕교과	(181)	84.0	8.8	7.2
	과학교과	(74)	77.0	12.2	10.8
	외국어교과	(123)	69.1	18.7	12.2
	수학교과	(109)	79.8	7.3	12.8
	실과및실업교과	(126)	73.8	11.9	14.3
	예체능및교련교과	(86)	74.4	12.8	12.8
	기타	(29)	86.2	3.4	10.3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0)	77.5	9.2	13.3
	중소도시	(481)	81.1	10.4	8.5
	농어촌,도서지역	(266)	76.7	12.4	10.9
학교지역	서울	(19)	78.9	5.3	15.8
	부산	(356)	80.3	6.7	12.9
	대구	(55)	69.1	14.5	16.4
	인천	(108)	78.7	11.1	10.2
	광주	(52)	75.0	11.5	13.5
	대전	(75)	76.0	9.3	14.7
	울산	(69)	72.5	13.0	14.5
	경기	(36)	75.0	11.1	13.9
	강원	(45)	86.7	4.4	8.9
	충북	(101)	73.3	10.9	15.8
	충남	(119)	84.9	7.6	7.6
	전남	(67)	89.6	6.0	4.5
	전북	(105)	83.8	12.4	3.8
	경북	(92)	77.2	9.8	13.0
	경남	(110)	76.4	16.4	7.3
제주	(70)	68.6	18.6	12.9	

문3-8 시민운동단체나 인권운동 관련단체(웹네스티 등)에 회원으로
참여하시거나 후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57)	26.0	74.0
	여자	(868)	15.3	84.7
연령	20-29세	(258)	15.9	84.1
	30-39세	(559)	20.4	79.6
	40-49세	(452)	23.2	76.8
	50-59세	(144)	13.2	86.8
	60세이상	(14)	.0	100.0
교육경력	0-5년	(341)	20.5	79.5
	6-10년	(194)	19.6	80.4
	11-20년	(604)	21.0	79.0
	20-30년	(218)	17.0	83.0
	30년이상	(69)	10.1	89.9
근무학교	초등학교	(559)	16.6	83.4
	중학교	(352)	19.3	80.7
	실업계고교	(172)	21.5	78.5
	인문고교	(326)	23.9	76.1
	특수목적고	(20)	15.0	85.0
	특수학교	(51)	19.6	80.4
설립유형	국공립	(1275)	19.6	80.4
	종교계사립	(85)	17.6	82.4
	비종교계사립	(119)	20.2	79.8
담당과목	국어교과	(141)	26.2	73.8
	사회및도덕교과	(181)	23.8	76.2
	과학교과	(74)	20.3	79.7
	외국어교과	(123)	22.0	78.0
	수학교과	(109)	16.5	83.5
	실과및실업교과	(126)	17.5	82.5
	예체능및교련교과	(85)	20.0	80.0
	기타	(31)	22.6	77.4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2)	19.5	80.5
	중소도시	(484)	18.8	81.2
	농어촌,도서지역	(263)	20.5	79.5
학교지역	서울	(19)	5.3	94.7
	부산	(358)	19.0	81.0
	대구	(55)	10.9	89.1
	인천	(108)	20.4	79.6
	광주	(52)	17.3	82.7
	대전	(76)	28.9	71.1
	울산	(68)	25.0	75.0
	경기	(36)	11.1	88.9
	강원	(45)	22.2	77.8
	충북	(101)	17.8	82.2
	충남	(118)	17.8	82.2
	전남	(68)	16.2	83.8
	전북	(105)	22.9	77.1
	경북	(91)	19.8	80.2
경남	(111)	20.7	79.3	
제주	(70)	21.4	78.6	

문3-9 선생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나 각종 교직원회의(교무회의, 교과협의회, 부장교사회의 등)에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편입니까?

		사례수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성별	남자	(559)	5.7	32.4	38.8	18.6	4.5
	여자	(871)	2.2	16.1	33.5	34.9	13.3
연령	20-29세	(259)	.4	4.6	32.4	44.8	17.8
	30-39세	(560)	4.1	18.0	37.3	29.5	11.1
	40-49세	(456)	4.6	31.1	35.1	22.6	6.6
	50-59세	(143)	4.2	43.4	35.7	14.0	2.8
	60세이상	(14)	.0	35.7	35.7	28.6	.0
교육경력	0-5년	(343)	1.7	8.2	32.4	39.9	17.8
	6-10년	(194)	4.1	17.5	37.1	29.9	11.3
	11-20년	(607)	3.6	24.9	36.2	27.2	8.1
	20-30년	(219)	5.9	35.6	38.4	16.9	3.2
	30년이상	(68)	2.9	45.6	32.4	14.7	4.4
근무학교	초등학교	(559)	4.7	19.0	32.6	32.4	11.4
	중학교	(355)	2.3	28.2	37.7	23.9	7.9
	실업계고교	(172)	3.5	22.7	41.3	23.8	8.7
	인문고교	(328)	2.7	23.5	36.9	28.0	8.8
	특수목적고	(20)	10.0	10.0	30.0	35.0	15.0
	특수학교	(51)	3.9	15.7	35.3	29.4	15.7
설립유형	국공립	(1277)	3.8	23.0	35.1	28.2	9.9
	종교계사립	(87)	.0	16.1	36.8	34.5	12.6
	비종교계사립	(120)	4.2	20.0	41.7	26.7	7.5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5.6	25.4	38.0	24.6	6.3
	사회및도덕교과	(183)	4.9	30.6	34.4	23.0	7.1
	과학교과	(74)	.0	20.3	39.2	33.8	6.8
	외국어교과	(123)	2.4	17.1	41.5	30.9	8.1
	수학교과	(109)	.9	16.5	40.4	30.3	11.9
	실과및실업교과	(127)	.0	25.2	40.9	22.8	11.0
	예체능및교련교과	(86)	5.8	33.7	30.2	26.7	3.5
	기타	(31)	.0	19.4	22.6	32.3	25.8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4)	3.5	19.5	36.4	29.3	11.3
	중소도시	(483)	3.1	23.4	36.4	29.4	7.7
	농어촌,도서지역	(267)	4.5	28.1	33.0	24.3	10.1
학교지역	서울	(19)	5.3	36.8	36.8	15.8	5.3
	부산	(358)	3.6	20.9	36.0	29.1	10.3
	대구	(55)	1.8	12.7	36.4	38.2	10.9
	인천	(108)	6.5	16.7	28.7	36.1	12.0
	광주	(52)	.0	5.8	48.1	32.7	13.5
	대전	(76)	2.6	23.7	38.2	25.0	10.5
	울산	(69)	2.9	23.2	40.6	15.9	17.4
	경기	(36)	5.6	16.7	33.3	30.6	13.9
	강원	(45)	8.9	20.0	44.4	22.2	4.4
	충북	(102)	2.0	20.6	29.4	33.3	14.7
	충남	(119)	5.9	26.1	37.8	24.4	5.9
	전남	(68)	1.5	23.5	36.8	32.4	5.9
	전북	(105)	1.9	39.0	30.5	19.0	9.5
	경북	(91)	1.1	16.5	33.0	36.3	13.2
경남	(112)	3.6	25.0	38.4	27.7	5.4	
제주	(70)	5.7	30.0	37.1	24.3	2.9	

문3-10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학생회, 축제, 동아리 활동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후원하시는 편입니까?

		사례수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성별	남자	(559)	7.0	41.5	39.0	11.3	1.3
	여자	(871)	4.4	27.2	46.3	18.8	3.3
연령	20-29세	(259)	3.5	26.6	45.6	21.2	3.1
	30-39세	(559)	5.5	29.3	46.0	16.1	3.0
	40-49세	(455)	6.4	36.0	41.8	13.6	2.2
	50-59세	(145)	4.1	47.6	35.9	11.7	.7
	60세이상	(14)	14.3	35.7	28.6	21.4	.0
교육경력	0-5년	(342)	4.4	30.7	43.6	17.5	3.8
	6-10년	(194)	6.2	30.9	42.8	17.5	2.6
	11-20년	(607)	6.1	29.5	45.5	16.1	2.8
	20-30년	(219)	4.1	42.0	41.1	12.3	.5
	30년이상	(69)	5.8	50.7	34.8	8.7	.0
근무학교	초등학교	(559)	4.3	30.2	42.4	19.5	3.6
	중학교	(355)	5.6	33.0	47.6	12.4	1.4
	실업계고교	(172)	5.8	34.9	45.3	12.2	1.7
	인문고교	(328)	5.5	36.9	41.2	13.4	3.0
	특수목적고	(20)	10.0	40.0	35.0	10.0	5.0
	특수학교	(51)	7.8	35.3	39.2	17.6	.0
설립유형	국공립	(1277)	5.4	32.2	43.9	15.8	2.7
	종교계사립	(87)	1.1	36.8	43.7	13.8	4.6
	비종교계사립	(120)	6.7	40.8	38.3	13.3	.8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5.6	33.8	46.5	13.4	.7
	사회및도덕교과	(183)	7.7	39.3	43.7	6.6	2.7
	과학교과	(74)	2.7	27.0	51.4	17.6	1.4
	외국어교과	(123)	4.9	34.1	42.3	16.3	2.4
	수학교과	(109)	3.7	29.4	51.4	12.8	2.8
	실과및실업교과	(127)	1.6	30.7	47.2	17.3	3.1
	예체능및교련교과 기타	(86) (31)	14.0 9.7	50.0 35.5	30.2 25.8	5.8 25.8	.0 3.2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4)	4.9	30.1	45.4	16.2	3.4
	중소도시	(483)	4.8	36.0	40.6	16.6	2.1
	농어촌,도서지역	(267)	7.1	36.3	43.4	11.6	1.5
학교지역	서울	(19)	.0	47.4	36.8	10.5	5.3
	부산	(359)	4.7	30.1	46.2	15.6	3.3
	대구	(55)	1.8	27.3	52.7	16.4	1.8
	인천	(107)	6.5	19.6	46.7	21.5	5.6
	광주	(52)	.0	32.7	50.0	11.5	5.8
	대전	(76)	5.3	42.1	34.2	18.4	.0
	울산	(69)	10.1	29.0	43.5	13.0	4.3
	경기	(36)	5.6	33.3	44.4	13.9	2.8
	강원	(45)	6.7	33.3	46.7	13.3	.0
	충북	(102)	2.9	31.4	46.1	17.6	2.0
	충남	(119)	9.2	34.5	41.2	13.4	1.7
	전남	(68)	2.9	39.7	50.0	5.9	1.5
	전북	(105)	6.7	41.0	37.1	13.3	1.9
	경북	(91)	3.3	28.6	36.3	28.6	3.3
경남	(112)	5.4	41.1	40.2	11.6	1.8	
제주	(70)	7.1	41.4	38.6	12.9	.0	

문3-11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편입니까?

		사례수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성별	남자	(559)	3.6	25.4	50.1	18.1	2.9
	여자	(872)	1.6	12.5	54.0	26.0	5.8
연령	20-29세	(259)	.4	9.3	54.1	28.2	8.1
	30-39세	(559)	2.5	15.2	53.1	24.7	4.5
	40-49세	(456)	2.9	23.0	50.9	19.3	3.9
	50-59세	(145)	3.4	24.1	53.1	17.9	1.4
	60세이상	(14)	7.1	21.4	42.9	21.4	7.1
교육경력	0-5년	(343)	.9	11.4	53.9	26.8	7.0
	6-10년	(194)	3.1	21.1	42.8	27.3	5.7
	11-20년	(606)	2.1	16.5	55.8	21.1	4.5
	20-30년	(220)	4.5	24.5	48.6	20.9	1.4
	30년이상	(69)	2.9	26.1	58.0	10.1	2.9
근무학교	초등학교	(561)	2.7	15.9	51.7	23.9	5.9
	중학교	(355)	1.7	22.3	52.4	20.0	3.7
	실업계고교	(171)	4.1	14.6	54.4	22.2	4.7
	인문고교	(328)	1.5	16.8	54.6	23.8	3.4
	특수목적고	(20)	.0	15.0	35.0	45.0	5.0
	특수학교	(51)	3.9	19.6	43.1	25.5	7.8
설립유형	국공립	(1278)	2.4	18.1	52.0	22.5	5.1
	종교계사립	(87)	1.1	12.6	52.9	29.9	3.4
	비종교계사립	(120)	2.5	15.8	55.8	24.2	1.7
담당과목	국어교과	(142)	2.8	17.6	58.5	19.0	2.1
	사회및도덕교과	(182)	2.7	19.2	62.1	12.1	3.8
	과학교과	(74)	.0	16.2	50.0	31.1	2.7
	외국어교과	(123)	2.4	17.9	49.6	26.0	4.1
	수학교과	(109)	1.8	13.8	55.0	25.7	3.7
	실과및실업교과	(127)	1.6	17.3	48.0	26.0	7.1
	예체능및교련교과	(86)	4.7	27.9	46.5	19.8	1.2
기타	(31)	.0	16.1	48.4	29.0	6.5	
근무지역	특별시,광역시	(735)	2.2	15.4	53.7	23.7	5.0
	중소도시	(483)	1.0	19.9	51.6	22.4	5.2
	농어촌,도서지역	(267)	4.9	19.5	49.8	22.8	3.0
학교지역	서울	(19)	5.3	10.5	52.6	26.3	5.3
	부산	(359)	1.7	15.9	54.6	23.7	4.2
	대구	(55)	3.6	3.6	56.4	30.9	5.5
	인천	(108)	4.6	17.6	41.7	28.7	7.4
	광주	(52)	1.9	13.5	59.6	17.3	7.7
	대전	(76)	2.6	17.1	61.8	15.8	2.6
	울산	(69)	.0	18.8	50.7	21.7	8.7
	경기	(36)	2.8	19.4	58.3	13.9	5.6
	강원	(45)	2.2	28.9	48.9	20.0	.0
	충북	(102)	1.0	17.6	47.1	29.4	4.9
	충남	(119)	5.9	16.8	52.9	19.3	5.0
	전남	(67)	.0	20.9	55.2	22.4	1.5
	전북	(105)	3.8	23.8	46.7	21.0	4.8
	경북	(92)	2.2	9.8	45.7	35.9	6.5
	경남	(112)	1.8	20.5	52.7	20.5	4.5
제주	(70)	.0	27.1	58.6	12.9	1.4	

7. 관찰조사 결과 분석표

관찰1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6	14.3	14.6	14.6
	그렇다	20	47.6	48.8	63.4
	매우그렇다	13	31.0	31.7	95.1
	모르겠다	2	4.8	4.9	100.0
	합계	41	97.6	100.0	
결측	0	1	2.4		
합계		42	100.0		

관찰2 학생들과 인격적이고 일상적인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는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8	19.0	19.0	19.0
	그렇다	20	47.6	47.6	66.7
	매우그렇다	12	28.6	28.6	95.2
	모르겠다	2	4.8	4.8	100.0
	합계	42	100.0	100.0	

관찰3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인권침해가 일어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7	40.5	40.5	40.5
	그렇다	19	45.2	45.2	85.7
	매우그렇다	5	11.9	11.9	97.6
	모르겠다	1	2.4	2.4	100.0
	합계	42	100.0	100.0	

관찰4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잘못을 하면 벌을 심하게 주는 편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24	57.1	57.1	57.1
	그렇다	10	23.8	23.8	81.0
	매우그렇다	2	4.8	4.8	85.7
	모르겠다	6	14.3	14.3	100.0
	합계	42	100.0	100.0	

관찰5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무시하는 편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27	64.3	64.3	64.3
	그렇다	11	26.2	26.2	90.5
	매우그렇다	1	2.4	2.4	92.9
	모르겠다	3	7.1	7.1	100.0
	합계	42	100.0	100.0	

관찰6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시하는 편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21	50.0	50.0	50.0
	그렇다	13	31.0	31.0	81.0
	매우그렇다	3	7.1	7.1	88.1
	모르겠다	5	11.9	11.9	100.0
	합계	42	100.0	100.0	

관찰7 학생들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 체벌을 주로 사용한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25	59.5	59.5	59.5
	그렇다	10	23.8	23.8	83.3
	매우그렇다	3	7.1	7.1	90.5
	모르겠다	4	9.5	9.5	100.0
	합계	42	100.0	100.0	

관찰8 학생들이 자치권 보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8	19.0	19.0	19.0
	그렇다	17	40.5	40.5	59.5
	매우그렇다	8	19.0	19.0	78.6
	모르겠다	9	21.4	21.4	100.0
	합계	42	100.0	100.0	

관찰9 학생들의 자치와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29	69.0	69.0	69.0
	그렇다	5	11.9	11.9	81.0
	매우그렇다	4	9.5	9.5	90.5
	모르겠다	4	9.5	9.5	100.0
	합계	42	100.0	100.0	

관찰10 인권교육을 수업시간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편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1	26.2	26.2	26.2
	그렇다	17	40.5	40.5	66.7
	매우그렇다	1	2.4	2.4	69.0
	모르겠다	13	31.0	31.0	100.0
	합계	42	100.0	100.0	

관찰11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며, 교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3	31.0	31.0	31.0
	그렇다	16	38.1	38.1	69.0
	매우그렇다	3	7.1	7.1	76.2
	모르겠다	10	23.8	23.8	100.0
	합계	42	100.0	100.0	

관찰12 동료들과 더불어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는 편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0	23.8	23.8	23.8
	그렇다	24	57.1	57.1	81.0
	매우그렇다	2	4.8	4.8	85.7
	모르겠다	6	14.3	14.3	100.0
	합계	42	100.0	100.0	

관찰13 본인이나 주위의 교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편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10	23.8	23.8	23.8
	그렇다	25	59.5	59.5	83.3
	매우그렇다	4	9.5	9.5	92.9
	모르겠다	3	7.1	7.1	100.0
	합계	42	100.0	100.0	

관찰14 인권관련 교사단체나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편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그렇지않다	25	59.5	59.5	59.5
	그렇다	9	21.4	21.4	81.0
	모르겠다	8	19.0	19.0	100.0
	합계	42	100.0	100.0	

8. 면접조사 자료

* 문항수 : 4

* 사례수 : 34

질문1. '교사의 인권' 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례1.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교권'이라는 단어가 잠시 생각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교사의 인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관계, 또는 동료교사, 관리직과의 관계, 아니면 그 외 교육과 관계된 모든 상황에서의 단지 '인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사례2. 열악한 근무환경(겨울엔 가스난로, 등...), 관리자의 언어 폭력, 수업간섭

사례3. 전교조 활동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교무실의 환경, 권위적인 교장, 교감,부장교사, 평교사의 수직적인 관계 등이 생각납니다.

사례4. 교실 붕괴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권리

사례5. 교사의 권위, 존경

사례6. 전문직의 종사자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회 제반의 여건이 조성되는 것.

사례7. 교사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 교사의 교육권을 교장이 침해하는 것

사례8. 일반인으로서의 인권과 교사로서의 교권이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부문에서 일반인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에게 기본적인 교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사례9. '침해에 노출된 인권', 교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생각해야겠다. 교직으로 인하여 인권문제를 거론한다면, 대관리자적 인권, 대학부모적 인권, 대학생적 인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주로 업무나 수업을 행함에 있어서 주체적인 수행이 힘들 경우, 교사로서 학부모형이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의 측면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관적 평가로 인한 무시, 매도 등의 경우,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사례10. 수업권, 해당 교과 시간은 그 교사만의 것이다.

- 사례11. ‘교사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례12. 전교조의 합법화 투쟁과 그 족적
- 사례13. 학생 체벌 문제와 관련된 교사 폭행 문제
- 사례14.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사의 이미지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훼손되었고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 사례15. 앞뒤정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건이었지만, 체벌관계로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112’로 신고를 당한 교사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학생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끌려나가는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 사례16. 교사의 소신 있는 학생지도에 관리자들이 처신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 교사의 설자리를 없게 하는 많은 경우
- 사례17. 교권으로서 교사의 직업적 특성과 인격적 특성이 생각납니다. 직업적 특성이란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한 자율권과 책무성을 의미하며, 인격적 특성은 학생들과 서로 존중하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사례18. 교직 생활 7년을 넘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교사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항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있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같이 생각해야 하지만, 워낙 학생들의 인권이 더 무시당한 상태고 그 학생 인권 유린의 일선에 교사가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교사 인권을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스스로 세우는 것” “학교장의 권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등등...
- 사례19.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권, 교과 수업에 대한 권리, 근로권 등
- 사례20. 담임이 모르게 학부모를 특정 행사에 동원하였는데, 그 학부모로부터 무슨 일이나 또는 꼭 참석해야 하는 일이나는 전화 문의를 받았을 때 자존심이 상함.
- 사례21. 관리자들의 교사들에 대한 인간적이고 평등한 대우 결여. 교육관청의 비합리적인 정책을 교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실행하는 경우도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사례22. 교사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는가? 우리 사회는 교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국가와 사회는 교사에게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가?
- 사례23. 관리직이나 학부모, 교육청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교권을 침해받지 않는 권리
- 사례24. 별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사례25. 교육 환경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떠오르네요. 교사는 학교가 근무지인데 일반 회사의 환경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낙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구조가 평등한 교사 지위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례26. 일반 기업체보다 교사의 인권은 어느 정도 존중되어지고 있다고 본다.

사례27. 질문이 모호하다. 사실 교사들이 스스로 인권 침해를 얘기하거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신규 교사,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침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사례28. 주눅들지 않고 눈치 보지 않으며, 소신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것.

사례29. 교사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떠오르지 않고, 인권하면 인간으로서의 권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것, 그래서 불쾌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사례30. 자율적으로 학습을 지도할 권리(교수권)

사례31. 부조리한 교육 행정

사례32.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소신대로 가르칠 권리

사례33. 교사는 학생의 인권에 대체로 무신경한 사람들이라는 생각

언론과 사회로부터 당하는 공격적 대응 태도-[학교폭력]이라는 용어(그렇다면 법원 사무원이 싸우면 사법폭력, 기자끼리 싸우면 언론폭력, 국회의사당은 정치폭력인가?), 검찰청의[학교폭력신고 센터]설치, 교무실 문에 붙은 [학교부조리신고센터] 표지 등등,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모독(이 부분은 대부분 교사집단에 대한 학부모의 묵은 감정(?)과, 변화한 사회분위기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한 교사들의 대응방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사례34. 4개월의 아이를 둔 나로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아이의 양육이다. 친정이나 시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누군가에 맡겨야 한다. 탁아를 전적으로 마음놓고 맡길 곳이 없어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나와 아기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2. 선생님이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사례1. 학생들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로서 체벌하는 교사에게 맞대응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다. 교사에게도 인권이 있나 싶다. 또한 마스크에서 촌지 받는 교사의 보도를 볼 때도 유사하게 참담한 심정이었다.
- 사례2. 지금부터 15여 년 전 여교사가 청바지 입는 것을 아주 싫어하던 모 교무부장이 직 원조례에서 여교사들이 청바지를 입고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이 토요일이라 몇 교사들이 등산을 가기로 되어 있어서 청바지를 입고 출근을 했다. 그러자 그 교무부장이 아침 직원모임에서,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도 오늘도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몇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왔다고 말하면서 화를 냈다. 그리고 자기는 교무부장 자리를 사퇴하겠다고 약 1주일간을 급사 아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그 학교에서 교육운동을 하는 어떤 여교사에게 테이프 등의 우편물이 배달되자 먼저 뜯어서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수업을 마치고 온 그 여교사가 왜 남의 우편물을 마음대로 뜯어보느냐고 하자, 교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떡살을 잡고 난리를 피운 적도 있었다.
- 사례3. 학생의 119신고로 교사가 경찰서로 연행된 일. 학부모가 교실로 난입하여 교사를 구타한일. 교사가 학생들을 책임과 권리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
- 사례4. 교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교장의 기분에 따라 결재를 하지 않는 경우.
- 사례5. 학부모들이 담임교사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을 찾아갈 때 교사로서의 권위가 실추됨을 느꼈음. 학부모와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음.
- 사례6. 동료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후에 학부모로부터 끊임없는 보상 책임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었음. 물론 정당한 피해 보상을 했음에도 몇 년간에 걸친 부당한 요구에 전 교사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다고 함. 잘못된 체벌이 있어서는 안되겠으나, 학생들의 바른 선도를 위한 목적에 물질이나 다른 감정이 대입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그리고 이런 일을 겪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하는 생각도 들었음.
- 사례7. 교사의 평가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평가권을 제지시켰다. 그것도 학교장의 힘을 빌어서...
- 사례8. 얼마 전, 교사집단에서 표결에 의하여 시험을 치지 않기로 한 것을 학부형이 학교로 찾아와서 강제로 시험을 치르게 하고, 교실과 교무실에 난동을 피웠다는 모학교의 이야기를 들었다. 학부형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으므로 여러 대응 방식이 있겠지만, 폭력적으로 무작정 들이닥쳐서는 행패부리는 것에 대해, 같이 대응해서 행패를 부릴 수도 없는 입장에서 부당하게 교사로서의 인권이 유린당한

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례9. 수업시간, 학부모, 교장 교감들의 무단 입실로 인한 수업방해, 폭언, 폭행의 실례를 들은 적이 있다. 수업은 해당교사의 교육권한이다. 장학지도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사례10. 교사 초임 발령 후 신규교사 시절, 연구 수업을 할 때, 그 당시는 평가회 때 의례히 수업자는 울어야만 한다는 게 통과의례처럼 되어 있었다. 함께 온 사회과 교사가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건축 양식 부분을 연구 수업을 한 그 날, 교장실에서 평가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그 교사가 수업한 부분과 관계된 사진 자료를 몇 권 쌓아 놓고는 “○선생 그 아까 수업 중에 그게 뭐요. 뭐 그런 조그만 사진을 들고, 여기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큰 사진들이 많은데”, 라면서 마구 야단을 치셨고, 그 날 결국 그 교사는 평가회를 마치고 여교사 화장실에서 평평 울었다. 그 후로 결혼하고 나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 교사는 교직을 그만 두었다고 한다.

사례11. 학부모가 담임인 A선생님을 찾아와 자녀에 대한 선생님의 지도 방법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사례12. 관리자에 의한 교사의 인권 침해의 경우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얼버무려 버리는 경우는 끝까지 책임소재를 묻거나 공개사과를 요구함

사례13. 수업을 하던 중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어보았다. 시끄럽던 교실이 일순간 조용해지더니 아이들이 눈초리가 이상했다. 매 수업시간 마다 순시를 하던 교감선생님이 머리를 유리창으로 들여 밀고는 떠드는 아이를 보고 눈치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교감선생님 눈치만 보고 있었다.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자존심이 너무나 상했고, 서러웠다

사례14. 학부모들은 실력 있는 교사를 원한다. 더구나 교사평가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들 역시 노골적으로 실력 있는 교사를 원한다. 실력 있는 교사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사례15.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을 찾아와 교무실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담임선생님(여선생님)께서 그 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례16. 전에 근무하던 학교의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들었을 때 관리자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 사례17.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잘못을 질책 당했을 때 정말 자존심이 상했다.
- 사례18. 본인이 99년 면접을 보기 위해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 왔을 때 관리직에 계신 선생님께서 당부한 게 생각한다. 아무래도 사립이다 보니 이사장님께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사장은 교원단체에 대해 몹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혹시 그런 질문을 하거든 알아서 잘 대답을 하라고 당부를 하셨다. 그리고 나는 무사히 면접을 통과했다. 또 한가지는 기간제로 수업을 할 때의 일이다. 오전 한번, 오후 한번 관리직의 선생님들이 학교를 순시하는 과정에 겪은 일로서 본인의 경험을 그저 창 밖에서 수업상황을 지켜보는 눈길을 몇 번 마주쳤는데, 다른 기간제 여선생님의 경우 그 관리직 선생님이 수업 중 불쑥 교실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뒷줄에 탄 짓을 하고 있는 학생을 혼내고 몰래 보던 책을 압수하더라는 것이다.
- 사례19. 학부모가 학생의 말만 듣고 학교에 항의전화를 하면 정말 기분이 상한다.
- 사례20. 학교마다 교칙에 의한 처벌이 부당한 경우입니다.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규정은 둘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합의 없이 처벌이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교칙의 문제를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 학생들과 합의 하에 결정되고 시행되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례21.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학생의 부모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지도한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하면 폭행을 했을 때- '교육적인 지도'라는 공통의 생각이 부족하였거나, 올바른 인성교육의 한계가 느껴졌으며 부모역할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 사례22.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였다. 우리사회의 교사에 대한 요구수준에 비해 대우 수준은 높지 않다. 인권침해를 해도 잘 모른다.
- 사례23. 6학년 아이들끼리 싸웠는데 그 중 한 아이 부모님이 찾아와서 교사에게 사대질하며 따졌다고 한다. 무방비상태에서 당한 교사는 이틀씩이나 결근하는 후유증을 겪었다고 한다.
- 사례24. 7차 교육과정으로 담당부서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의견 교환을 하고 계셨는데, 각자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급기야 교감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 쪽으로 책을 세차례에 걸쳐서 던지셨는데, 말로써 서로의 감정이 상했어도 그런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는 끊임없이 자신의 교과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학교에서 퇴근시간 가까이나 퇴근 시간이후에 일을 하고 있으면 교감 선생님께서는 TV를 켜 놓으시고 시청을 하십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례26. 가끔씩 교장의 행태를 듣기고 한다. 신규교사나 임시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인사를 하라는 일. 체험활동 기간 중 밤에 몇몇이 모인 술좌석에서 학년 부장들에 대한 욕을 한 것을 지나치다가 들은 교사가 사모님에게 연락하여 학년 전체 교사 앞에서 교장이 공개 사과를 하게 한 적이 있다. 지금은 퇴직했지만, 참 한심한 작태라 할 수 있다.

사례27. 우선 지금의 학교에선 인권이라는 용어조차도 생소하다고 봐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생활지도에서 구체적인 접근이 이뤄진 적이 있는가. 학생의 체벌이나 보충, 자율학습, 학생자치 실종에서 우리는 매일 창백한 인권을 본다.

사례28. 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학부모가 망원경으로 학교를 감시하고 있다. 수시로 학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대로 수업을 하라고 한 적이 있었다. 교장은 교사들의 인권보다 학부모의 전화를 더 중시했고, 이 사실을 안 학부모는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빈번해졌다.

사례29. 부장교사가 평교사를 수업 도중에 폭행을 하였다. 그래서 평교사회를 조직하여 사과발언을 받았다.

사례30. 학생의 지도를 핑계로(?) 여학생을 성추행하여 여교사가 관리자와 해당교사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행태 정도. 새학년이 시작되면 일부 교사들이 학급의 질서와 편리한 학급경영을 목적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가는 교사들.

사례31. 교장선생님이 머리 염색했다고 하루종일 수업 참관했다.

사례32. 선생님이 학급운영에 관하여 인터넷에 올려 피해를 입은 사례

사례33. 나는 특정 선생님이 특정 개인에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본다. 그것은 아무래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교사는 학생을 볼모(극단적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로 잡고 있고 따라서 부모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참다가 참다가 터뜨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많이 보았다. 예컨대 잘못된 학생의 부모님을 호출하여 놓고는 학생을 죄인시하면서 면전에서 비난하고 가정교육을 탓하고 부모는 죽을죄를 지은 양 머리를 조아리고, 어휴!

다만 우리 교사들에 대한 사회일반인의 인식도는 표면적 존경도와 매우 달리 보잘 것 없거나 멀시에 가까운 인식임을 느낄 때가 많다. 이들의 의식 근처에는 [선생 주제에]라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다고 본다.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너는 선생이 되어서 역시 쩌쩌하다(좁스럽다는 의미)]고 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맞다 선생이라서 나는 쩌쩌하다. 그런데 알아두거라. 선생은 쩌쩌해야 한다. 그

래야 아이들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교육할 수 있다. 선생이 너희들처럼 통이 크면 학부모 등치는 도둑선생밖에 더 되겠느냐. 우리는 짜짜해서 아이들 표정 하나에도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 아이들이 바로 너희들의 자식이다. 친구들 다시는 나한테 그런 말 안 한다.

사례34. 십 몇 년 전쯤 젊고 열의가 있는 초임 교사의 얘기다. 그 당시는 군인 정치인들이 집권하던 시절일 것이다.- 영화 '친구'에서 교실광경을 상상하는 것이 빠르겠다-

어느 날 교무실이 소란스러워 보았더니 그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화를 내고있어 지켜보니 붕대를 감고있는 다리에 회초리로 툭툭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당한 핑계를 대고 학생을 보내고 나서, 그 교사에게 '아픈 다리를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하고 조언을 했더니 엄살하는 것이라 괜찮다는 답변으로 설득하느라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3. 다음의 예와 같은 일이 있을 경우 선생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교사평가사이트」 개설 운영에 관한 대응

A전산정보 회사가 교사의 강의를 평가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이 사이트에서는 해당 교사들의 사전인지 및 동의 없이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하여 수업준비도, 수업방식, 인성교육 및 전문성을 체크하여 평가한 결과를 올리도록 되어있다.

사례1. 전산정보회사가 특정 학교 교사들에 대한 강의평가를 임의로 실시하는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문제이다. 학교측 또는 해당 교사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내용도 없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동료교사들과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일단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 개연성

이 부족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사례2. 일단 먼저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트 폐쇄운동이 일어난다면 참여할 것 같다. 동의를 한 교사들의 것이 운영되는 것은 괜찮을 듯.

사례3. 학생들에게 ‘교사평가사이트’에 대한 의견을 물은 후, 아동들이 일방적으로 교사에 대해 평가하다보면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그 후, 아동들과 교사의 면접 또는 질문지 등을 통하여 교사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피드백하도록 한다.

사례4. 교사의 동의도 없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매우 기분이 나쁠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체크당하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교사의 동의도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례5. 강의평가는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교사의 권위와 자격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사동료끼리, 학부모, 학생들에게 각 집단에 맞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내용을 점검하여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자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활용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감할만한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아 황당한 마음이 될 것이다.

사례6 매우 기분 나빴을 것이고 개인 기업이 자기 기준의 잣대로 교사를 평가하고, 교사의 정보를 빼가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고 본다. A 회사에 항의를 할 것이고 소송을 걸 것이다.

사례7. 전산정보회사에 일단 항의를 할 것이고, 전체 동료 교사들의 의견을 규합하여 대처할 것이다.

사례8. 어처구니가 없다. 학생들이 어떻게 교사의 수업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사전동의도 없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다니.. 내가 만약 이런 평가를 당했다면, 정말.. 그러나 딱히 대처방법이 없어 혼자서만 속을 끓이고 있지 않을까?

사례9. 이 사건은 교권침해라고 생각되며,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교원단체 차원이나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10. 직접 당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맞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냥 참고 당해야 하나? 교사는 그냥 약하고 힘없는 존재인가 보다.

사례11. 웹상에서 교사의 강의가 실명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교사가 동의를 했다면 가능하겠지. 일단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인권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반성하도록 한다. ‘역지사지’를 생각해 한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관계당국에 위법성을 알리고 부당함을 호소하여 폐쇄되도록 하고 그 사이트에 대해 공개사과를 받는다.

사례12. 사전 협의 없이 평가당함에 교사의 인권적인 면에서 무시되었다는 생각이다. ‘교사 평가제’에 대하여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선진국과 같이 교사의 처우와 인권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이다.

사례13. 실명거론에 대해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 그 사이트에 방문하여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겠음

사례14. 사전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몹시 기분이 나쁠 것이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삶에 회의가 들지 않을까 싶다. 교사라 하면 전문적 교육을 받고 나름의 평가를 통과하고 국가가 부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러한 평가는 이전에 받았던 모든 자격을 쓰레기로 취급하는 행위인 것 같다. 물론 현재 인터넷에 자기의 수업내용을 알차게 올려놓고 정보를 공유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동의 하에 자신의 수업을 평가받고 싶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평가기준도 의심스럽고 평가하는 단체로 믿기 힘들고 평가하려는 의도도 의심스럽지만, 평가결과는 너무도 큰 과장을 갖고 올 것이다. 대중매체의 힘은 너무도 엄청나지만 대부분은 믿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례15.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직에 임하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은 예전의 신규발령 때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인정하는 바이며 분발하려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은 많이 당황할 것 같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사례16. 사전에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일처리 방식에 항의를 하는 뜻에서, 교사들과 연대하여 다시 의논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을 사이트에 올려 학생들에게는 이런 일방적 진행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들에 대해 토론한 후, 합의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들을 제시해 볼 것입니다.

사례17. 일단 나도 모르게 내 강의가 평가되고 있는 것에 정말 분개했을 것이다. 근데 그 분개가 내 강의를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분개인지 아님 강의를 평가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본인인 나의 사전 동의 없이 한 것에 대한 분개인지 정확히 내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후자 쪽에 관점을 두면 교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먼저 협의하여 전교조라든지 인권단체에 연락을 해서 연대대처를 하겠습니다.

사례18. 아주 황당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다. 특별히 대처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

이것이 공식적으로 여론 형성에 이용된다면 학생을 인간적, 교육적 상대로 보기보다 가치 없는 무인격적 존재로 대할 것 같다.

사례19. 우선 '교사 평가사이트' 개설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 현재 교사의 근무평정이라는 것이 교사 본연의 수업 상황이기보다는 업무 위주의 때론 관리자의 편견으로 이루어짐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백년대계의 교육의 성과가 어찌 그 당시 아직도 판단력이 성숙되지 않은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소신보다는 학생들의 인기에 안주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 성직이기도 한 교직은 교사의 부단한 연수로 질을 향상시키되 외부의 드러난 평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례20. 교사의 능력을 의심하는 처사고 교사를 믿지 않고 자질을 검사하는 것은 자신을 누구에게 검사받고, 검증받는 일이다.

사례21. 내가 만약 이 경우를 당했다면, 나의 허가 없이 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는 그 방법을 모른다. 그리고 내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질의 고하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나의 수업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례22.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결과를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 할 것입니다.

사례23. 글썄요. 어렵군요. 사전에 동의 없는 일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조사기관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군요.

사례24. 나는 늘, 언제든지 또 누구라도 나의 수업을 보고 싶다고 할 때, 선선히 그리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이상 공간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나 이런 학습 활동 중에 나온 자연스런 평가가 아닌 기획된 평가라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잘못을 지적 하겠다.

사례25. 사전 인지 및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므로 A 전산정보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강의 평가 사이트 운영을 중지시키고, 그에 대한 사과문을 사이트에 올리도록 요구할 것임. 만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모르므로 주위 사람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이다.

사례26. A사 불법성을 부각시켜 조치하도록 함.

사례27. 실명 거론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익명으로 교체요구. 평가사이트의 목적과 평가 결과의 이용을 사전에 해당 학교 및 관련자에게 사전 통보 동의후 개설 이

용토록 요구.

사례28. 일단은 전산정보회사에 항의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면) 고발하겠다.

사례29. 교사의 고유권한(인권) 침해로 고소, 전교조에 알림.

사례30. 일단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드리고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그 분에 대화

사례31. 공인이지만, 개인의 허락 없이 평가당한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며 정정히 단체나 교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에 건의하겠다.

사례32. 인권 침해에 분노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말았을 것 같음.

사례33. 솔직히 시인하되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을 약속하고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다.

사례34. 매우 불쾌할 것 같으며, 동료교사들과 토론한 후 법적으로 교사평가 사이트 개설이 문제없는지를 찾아 볼 것 같다.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더라도 해당 회사에 항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 같다.

4. 선생님은 우리나라 교사의 인권의식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1. 교사로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만한 직접적인 계기가 거의 없었다. 평소 별 생각이 없었으므로 지금 생각해 보니 나의 인권의식은 낮은 수준인 것 같다. '교사의 인권', 아직 잘 감이 오지 않는걸 보니, 심각한 수준이네요.

사례2. 저는 그다지 높은 편은 못된다고 봅니다. 실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생각해 봤거나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 교사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3. 최근에 학생의 인권이 논의되면서 교사들이 인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 지금까지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로써 비춰져 왔고, 교사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거의 전무한 것 같다.

사례4. 인권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인 것 같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다. 인권의식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 개인적으로 본인의 경우 의식은 있으되,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거나 혹은 항의할 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사립학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의식이 있으되 현실에

순응해야하는 설움은 때로 더욱 크다.

사례5. 과거에 비해 교사의 위신은 하락하였으나, 교사의 인권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사례6. 지금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갈수록 교사에게 사명감과 보람을 빼앗아가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사례7. 인권에 대해 별 생각이 없으며 부당 대우를 받지 않으면 다행이고, 받으면 혼자의 힘으로 화만 내고 있다. 내 일이 아님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나도 그렇다.

사례8. 우리나라 교사들의 인권의식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된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본인 또한 교사의 인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나 개인의 힘으론 인권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례9. 교사의 인권의식 수준은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됨. 물론 교사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이 아직은 낮은 편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사례10. 인권수준이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아마도 나의 수준은 거의 無일 것이다.

사례11. 의식수준만으로 보면, 스스로들 인권에 대해 수호의지가 있고, 처한 입장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식수준은 높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극적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적극적 의미에서는 아직 인권수준이 미흡하다고 본다. 즉, 인권 수호를 위한 주체적인 활동이 없고,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의식이 집단화되지 못하는 교직사회의 성격 탓인 것도 같고, 교사들 자체가 어릴 때부터 정규교육에 의해 온순하게 길러진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 자신 또한 내 인권이 침해당하게 된다면, 땅을 치며 한탄만 할지언정, 드러내놓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의식의 행동화'는 어렵다.

사례12.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쉽게 넘어가고 또 당하고만 사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본다. 나 역시 같은 무리가 아닐까?

사례13. 교사 개인의 권위의식은 높으나, 교사의 전체와 개인을 위한 인권 의식은 낮다고 생각하며, 나 또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14. 인권의식 수준이 실천의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함. 의식의 수준과 실천을 별개이고 실천의 과정이 중요함. 전교조 분회장을 맡으면서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임.

사례15. 전교조에 의해서 인권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 수준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례16. 아직까지는 교사의 인권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교사 자신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사들 스스로의 자기반성의 기회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취지에서 ‘교사의 인권’과 관련된 연수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례17. 인권수준이 중하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하수인, 여당의 대리인 등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사례18. 소수의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애들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 같다. 주로 “말로해선 안 된다” “어떻게든 교사를 속이려 든다” “근본이 틀려먹었다” 이런 말을 수시로 듣는다. 그러니 그 학생들 가방 속을 뒤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아마 이런 교사들은 자신이 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인격이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아이들은 어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본인도 인권의식 수준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평소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며 이리저리 차별 당하고 살면서도 별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화는 나지만 세상이 바뀌길 누군가 바꿔주길 바라고만 있는 것 같다. 다른 교사들의 인권수준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정도의 정보공유가 없어 말하긴 힘들지만, 나의 주변을 보자면 그다지 관심이 많은 것 같진 않다. 인권에 관한 연수도 받아본 적이 없고 여권 신장 문제도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자신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사례19. 교사들은 자신들의 권리조차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의 권리도 지켜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저 자신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알려고 하는 노력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혼자하기 보다는 여럿이 하면 잘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연수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인권에 대해 알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례20. 교사의 인권수준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무시하는 속에 자기도 학교장으로부터 무시당하면서 인권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라는 곳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같이 서야하는 곳이고

교사의 인권은 교사 스스로에 의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이 세워진 속에서 설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사와 학생을 모두 무시한 강제적인 ‘특기적성 수업’ 이런 것은 거부해야 하지만 실천에는 옮기지 못하는, 생각한 것을 실천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21. 사회적 발달 수준에 비해서 학교 현장의 근로 환경은 아직 열악하고, 교사 스스로 인권 신장을 위한 단결된 의식 형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교사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연수와 교육 기회가 보다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사례22. 인권 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는 것 같다.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전체의 인권을 인식하는 정도라고 한다. 자신의 인권을 찾는 방법을 모르고 인권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는 수준이나 실천적으로 약자의 인권을 찾아주는 정도는 못된다.

사례23.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사들의 인권의식 수준은 낮은 편이었던 것 같다. 교사 이기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도 많았다. 더구나 공무원이라는 관주도적 제약도 많이 받아왔고, 지금은 교사의 인권의식도 점차 높아지며, 현장도 많이 변화하는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본인 역시 교사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24. 그리 최상의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인권이 법적으로 마련된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교사의 인권 침해니, 인권의식이니를 거론할 만큼의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나 역시 거의 무방비상태이고 이런 것에 대해 심도 깊게 생각해 본적도 없는 것 같다. 반성합니다.

사례25. 보통 선생님이 된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학창 시절도 모범생으로 생활했을 겁니다. 그 당시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위계질서, 규격화된 예절의식 등이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고려해 보지 않고 기존의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인권 침해인지 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사례26. 아주 낮다고 생각한다. 나 개인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관심도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내세울게 없다. 단, 수업시간에는 계속 인권 침해 사례와 세계의 인권 상황 그리고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례27. 다소 기분이 나쁘더라도 나에게 직접 큰 피해가 오지 않는 일이라면 참아낸다. 기분 나쁜 상황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일 처리에서 의

견이 다른 경우, 처리 방식이 다른 사람을 문제로 삼는 경향이 있다. 나의 경우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편이나 같은 생각을 지닌 동료조차 적어서 외로울 때가 더러 있다.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함’을 늘 되새긴다.

사례28. 감정적인 면에서의 인권의식은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이 인권침해의 경우인지 확실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나 자신도 주위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공감하는데 나 스스로는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는다.

사례29. 예전보다 조금 향상된 것 같다. 나의 경우, 인권의식이 미약한 편. 어떤 사태에 직면했을 때 강력하게 어필하거나 대처하려는 용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사례30. 교사의 인권이 어떠한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항상 포용하고 참아야 하는 스승의 상이 아직도 거의 모든 이들의 머리에 남아있는 것 같다. 내가 교사의 인권에 대해 일천하고 구체적 고민이 없었다는 것을 알겠다.

사례31. 사회과 도덕과에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인권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지만, 우리 자신과 연관지어서는 인권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사례32. 직업 특성상 인권침해를 받을 일이 별로 없는 집단이다. 직장에서는 대체로 평등 관계 속에서 살고 교실에서는 왕이니까. 그리고 학부모, 사회로부터도 존경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체로 남의 인권에 무관심하게 산다고 본다.

나는 남의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착각하고 산다. 가급적 학생, 학부모의 편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나를 분통터지게 하는 것은 강자의 입장에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억압이다.

사례33. 사회 일각에서 ‘교사들은 지나치게 자신들의 인권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간혹 교직원 상호간이나 학생, 학부모 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유신시절 군대에서 교관을 한 경험으로 인해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권위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었고, 현재는 주위 분들의 조언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례34. 우리나라 교사의 인권 수준이 대체로 높다고 생각함. 자신도 높다고 생각함.

9. 포트폴리오 자료

(사례1)

● 내가 학생 신분으로 겪은 일들

1. 초등학교 시절 기성회비 못 내어 8킬로미터의 집(농촌)으로 쫓겨가서 눈에 일하는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함(우리 엄마 얼마나 가슴 아팠을꼬)
2. 중학교 시절 나의 잘못을 나무라시는 선생님께서 대들며 억지 논리로 선생님을 곤란하게 함(잘못은 내가 100%였음, 그리고 그 선생님 좀 실력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무시당하는 분이였음)
3. 고교시절 화단의 꽃을 계속 훔친 나에게(학교가 떠들썩할 정도였고, 최소한 무기정학 이상 또는 제적 처벌감이었으며 담임선생님의 재량권을 넘어버린 사건) 교장선생님(심양섭 교장선생님, 아동심리학자, [자라나는 어린이] 편저자)께서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적어오라고 하시고는 이후에 용서해 주신 일-종업식날 교장실로 가서 이제 졸업하게 되었음을 고하고 사연 많던 그 꽃밭 앞에서 단둘이 사진 한방 박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으며 선생으로 어려울 때 가끔 펼쳐 봄 - 이로 하여 나는 [학생 제적 처벌]의 결사 반대주의자가 되었음.
4. 고교시절 국어시간의 질문에 선생님께서 유치한 질문이라고 심하게 편견을 주심,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질문이었고 좋은 대답도 가능했는데(선생님 : 모든 낱말은 띄어쓰되 조사는 붙여쓴다. 질문 : 그럼 왜 국민학교 1학년 책은 조사를 띄어썼습니까? 선생님:**같은 게 **같은 질문이나 하고 있네.(지금 나의 대답 : 초등 1학년은 낱말과 글자 공부 목적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한다. 너 관찰력이 참 좋구나.)
5. 대학원 시절 교수님끼리의 갈등으로 따돌림당한 젊은 교수(학생들에게 신망을 받았음)의 수강생들을 다른 교수들이 차별한 일-내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기하여 논쟁이 좀 있었음.

● 내가 교사 신분으로 겪은 일들

1. 초임교사인 1972년에 10월 유신 홍보를 위해 차출되어 근무지의 각 마을을 돌며 억지논리를 펴야 했던 일(그들이 준 교재를 버리고 나는 주로 국제정세-당시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된 사건-로 건강부회하였음)
2. 30대 초반시절 한 학생의 사소한 잘못을 격한 감정으로 교실의 여러 학생 앞에

서 심하게 체벌한 적이 있음(지금 생각해보면 그 학생이 [더러워서 맞아준] 것 같음,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이많이 있었을 것임)

3. 버릇이 매우 나쁜 학생에게 담임교사로서 단순체벌(근신 정도)을 목적으로 징계를 요청했는데 나를 싫어하는 학생과 처벌담당교사가 강경 처벌로 몰고 가고 학교장도 이에 동조하였던 일
4. 이로 하여 교육청 교사 상담 장학사를 찾아갔었는데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함(학교장의 권한이니 어쩔 수 없었을 것임), 그런데 그 후 나의 이 상담 사실이 우리 학교 교감에게 알려졌음, 실망이 컸음(그 장학사는 상담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
5. 30대 시절 약 10년 간, 교과목 종강 시간에 무기명으로 적어 내게 한 [1년 간의 수업에서 하고 싶은 말]에서 상상 이외의 얼굴 화끈거리는 나의 잘못들이 지적되기도 하였음, 반성 많이 했음(물론 좋은 말도 많았음, 지금도 몇 학급분은 보관하고 있음)
6. 어느 졸업생이 전한 내용 [정학처벌을 받고는 교사용 변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경험을 쌓는 것도 긴 인생에 보탬이 된다.”고 했다고 함. 당시에 보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또 무슨 잘못을 했냐고 나무라는데 유일하게 그런 말을 해서 무척 고마웠다고 함]
7. 평소 모범생이던 아들의 서랍 속 여자 나체 사진을 보고는 상담하러 오신 어머니께 한 말(20년 전에는 이것도 큰 사건이었다. 내 생각에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들이니까, 특히 18세 왕성한 사내놈이니까 그러는 거지요. 여자에 대한 호기심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만한 나이에 그런 경험 안 하는 사내 있는 줄 압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내자식을 고자로 키울 생각입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실습을 하지 않고 참은 것 아닙니까. 장가 든 어른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 아버지나 저는 지금은 그런 사진 안 보고 살지 않습니다.(후일담 : 어머니는 그 때 아들 잘못보다 내 말의 농도 짙음에 더 당황했다고 함)

(사례2)

내가 교직에 몸담은 것은 73년 군대에서 교관 생활 때부터이다. 유신 초기여서 모든 것이 경직되어 있던 74년 가을쯤인 것으로 기억되는 시기에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었다. 교관 중에 한 사람이 교육생을 꿰어 얹혀 놓고는 그 사실을 잃어 버려 몇

시간 후에 탈영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 교관은 교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 당하는 일이었다. 이 일은 교직을 시작한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고,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군대에서도 교육자의 자질을 따지더라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나는 위의 경험으로 체벌이나 꾸중을 하더라도 꼭 양금을 갖지 않도록 반드시 달래주는 일을 잊지 않고 실행하고 있는 편이다.

6년 전쯤으로 생각되는 2학기 개학식 날 첫 조례를 하며 학생들과 방학중에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 도중에 전혀 엉뚱한 예능계 학원에 다는 학생이 있었다. 평소 얌전한 학생이었고 그런 학원에 다닐 것이라는 반 학생과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평소 농담을 좋아하는 내가 '미친 놈 ! ' 하고 엉겁결에 말했었고 모든 학생도 깔깔대며 웃고 말았다. 그러고는 그 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아뿔사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학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었다. 학생이 담임한테 '미친놈' 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며 울며불며 야단이라는 얘기다. 전후 관계를 부모님에게 설명하였으나, 화를 좀처럼 풀지 않아(물론 이 일 이전 학생과도 몇 차례 면담도 가졌고 학부모와 두세 차례 전화로 연락을 하고 있던 사이였었다), 주위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했더니, 그 학생에게는 큰 충격적인 말이 된다는 지적에, 다음날 조례시간에 과한 농담이었다고 사과를 하고, 부모님에 죄송하다고 설득을 해야 했었다.

교사의 사소한 한 마디 말도 학생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교사의 기본적 자세를 너무 등한시 한 결과로 생각하며 기억하고 있다.

(사례3)

학생운동이 한창이었던 87년, 88년쯤, 대학가 주변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다.

전경들이 길가에 진을 치고는 지나가는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이다. 당시 숨길 것도 없었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순순히 가방을 열어 주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일인 것 같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여중, 여고 때 있었다. 소위 생활검열이라는 행사인데 여학생으로서 지녀야 할 것은 다 있는지, 청결한지와 가방에 없어야 할 물건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어른들의 특히 선생님들의 요구를(지시를)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고, 그 당시 우리들은 자신의 인격, 혹은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 순종이나 복종을 가르치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편안해서였을까?

대학원에 진학하고 학과에서 연구조교를 하다가 정조교로 발령받고자 할 때의 일이었다. 교수님 한 분이 학과에서 조교를 하도록 추천하거든 거절하라는 것이었다. 이유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선배를 자기가 추천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여자인데(정식의 절차를 모두 밟았는데),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어이없는 발언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교수님이 너무도 당당하게 요구하기에 그게 옳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 교수의 (남자 선배) 추천 사유가 빈약하고 사리에 맞지 않아(전해들은 이야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조교생활을 할 때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물론 그 교수들의 제자 리스트에서 내가 빠져 있을 것은 분명하다.

이후 교직에 들어왔을 때도 여자로서 받는 차별은 참으로 다양하다.(여성차별도 인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간제로 일년간 있을 때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확실한지 모르지만 임신 중에는 기간제 채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그랬는지 기간제 교사는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병가를 내고 한달 간 휴가를 받았다.

특히 미술과목은 어떤 형태로든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 모든 것을 군소리 없이 감수하고 현재도 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

운 좋게도 학교에 계시던 이전 교사가 급히 학교를 그만두고 그 자리에 들어왔다.

(사례4)

교사들은 학교를 이동한 첫 해에는 새롭게 주어진 업무와 선생님들 이름 익히기를 하면서 새 학교의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가능한 말을 아끼며 지내려 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두 달 정도 조용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 게시물 교체 작업이 있었고, 내가 속한 사회환경부가 통일 관련 게시판을 구성하게 되었다. 나는 도덕교과 선생님들과 의논하여 한면을 삼등분하고, 한 부분을 남과 북이 만나는 장면, 즉 남북 정상회담 장면, 장관급 회담 장면, 이산가족 상봉 장면으로 연결하여 만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각 장면의 사진들은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찾아 기획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3교시 수업 후, 결재를 받기로 한 담당선생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기획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인 즉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가운데 서고 남북의 여러 대표단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만찬 장면의 사진에 문제가 있다고 교감선생님이 다시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담당선생님은 상기된 표정으로 미루어 교감선생님과 만만치 않은 설전이 오고 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실 평교사가 그것도 젊은 여교사가 남자 교감선생님과 20여 분 가량이나 전시물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설전을 벌인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나는 교감선생님에게 가서 문제의 사진은 통일부 통일교육 관련 책자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TV에서도 생방송 된 내용인 데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다. 그러자 교감선생님은 학교 게시판에 김정일 위원장이 나오는 사진을 게시한다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므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참 난감한 일이었다. 나는 통일부의 전문요원 양성과정 180여 시간을 이수하였으며, 어느 학회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통일 교육방안’을 발표한 적도 있고, 교육청의 통일교육세미나 기획팀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 나름대로는 통일교육에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교사인데,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국어과 교사 출신인 교감선생님을 설득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급기야 교육청과 통일부에 질의서를 보내어 왜 교육적이지 못한가를 가려보겠다는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담보로 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만 했다.

5교시에 기획안대로 하기로 결론이 났지만, 참 짜증나고 기가 찬 하루였다.

(사례 5)

봄의 끝 무렵쯤으로 기억하는 어느 하루, 수업과 수업의 사이 쉬는 시간. 교무실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옆에 계신 젊은 여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대강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한 중견(50대) 여선생님이 몸이 심하게 불편해서 양호실에 누워 계시다가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감 선생님이 복도를 돌다가 그 교실이 소란함을 보고 그 여선생님을 찾아 따지게 되자, 그 여선생님이 몸이 불편하여 좀 늦어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순간, 교감선생님이 뺨은 한 마디.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쉬지, 학교는 무엇 하려고 왔어요?’

물론, 교감선생님의 말속에는 수업 시간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그 여선생님은 평소 교사로서 성실한 자세가 돋보이는 존경받는 선생님이며, 특히 학교의 말썽꾸러기들과 e-mail을 주고받는 등 사이버 상담활동도 열심히 하는, 따뜻한 모성으로 아이들을 대해주는 다정다감한 전문 상담교사이신데...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덧붙이신 말.

얼마 전에는 교감선생님께서 어느 교실의 바닥 청소가 지저분하다고 아이들에게 물을 한동이 받아오게 하여 교실에 부어버리는 바람에 다음날 아침까지 교실 바닥에 물기가 고이도록 하여, 한 선생님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사례 6)

직원 연수가 있는 어느 가을의 수요일.

학생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1학년 교복 안에 착용하는 조끼 구입(남학생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매점에서 팔고 있는 조끼는 교복으로서 전 학생이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끼의 선정은 학부모들이 제품의 질과 구매처를 선정하였으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점에서 판매를 대행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이긴 하지만 3학년 전담교사로서 1학년의 조끼 구입 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끼를 교복으로 선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교복의 한 부분으로서 조끼를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도 년초에 조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교복선정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것, 매점 판매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사실 학교를 구성하는 운영위원들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 심의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을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러나 새로운 학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며 동시에 운영위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임을 알기에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위 사안을 지적할 생각이다.

문득 지난봄에 ‘학생간부수련회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이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하였던 두 가지가 생각난다.

첫째는 간부수련 참여 대상에서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선도부 학생들이 빠진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 수련회에서는 선도부 학생들도 포함시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자는 것과 둘째로 학교 운동장에서 관광버스로 출발하자는 안을 수업을 해야 하는 다수 비참여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해 학교 바깥에서 출발하자고 결정한 것이 그것이다.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수의 권리를 존중하여 그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

이 올바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사례 7)

‘너는 자기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아’

수업 후 쉬는 시간, 교무실 안쪽에 위치한 내 책상으로 이동하는 입구에 한 남학생이 분하고 서러운 듯,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스쳐 지나가는 동안 그 남학생의 속도 빠른 이야기가 들려왔다. 담임선생님이 ○○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에게는 차별 대우 한다는 것이었다.

교재를 책상 위에 놓고 숨을 고르는 동안 옆자리의 선생님이 학생을 타이르는 목소리가 들려 왔다. ‘넌 자기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아,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목소리는 낮고 단정적인 느낌이었다.

그러나 학생의 울음과 숨 고르지 못한 어깨 짓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장면은 어느 학교 교무실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의 편에 서서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교사로서의 의견을 전달하며 화해와 이해를 이끌어 내는 양방향 의사소통의 통로 마련은 쉽지 않다.

나는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사 재교육 과정에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육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상담의 이론과 자기 연수의 기회가 필수 과정으로 채택되었으면 한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속상했겠네...’

(사례 8)

나는 평교사로 평생을 교단에 서고 싶다. 주위에 친구들은 장학사도 되고 교감도 되었지만, 나는 평교사로 퇴임을 하고 싶다. 그런데 요즘 자꾸 시선이 주위의 젊은 선생님에게 향한다. 늙은이가 너무 늦게 교단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눈치가 보인다. 더구나 요즘 젊은 선생님은 두렵다. 예전에는 나이든 교사는 수업시수나 담임배정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모두가 똑같이 교사이므로 법정시수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젊었을 때 승진을 포기한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40-50대 교사들 가운데서 승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서 교무실 분위기가 비인간화되어 가는 모습이 답답하다.

(사례 9)

처음으로 학교운영회의가 열렸습니다. 결산심의가 있었는데 지난 년도의 심의이니 그냥 넘어가자는 의견이 대다수라 어영부영 그냥 넘기고, 졸업앨범 심의는 그 안건 차례에 교장이 자기는 조달요청 계약을 통해 앨범을 제작코자 하는 이유라고 쓴 프린트물을 나누어주고...(중략)... 그 다음 6학년 부장이 들어와 이러저러한 앨범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심의하라며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수가 그 의견에 동조하고 다른 의견은 논의도 되지 못하고 거수투표로 그렇게 하자고 했으며...(중략)... 수련회건도 차례가 되니 학년부장선생님이 자료를 주며 (답사비교표, 가격, 선정기준등) 심의하랍니다. 다들 장소도 정하고 알아봤으니 좋다고 합니다. 원래 심의할 때 그 자리에서 자료 주고 심의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원래 그렇게 한다고 했다. 작년에도 다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의견은 토론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다수에 의해 교장이 말한대로 되었다.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교장이 자신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니 무슨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냥 따라가가지...(중략)...

(사례 10)

84년 설레이는 가슴으로 첫 발령을 받아 교문에 들어서던 날 교문 앞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야구 방망이를 든 학생부 교사와 눈이 마주치면서 가슴이 싸늘해 졌다. 중학교 남학생들의 생활 속에 군사문화가 학교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음을 곳곳에서 느끼게 되었다. 체벌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었고, 전체모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희생양이 생겼다.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의 인격이나 인권은 마구 짓밟히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러한 방법이 옳다는 생각도 자리잡고 있음을 알고 난 절망하기도 했다. 학교의 관리자들도 그렇게 아이들을 잡아주는 교사를 공로자로 인정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 아침 주변 모임 시에 어느 여교사가 늦게 온 주변에게 머리를 쥐어박자 이를 보던 교감선생님께서 “○○선생, 빨리 이리 오시오.”라고 마이크로 부르더니, “여자가 재수 없게 아침부터 왜 남자 머리를 때리는 거요.” 정말 어이가 없었다. 우리 여교사들은 대책을 마련하고자 모였지만, 흥분만 할 뿐 어떤 일도 하지 못했다.

10. 포커스 조사 분석 자료

분석 자료1

학교 내에서의 학생인권 상황은 어떠한가?

1. 아이들은 차별을 가장 싫어하는데 성적에 의해 차별 받고 있다. 성적이 좋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생활 곳곳에서 차별 받고 있으며 대화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이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사들의 편견에 대해서도 아직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2.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체벌, 소지품 검사, 두발검사, 일기장 검사 등이다. 이 부분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사들보다 더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인권의식에 민감하여 억울하다 싶으면 인터넷에 올려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교사에 의한 일방적 침해는 줄고 있다.
3.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의 모습은 너무 권위적이다. 오히려 민주적이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그게 이상하게 보인다.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방식과 수행평가 등의 방법에 대해서 묻고 또 반장들을 불러 의논하면 아이들에게나 동료교사들에게 특별한 선생님이 보인다고 한다.
4.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권의식이 낮은 것은 학교 내에서 교사 자체도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사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할 수 없을 것이다.
5. 입시와 생활지도라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입시성과만 좋으면 인권 침해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시는 인권침해의 면죄부나 다름없다. 교칙준수와 생활지도를 위해서도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체벌에 있어서의 문제는 공평한가? 기준이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기준만 잘 지켜지면 수궁을 하는 편이다. 그러나 교사가 출석부로 여학생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반인권적이고 모욕적인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6. 교사들의 언어에 의해서도 학생의 인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도 많이 한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는 교사들도 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반말을 쓰는 모습을 없애고 학생들에게도 존칭을 썼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존칭을 쓰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야 한다.
7. 학교에서는 남녀의 역차별도 일어나고 있다. 초등학교나 남녀공학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남녀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서 야단을 맞아야 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경우에도 여자아이들에게는 관용적이고 남자아이들은 거칠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여자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불만이 있다.
8. 수업 효과를 소수 학생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 명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학생의 수업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학습요구도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인가?’ ‘교사 중심으로 체벌을 해서라도 공부를 시킬 것인가’하는 갈등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교에 와서는 자는 아이를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것이다.
9. 교사 개인의 교수 스타일이나 성격에 따라 아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형태가 다르고 침해정도나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아이들도 교사가 방임형이 되어 수업분위기를 잘 잡지 못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권위를 가지고 약간의 인권침해가 있더라도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분석자료 2.

학부모 인권 상황은 어떠한가?

1. 교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학부모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경우 교사들은 교육의 전문성을 주장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한다. 이것은 자기 자녀의 교육방법이나 학교와 학급의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등 학교 교육 전반에서 일상화 되어 있다.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 학부모가 일찍 귀가를 요구해도 학교의 방침이라고 하거나 학급 전체가 다 참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제로 참가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2. 자녀의 문제에 대하여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와 대화가 잘 되지 않아 교감이나 교장선생님을 찾아가면 교사의 권위나 권한만 강조하면서 간섭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교사의 편만 들기가 일쑤다. 이런 때 학부모들의 불만은 커진다. 아이에게 부과되는 과제의 내용과 양이 지나쳐서 시정을 요구하면 교사들은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고 교감이나 교장은 우선 교사입장만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3. 학부모가 학교에 불만을 갖고 항의하면 교사들이 주로 하는 말은 교권침해라는 것이다. 때로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대우를 받기도 한다. 교사들의 말 한마디가 학부모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한다. 교사들의 말 중에는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 “그것도 몰라요?” “내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등과 같이 학부모들에게 폭언으로 들릴 수 있는 말도 있다.
4. 이혼가정이나 편모가정의 학부모는 교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도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문제아 학부모에게는 문제 학부모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원인을 가정 환경 탓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5. 체벌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학부모가 용인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염려하는 것이다. 아이가 받아쓰기에서 20점을 받

은 별로서 “나는 20점을 받았습니다”라고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한 경우에 부모는 화가 났으나 어쩔 수 없었다.

6. 학부모의 경제적인 능력과 학교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학교나 학급의 일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학교에 협조적이면 대우를 잘 받는다.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려면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우선되고 임원이 되면 교사들로부터 대우를 받는 것이다.
7. 교사들은 학부모에 대한 배려나 존중의식이 낮다. 교무실이나 행정실을 방문하면 왜 찾아왔는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드물고 의자를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석 자료 3

교사들의 인권 상황은 어떠한가?

1. 교사상호간에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교사의 언어다. 교내에서 선배교사는 후배교사에게 반말을 하고 교장, 교감은 교사들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배의 반말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어를 들으면 불편하다고 낮춤말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공개된 자리에서의 교사들끼리의 다툼이나 관리자가 교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은 학생들에 의해 소문이 나고 교사의 권위는 떨어진다.
2. 교실의 교사와 교무실의 교사는 많이 다르다. 교실의 교사는 권위적인 반면 교무실의 교사는 회사의 사원에 불과하다. 교사의 의견은 무시되기 쉽고 명령에 따를 뿐이다. 교실에서는 말과 행동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교무실에서는 자기의견을 말하지 못하며 관리자의 이야기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할 뿐이다.
3. 교사들 스스로는 교사의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사로서의 권한은 없고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이다. 학부모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거나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교사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묻는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객관적 사실 파악보다 교사의 책임추궁부터 먼저 하는 것이다.
4. 교사들은 학생들에 의해서도 권위가 침해받고 인격에 손상을 입는다. 요즈음의 아이들은 옛날의 아이들과 많이 다르다.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시험과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주는 교사를 훌륭한 교사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담임 배정에서도 과거에 입시 성적이 좋았던 교사를 선호한다. 그리고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막말로 대들거나 기물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이 없다.
5. 과거와 다른 학교 분위기 때문에 교사들 상호간에도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나이 많은 교사들은 젊은 교사들에게 무시당하며 산다고 생각하고, 젊은 교사들은 나이 많은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한다고 생각하므로 교사 상호간의 존중의식이 약화되고 갈등도 많다. 한 예로 나이 50이 넘으면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없어서 젊은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못마땅

해 하고 수업시수 배당과 분장업무 배당에서는 젊은 교사들이 많은 부담을 안게 되어 젊은 교사들의 불만이 생긴다.

6.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면서도 사회생활에서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교사에 대한 기대와 잘못된 인식 때문에 개인적인 인권침해가 많다. 교사라는 꼬리표 때문에 인격이 침해되어도 참는 경우가 많다. 그 예들은 교사들은 학부모 학생들과 만날까 싶어서 같은 지역 혹은 같은 학군내의 목욕탕에 잘 가지 않고 가게에서 물건값을 잘 깎지도 못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7. 교사들의 인권침해는 주로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또는 행정직원에게 의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관료적인 행정과 인사체제가 지배하는 학교분위기와,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정을 잘 받아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관리자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교사의 입장 때문이다. 교장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회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학부모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항의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평가권을 침해한 사례도 있다.

분석자료 4.

교사들의 인권의식 수준은 어떠하며 향상 방안은 무엇인가?

1. 교사의 인권의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다, 낮다 이야기하기 어렵다. 비교 잣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사는 다른 사람보다 인권의식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과거보다 인권보장 수준이 나아졌으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2. 교사들이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이 먼저 되어 교사 인권의식 수준이 높을 때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다. 인권교육 이전에라도 교사들은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과 학교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3.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학력지상주의 성적 중심의 사회이며 거대학교와 다인수 학급에서는 개개인을 모두 인격적으로 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더불어 사는 삶을 중요시해야 하며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 해소되어야 한다.

4. 교사들은 대화의 기법이 부족하여 본의 아니게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된다. 그러므로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에 상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경청하기, 자기노출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재교육과정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교사의 역할도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5. 현직 교사들의 연수에 인권에 관한 내용의 도입이 필요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정기적으로 청취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교사와 교감, 교장의 자격연수와 일반연수 내용에 양로원, 고아원, 특수교육기관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봉사활동(체험활동)이 포함된다면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현행 교사 임용시험은 기술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으며 임용시험을 거친 젊은 교사들은 수업은 잘 하지만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젊은 교사들은 과거와 달리 선배교사들과 학생지도, 학급경영, 학부모 관계 등에 대한 정보교환이 부족하므로 선배들의 경험과 후배들의 열정이 녹아드는 의사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

7.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높은 경쟁을 뚫고 나온 교사들은 아이들의 일탈적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변하고 있고 학부모의 요구 수준도 예전과 다르므로 교사들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인권관련 내용을 담은 연극, 영화 등을 같이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8. 교사의 맡은 업무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침해 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생활지도부 교사라고 인권의식이 낮다고 말할 수 없고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므로 인권관련 담당업무를 맡는 교사에게 인권교육을 우선적으로 시켜야 한다.

9. 교사의 인권의식이 향상되려면 교사 자신의 관심과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환경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승진체계와 근무평정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11. 면접조사자 훈련자료

가. 면접자 훈련실시과정

면접자 훈련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형식에 따라 실시한다.

① 제1단계 : 전체모임

면접조사 실시 전에 모든 면접자를 집합시켜 조사연구 책임자·연구진 등과 인사 소개를 나누고, 연구의 목적·취지 등에 관한 해설을 한다. 조사에 임하는 순서·태도·준비태세·면접의 실시와 완료, 뒤처리 등 일련의 현장 과정에 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는 질의응답을 한다.

② 제2단계 : 시범면접과 토론

감독자가 면접자 앞에서 실제로 면접을 시범하여 보여주고 면접원 각자가 자신이 응답자의 입장에서 조사표에 응답을 하는 실습을 통해 조사표를 익히고 문제점들도 지적해 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들을 하나씩 토론하고 익히고 문제점들도 지적해 낸다.

③ 제3단계 : role playing

면접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짝을 지어 면접자 구실을 실습(role playing)해 본다.

나. 면접원이 면접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

① 응답자를 만나서 면접에 응하겠다는 협조·동의를 얻는 일

② 응답자가 정직하게 충분한 대답을 주도록 동기 지우는 일

③ 되도록 조사표에 적힌 대로, 유도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일

④ 면접자가 조사표에 따라 물어보는 질문에 유관적합한 응답자의 대답을 확보하는 일

⑤ 대답이 불분명하고 쓸데없을 때는 자세히 캐어물어서 적절한 응답을 받아내는 일

⑥ 대답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

다. 면접진행에 필요한 기술

1) 접근과 면접의 시작

면접자는 먼저 자기소개를 잘 하고 연구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한다. 인사말의 내용에는 대략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시킨다.

① 면접원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

② 연구의 주관자, 기관, 단체에 대한 소개

③ 연구목적과 주제의 간략한 소개를 곁들여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기여하는 바와 그 중요성을 설명·설득하는 말을 한다.

④ 표집 절차의 해명과 반드시 본인이 응답해야 연구가 올바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⑤ 대답한 내용의 익명성 보장 또는 사적인 문항의 비밀보장, 특히 이는 자료의 통계처리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⑥ 그리고 바쁜 줄 알지만 좋은 뜻의 일이니까 도와주면 고맙겠다는 인사를 곁들인다.

2) rapport의 유지와 면접환경

래포오의 유지는 면접의 승패를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 따라서 면접자는 면접의 전과정을 통해서 래포오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예를 들면 면접에서 나온 응답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하지 않겠다고 한다든가 익명을 보장함으로써 래포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반드시 지목된 응답자와 단 둘이서 면접을 실시해야 하며 면접이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한다.

3) 면접자의 태도

면접자는 면접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응답자의 말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또 응답자의 의견에 지나친 찬성이나 반대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처음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면접자가 취할 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중립성(natural) - 말씨·표정·태도·응답·에 대한 반응 등 전반적으로 지나침이 없이 사무적일 것.

② 공평성(impartial) - 어떤 종류의 피면접자(interviewee)이든, 그의 지위·성향·나이·성 등 어떤 특성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일률적으로 그가 자신감을 갖고 응답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대할 것.

③ 자연스러움(casual) - 너무 장난끼가 있고 경박스러운 것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심각하고 경직된 자세로 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고 질리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일상회화의 분위기(conversational) - 질문서나 조사표의 내용에 익숙해진 후 면접을 일상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끌고 나가야 한다. 책 읽듯하는 딱딱한 어법은 삼가한다.

⑤ 친절(friendly) - 응답자를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한 만큼, 친근감을 주고 친절할 필요가 있다.

⑥ 그러나 언제든지 진지함(conscientious)을 잃어서는 안 된다. 면접자가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진실한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질문의 일반적 원칙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법을 따르면 좋은 면접을 성취할 수 있다.

① 조사표(질문서)에 익숙해서 면접을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편안한 자세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각의 문항이 요구하는 바 특정목적을 충실히 이해하고 질문해야 한다.

③ 모든 문항은 조사표에 적혀 있는 그대로 물어야 한다.

④ 모든 문항은 조사표에 나타난 순서대로 물어야 한다.

⑤ 문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

⑥ 응답을 유도(lead)하거나 시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⑦ 면접의 흐름을 순탄하게 하기 위하여 단계적 이행(transitions)을 잘 해 나가야 한다.

⑧ 한 문항도 공백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⑨ 반대질문을 받았을 경우 - 가끔 응답자들은 질문에 대해서 면접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거꾸로 질문하는 수가 있다. 이때 면접자는 「저의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지요」와 같은 말로써 질문을 피하는 것이 좋다.

⑩ 응답자의 응답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으며, 또 응답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⑪ 「모른다」는 응답이 나올 경우에는 정말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를 면접자는 주의깊게 파악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한다.

⑫ 면접 중에 응답자의 대답이 먼저 말한 내용과 상반될 경우 면접자는 어느 것이 진실한 의견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 노트에는…」라고 말함으로써 응답자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⑬ 응답이 필요 없이 길어지거나 면접내용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처리방법은 첫째, 화제를 돌리는 질문을 하여 응답자의 이야기를 면접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전환시킨다. 둘째, 응답자의 이야기의 결론을 알아서 미리 앞질러 면접자가 말하여 이야기를 중단시킨다. 셋째, 응답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미리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간단하게 말하도록 하여 처리해 버린다.

5) 프로빙(probing)의 기술

프로빙이라 함은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못할 때 추가질문을 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대답을 캐묻는 것을 말한다.

① 간단한 찬성적 응답 - 응답자가 대답을 했을 때 「예」, 「그렇겠군요」 등의 간단한 찬성적 어귀를 자연스럽게 사용함으로써 응답자의 대답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좋다.

② 너무 간단한 대답을 할 때 - 면접자는 그 다음의 말을 기대하는 듯이 상대방을 응시함으로써 대답을 더 계속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③ 응답자의 대답을 되풀이함으로써 대답을 요약하여 면접진행을 원만히 하도록 해준다.

④ 캐내는 질문은 비지시적이어야 한다. 즉 응답의 방향을 지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등의 질문을 하는 것이다.

⑤ 프로빙을 할 때에는 적당한 곳에서 끝내야 한다. 때로 질문을 계속해서 캐묻게 되면 응답자가 일종의 불안을 느끼게 되어 래포오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다른 이야기를 하여 응답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다시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라. 면접결과의 기록

응답을 기록하는 대원칙은 「연구목적에 유관적합한 자료이면 응답자가 말하는 것을 표현 그대로(verbatim) 완전하게 적는다」는 것이다. 면접자는 면접에서 얻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편견을 개입시키지 않고 기록하여야 하며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① 응답은 면접 중에 기록한다.
- ② 응답자가 말한 대로 받아쓴다. 말을 요약하거나 바꾸어서 쓰면 편견이 개입되기 쉽고 응답의 진의와 강조점을 모호하게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 ③ 질문목적에 관련된 것이면 사소한 것이라도 전부 기록해야 한다.
- ④ 면접자의 코멘트(comment)나 캐묻은 질문을 기록하도록 한다.
- ⑤ 기록하는 일로 해서 응답자가 흥미를 잃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 ⑥ 면접과 조사에 대한 태도라든가 면접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제사실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마. 면접의 종결과 뒤처리

면접을 종결시키는 기술은 친절을 잊지 않고 응답자와 좋은 기분으로 헤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나 의심을 떠나기 전에 모두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면접이 끝나면, 우선 면접원은 응답자의 양해 아래, 조사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하고 빠뜨린 것, 잘못 기록한 것이 없나 확인한 다음 물러나야 한다. 현장을 떠날 때는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적극 협조해 준 것을 깊이 감사한다는 정중하고 친절한 인사를 남긴다. 그리고 미리 선물이나 기념품을 준비한 경우에는 면접 완료 후 떠날 때 남기고 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ISBN 89-90475-14-7-93330